

# 議會關聯法規集



木浦市議會





---

# 목 차

---



## I.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7
○예산회계법 .....	31
○정 당 법 .....	51
○지방자치법 .....	71
○지방재정법 .....	125

## II. 시 행 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	149
○예산회계법 시행령 .....	155
○지방자치법 시행령 .....	177
○지방재정법 시행령 .....	217

## III. 조 례

○목포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	263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	267
○목포시의회 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	273
○목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277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281
○목포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289
○목포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	303
○목포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307
○목포시의회 공인조례 .....	311
○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317
○목포시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	331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337

#### IV. 규 칙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	345
○목포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	367
○목포시의회 의원 배지 제식 및 패용에 관한 규칙 .....	375
○목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	381
○목포시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	389
○목포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	395
○목포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여행 규칙 .....	399
○목포시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	407

## I.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7
○예산회계법 .....	31
○정 당 법 .....	51
○지방자치법 .....	71
○지방재정법 .....	125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7665호 신규제정 2005. 8. 4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과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3 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공무원의 주의 의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는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제 2 장 공유재산 통칙

- 제 4 조 (공유재산의 범위) ①이 법에서 “공유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부잔교(부잔교)·부선거(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저작권·특허권·의장권·상표권·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및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 ②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5 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보존재산 및 잠종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행정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종류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③“보존재산”이라 함은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그밖에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④“잡종재산”이라 함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 6 조 (공유재산의 보호) ①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②공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 조 (기부채납) ①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당해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를 채납할 수 있다.

제 8 조 (사권설정재산의 취득제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제 9 조 (공부등록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은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부동산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에 등록을 요하는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다만, 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은 “교육감”으로 그 소관청의 명칭을 첨기(첨기)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 11 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거나 잡종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폐지에 한한다)할 수 있다.

**제 12 조** (회계간의 재산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 13 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구거(구거)·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 조** (공유재산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당해 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제 15 조** (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 ① 재산관리관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처리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 16 조** (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 17 조** (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18 조**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3 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제 19 조** (처분 등의 제한) ①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이하 “행정재산등”이라 한다)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재산등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법인 또는 개인소유의 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등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를 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때에는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 20 조** (사용·수익허가) ①행정재산등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행정재산등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

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등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행정재산등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 21 조 (사용·수익허가기간)** ①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채납한 후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제2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 22 조 (사용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년만기 정기에 금금리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 23 조 (사용료의 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행정재산등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잡종재산이 용도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사용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의 산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24 조**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2. 행정재산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와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때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때
4.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있는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당해 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완료기간 동안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 25 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등을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때
2. 당해 행정재산등의 관리를 대만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한 때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등의 원상을 변경한 때
4. 허위진술이나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5.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상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등이 기부채납한 행정재산등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

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26 조** (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27 조** (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당해 행정재산등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기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충당, 이용료의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4 장 잡종재산

### 제 1 절 통 칙

**제 28 조** (관리 및 처분) ①잡종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②잡종재산의 사권설정과 현물출자·대물변제 및 제29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에 관한 범위 및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9 조** (계약의 방법) 잡종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뜻을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매출의 방법에 의하며, 이 법 제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0 조** (처분재산의 가격결정) 잡종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그 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를 참작하여 결정한다.

### 제 2 절 대 부

**제 31 조 (대부기간)** ①잡종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2. 제1호외의 재산 : 1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대부받은 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기간이 종료된 잡종재산에 대하여 제29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를 할 수 있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기 1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 32 조 (대부료)** ①잡종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대부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년만기 정기에 금금리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제 33 조 (대부료의 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잡종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대상인 행정재산 등이 용도폐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대부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대부료의 산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34 조 (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 ①잡종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잡종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당해 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완료기간 동안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 35 조** (대부계약의 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대부한 잡종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
  2. 대부받은 잡종재산의 관리를 대만하였거나 그 대부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한 때
  3. 대부받은 잡종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잡종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때
  4. 허위진술이나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때
  5.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 3 절 매 각

**제 36 조** (잡종재산의 매각) 잡종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제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때

3 그 밖에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 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때

**제 37 조 (매각대금의 납부)** ①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잡종재산 중 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8 조 (매각계약의 해지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매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매수자가 허위의 진술이나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때  
2.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매수한 자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 4 절 교 환

**제 39 조 (교환)**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교환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사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토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토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때  
3.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있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에 있어서 교환하는 잡종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경우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한다.

---

## 제 5 절 양 여

제 40 조 (양여) ①잡종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양여할 수 있다.

1.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 안에 있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잡종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양여하는 때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있어서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때
4. 도시계획사업집행의 부담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 사업시행지구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여하는 때
5.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잡종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잡종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때에는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 41 조 (양여계약의 해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양수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양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용도를 지정하여 양여한 경우에 양수자가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때
  2. 허위진술이나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때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제 6 절 신 탁

제 42 조 (잡종재산의 신탁) ①잡종재산(토지와 그 정착물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이를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회사에 신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무상대부·교환 또는 양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탁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를 신탁의 수익자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신탁기간은 20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

신할 때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43 조** (신탁보수 등)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과 신탁회사의 신탁보수, 신탁회사의 선정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5 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제 44 조** (대장과 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유재산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재산의 범위·조사기간·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게 의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 45 조** (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공유재산의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공유재산 관리(체납처분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 46 조** (가격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가격을 개정(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등재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7 조** (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년도 및 당해 회계연도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의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작성한 때에는 증감의 원인별·내역별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심사·분석하여야 한다.

## 제 6 장 물품 통칙

**제 48 조** (물품의 범위) 이 법에서 “물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

---

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1. 현금
2. 유가증권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제 49 조 (물품의 분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사용과 처분에 있어서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성질별·기관별·품목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분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정한 물품관계경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정한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이를 분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분류의 기준과 그 밖에 물품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50 조 (출자 등의 금지)** 물품은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 51 조 (표준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관에서 사용되는 물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 52 조 (물품관리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제 53 조 (물품출납공무원)** ①물품관리관(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

**제 54 조 (물품이용관)** ①물품관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라 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이용관”이라 한다.

**제 55 조 (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의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둘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지정할 수 있다.

제 56 조 (물품관리에 관한 정보공유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 기준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조달청장과 공유하는 등 상호 협조할 수 있다.

## 제 7 장 물품의 관리

### 제 1 절 통 칙

제 57 조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의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따라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관리계획에 변경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관리계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수급관리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물품을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제 58 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 59 조 (재고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빈도가 높거나 재고의 유지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적절한 재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60 조 (재물조사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결과 물품의 손·망실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1 조 (재물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의 결과 물품의 증감이 발견된 경우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임이 명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 62 조 (물품의 현황 작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물품에 대하여 전년도 및 당해 회계연도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3 조 (관리전환)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소관의 물품을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의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소관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관리전환을 받을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전환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으로 정리(정리)하여야 한다.

제 64 조 (물품의 정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정비대상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제 65 조 (표준서식) 물품관리관·물품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준서식(전산처리에 필요한 입·출력 자료서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 66 조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 67 조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제한) 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취급하는 물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이를 무효로 한다.

## 제 2 절 취 득

제 68 조 (취득) ①물품관리관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 안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물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수(검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취득할 수 없다.

### 제 3 절 보 관

제69조 (보관의 원칙) 물품은 언제든지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0 조 (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제 71 조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 ①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중인 물품(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반납된 물품을 제외한다)중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제1항 또는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의하여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 그 밖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그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 제 4 절 사 용

제 72 조 (사용)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용의 목적을 명백히 하여 그 사실을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물품사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물품운용관의 요청에 의하여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3 조 (사용중인 물품의 반납) ①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은 사용 중인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수선이나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되는 물품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에게 그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제 74 조 (대부) ①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대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대부한 경우 대부료율, 대부료의 산정방법, 대부



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5 절 처 분

제 75 조 (불용의 결정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 76 조 (매각) ①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물품으로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의 특례를 둘 수 있다.

제 77 조 (불용품처분의 요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 중 관리전환·양여 또는 매각 등에 의하여 처분이 되지 아니하는 불용품이 있는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 78 조 (불용품의 양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으로서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양여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제 79 조 (교환) ①지방자치단체는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나 타인 소유의 동종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경우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액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 8 장 보 칙

**제 80 조 (연체료의 징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되어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 81 조 (변상금의 징수)**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공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 82 조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 83 조 (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

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84 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85 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반환자에 대한 특례) 은닉된 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또는 재판상의 화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자에게는 이를 수의매각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각대금을 이자없이 12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할 이하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86 조** (물품의 자연감모) ①물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생기는 감모는 자연감모로 하여 이를 정리할 수 있다.

②자연감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품명 및 자연감모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7 조** (물품의 공급) 물품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사·제조 그 밖의 계약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

**제 88 조** (물품의 손·망실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의 결과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이 발견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 명령을 할 수 있다.

**제 89 조** (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①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동산중 이 법에 의한 물품이 아닌 동산(제48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물품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이 아닌 동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90 조**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하고,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와 그 밖에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제 91 조** (일부 물품의 적용배제) 「지방재정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로서 취득한 물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92 조**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

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 93 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사무의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 94 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 95 조** (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과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 96 조**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의 지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은닉된 공유재산의 발굴, 변상금의 징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의 효율적인 대부·사용·신탁·매각 등으로 예산상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절약하는데 기여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재활동비(공유재산을 총괄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업무에 필요한 활동비를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의 지급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97 조** (「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 시효소멸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98 조** (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각각 본다.

## 제 9 장 별 칙

**제 99 조** (벌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행정재산등을 사용 또는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부 칙 [2005.8.4 제7665호]

-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변상금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변상금분부터 적용한다.
- ③(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④(사용·수익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대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다.
- ⑤(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예 산 회 계 법





## ◆ 예산회계법

법률 제6075호 일부개정 1999. 12. 31.

법률 제6836호(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법률 제7347호(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 2005. 01. 27.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①이 법은 국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물품과 국유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조 (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 3 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

제 4 조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7.1]]

제 5 조 (국가의 세출재원의 근거)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외국정부, 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관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세입으로써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제 6 조 (재정증권과 일시차입금) 삭제 [2002.12.30 법률제6836호]

제 7 조 (기금의 설치) ①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③내지 ⑦삭제 [91·12·31]

제 8 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 국가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 9 조 (회계구분) ①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 설치한다.

제 10 조 (기업회계의 원칙) 특별회계에 의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11 조** (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 회계) 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 12 조** (국가의 채권과 채무) ①국가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효력을 변경함에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제 13 조** (국가재산의 처분) ①국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교환·양여·대부·출자 또는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재산은 현금을 제외한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 14 조** (중앙관서의 장의 정의) ①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②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에게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그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제1항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91·11·30, 93·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그 직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1·11·30, 93·12·31, 99·2·5, 99·5·24]

④삭제 [2002.12.30 법률제6836호]

[본조제목개정 2002.12.30. 법률제6836호]

**제 15 조**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업무의 관장) ①예산관계법령에 관한 사무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장하고, 회계관계법령에 관한 사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장한다.[개정 99·2·5, 99·5·24]

②삭제 [93·12·31]

**제 16 조** (중·장기계획의 수립등)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 를 위하여 수년간의 재정수요와 가용재원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99·2·5, 99·5·24]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2·5, 99·5·24]

③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전에 미리 관계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중앙관서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도 미리 기획예산

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2·5, 99·5·24]

제 17 조 삭제 [93·12·31]

## 제 2 장 예 산

### 제 1 절 총 칙

제 18 조 (세입세출의 정의 및 예산총계주의원칙)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및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차관물자대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 19 조 (예산의 내용)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 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제 20 조 (예산의 구분) ①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세입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한다.

③세입예산은 제2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제 21 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 22 조 (계속비) ①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하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 23 조 (명시이월비)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24 조 (국고채무부담행위) ①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안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회계연도마다 국가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신설 93·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3·12·31]

## 제 2 절 예산안의 편성

**제 25 조** (예산안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서 제출기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5, 99·5·24]

②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99·2·5, 99·5·24]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5, 99·5·24]

④제3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26 조** (예산총칙)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규정을 두는 이외에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법률제6836호]

1.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채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
2. 국고금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3.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 27 조**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이유 및 금액)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 28 조** (예산안의 편성)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2·5, 99·5·24]

**제 29 조** (독립기관의 예산)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독립기관”이라 한다)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당

---

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제 30 조** (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1 조** (예산안의 첨부서류)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편성지침
2.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3.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4.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5. 국채와 차입금의 상환에 관한 전년도말에 있어서의 실적, 전년도말과 당해연도말의 현재액 추정 및 그 상환연차표에 관한 명세서
6.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7.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8.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9. 국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10. 독립기관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하였을 때에는 그 삭감이유와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의견
11. 기타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제 32 조** (국회제출중인 예산안의 수정)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 33 조** (추가경정예산안) ①정부는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제32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1조에 규정된 예산안첨부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4 조**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헌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제 3 절 예산의 집행

**제 35 조 (예산의 배정)** ① 예산이 성립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5, 99·5·24]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예산배정요구서와 국고금관리법 제30조2항의 월별자금계획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 월별자금계획과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은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 월별자금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2·5, 99·5·24, 2002.12.30 법률제6836호]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2·5, 99·5·24]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99·2·5, 99·5·24]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에 총액으로 계상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배정전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3·12·31, 99·2·5, 99·5·24]

**제 36 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 각 장·관·항간에 상호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개정 99·2·5, 99·5·24]

② 정부조직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은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하여 그 예산을 상호 이용 및 이체할 수 있다. [개정 99·2·5, 99·5·24]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용 또는 이체한 때에는 당해 중앙관서의 장·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2·5, 99·5·24]

**제 36 조의 2 (예산성과금 지급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경우에는 증대 또는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 지급 및 다른 사업에의 사용,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2·5]

**제 37 조 (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할 수 있다. [개정 99·2·5, 99·5·24]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개정 99·2·5, 99·5·24]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당해 중앙관서의 장·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한 때에는 그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5, 99·5·24]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38 조 (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3·12·31, 99·2·5]

1. 명시이월비

2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중 입찰공고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5 정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②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체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월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5, 99·5·24]

④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세입징수상황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9·2·5, 99·5·24]

**제 39 조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예비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99·2·5, 99·5·24]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이유,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자연재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2·5, 99·5·24]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요구를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2·5, 99·5·24]

④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이를 세입으로 하여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제 40 조 (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명세서에 의하여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2·5]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총괄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④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총괄표를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1 조 (수입대체경비)** ①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30 법률제6836호]

### 제 3 장 결 산

**제 42 조 (결산보고서등의 작성 및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



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 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5]

**제 43 조 (세입세출결산의 작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의 결산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2·5]

②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2002.12.30.법률제6836호]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이체등 증감액

다. 세입예산현액

라. 징수결정액

마. 수납액

바. 불납결손액

사.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등 증감액

마. 제4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세출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 44 조 (세입세출결산의 제출과 송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세입세출결산에 각 중앙관서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다음연도 6월 1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5, 99·5·24]

②감사원은 제1항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연도 8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5]

**제 45 조 (세입세출결산의 국회 제출)**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결산을 회계연도마다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제 46 조 (세입세출결산의 첨부서류)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47 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①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이월액의 재원으로서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②세계잉여금중 다른 법률에 의하는 것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을 공제한 잔액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세계잉여금이 생긴 다음연도까지 당해회계의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2.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확정된 국가배상금

③세계잉여금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제 47 조의 2 (일반회계세계잉여금처리에 관한 특례) ①일반회계세계잉여금은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세계잉여금이 생긴 다음연도까지 당해 회계의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3·12·31, 96·12·12, 99·1·21, 99·12·31]

1. 양곡증권정리기금법에 의한 부채의 상환

2. 재정용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용자특별회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상환

3. 국채법에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국채의 원리금상환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잉여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리금상환의 규모등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2·5, 99·5·24]

[본조신설 91·12·27]

## 제 4 장 수 입 [삭제 [2002.12.30. 법률제6836호]]

제 48 조 삭제 [2002.12.30. 법률제6836호]

제 49 조 삭제 [2002.12.30. 법률제6836호]

제 50 조 삭제 [2002.12.30. 법률제6836호]

제 51 조 삭제 [2002.12.30. 법률제6836호]

제 52 조 삭제 [2002.12.30. 법률제6836호]

---

제 53 조 삭제 [2002.12.30. 법률제6836호]

제 54 조 삭제 [2002.12.30. 법률제6836호]

제 55 조 삭제 [2002.12.30. 법률제6836호]

## 제 5 장 수입 및 지출

### 제 1 절 총 칙 [삭제 [2002.12.30.법률제6836호]]

제 56 조 (국고금의 관리) 회계 및 기금의 수입·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2.12.30. 법률제6836호]

제 57 조 삭제 [2002.12.30. 법률제6836호]

### 제 2 절 지출원인행위[삭제 [2002.12.30. 법률제6836호]]

제 58 조 삭제 [2002.12.30. 법률제6836호]

제 59 조 삭제 [2002.12.30. 법률제6836호]

제 60 조 (명시이월비의 다음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항마다 그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다음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99·2·5, 99·5·24]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승인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2·5, 99·5·24]

### 제 3 절 지 출 [삭제 [2002.12.30.법률제6836호]]

제 61 조 삭제 [2002.12.30. 법률제6836호]

제 62 조 삭제 [2002.12.30. 법률제6836호]

제 63 조 삭제 [2002.12.30. 법률제6836호]

제 64 조 삭제 [2002.12.30. 법률제6836호]

제 65 조 삭제 [2002.12.30. 법률제6836호]

제 66 조 삭제 [2002.12.30. 법률제6836호]

제 67 조 삭제 [99·2·5]

제 68 조 삭제 [2002.12.30. 법률제6836호]

제 69 조 삭제 [2002.12.30. 법률제6836호]

제 70 조 삭제 [2002.12.30. 법률제6836호]

제 71 조 삭제 [2002.12.30. 법률제6836호]

제 4 절 지 급[삭제 [2002.12.30 법률제6836호]]

제 72 조 삭제 [2002.12.30. 법률제6836호]

제 6 장 (제73조 내지 제95조) 삭제 [95·1·5]

## 제 7 장 시 효

제 96 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제 97 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제 98 조 (시효중단의 효력)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제 8 장 유가증권

제 99 조 (유가증권보관의 제한)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유 또는 사유의 유가증권을 보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2.12.30 법률제6836호]

제 100 조 삭제 [2002.12.30.법률제6836호]

제 101 조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취급) 국가는 그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취급을 한국은행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명할 수 있다.

제 102 조 (한국은행에 대한 검사) 한국은행은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한 유가증권의 수불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30.법률제6836호]

제 103 조 (한국은행의 배상책임) 한국은행이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국은행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2.12.30. 법률제6836호]

## 제 9 장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7.1]]

제 104 조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7.1]]

제 105 조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7.1]]

## 제 10 장 기록과 보고

제 106 조 (장부의 비치)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중앙관서의 장,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30. 법률제6836호]

제 107 조 (회계보고와 사업보고)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99·2·5, 2002.12.30. 법률제6836호]

1. 지출원인행위보고서

2.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보고서

3. 기타 회계에 관한 보고서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서를 분기마다 종합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5, 99·5·24]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기마다 사업집행보고서와 기타 예산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5, 99·5·24]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99·2·5, 99·5·24]

[본조제목개정 2002.12.30. 법률제6836호]

제 108 조 (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취급한 유가증권의수불 등에 관한 보고서와 계산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30. 법률제6836호]

제 109 조 (재정상황에 관한 보고) 정부는 예산이 성립되면 지체없이 예산 전년도결

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기타 재정에 관한 일반사항을 인쇄물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 11 장 보 칙

제 110 조 (보증채무부담행위) ①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11 조 (예산 및 회계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 및 회계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예산에 관한 법령은 기획예산처장관, 회계에 관한 법령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2·5, 99·5·24]

제 112 조 (다른 법령에 관한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 및 회계에 관한 법령 이외의 다른 법령으로서 예산 및 회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11조의규정을 준용한다.

제 113 조 삭제 [2002.12.30. 법률제6836호]

제 114 조 삭제 [2002.12.30. 법률제6836호]

제 115 조 (자금의 보유)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

제 116 조 (특별회계의 특례) 각 특별회계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제 117 조 (예산집행의 감독) 기획예산처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은 예산과 회계의 적정을기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하게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국무회의의의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각 중앙관서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회계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99·2·5, 99·5·24]

제 118 조 (내부통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유효한 재정관리·재원사용의 적정 여부와 집행과정에서 보고 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 119 조 삭제 [2002.12.30. 법률제6836호]

제 120 조 삭제 [2002.12.30.법률제6836호]

제 121 조 삭제 [2002.12.30.법률제6836호]

제 122 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 123 조 삭제 [2002.12.30.법률제6836호]

제 124 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교육) 정부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부 칙

###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7항, 제40조제4항, 제42조, 제44조, 제45조, 제76조 및 제81조제3항의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부 칙 [91·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93·12·31]

### 부 칙 [9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 부 칙 [93·12·31]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부 칙 [96·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 칙 [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부 칙 [99·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 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중앙관서의 장의 정의 및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를“(중앙관서의 장의 정의)”로 하고 동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2호중 “제6조”를 “국고금관리법 제32조”로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예산배정요구서와 국고금관리법 제30조2항의 월별자금 계획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 월별자금 계획과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기획예산처 장관은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 월별자금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수입대체경비) ①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2항제2호마목중 “제41조제1항 단서”를 “제41조”로 한다.

제4장(제48조 내지 제55조)을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지출”을 “수입 및 지출”로 한다.

제56조 앞의 “제1절 총칙”을 삭제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국고금의 관리) 회계 및 기금의 수입·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를 삭제한다.

제57조 다음의 “제2절 지출원인행위”를 삭제한다.

제58조 및 제59조 각각 삭제한다.

---



제5장제3절(제61조 내지 제66조, 제68조 내지 제71조) 및 제5장제4절(제72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8장의 제목 “국고금과 유가증권”을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유가증권보관의 제한)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유 또는 사유의 유가증권을 보관할 수 없다.

제100조를 삭제한다.

제102조·제103조 및 제10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한국은행에 대한 검사) 한국은행은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한 유가증권의 수불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3조(한국은행의 배상책임) 한국은행이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국은행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한다.

제106조(장부의 비치)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중앙관서의 장,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7조의 제목중 “재정보고”를 “회계보고”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8조(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취급한 유가증권의수불 등에 관한 보고서와 계산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3·제114조·제119조 내지 제121조 및 제1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항 내지 제31항 생략

**부 칙** [2005.1.27 법률 제7347호(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9장(제104조 및 제105조)을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⑦생략





# 정 당 법



## ◆ 정당법

법률 제6269호 일부개정 2000. 02. 16.

법률 제6661호 일부개정 2002. 03. 07.

법률 제7190호 일부개정 2004. 03. 12.

법률 제7683호 전면개정 2005. 08. 04.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제 3 조 (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제 2 장 정당의 설립

**제 4 조 (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 5 조 (창당준비위원회)** 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를 한다.

**제 6 조 (발기인)**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제 7 조 (신고)** ①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발기의 취지
2. 정당의 명칭(가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발기인과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5 회인(회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함으로써 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고사항 중 제1호 내지 제5호(제4호 중 발기인의 성명·주소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 8 조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①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목적범위 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7조(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일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창당활동을 할 수 있다.

③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제11조(등록신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창당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④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시·도당의 창당승인)** 시·도당의 창당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 10 조 (창당집회의 공개)** ①정당의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집회의 공개를 위하여 집회개최일 전 5일까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에 집회개최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 11 조 (등록신청)**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 12 조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2. 사무소의 소재지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

5. 당원의 수

6. 당인(당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7. 시·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8. 시·도당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와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①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의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
4. 당원의 수
5. 당인(당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14 조** (변경등록)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
2. 사무소(중앙당의 경우 당해 사무소에 한한다)의 소재지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 대표자 및 간부[제29조(정당의 기구)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에 한한다]의 성명·주소
5. 당인(당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제 15 조** (등록신청의 심사)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 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 16 조** (등록·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①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내지 제14조(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 (법정시·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제 18 조**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①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 제 3 장 정당의 합당

**제 19 조 (합당)** ①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이하 “신설합당”이라 한다)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이하 “흡수합당”이라 한다)될 때에는 합당을 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입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

②정당의 합당은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이하 “공직선거”라 한다)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합당된 때에는 선거일 후 20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⑤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 20 조 (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 ①신설합당의 경우 정당의 대표자는 제19조(합당)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1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등록신청일부터 12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있어 그 기간 이내에 보완이 없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회 이상 상당한 기간을 두어 보완을 명하고, 보완이 없는 때에는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흡수합당으로 존속하는 정당의 대표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합당된 사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21 조 (합당된 경우의 당원)** 제19조(합당)의 규정에 의한 합당의 경우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 이 경우 합당 전의 입당원서는 합당된 정당의 입당원서로 본다.

---



## 제 4 장 정당의 입당·탈당

**제 22 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이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다.

2.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제 23 조 (입당)** ①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③입당신청인은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④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24 조 (당원명부)** ①시·도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 25 조 (탈당)** ①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 시·도당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시·도당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탈당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③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시·도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탈당증명서를 교부하고,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여야 한다.

**제 26 조 (탈당원명부)** 시·도당에는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 27 조 (당원명부 등의 인계)** 정당은 대표자 등의 변경이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 시 당원명부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이하 “관련 서류”라 한다)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의 인계의무자를 당헌에 정하여야 하며, 당해 인계의무자는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와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 제 5 장 정당의 운영

**제 28 조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①정당은 그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정당의 명칭
2. 정당의 일반적인 조직·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3. 대표자·간부의 선임방법·임기·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당원의 입당·탈당·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6. 간부회의의 구성·권한 및 소집절차
7.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8.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9. 당헌·당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정당의 해산 및 합당에 관한 사항

11.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시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제 29 조 (정당의 기구)** ①정당은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가져야 한다.

②중앙당은 정당의 예산과 결산 및 그 내역에 관한 회계검사 등 정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검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관의 조직·권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헌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 30 조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인[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의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소의 연구원은 그 수에서 제외한다]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제1항에 규정된 유급사무직원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정치자금법」 제25조(보조금의 계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에서 당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연간 평균인건비에 초과한 유급사무직원수를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③제1항에서 “유급사무직원”이라 함은 상근·비상근을 불문하고 월 15일 이상 정당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봉급·수당·활동비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그 대가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일수에 불구하고 유급으로 근로를 제공한 인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들의 근로일수를 모두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이를 유급사무직원수에 포함한다.

④제3항의 경우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유급사무직원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유급의 근로일수를 모두 합하여 매월 30일까지는 1인으로 하며,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매 30일까지마다 1인을 추가한다.

**제 31 조 (당비)** ①정당은 당원의 정예화와 정당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비납부제도를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②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된다.

③당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당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 제명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자격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헌으로 정한다.

**제 32 조 (서면결의의 금지)** ①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②대의기관의 결의는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헌으로 정한다.

**제 33 조** (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34 조** (정당의 재정) 정당의 재산 및 수입·지출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 35 조** (정기보고) ①중앙당과 시·도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 연도 2월 15일(시·도당은 1월 31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 연도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중앙당과 시·도당은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이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연간 활동실적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연간 활동실적을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 36 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정당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당원명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6 장 정당활동의 보장

**제 37 조** (활동의 자유) ①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②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③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 38 조** (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①「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

---

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하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라 한다)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 39 조 (정책토론회)** ①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 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제외한 기간 중 연 2회 이상 중앙당의 대표자·정책연구소의 소장 또는 중앙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정책토론회를 당해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공영방송사가 부담한다.

③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7항 내지 제9항·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④ 정책토론회의 개최·진행 및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 40 조 (대체정당의 금지)**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제 41 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③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④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42 조 (강제입당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제 43 조** (비밀엄수의 의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제 7 장 정당의 소멸

**제 44 조** (등록의 취소) ①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3.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5 조** (자진해산) ①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46 조**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시·도당 창당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를 당헌 또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정하여야 하며, 당헌 또는 규약에서 정한 외의 사유로 창당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의기관에서 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 47 조** (해산공고 등) 제45조(자진해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8 조** (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①정당이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45조(자진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잔여재산 및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 8 장 별 칙

제 49 조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①정당의 대표자·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 (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당대표경선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감금한 자
2. 선거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고용 그 밖에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②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다수인이 선거운동을 위한 시설·장소 등에서 위협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를 폭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도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3.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제 50 조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선거인(당대표경선등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제1항제1호·제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51 조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50조(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 52 조 (당대표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 ①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소속·신분·직업·재산·경력·학력·학위 또는 상벌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한 자(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한 자(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53 조** (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54 조** (입당강요죄 등)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55 조** (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56 조** (당원명부 강제열람죄) 당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57 조** (보고불이행 등의 죄)제3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허위의 보고나 기재를 한 자 또는 제35조(정기보고)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58 조** (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1. 제24조(당원명부)제3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한 자

2. 제43조(비밀엄수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지 아니한 자

**제 59 조** (허위등록신청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2 허위로 제14조(변경등록)의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

3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

②제41조(유사명칭 등 사용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60 조 (각종 의무해태죄)** ①제24조(당원명부)제1항 또는 제26조(탈당원명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원명부나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5조(탈당)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7조(당원명부 등의 인계)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와 인장 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61 조 (창당방해 등의 죄)** ①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창당준비활동을 방해하여 창당준비위원회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 정지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당활동을 방해하여 정당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 정지하게 한 자도 제1항에 규정하는 형(형)에 처한다.

**제 62 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을 해태한 자

2.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또는 같은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태한 자

3. 제35조(정기보고)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해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또는 재판의 진행은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부 칙

### 부 칙

- ①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각령이 정하는 날까지 당해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 부 칙 [69·1·23]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정당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지구당수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의 법정당원수는 이 법 공포일로부터 2년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③ (동전)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기간내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의 기간을 두어 그 보완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 ④ (폐지법률) 정당의합당절차등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부 칙 [72·12·30]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법정지구당등의 개편 보완) 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정당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지구당수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의 분산요건과 그에 따르는 등록신청 기타 필요한 절차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를 개편·보완하여야 한다.
- ③ (등록의 취소) 제2항의 경우에 그 기간내에 개편·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다.
- ④ (선거구에서의 대표할 지구당 지정) 정당은 제2항의 개편·보완기간중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동일한 선거구내에 종전의 법에 의한 지구당이 2개이상 있을 때에는 당해 선거구내에서 그 정당을 대표할 지구당을 지정할 수 있다.
- ⑤ (당지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당지부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당연락소로, 당지부의 대표자는 당연락소의 책임자로 본다.
- ⑥ (창당활동기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다만, 그 기간이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로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주일안에 하여야 한다.

### 부 칙 [73·6·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0·11·25]

-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제43조제2항의 규정은 헌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에 준용한다.

부 칙 [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8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12·27]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등록된 정당에 대하여는 제22조의2, 제24조의2, 제29조의2 및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당해 정당의 당헌이 개정된 날부터 또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로 인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7·1·13 법5260]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생략

부 칙 [97·1·13 법5263]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②생략

부 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2000·2·16]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정당에 대한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3.7.]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정당의 당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정당은 제22조의2제3항의 규정된 사항을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당헌에 이를 정하여야 한다.
- ③(읍·면·당연락소의 등록말소) 이 법 시행전에 등록된 정당의 읍·면·당연락소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그 등록을 말소한다.

부 칙 [2004.3.12.]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내경선의 실시를 공고·결정한 당내경선부터 적용한다.

제 2 조 (정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법정시·도당수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이 법 시행일 부터 180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 3 조 (당지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당지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도당으로 본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사항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는 이 법 시행일 부터 180일 이내에 개편·보완하여야 한다.

제 4 조 (등록의 취소)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법정시·도당수, 등록신청사항 및 법정당원수를 개편·보완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한다.

제 5 조 (지구당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지구당의 당원은 그 지구당이 소재하는 시·도를 관할하는 시·도당의 당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의 지구당의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이 법 시행전의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의 관련서류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인계한다.

제 6 조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정당에 대하여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 7 조 (지구당 등의 등록말소) 이 법 시행전의 지구당 및 구·시·군연락소는 이 법 시행일에 그 등록이 말소된다.

제 8 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9 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항 중 “정당(정당법에 의한 지구당을 포함한다)”를 “정당”으로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8항 중 “중앙당, 당지부 및 지구당과 구·시·군연락소를”을 “중앙당과 시·도당을”으로 한다.

**부 칙** [2005.8.4 제768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창당집회의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집회의 공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정책토론회에 관한 적용례) 정책토론회는 제39조(정책토론회)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최초로 시행되는 연도에는 연 1회 개최할 수 있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지 방 자 치 법





## ◆ 지방자치법

- 법률 제6669호 일부개정 2002. 03. 25  
 법률 제6927호 일부개정 2003. 07. 18  
 법률 제7124호(주민투표법) 일부개정 2004. 01. 29.  
 법률 제7128호 일부개정 2004. 01. 29.  
 법률 제7362호 일부개정 2005. 01. 27.  
 법률 제7410호 일부개정 2005. 03. 24  
 법률 제767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8. 04.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법률 제7846호 일부개정 2006. 01. 11.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법률 제7935호 일부개정 2006. 04. 28  
 법률 제7957호 일부개정 2006. 05. 24

## 제 1 장 총 칙

### 제 1 절 통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89·12·30]

**제 2 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2종으로 한다. [개정 1994.12.20, 2005.1.27, 2006.1.11][[시행일 2006.7.1]]

1. 특별시, 광역시와 도 및 특별자치도

2. 시와 군 및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의 구에 한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0]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 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및 관할) ①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특별시, 광역시와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고, 시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군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둔다. [개정 94·12·20, 2006.1.11][[시행일 2006.7.1]]

③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이를 둔다. [개정 94·12·20]

④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당해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 [신설 94·3·16, 94·12·20]

### 제 2 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제 4 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8·31, 2004.1.29 법률 제7124호(「주민투표법」), 2006.1.11] [[시행일 2004.7.30]]

③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2005.3.24, 2006.1.11] [[시행일 2006.7.1]]

④이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동·이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이를 2개 이상의 동·이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이를 하나의 동·이로 운영하는등 행정운영상 동·이(“행정동·이”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⑥제5항의 행정동·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

직을 들 수 있다.

**제 5 조** (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한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개정 94·12·20, 99·8·31]

**제 6 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항에 있어서의 동은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 [개정 94·12·20, 99·8·31, 2005.3.24]  
[[시행일 2005.6.25]]

②제1항의 조례는 당해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94·12·20]

**제 7 조** (시·읍의 설치기준등) ①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개정 95·8·4, 2003.07.18]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신설 2003.07.18.]

③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구 2만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4·12·20]

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2. 읍이 없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그 면중 1개면

④삭제 [99·8·31]

⑤시·읍의 설치에 의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제 8 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 9 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9, 99·2·8]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

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

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유지·보통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관리
    - 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도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
-

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 연장·미술관·음악당등 공공교  
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화재예방 및 소방

**제 10 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  
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 시·도

가. 행정처리결과가 2개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나. 시·도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라.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간의 연락·조정등의 사무

마.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바. 2개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시·군 및 자치구

제1호에서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  
만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경합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무가 서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우  
선적으로 처리한다.

**제 11 조** (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개정 99·2·8]

1. 외교, 국방, 사법, 국세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3. 농림·축·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

---

- 도·일반국도, 국립공원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5. 근로기준, 측량단위등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및 조정을 요하는 사무
6. 우편, 철도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7.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 제 2 장 주 민

**제 12 조 (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 13 조 (주민의 권리)** ①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국민인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13 조의 2 (주민투표)**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개정 2004.1.29 법률 제7124호(주민투표법)] [[시행일 2004.7.30]]

②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기타 투표절차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94·3·16]

**제 13 조의 3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 13조의4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 및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1.27, 2006.1.11]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

폐를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구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

④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기간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완료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여 이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6.1.11]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연도별로 산정하되,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에 의한다. [개정 2006.1.11]

⑩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8.31]

**제 13 조의 4 (주민의 감사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1.27, 2006.1.11]

1.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3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3조의5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6.1.1]]
- ③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감사를 종료하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 ④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중인 사항인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또는 감사중인 사실과 감사종료후 그 결과를 통지하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기관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6.1.1]]
- ⑤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를 처리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제출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6.1.1]]
- ⑥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6.1.1]]
- ⑦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내용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6.1.1]]
- ⑧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개정 2006.1.11]

⑨제13조의3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감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5.1.27, 2006.1.11]

[본조신설 1999.8.31]

**제 13 조의 5 (주민소송)** ①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의 해태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있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6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제13조의4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을 경과하여도 감사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의4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에 불복이 있는 경우
3. 제13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1.11]

1. 당해 행위를 계속할 경우 회복이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
2. 행정처분인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3. 당해 해태사실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
4.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 의원, 당해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 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 ③ 제2항제1호의 중지청구소송은 당해 행위를 중지함으로써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기할 수 없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당해 60일이 종료된 날(제13조의4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 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 당해 감사결과 또는 조치요구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 : 당해 조치요구시 지정한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
  4. 제1항제4호의 경우 : 당해 이행조치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 ⑤ 제2항 각호의 소송이 계속중인 때에는 다른 주민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⑥ 소송의 계속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자격을 잃은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⑦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수계)할 수 있다. 이 기간 이내에 수계(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당해 소송절차는 종료된다.
- ⑧ 법원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이 중단된 경우에는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소송절차 중단의 사유와 소송절차수계의 방법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감사청구에 기재된 주소로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우편물이 통상 도달할 수 있는 때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것으로 본다.
- 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을 말한다)의 관할로 한다.
- ⑩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되어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직원·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⑪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소송고지신청은 당해 소송에 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로 본다.[개정 2006.1.11]

⑫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소송이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치분을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⑬국가, 상급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과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고지를 받은 자는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은 허가하기 이전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때부터 1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 통지에 관하여는 제8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⑮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개정 2006.1.11]

⑯소송을 제기한 주민은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다)한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변호사보수 등의 소송비용, 감사청구절차의 진행 등을 위하여 소요된 여비 그 밖에 실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청구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소송을 진행하는데 객관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에 의한다. [개정 2006.1.11]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6.1.11]]

**제 13 조의 6** (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청구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의5제2항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의하여 결정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금의 지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금을 지불하여야 할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이 그 지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불청구를 받은 자가 동항의 기한 이내에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송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6.1.11]]

**제 13 조의 7** (변상명령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의5제2항제4호 단서의 규

정에 의한 소송에 대하여 변상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의 변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받은 자가 동항의 기한 이내에 변상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는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6.1.11]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6.1.1]]

**제 13 조의 8 (주민소환)** ①주민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5.24]

**제 14 조 (주민의 의무)**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의무를 진다.

### 제 3 장 조례와 규칙

**제 15 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 16 조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7 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8 조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격의 변경시의 조례·규칙의 시행)** 지방자치단체가 분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 또는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 또는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 19 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등)** ①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

하여야 한다. [개정 94·3·1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기간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조례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회의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⑧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0 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 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관할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1.1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94·3·16]

**제 21 조** (보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경우 조례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규칙에 있어서는 공포예정 15일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2005.1.27]

---

## 제 4 장 선 거

제 22 조 내지 제 24 조 삭제 [94·3·16]

제 25 조 (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 5 장 지방의회

### 제 1 절 조 직

제 26 조 (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제 26 조의 2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본조신설 94·3·16]

제 27 조 내지 제 30 조 삭제 [89·12·30]

### 제 2 절 지방의회의원

제 31 조 (의원의 임기) ①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내지 ④삭제 [94·12·20]

제 32 조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①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99·8·31. 2003.07.18 2005.8.4] [[시행일 2006.1.1]]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8.4] [[시행일 2006.1.1]]

③의정비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8.4] [[시행일 2006.1.1]]

[전문개정 94·3·16]

제 32 조의 2 (상해·사망등의 보상) ①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직무(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폐회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

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94·3·16]

**제 33 조 (겸직등 금지)** ①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89·12·30, 90·12·31, 91·5·23, 94·3·16, 99·2·5, 2006.1.11]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방송공사와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 조합·임업협동조합· 연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②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제 34 조 (의원의 의무)** ①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지방의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4 조의 2 (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①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이 있을 때에는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3·16]

②지방의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각급 법원장은 지체없이 당해 의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9·8·31]

[본조신설 91·12·31]

**제 34 조의 3 (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

---



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4.28] [[시행일 2006.7.1]]

### 제 3 절 권 한

제 35 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94·3·16, 99·8·31]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행일 2000·3·1]]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시행일 2000·3·1]]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00·3·1]]
  11.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시행일 2000·3·1]]
-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외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35 조의 2 (서류제출요구)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4·3·16]

②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1·12·31]

제 36 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①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의 각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를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

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각각 당해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4·12·20]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⑦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 및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11]

[전문개정 94·3·16]

**제 37 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3·16]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지방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 37 조의 2** (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본조신설 1994.3.16]

#### 제 4 절 소집과 회기

**제 38 조** (정례회) ①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99·8·31]

**제 39 조** (임시회) ①총선거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개정 94·

3·16, 2006.4.28]

②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 및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의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③임시회의 소집은 시·도에 있어서는 집회일 7일전에,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집회일 5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0 조 (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1 조 (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지방의회는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②삭제 [2005.1.27]

③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6.4.28] [[시행일 2006.7.1]]

## 제 5 절 의장과 부의장

**제 42 조 (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지방의회는 의원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②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43 조 (의장의 직무)** 지방의회는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회의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 44 조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지방의회는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45 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지방의회는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 46 조 (임시의장)** 지방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 47 조 (보궐선거)** ①지방의회는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48 조 (의장등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제42조제1항·제46조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는 때에는 출석의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9 조 (의장불신임의 의결) ①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개정 94·3·16]

②제1항의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개정 94·3·16]

③제2항의 불신임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장 또는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개정 94·3·16]

### 제 6 절 위원회

제 50 조 (위원회의 설치) ①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소관의안과 청원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개정 91·12·31, 2006.4.28] [[시행일 2006.7.1]]

③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개정 91·12·31]

제 50 조의 2 (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6.4.28]

제 51 조 (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제 51 조의 2 (전문위원) ①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그 밖에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행한다.

③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시행일 2006.7.1]]

제 52 조 (위원회에서의 방청등) ①위원회에서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 53 조 (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91·12·31]

제 54 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 7 절 회 의

제 55 조 (의사정족수) ①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회의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제 56 조 (의결정족수) ①의사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57 조 (회의의 공개)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인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58 조 (의안의 발의) ①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개정 89·12·30]

②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99·8·31]

③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제 59 조 (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0 조 (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제 61 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제 62 조** (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99·8·31]

**제 63 조** (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 64 조** (회의록) ①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④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비밀을 요한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 8 절 청 원

**제 65 조** (청원서의 제출) ①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66 조** (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 67 조** (청원의 심사·처리) ①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68 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절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

제 69 조 (의원의 사직)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 70 조 (의원의 퇴직) 지방의회 의원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1.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木浦市議)

會 ㉠나외라 ㉡I ㉢ ㉣ ㉤ ㉥ ㉦ ㉧ ㉨ ㉩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㐀 㐁 㐂 㐃 㐄 㐅 㐆 㐇 㐈 㐉 㐊 㐋 㐌 㐍 㐎 㐏 㐐 㐑 㐒 㐓 㐔 㐕 㐖 㐗 㐘 㐙 㐚 㐛 㐜 㐝 㐞 㐟 㐠 㐡 㐢 㐣 㐤 㐥 㐦 㐧 㐨 㐩 㐪 㐫 㐬 㐭 㐮 㐯 㐰 㐱 㐲 㐳 㐴 㐵 㐶 㐷 㐸 㐹 㐺 㐻 㐼 㐽 㐾 㐿 㑀 㑁 㑂 㑃 㑄 㑅 㑆 㑇 㑈 㑉 㑊 㑋 㑌 㑍 㑎 㑏 㑐 㑑 㑒 㑓 㑔 㑕 㑖 㑗 㑘 㑙 㑚 㑛 㑜 㑝 㑞 㑟 㑠 㑡 㑢 㑣 㑤 㑥 㑦 㑧 㑨 㑩 㑪 㑫 㑬 㑭 㑮 㑯 㑰 㑱 㑲 㑳 㑴 㑵 㑶 㑷 㑸 㑹 㑺 㑻 㑼 㑽 㑾 㑿 㒀 㒁 㒂 㒃 㒄 㒅 㒆 㒇 㒈 㒉 㒊 㒋 㒌 㒍 㒎 㒏 㒐 㒑 㒒 㒓 㒔 㒕 㒖 㒗 㒘 㒙 㒚 㒛 㒜 㒝 㒞 㒟 㒠 㒡 㒢 㒣 㒤 㒥 㒦 㒧 㒨 㒩 㒪 㒫 㒬 㒭 㒮 㒯 㒰 㒱 㒲 㒳 㒴 㒵 㒶 㒷 㒸 㒹 㒺 㒻 㒼 㒽 㒾 㒿 㓀 㓁 㓂 㓃 㓄 㓅 㓆 㓇 㓈 㓉 㓊 㓋 㓌 㓍 㓎 㓏 㓐 㓑 㓒 㓓 㓔 㓕 㓖 㓗 㓘 㓙 㓚 㓛 㓜 㓝 㓞 㓟 㓠 㓡 㓢 㓣 㓤 㓥 㓦 㓧 㓨 㓩 㓪 㓫 㓬 㓭 㓮 㓯 㓰 㓱 㓲 㓳 㓴 㓵 㓶 㓷 㓸 㓹 㓺 㓻 㓼 㓽 㓾 㓿 㔀 㔁 㔂 㔃 㔄 㔅 㔆 㔇 㔈 㔉 㔊 㔋 㔌 㔍 㔎 㔏 㔐 㔑 㔒 㔓 㔔 㔕 㔖 㔗 㔘 㔙 㔚 㔛 㔜 㔝 㔞 㔟 㔠 㔡 㔢 㔣 㔤 㔥 㔦 㔧 㔨 㔩 㔪 㔫 㔬 㔭 㔮 㔯 㔰 㔱 㔲 㔳 㔴 㔵 㔶 㔷 㔸 㔹 㔺 㔻 㔼 㔽 㔾 㔿 㕀 㕁 㕂 㕃 㕄 㕅 㕆 㕇 㕈 㕉 㕊 㕋 㕌 㕍 㕎 㕏 㕐 㕑 㕒 㕓 㕔 㕕 㕖 㕗 㕘 㕙 㕚 㕛 㕜 㕝 㕞 㕟 㕠 㕡 㕢 㕣 㕤 㕥 㕦 㕧 㕨 㕩 㕪 㕫 㕬 㕭 㕮 㕯 㕰 㕱 㕲 㕳 㕴 㕵 㕶 㕷 㕸 㕹 㕺 㕻 㕼 㕽 㕾 㕿 㖀 㖁 㖂 㖃 㖄 㖅 㖆 㖇 㖈 㖉 㖊 㖋 㖌 㖍 㖎 㖏 㖐 㖑 㖒 㖓 㖔 㖕 㖖 㖗 㖘 㖙 㖚 㖛 㖜 㖝 㖞 㖟 㖠 㖡 㖢 㖣 㖤 㖥 㖦 㖧 㖨 㖩 㖪 㖫 㖬 㖭 㖮 㖯 㖰 㖱 㖲 㖳 㖴 㖵 㖶 㖷 㖸 㖹 㖺 㖻 㖼 㖽 㖾 㖿 㗀 㗁 㗂 㗃 㗄 㗅 㗆 㗇 㗈 㗉 㗊 㗋 㗌 㗍 㗎 㗏 㗐 㗑 㗒 㗓 㗔 㗕 㗖 㗗 㗘 㗙 㗚 㗛 㗜 㗝 㗞 㗟 㗠 㗡 㗢 㗣 㗤 㗥 㗦 㗧 㗨 㗩 㗪 㗫 㗬 㗭 㗮 㗯 㗰 㗱 㗲 㗳 㗴 㗵 㗶 㗷 㗸 㗹 㗺 㗻 㗼 㗽 㗾 㗿 㘀 㘁 㘂 㘃 㘄 㘅 㘆 㘇 㘈 㘉 㘊 㘋 㘌 㘍 㘎 㘏 㘐 㘑 㘒 㘓 㘔 㘕 㘖 㘗 㘘 㘙 㘚 㘛 㘜 㘝 㘞 㘟 㘠 㘡 㘢 㘣 㘤 㘥 㘦 㘧 㘨 㘩 㘪 㘫 㘬 㘭 㘮 㘯 㘰 㘱 㘲 㘳 㘴 㘵 㘶 㘷 㘸 㘹 㘺 㘻 㘼 㘽 㘾 㘿 㙀 㙁 㙂 㙃 㙄 㙅 㙆 㙇 㙈 㙉 㙊 㙋 㙌 㙍 㙎 㙏 㙐 㙑 㙒 㙓 㙔 㙕 㙖 㙗 㙘 㙙 㙚 㙛 㙜 㙝 㙞 㙟 㙠 㙡 㙢 㙣 㙤 㙥 㙦 㙧 㙨 㙩 㙪 㙫 㙬 㙭 㙮 㙯 㙰 㙱 㙲 㙳 㙴 㙵 㙶 㙷 㙸 㙹 㙺 㙻 㙼 㙽 㙾 㙿 㚀 㚁 㚂 㚃 㚄 㚅 㚆 㚇 㚈 㚉 㚊 㚋 㚌 㚍 㚎 㚏 㚐 㚑 㚒 㚓 㚔 㚕 㚖 㚗 㚘 㚙 㚚 㚛 㚜 㚝 㚞 㚟 㚠 㚡 㚢 㚣 㚤 㚥 㚦 㚧 㚨 㚩 㚪 㚫 㚬 㚭 㚮 㚯 㚰 㚱 㚲 㚳 㚴 㚵 㚶 㚷 㚸 㚹 㚺 㚻 㚼 㚽 㚾 㚿 㜀 㜁 㜂 㜃 㜄 㜅 㜆 㜇 㜈 㜉 㜊 㜋 㜌 㜍 㜎 㜏 㜐 㜑 㜒 㜓 㜔 㜕 㜖 㜗 㜘 㜙 㜚 㜛 㜜 㜝 㜞 㜟 㜠 㜡 㜢 㜣 㜤 㜥 㜦 㜧 㜨 㜩 㜪 㜫 㜬 㜭 㜮 㜯 㜰 㜱 㜲 㜳 㜴 㜵 㜶 㜷 㜸 㜹 㜺 㜻 㜼 㜽 㜾 㜿 㝀 㝁 㝂 㝃 㝄 㝅 㝆 㝇 㝈 㝉 㝊 㝋 㝌 㝍 㝎 㝏 㝐 㝑 㝒 㝓 㝔 㝕 㝖 㝗 㝘 㝙 㝚 㝛 㝜 㝝 㝞 㝟 㝠 㝡 㝢 㝣 㝤 㝥 㝦 㝧 㝨 㝩 㝪 㝫 㝬 㝭 㝮 㝯 㝰 㝱 㝲 㝳 㝴 㝵 㝶 㝷 㝸 㝹 㝺 㝻 㝼 㝽 㝾 㝿 㞀 㞁 㞂 㞃 㞄 㞅 㞆 㞇 㞈 㞉 㞊 㞋 㞌 㞍 㞎 㞏 㞐 㞑 㞒 㞓 㞔 㞕 㞖 㞗 㞘 㞙 㞚 㞛 㞜 㞝 㞞 㞟 㞠 㞡 㞢 㞣 㞤 㞥 㞦 㞧 㞨 㞩 㞪 㞫 㞬 㞭 㞮 㞯 㞰 㞱 㞲 㞳 㞴 㞵 㞶 㞷 㞸 㞹 㞺 㞻 㞼 㞽 㞾 㞿 㟀 㟁 㟂 㟃 㟄 㟅 㟆 㟇 㟈 㟉 㟊 㟋 㟌 㟍 㟎 㟏 㟐 㟑 㟒 㟓 㟔 㟕 㟖 㟗 㟘 㟙 㟚 㟛 㟜 㟝 㟞 㟟 㟠 㟡 㟢 㟣 㟤 㟥 㟦 㟧 㟨 㟩 㟪 㟫 㟬 㟭 㟮 㟯 㟰 㟱 㟲 㟳 㟴 㟵 㟶 㟷 㟸 㟹 㟺 㟻 㟼 㟽 㟾 㟿 㠀 㠁 㠂 㠃 㠄 㠅 㠆 㠇 㠈 㠉 㠊 㠋 㠌 㠍 㠎 㠏 㠐 㠑 㠒 㠓 㠔 㠕 㠖 㠗 㠘 㠙 㠚 㠛 㠜 㠝 㠞 㠟 㠠 㠡 㠢 㠣 㠤 㠥 㠦 㠧 㠨 㠩 㠪 㠫 㠬 㠭 㠮 㠯 㠰 㠱 㠲 㠳 㠴 㠵 㠶 㠷 㠸 㠹 㠺 㠻 㠼 㠽 㠾 㠿 㡀 㡁 㡂 㡃 㡄 㡅 㡆 㡇 㡈 㡉 㡊 㡋 㡌 㡍 㡎 㡏 㡐 㡑 㡒 㡓 㡔 㡕 㡖 㡗 㡘 㡙 㡚 㡛 㡜 㡝 㡞 㡟 㡠 㡡 㡢 㡣 㡤 㡥 㡦 㡧 㡨 㡩 㡪 㡫 㡬 㡭 㡮 㡯 㡰 㡱 㡲 㡳 㡴 㡵 㡶 㡷 㡸 㡹 㡺 㡻 㡼 㡽 㡾 㡿 㢀 㢁 㢂 㢃 㢄 㢅 㢆 㢇 㢈 㢉 㢊 㢋 㢌 㢍 㢎 㢏 㢐 㢑 㢒 㢓 㢔 㢕 㢖 㢗 㢘 㢙 㢚 㢛 㢜 㢝 㢞 㢟 㢠 㢡 㢢 㢣 㢤 㢥 㢦 㢧 㢨 㢩 㢪 㢫 㢬 㢭 㢮 㢯 㢰 㢱 㢲 㢳 㢴 㢵 㢶 㢷 㢸 㢹 㢺 㢻 㢼 㢽 㢾 㢿 㣀 㣁 㣂 㣃 㣄 㣅 㣆 㣇 㣈 㣉 㣊 㣋 㣌 㣍 㣎 㣏 㣐 㣑 㣒 㣓 㣔 㣕 㣖 㣗 㣘 㣙 㣚 㣛 㣜 㣝 㣞 㣟 㣠 㣡 㣢 㣣 㣤 㣥 㣦 㣧 㣨 㣩 㣪 㣫 㣬 㣭 㣮 㣯 㣰 㣱 㣲 㣳 㣴 㣵 㣶 㣷 㣸 㣹 㣺 㣻 㣼 㣽 㣾 㣿 㤀 㤁 㤂 㤃 㤄 㤅 㤆 㤇 㤈 㤉 㤊 㤋 㤌 㤍 㤎 㤏 㤐 㤑 㤒 㤓 㤔 㤕 㤖 㤗 㤘 㤙 㤚 㤛 㤜 㤝 㤞 㤟 㤠 㤡 㤢 㤣 㤤 㤥 㤦 㤧 㤨 㤩 㤪 㤫 㤬 㤭 㤮 㤯 㤰 㤱 㤲 㤳 㤴 㤵 㤶 㤷 㤸 㤹 㤺 㤻 㤼 㤽 㤾 㤿 㥀 㥁 㥂 㥃 㥄 㥅 㥆 㥇 㥈 㥉 㥊 㥋 㥌 㥍 㥎 㥏 㥐 㥑 㥒 㥓 㥔 㥕 㥖 㥗 㥘 㥙 㥚 㥛 㥜 㥝 㥞 㥟 㥠 㥡 㥢 㥣 㥤 㥥 㥦 㥧 㥨 㥩 㥪 㥫 㥬 㥭 㥮 㥯 㥰 㥱 㥲 㥳 㥴 㥵 㥶 㥷 㥸 㥹 㥺 㥻 㥼 㥽 㥾 㥿 㦀 㦁 㦂 㦃 㦄 㦅 㦆 㦇 㦈 㦉 㦊 㦋 㦌 㦍 㦎 㦏 㦐 㦑 㦒 㦓 㦔 㦕 㦖 㦗 㦘 㦙 㦚 㦛 㦜 㦝 㦞 㦟 㦠 㦡 㦢 㦣 㦤 㦥 㦦 㦧 㦨 㦩 㦪 㦫 㦬 㦭 㦮 㦯 㦰 㦱 㦲 㦳 㦴 㦵 㦶 㦷 㦸 㦹 㦺 㦻 㦼 㦽 㦾 㦿 㧀 㧁 㧂 㧃 㧄 㧅 㧆 㧇 㧈 㧉 㧊 㧋 㧌 㧍 㧎 㧏 㧐 㧑 㧒 㧓 㧔 㧕 㧖 㧗 㧘 㧙 㧚 㧛 㧜 㧝 㧞 㧟 㧠 㧡 㧢 㧣 㧤 㧥 㧦 㧧 㧨 㧩 㧪 㧫 㧬 㧭 㧮 㧯 㧰 㧱 㧲 㧳 㧴 㧵 㧶 㧷 㧸 㧹 㧺 㧻 㧼 㧽 㧾 㧿 㨀 㨁 㨂 㨃 㨄 㨅 㨆 㨇 㨈 㨉 㨊 㨋 㨌 㨍 㨎 㨏 㨐 㨑 㨒 㨓 㨔 㨕 㨖 㨗 㨘 㨙 㨚 㨛 㨜 㨝 㨞 㨟 㨠 㨡 㨢 㨣 㨤 㨥 㨦 㨧 㨨 㨩 㨪 㨫 㨬 㨭 㨮 㨯 㨰 㨱 㨲 㨳 㨴 㨵 㨶 㨷 㨸 㨹 㨺 㨻 㨼 㨽 㨾 㨿 㩀 㩁 㩂 㩃 㩄 㩅 㩆 㩇 㩈 㩉 㩊 㩋 㩌 㩍 㩎 㩏 㩐 㩑 㩒 㩓 㩔 㩕 㩖 㩗 㩘 㩙 㩚 㩛 㩜 㩝 㩞 㩟 㩠 㩡 㩢 㩣 㩤 㩥 㩦 㩧 㩨 㩩 㩪 㩫 㩬 㩭 㩮 㩯 㩰 㩱 㩲 㩳 㩴 㩵 㩶 㩷 㩸 㩹 㩺 㩻 㩼 㩽 㩾 㩿 㪀 㪁 㪂 㪃 㪄 㪅 㪆 㪇 㪈 㪉 㪊 㪋 㪌 㪍 㪎 㪏 㪐 㪑 㪒 㪓 㪔 㪕 㪖 㪗 㪘 㪙 㪚 㪛 㪜 㪝 㪞 㪟 㪠 㪡 㪢 㪣 㪤 㪥 㪦 㪧 㪨 㪩 㪪 㪫 㪬 㪭 㪮 㪯 㪰 㪱 㪲 㪳 㪴 㪵 㪶 㪷 㪸 㪹 㪺 㪻 㪼 㪽 㪾 㪿 㫀 㫁 㫂 㫃 㫄 㫅 㫆 㫇 㫈 㫉 㫊 㫋 㫌 㫍 㫎 㫏 㫐 㫑 㫒 㫓 㫔 㫕 㫖 㫗 㫘 㫙 㫚 㫛 㫜 㫝 㫞 㫟 㫠 㫡 㫢 㫣 㫤 㫥 㫦 㫧 㫨 㫩 㫪 㫫 㫬 㫭 㫮 㫯 㫰 㫱 㫲 㫳 㫴 㫵 㫶 㫷 㫸 㫹 㫺 㫻 㫼 㫽 㫾 㫿 㬀 㬁 㬂 㬃 㬄 㬅 㬆 㬇 㬈 㬉 㬊 㬋 㬌 㬍 㬎 㬏 㬐 㬑 㬒 㬓 㬔 㬕 㬖 㬗 㬘 㬙 㬚 㬛 㬜 㬝 㬞 㬟 㬠 㬡 㬢 㬣 㬤 㬥 㬦 㬧 㬨 㬩 㬪 㬫 㬬 㬭 㬮 㬯 㬰 㬱 㬲 㬳 㬴 㬵 㬶 㬷 㬸 㬹 㬺 㬻 㬼 㬽 㬾 㬿 㭀 㭁 㭂 㭃 㭄 㭅 㭆 㭇 㭈 㭉 㭊 㭋 㭌 㭍 㭎 㭏 㭐 㭑 㭒 㭓 㭔 㭕 㭖 㭗 㭘 㭙 㭚 㭛 㭜 㭝 㭞 㭟 㭠 㭡 㭢 㭣 㭤 㭥 㭦 㭧 㭨 㭩 㭪 㭫 㭬 㭭 㭮 㭯 㭰 㭱 㭲 㭳 㭴 㭵 㭶 㭷 㭸 㭹 㭺 㭻 㭼 㭽 㭾 㭿 㮀 㮁 㮂 㮃 㮄 㮅 㮆 㮇 㮈 㮉 㮊 㮋 㮌 㮍 㮎 㮏 㮐 㮑 㮒 㮓 㮔 㮕 㮖 㮗 㮘 㮙 㮚 㮛 㮜 㮝 㮞 㮟 㮠 㮡 㮢 㮣 㮤 㮥 㮦 㮧 㮨 㮩 㮪 㮫 㮬 㮭 㮮 㮯 㮰 㮱 㮲 㮳 㮴 㮵 㮶 㮷 㮸 㮹 㮺 㮻 㮼 㮽 㮾 㮿 㯀 㯁 㯂 㯃 㯄 㯅 㯆 㯇 㯈 㯉 㯊 㯋 㯌 㯍 㯎 㯏 㯐 㯑 㯒 㯓 㯔 㯕 㯖 㯗 㯘 㯙 㯚 㯛 㯜 㯝 㯞 㯟 㯠 㯡 㯢 㯣 㯤 㯥 㯦 㯧 㯨 㯩 㯪 㯫 㯬 㯭 㯮 㯯 㯰 㯱 㯲 㯳 㯴 㯵 㯶 㯷 㯸 㯹 㯺 㯻 㯼 㯽 㯾 㯿 㰀 㰁 㰂 㰃 㰄 㰅 㰆 㰇 㰈 㰉 㰊 㰋 㰌 㰍 㰎 㰏 㰐 㰑 㰒 㰓 㰔 㰕 㰖 㰗 㰘 㰙 㰚 㰛 㰜 㰝 㰞 㰟 㰠 㰡 㰢 㰣 㰤 㰥 㰦 㰧 㰨 㰩 㰪 㰫 㰬 㰭 㰮 㰯 㰰 㰱 㰲 㰳 㰴 㰵 㰶 㰷 㰸 㰹 㰺 㰻 㰼 㰽 㰾 㰿 㱀 㱁 㱂 㱃 㱄 㱅 㱆 㱇 㱈 㱉 㱊 㱋 㱌 㱍 㱎 㱏 㱐 㱑 㱒 㱓 㱔 㱕 㱖 㱗 㱘 㱙 㱚 㱛 㱜 㱝 㱞 㱟 㱠 㱡 㱢 㱣 㱤 㱥 㱦 㱧 㱨 㱩 㱪 㱫 㱬 㱭 㱮 㱯 㱰 㱱 㱲 㱳 㱴 㱵 㱶 㱷 㱸 㱹 㱺 㱻 㱼 㱽 㱾 㱿 㲀 㲁 㲂 㲃 㲄 㲅 㲆 㲇 㲈 㲉 㲊 㲋 㲌 㲍 㲎 㲏 㲐 㲑 㲒 㲓 㲔 㲕 㲖 㲗 㲘 㲙 㲚 㲛 㲜 㲝 㲞 㲟 㲠 㲡 㲢 㲣 㲤 㲥 㲦 㲧 㲨 㲩 㲪 㲫 㲬 㲭 㲮 㲯 㲰 㲱 㲲 㲳 㲴 㲵 㲶 㲷 㲸 㲹 㲺 㲻 㲼 㲽 㲾 㲿 㳀 㳁 㳂 㳃 㳄 㳅 㳆 㳇 㳈 㳉 㳊 㳋 㳌 㳍 㳎 㳏 㳐 㳑 㳒 㳓 㳔 㳕 㳖 㳗 㳘 㳙 㳚 㳛 㳜 㳝 㳞 㳟 㳠 㳡 㳢 㳣 㳤 㳥 㳦 㳧 㳨 㳩 㳪 㳫 㳬 㳭 㳮 㳯 㳰 㳱 㳲 㳳 㳴 㳵 㳶 㳷 㳸 㳹 㳺 㳻 㳼 㳽 㳾 㳿 㴀 㴁 㴂 㴃 㴄 㴅 㴆 㴇 㴈 㴉 㴊 㴋 㴌 㴍 㴎 㴏 㴐 㴑 㴒 㴓 㴔 㴕 㴖 㴗 㴘 㴙 㴚 㴛 㴜 㴝 㴞 㴟 㴠 㴡 㴢 㴣 㴤 㴥 㴦 㴧 㴨 㴩 㴪 㴫 㴬 㴭 㴮 㴯 㴰 㴱 㴲 㴳 㴴 㴵 㴶 㴷 㴸 㴹 㴺 㴻 㴼 㴽 㴾 㴿 㵀 㵁 㵂 㵃 㵄 㵅 㵆 㵇 㵈 㵉 㵊 㵋 㵌 㵍 㵎 㵏 㵐 㵑 㵒 㵓 㵔 㵕 㵖 㵗 㵘 㵙 㵚 㵛 㵜 㵝 㵞 㵟 㵠 㵡 㵢 㵣 㵤 㵥 㵦 㵧 㵨 㵩 㵪 㵫 㵬 㵭 㵮 㵯 㵰 㵱 㵲 㵳 㵴 㵵 㵶 㵷 㵸 㵹 㵺 㵻 㵼 㵽 㵾 㵿 㶀 㶁 㶂 㶃 㶄 㶅 㶆 㶇 㶈 㶉 㶊 㶋 㶌 㶍 㶎 㶏 㶐 㶑 㶒 㶓 㶔 㶕 㶖 㶗 㶘 㶙 㶚 㶛 㶜 㶝 㶞 㶟 㶠 㶡 㶢 㶣 㶤 㶥 㶦 㶧 㶨 㶩 㶪 㶫 㶬 㶭 㶮 㶯 㶰 㶱 㶲 㶳 㶴 㶵 㶶 㶷 㶸 㶹 㶺 㶻 㶼 㶽 㶾 㶿 㷀 㷁 㷂 㷃 㷄 㷅 㷆 㷇 㷈 㷉 㷊 㷋 㷌 㷍 㷎 㷏 㷐 㷑 㷒 㷓 㷔 㷕 㷖 㷗 㷘 㷙 㷚 㷛 㷜 㷝 㷞 㷟 㷠 㷡 㷢 㷣 㷤 㷥 㷦 㷧 㷨 㷩 㷪 㷫 㷬 㷭 㷮 㷯 㷰 㷱 㷲 㷳 㷴 㷵 㷶 㷷 㷸 㷹 㷺 㷻 㷼 㷽 㷾 㷿 㸀 㸁 㸂 㸃 㸄 㸅 㸆 㸇 㸈 㸉 㸊 㸋 㸌 㸍 㸎 㸏 㸐 㸑 㸒 㸓 㸔 㸕 㸖 㸗 㸘 㸙 㸚 㸛 㸜 㸝 㸞 㸟 㸠 㸡 㸢 㸣 㸤 㸥 㸦 㸧 㸨 㸩 㸪 㸫 㸬 㸭 㸮 㸯 㸰 㸱 㸲 㸳 㸴 㸵 㸶 㸷 㸸 㸹 㸺 㸻 㸼 㸽 㸾 㸿 㹀 㹁 㹂 㹃 㹄 㹅 㹆 㹇 㹈 㹉 㹊 㹋 㹌 㹍 㹎 㹏 㹐 㹑 㹒 㹓 㹔 㹕 㹖 㹗 㹘 㹙 㹚 㹛 㹜 㹝 㹞 㹟 㹠 㹡 㹢 㹣 㹤 㹥 㹦 㹧 㹨 㹩 㹪 㹫 㹬 㹭 㹮 㹯 㹰 㹱 㹲 㹳 㹴 㹵 㹶 㹷 㹸 㹹 㹺 㹻 㹼 㹽 㹾 㹿 㺀 㺁 㺂 㺃 㺄 㺅 㺆 㺇 㺈 㺉 㺊 㺋 㺌 㺍 㺎 㺏 㺐 㺑 㺒 㺓 㺔 㺕 㺖 㺗 㺘 㺙 㺚 㺛 㺜 㺝 㺞 㺟 㺠 㺡 㺢 㺣 㺤 㺥 㺦 㺧 㺨 㺩 㺪 㺫 㺬 㺭 㺮 㺯 㺰 㺱 㺲 㺳 㺴 㺵 㺶 㺷 㺸 㺹 㺺 㺻 㺼 㺽 㺾 㺿 㻀 㻁 㻂 㻃 㻄 㻅 㻆 㻇 㻈 㻉 㻊 㻋 㻌 㻍 㻎 㻏 㻐 㻑 㻒 㻓 㻔 㻕 㻖 㻗 㻘 㻙 㻚 㻛 㻜 㻝 㻞 㻟 㻠 㻡 㻢 㻣 㻤 㻥 㻦 㻧 㻨 㻩 㻪 㻫 㻬 㻭 㻮 㻯 㻰 㻱 㻲 㻳 㻴 㻵 㻶 㻷 㻸 㻹 㻺 㻻 㻼 㻽 㻾 㻿 㼀 㼁 㼂 㼃 㼄 㼅 㼆 㼇 㼈 㼉 㼊 㼋 㼌 㼍 㼎 㼏 㼐 㼑 㼒 㼓 㼔 㼕 㼖 㼗 㼘 㼙 㼚 㼛 㼜 㼝 㼞 㼟 㼠 㼡 㼢 㼣 㼤 㼥 㼦 㼧 㼨 㼩 㼪 㼫 㼬 㼭 㼮 㼯 㼰 㼱 㼲 㼳 㼴 㼵 㼶 㼷 㼸 㼹 㼺 㼻 㼼 㼽 㼾 㼿 㽀 㽁 㽂 㽃 㽄 㽅 㽆 㽇 㽈 㽉 㽊 㽋 㽌 㽍 㽎 㽏 㽐 㽑 㽒 㽓 㽔 㽕 㽖 㽗 㽘 㽙 㽚 㽛 㽜 㽝 㽞 㽟 㽠 㽡 㽢 㽣 㽤 㽥 㽦 㽧 㽨 㽩 㽪 㽫 㽬 㽭 㽮 㽯 㽰 㽱 㽲 㽳 㽴 㽵 㽶 㽷 㽸 㽹 㽺 㽻 㽼 㽽

및 물 품의관 리에 관한 법령의규 정을 준수 하는 외에선량한 관 리자의 주의로  
써사 무 에중.

하여 한다 ■ 제 2장공 유재산 통칙제 4조 ( 공유 재산 의범 위) ①이 법 에서  
“공유재 산” 이 라함은지 방자치 단체의소유로 된다음각 호 의재.

을말한 다■ 1 ■ 부동 산과그중 물2■ 선 박·부 잔교( 부 잔교) ·부선거 ( 부  
선 거) 및항공 기와그 중물3 ■ 공영

업 또는 시 설에사용 하는중 요한기 계와기구4■ 지상권 ·지역 권 · 광업권그밖 에이  
에 준하는권리 5■ 저 작권·특 허권 ·의장 권·상표 권·실용

안권그밖 에이 에준하는권 리6■ 주식 7■출자 로인한 권리 및사채 권·지 방채  
증권·국 채증권 그밖에 이 에준

는 바 증 권7■ 부동산신 탁의수 익권②제1 항제3 호의기계 와기구 의범위는다 통령  
령 으로정 한다 ■ 제5 조( 공 유재산 의 구분과 류) ①공 유재산은 그용도에  
따라이를 행정재 산·보존재산 및잡종재

으 로구 분 한다■② “ 행정 재산” 이라함은다 음각호 의종류 의재산 을말한다■ 1 ■  
공 용재산 지방자치 단체가직

사무용· 사업용또는 공무원 의거주용 으로사용 하거나 사용 - 9■관관 물품관하  
기로결 정한재산과 사용을 목 적으

건설중인재 산2■ 공공용 재산지 방자 치단체가 직접공공 용 에사

하거나사용 하기로결정 한재산 과사용 을목 적으로건 설중인 재산 3■기업 용재산  
지방자 치단체가경영 하는기

### 용 또는 그 기 업

에 써 하 는직원의 거주용 으로사용하 거나사 용 하 기로 결정한재산 과사용을 목적으  
로 건설중 인재산③ “보 존재산 ” 이라. 법령 ~~또~~

는 제 나 규칙의규 정에의 하거나그밖에 필요에 의하여지 방자치 단체 가보존하 거나  
보 존하 기로결정한 재산 을말한 다■ ④ “잡종재산” 이라 함은행정 재산및보  
재산의 의

모든공유재 산을말 한다■ 제6조 ( 공유 재산의 보호) ①누 구든지 공유재 산을지  
방자치 단체의장의 허가없 이사용또 는수익하 지못한다■ ②공

재산은 「민 법」 제245조 의규 정에불 구하고 시효 취득의대상이되 지아 니한다■



경우에는 하지

니 하다 ■ 제7조( 기부 채납) ① 공유재산에 편입 할 재산 을 기

하 자하는자가있는 때에

는 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 여이를채납할 수있다■

② 1 항

의규정에의 하여지방 자치단 체에기부 하고자 하는재 산이.

방 자치 단 체가관리 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아 니 하는 것인경 우또 는기부에 조 건이 수반된 것인경우에는 이를채.

하 여 는 아니된다■ 다만

■ 행정 재 산또는보존재 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대 하여그 기부자와 그상속 인또는 그 밖의 포괄 승계인 이무상으 로 사 용·수 할수있도록 허가하여줄 것일조 건으 해재 산을기부하

는경우에 는 기부에 조건이수 반된것 으로부터지 아니하 며이를 채납할 수있 다■

제 8조( 사권 설정재산 의 취 득제한 ) 사권이설정된재산 은그사권 이소 멸된 후가아 니면이 를 공 유재 으취 득하지못한

다■ 제9 조 ( 기부등 록등) ①지 방자치단체의장은공유재산을취 득 하거나기부 채 납을받은때에는법령정 하는바에 의하여지체없이 등기· 록그밖 에권 리보전

에 필요 한 절차를취하여 야한다 ■ ②부 동산그밖의권 리에 해당하는공 유재산 으로서 등기도.

공부에등록을 요하는공유 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 다

만 ■ 육비, 별회계소관의공 유재 산은 “교 육 감” 으로그소관청의명칭을첨기( 첨기 ) 하여야 한다■ 제 10조( 공유재산의관리계획) ①지 방자치단체 의장 예산

을 편성하기 전, 년공유재 의특과처 분판한계 ~~회~~

( 이하 “ 관리계획” 이 라한다 ) 을수립하여 당해지방의회의회결을 얻어 야한다■ 관 리계획 을변 경하 는때에 도또한 같다■ ②. 계획 에포함하여

야할공유재산 의범위 ■관리계획의작성기준및변경기준 - 10■제 1 편법 령은 대 통 령령으로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지. 회의 의



(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 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 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둔다 ② 1항의 공유재산 심의회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 17조 (공유 재산에 관한 법령 안의 협의) 중 양행정기관 의 장은 공유재산 의 관리와 11. 관련 및 처분 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폐한다

하는 때에 는 미 행정자치부 장관 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 18조 (국가 가 사용하는 지방자치 단체 의 공유재산 에 관한 경비 부담) 국가 는 지방 자치 단체 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에 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 소요되는 경비를 부

담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의회 의 동의 가 있을 때 에 는 그러 하지 않다 제 3장 행정재산 과 보존재산 제 9조 (처분등 의 제한) ① 행정재산 과 보존재산 (이하 "행정 재산등" 이라 한다) 은 이를 대부·매각 교환·양여 신탁

또는 다른 물변 제 처분 처분 목적 으로 하지 못 하며 이 에 사 권 을 설정 할 수 없 는데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는 경 우 에 는 그러

하지 아니 한다 1 행정 재산등 의 용도 와 성질 을 유 지

할 을 조건 으로 국가 또 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 양여 하는 경 우 2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의 재산 과 교환 하여 그 교환 받은 재산을 행정 재산 등으로 관리 하고 자 하는 경 우 3 제 1 항 제 1 호 의 규 정 에 의 하여 행정재산 등을 양여 하

는 경 우 에 는 양여 를 받은 재산 이 10 년 이 내 에 그 양여 목 적 외 의 용도 로 사용 될 때 에 는 양여 계약 을 해 제 한 다는 내용 의 특약 등 기 를 하여 야 한다 제 20조 (사용·수익 허가) ① 행정 재산등 은 그 목적 또는 용도 에 장애 되 지 아니 하는 범 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 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의 이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하여 사용·수익 의 허가 를 하 고자 하는 경 우 에 는 일반 경쟁 입찰 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는 경 우 에 는 수의 계약 (수 의 계약) 의 방 법 에 의 하여 허가 할 수 있다 1 허가 의 목적· 성질 을 고려 하여 필요 하다 고 인정 되는 경 우 로서 대통령령 이 정 하는 경 우 2 제 7 조 제 1 항 단서 의 규 정 에 의 한 기부자 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 의 포괄 승 계 인에게 무상 으로 사용·수익 허가 하는 경 우 3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하여 사용·수익 의 허가 를 받은 자 는 당 해 행정 재산 등을 다른 사람 으로 하여 금 사용

게하여서 아 니된다 ■ 다만

1 항의 규 제의하여사 용·수 익의허가 를받은 자 가제7조제 2항단서 의규정에 의 한기부 자와 그상속 인또 는 그밖의포괄승 계인인경우 에 는지방자 치단체의장 의승인을 얻어다

사 람으 로 하여금이 를사 용·수익하 게할수있다■ ④ 지방 자치 단체의장은제3 항단 서 의규정 에의한 사 용·수익이그목 적또는 용- 12 ■제1 편법령도 예장애가

거 내 정 재산등의 원상회복 에어려움이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에는이 를승인 하여 서 는아 니 된다■ ⑤제1 항의규 정에의 하여사용·수익의허가를 받은 자는허가기간 이종료되 거 나제 의규 정에의하여

사용·수익허가가 취소 된경 우에 는당해 행정재 산등 을원상 대 로반환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미리원상 의변 경 을승인한경우에는변경된 상 태로반환 할 수 있 다■ 제21 조 ( 사·수익 허가기간)

①행정재산등의사 용·수익 허가 기간은 그허가 를받 은날부 터 3년이 내로한 다■ 다 만 제7조제2항단서의규정에 의한기 부채납의경우 에는 공유재산 으 로 채납 한후무 상사용을허 가받 은 날부터기 부채납된 재산의 가 액을 전사용 료로 나누기

간이내로한다■ ② 지방 자치 단체 의장은사 용·수 익의허 가를받 은자 가천재·지 변그 밖의재 난으 로피 해를 입거나당 해지방자 치단 체의 귀책사 유로 인하 여 당해 재산의 사용 에제한 을받은 경우 는제20 조제2항제

1 회 규 제의하 여수 의계약의방 법으로사용·수 익허 가를할수있 는경우에는종전 의허가 기간을갱신할 수있다 ■ 이 경우갱 신 기간은갱신할때마다제1 항의규정 에 의 한허가 기간을초

할 수없 다 ■③제2항의 규정에의하여사 용·수익허가 기간을 갱 신받 고자하 는자는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만료

기 1 월 전에지방자치 단체

의 장에 게 사용·수익허 가기간 의갱 신을신청하 여야한 다■ 제22조(사 용료) ①지 방자 치단체 의장 은행 정재산 등의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대 통령이 정 하는 요 율과산출방 법에의하 여매년 사용료를징 수한다 ■ ② 제1 항 의규정 에 의한 료는 대통령 이

정하 는기간 내에일 시에전 액을납 부하 여야한다 ■ 다만 사용료 를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곤란 하다 고인 정되어 대통 령 령이정하는 경우에는

리수준을감안하여 대통 령령이정 하는이 자를불 여분할납 부하게 할수있 다 ③제 2 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분 할납 부하게 하 는경. 일 정한금액 이하의보충금을 예치하 게하거나. 향자치 단체를피 보

협 차로 하 는이행보 증보 협을체결 하게할 수있다 ④ 행정재산등의사용 ·수 익허가를 받은자가 제1 항 의규정 에 의한 사용료 를기한내 에납부 하지아니 하는때 에 는지방세체 납처분의 예에의 하여징수한 다 ⑤ 제 23 조( 사 용료의 조 정) . 향자 치단체의장

은동일인( 상 속인 과그밖 의포 괄승계인 은피승 계인과동 일인으 로 본다) 이월 한 행정.

산 을1 년 을초과 하여계속점유하거 나사용 ·수 익하는경우 당 해연

도 연간사용료 가진 년도의 연간사용료 보다100 분의1 0이

상증가한 때 에는대통 령령이 정하는바 에따라그사용료 의증가 분을감액.

수 있다 - 1. ⑥ 규정에맞물물관리법 ②제 1 항 의규정은 ⑦ 종재산이용도변경 등의 사유로인하 여이 법에 의한사 용료납부대 상으로된 경우그 사용료의 산출에 관하 여이를준용한 다 ⑧ 제2 4 조( 사용료의면 제또는감면 ) ①지방자 치단체 의장은 행정재산등 의사 용 ·수익을 허가함 에있어서다 음각호의어 느하나 에해당 하는때 에는그 사용료 를면제 할수있 다 ① 1 ② 국가또는 다른지 방자치 단체가직접 공 용 · 공용또 는비 영리 공

익사용으 로사용 하고 자하는때 2 ③ 행정재 산등으로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재산. 대하여 기부채납 그

상속인그밖의포 괄승계인 에게사 용 · 수익 을허가 하 는때 3 ④ 건 물등을신 축하 여 기부채납 고자하 는자가신 축

기간동안그부지를 사용 하는때 4 ⑤ 천재 · 지변 그밖의 재난을입 은지역주민 에게. ⑥ 기간 사용·수익

을 허가 하는경우

등 대통 령 령 이정하는경우로서지방의회동의가있는 때 ②지방자 치단체의 장은행. 재산 등의사용 ·수 익허가. 받은 자가천. · 지 변그밖. 재난으로 인하여당해 재산. 일 정 기간 동안 사용하 지못.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 안의사용료 와그 이하. 일할계산. 여. 면할수있다 ③ 제2



조 사용 ·수 익허가의 취소 ) ④지방 자치단체 의장은제 20)조제1 항 의규정에의하 여행정.

※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등을 제20조제3항의 규정

위 하여 다른 사용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때 2 당해 행정재산 등의 리를 대만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한 때 3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승인없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등의 원상을 변경할 때 4 허위진술이나 허위행위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5 제22조제2항의 규정예외한 납부기한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용 또는 공공용으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 3 제2항의 경우 그 취소로 인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상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등이 기부채납행위 재산등으로서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일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청문) 지방

자치단체의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예외하여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행정

재산등 관리 위탁)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행정재산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예외하여 관리위탁받은

자 본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승인없이 용도를 변경하여 이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상당하거나 당해 행정재산등의 효율적 관리등으로 인하여 용역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부를 관리위탁받은 자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관리 위임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원할 수 있다 4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1 관리위탁기간 2 제2항의 규정예외한 이용료의 경비충당 3 이용료의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 의대체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잡종재산 제1절 통칙 제28조(

종 재산은대부·매 각· 교환· 양여· 신 하거나 <sup>사권을설할있으</sup> 매법령이 나  
조례로정하는경우 에는 현물출자또 는 대물변 제를할 수있다 ■ ②잡 종 재산 의  
사권설 정과현물출 자 · 대물 변제및제.

조내제 43조 의규정에 서정하 지아니 한대 부·매각·교환·양 여·신탁 에관한범  
위및내용등 은대통 령령 으로정 한 다■제 29조( 계 약의방 법) 잡종.

산을때부 또는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에있어 서는그뜻을 공고하 여경쟁 입찰에불  
여 야한다■ 다만, 대통령 령이정 하 는경 우에는 지명 경쟁에불이거나 수의계  
약에의할 수있으며 유 가증권의 경 우에는 「증권거래 법」 제 2조제4 의규정  
에의 한유가증권

매 환방 법 에의하며 이 법제4조 제1 항제2호및제 3 호의잡 종재산을 매각하 는경  
우 에는제76조 제2항의규정 을준

한다■제3 0조( 처분 재산의가격 결정) 잡종재산의처 분에있 어서그 가 격은  
대통령 령이정 하는바 에의 하여 시가를참작하여 결정한 다■ 제.

절대부 15 ■ 제31 조( 대 부기간) ① 잡종재산의대 부는다 음각호의  
구분에따 른기 간을초과할수없다 ■ 다만, 지역경제 의활 성화를 위하여 대통령  
령이정 하 는경

에는그러하지아 니하다 ■ 1 ■ 토지와그정착물. 5년2 ■ 제1 호의재산. 1 년②  
지방자치 단체 의장은 다음각.

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경우에 는종전 의대부기 간을갱 신할수 있다 ■ 이경 우갱신  
기간은 갱 신 할때.

다제 항의 규정 에 의한대부기간을초과할수없다■ 1 ■ 대부받은 자가 천제·지 변그밖  
의재난으 로인 하여피 해를입은경 우2 ■ 대부받은자가 당해지 방자치단 체의 귀  
책사유로인하 여당 해재산의 이용에제한 을받 은경우3 ■ 제1 항. 규정 에의한 대  
부기간이종 료된 잡종재산에대하 여제 29조단서 의규정에의 한수의회. 에의하  
야부률수.는경우 ②항의 규

정에의하여 대

부 기간을 갱 신받고자하는자는 대부기간 이만료되기1 월전에 지방 자치단체의장에 계대  
부기 간의갱신 을신청하여야 한다. 제 32조 ( 대부료) ①잡 종재산 의대 부계  
약을체결한때에 는대통 령령이 하는요 율과산출 방

법에의하여매년대 부를징 수한다■ ②제 1 항의대부 료는대 통 령령이 정하는기  
한내에 일시에진 액을납부하 여야





적에 위배하 여사. 한 때 3 1 대 부 받은 잡종 재산 을 전대 하거 나 1 대 부 받은 잡  
재 산의 상 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때 4 1 허위 진술이나 허위증빙서  
류의 제출 그 밖의 부 정한 방 법에 의하.  
당해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발견된 때 5 1 제 32 조 제 2 항. 규정에 의한 납 부기한 내 에  
대부료 를 납부하. 아니한 때 2 지방자  
치단체 의장이 제 1 항의  
규 정에 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한 때에는 지 체 없이 이 권리 의 회 복에 필요 한 절차 취  
하여야 한다 1 3 제 1 항 제 1 . 에 해당 하는 사유로 인한 계약 의해지 또는 해제 가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 하게 한 때에는 재 산을 사용할지 방자 치 단 체는 대 통 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생 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4 지방자. 체의 장은 잡종 재  
산 을 대 부 받 은 자가 제 3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를 기한 내 에 납부하 지 아니하 는 때  
에는 지방세 체납처 분 의 예 에 의하여 징 수한다 1 제 3 절 매각제 36 조( 잡 종  
재 산의 각 ) 잡 종 재 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  
이 를 매 각 할

수 있다 1 1 다른 법 률의 규 정에 의하

여 매 각 는 때 2 1 제 29 조 단 서의 규 정에 의 한 때 통 령 령이 정 하는 수 의 계약 매 각 사 유에  
해 당 하 는 때 17 1 1 1 3 그 밖의 규 모 · 형 상 등.  
로 보아 활용 할 가치 가 없 거나 산 재한 잡 종 재산 을 집단 화 하기 위하여 재산 의 매 각  
이 불가.

하 다 고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이 인 정 하는 때

제 37 조 ( 매 각 대 금 의 납 부) ① 잡종 재산의 매 각 대 금 은 대 통 령 령이 정 하 는 기한 내 에  
일시에 전 액을 납부하 여야.  
다 1 다만 1 매 각 대 금 을 일시에 전액 납 부하는 것이 곤란하 다고 인정되 어 대 통 령  
령이 정 하는 경 우에는 1 년 만 기정기에.  
금 리 수 을 환하여 대 통 령 령이 정 하는 이 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 게 할 수 있다 1 ② 잡종 재  
산 중 동.  
의 매 각 대 금 에 대 하여 는 제 1 항 단 서의 규 정을 적 용하 지 아니한다 1 제 38 조( 매  
각 계약 의 해 지 등 ).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은 잡 종 재 산 을 매 수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 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매 각 계약 을 해 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1 1 매 수 자. 허위 의 진술 이나 허

류의채를 받부정 행방법에의 하

여당해계약을체결 한사 실이 발견된 때2 제37 조제 1 항의규정에의 한납부기 한 내에매 수 대금을 납부 하 지아 니한때 ② 지 방자. 면체의 장에제 의정에 의하여계약

을

해지또는해제한때 에는 지체없 이그권 리의회복에 필요한절 차를취하 여야 한다 ③지 방자치 단체 의장은잡종재산을매 수 한 자가.

37조제1 항의규정 에의 한매 수대금 을기한 내에납부하 지 아니하 는때에 는지방 세 체납.

분의예에의하여정 수한 다 제4절 교환제 39조( 교환) ①지 방자치 단체 는 그교환의 목적이 다음각 호의어 느하나에해 당 하는때 에는잡 종 재산.

토 지 · 건 물 이 나 토

지 의착 물 을국유 · 사유 또는다른지방자 치단체의공 유채 씌인 토지 · 건물이나 토지 의 정 착물과 교환할수.

다 11 국 가또는다 른지방 자치단체가공용 · 공공용 으로사용하 고자하거나 토지의집. 화를위하여필 요한 때2 당해지방자치 단체가 공용 · 공 공용 로사용 하고자하 거

나 토의 집 만화를위 하여 필 요한경 우로서 「공익사업 을위 한토지등의취 득및보상 에 관한법 른」 이적 용되지아니하 는때3 지. 경제의 활 성화또는 지역주민의복 리 증진을위 하여필요하 다고인정되 는경. 로서지 방의회의동의, 있는때2제1

항의 #정에 의한교환 에있어서교환하는 잡종재산의종 류 · 가격등. 대통령 령 이정 하는바에따라 제한할수있다 ③제1 항 의규 정에의하여 교환. 는경우 쌍방의가격 이동일하지아 니하는때에는그 차액 을금전으 로대납하 여야한 다 18 제1 편 법 령제5 절양여 제 40.

( 양여 ) ①잡종재 산은 다 각호 의어느하 나에해 당 하는때에 는이를 양여할 수 있다 1 당 해특별시 · 광 역시또 는도의구역안 에있는시 · 군또는구 ( 자 치 구를 말 한다.

에 서공용 또는공공용으 로사용하기위하 여필 요 한때2 용 도가 지정된국 고보조금 · 지 방교부 세또 는기부 금 으로서 조 성된잡 종재산 으로서 그용도에따 라이를양여 하는때 3 행 정재.

의 용를 폐 지한경우에 있어서그용도에갈 음할다 른 시설 을하여제 공한 자와 그상속인 그밖의 포괄승계 인에게 양여하는때4 도 시계획사 업집행의부 담을.

지방자치단 체에그 도시 계획 사업시행지 구안에 소재하 는토.

를 양여 는 때5 그밖에 자산 가치가하락하거나 보유 할필요 가없는 경우 로서대 통령



관계의뢰 하여공 유재 산의관리 실태 를조사하게할수 있다■제 45 ( 재. 관계 공 부의 열람등) 공유재산 의사무를 취급하는

무 열람 유 재산관리( 체납처분을포함 한 다) 를위 하여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그밖의 관계행 정기 관의장 에게 무료로필 요한서 류를 열람·복 사 하거나 그등본또는 초본의교 부를청 구 할수.

다 ■제 6 조 ( 가격개 정) 지방자치 단체의장은대통령 령이 정하는바 에의하 여5 년 마다 1 월1 일현재 기준 로그소 관에속하는공 유재 산 의가격 을개정 ( 개 정 ) 하여야한 다■다 만 ,가격 등재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것에 대하 여는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 ( 공유 재산의 현황 작성등 ) ①지. 처치단 체 의장은대 통

령령이 정하 는바에 따라당해 공유재산에대하 여전 년도및당 해회계 연도 간중 감보고서 와 매년12 월31 일현재 를기준으 로개정된, 격에의한현 재액보고서 를작성하여당 해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야한다 ■ ②지 방자치 단체 의 장은

1 항의규정 에의하여공유 재산 의증감 및 현황을 작성한 때에는중.

의 열별· 내역별로전년 도와비교하, 심사·분석 하여야한다■ 제6 장물 품통칙제 48 조 ( 물품의 범위 ) 이 법에서 “물 품”

라함은지방자치단 체가 소유하는 동산” 2)■제 1 편법 령과 지방자

단체가사용하기위 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다 음각호 의것을 제외한 동산 을말 한다■1 ■현금 2■ 유가증권 3■ 제4조 의 규정에의한공유 재산제 49조( 물 품 의분 )①지 방

자치단체의장은그 소관 에속하는 물품의사용 과처 분에있어 서의적정성 을도 모 하기위하여물품 을그 과처 분의목적에

따라기능별· 성질 별· 기관별· 품목 별로 분류하 여야한 다■ ②제1 항의분류 는 지방 자치단 체의예산 에정한 물품 관계경 비의목적 에 위배되 지아니하여 야한다■ 다만 ,특 별한 사유 로인하여예 산이, 한목적 에따라서분류하 기관련장우에는따로 이를분 류할수 있다■ ③제1항제 2항의규정에 의 한물품분류 의기준과그밖 에물품

분류에필요 한사항 은대 통령령으로정 한다■ 제50 조( 출자 등의금지 ) 물품은 법률또 는조례에 의 하지아니하 고는출 자의목적으로하거 나이 예사권 을 설정. 없다 ■제51 조

( 표준화 )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그기관에서 사용되 는물품을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의하여 표 준화하 여야 한다■ 제 52조 ( 물품관 리) ① 지방자치단체 장은그. 에하는물 품 관리 에 관한사무 를소속 공무원에게위임 하 여물품을관 리하게 할수있 다■ ② 제1

항 의규정 에의하 여위임 받은공 무원을 “물품 관리.” 이. 한다■ 제 53 조( 물 품출납공무원 ) ①물품 관리관 ( 제 55조제 1 항 의규 정에의하여물품관 리 사무

공 무원을포함 한다.

이 하 같 다) 은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 에의하 여 그가소 속하는 관서의공무원에게 그관리하는 물품의 출납및 보관  
에관한 사무( 출납명령 에관한 사무를제외. 다) 를 위임할 수있다 ㉑ 제1 항  
의규정 에 의하. 물품의 출납및보관

에관한사무 를위임 받은. 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 이라한 다 ㉒ 제 54조 ( 물  
품. 網) ①물품관리

관은필요한경우에는대통령 령이 정하는바 에따 라그가 소속하 는관 서의 공 무원에  
게지방.

치 ㉓의 사 무또는사 업의 목 적과용 도에따라서물품 을사용 하게 하거 나사용 중인물  
품의관리에 관한 사무( 이하 “물품의사용 에관 한사 무” 라 한다) 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항 의 규정에의하여 물품의사용에관한 사무를 위임받 은공무원을 “물 품이용관”  
이라한 다 ㉔ 제.

5조(관리 기관의분임 및대 리 ) ①지 방자치 단체 의장은 물품관 리의 사무의일  
부를분 장하는.

무원을 ㉕ 물 품관리관은 물품 출납공무원의사 무의일 부를 분 장하는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물품출납공무원을 대 통령.

이 정 하 는 바

에 의해 각 각될수있다 ㉑지 방자치단체 의장은 물품관리관이부 득이한 사유로 직 무  
를 수행 할수 없는데는그사 무를대 리하 는공무 원을 ㉒.

품 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물품이용 관이부득이한사유 로직무 를수행할수 없는데  
에는그 사무를 대리하 는공무원을대 통령령이정하 는 바에.

하여각각지정할 수있다 ㉓ 제5 6조( 물품관 리에관 한정 보공유 등) 행.  
자 처장 관 은지 방자치단체

물 품 의 효율적이고적 정한관리 를위

하 여 물 품관리기준등에관 한정보 등을조달

청 ㉔공 유 하는등상호협조 할수있다 ㉕ 제7 장물품의관리제 1 절 통칙제57조( 물품  
의수급 관리계획) ①지 방자치단 체의장은대 통령 령이정하는바에의 하여 회계  
연 도마다 그소 관의예 산과사 무또는사업 의예 정에따라물 품의.

및 ㉔에 관 한수급관리계획 을세워야 한다 ㉕ 다만 ㉖ 대통령령이정 하는물 품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 다 ㉗ ㉘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제 1 항의규 정에 ㉙한수급관리계획  
에 변경을요 하는 사유가 발생 한때에 는이를 변경할 수있 다 ㉚ ㉛ 지방자치단 체  
의 장은제1 항의 규정에의 한수급 관리계 획( 제2항 의 규정 의하 변 경된경  
우에는 그변경 된수급관 리계획 을말한 다) 에따라 물품을취 득·사용 또는처분  
하여야 한다 ㉜ 제5 8조( 물 품관 리기준 의 설정 지방자 치단체의장

은대 ㉝령령 이정하 는바에 의하여 주요물품의정수 와소 요기준을정하 여야한 다 ㉞

제5 9조( 재 고 관리)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사용빈 도가 지나재 고의 ㉟지가  
필요한물품에대하 여는 그물품의적정 한 ㊱고를 유지할 수있도록재 고 관리기 준을  
정하여관리하여 야한다 ㊲ 제6 0조 ( 재 물조사등 ) ㊳지 방자 치단체의장은대통  
령령이정하는바 에의 하여2년마다정기적으로그관리에속 하는물 품에 대한재물조  
사를 ㊴하여 야하며 ㊵필

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 는정기재물조 사 ㊶수 시로재 물조사 를 할수있 다 ㊷ ㊸제  
1 항 의규정에 의한재물조사결과물 품의손 · 망실이있 는때, 는그에 대한 처리결  
과를지체 없이 감 사원에보고하여 야한다 ㊹ 제 61. (재물 조정) 지방 자치단체의장은제

60조의규정 에의한재물조사 의결과 물품의증 감이발 견된경우 그원인이사무상착오  
임이 명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 이 를조 정할수있다 ㊺ - 22 제  
1 편법령 제62 조( 물품의 현황작성등) 지 방자 치단체의장은대 통령령이정  
하는 ㊻에따라 주요물품에 ㊼연년도및 당

해회계연도간증감 보고 서와매년2월 31 일기 준으로한현 재액 보고서 를작 성하  
여당해 지방의회 에보고 하여야 한 다 ㊽ 제 63조( 관리 전환) ㊾ ㊿ 물품관리관은  
물 품의효율 적 인사용 과처 분을위하여 필요 한때 에는대 통령령이정하는바 에  
의하 여지방 자치 단체의장 의 승 인을 ㉀그소 관의물품 ㉁을 재 자치단체에 ㉂다른물품관  
리관의 소관 으로전환( 이 하 "관 리전 환" 이라 한다) 할수 있다 ㉃ ㉄ 지방자 치단  
체 의장은다 른지방 자치단 체의 장 ㉅중앙행정기 관의장 ㉆ 「정부투자 기관관 리  
기본법 」에 의한정부 투 자 기관 ㉇이하 " 정부투자개" 이라한다) 의

장또는 「 >1 방공기업

법 」에의 한지 방 공사· 지방공단의회에게그소관물품을관 리전 환 하거 나관 리전 환을받  
을수있 다 ㉈ ㉉ 제1 항및제 2항의 규 정에의 하여관 리전환 을하 고자하는때 에는다  
른법률 또는대 통령령이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유 상으로정리( 정리) 하여야한  
다 ㉊ 제64 조( 물품의정비) 지방자 치 단체 의장 은대통령 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주요  
정비대 ㉋물품을선정하여정비기준에따라 정비하여 야한다 ㉌ 제65조( 표준서식) 물품  
관리관 · 물품운 용관및 물품출납공무원 제 조제1 항의 규 정에의 하여  
㉍ 무의일부 를분장하 는공무 원 을포함 한다 ㉎ 이하같 다) 은 통령령이 정하는



사용하는공무원(이하 “물품사용공무원”이라 한다)에게알려야 한다.

다 물품운용관의 요청에의하여 출납명령을할때에는그러하지아

나 다 제73조(사용중

인품의반납) ①물품운용관또

는물품사용공무원은사용중인물품중사용할필요가없거나사용

할없는물품또는수선이나개조를요하

는물품이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사실은물품관리관에게보고하여

다 제74조(대부) ①물품은대부를목적으로한것이거나

대부하여도지방자치단체의사업또는사무에지장이없다고인정하는것

에대하여는이를대

할수있다 제75조(불용품결정) ①지방자치단체의장은그소관에속하는물품중사용할

필요가없거나사용할수없는물품이있는때에는그물품에대하여불용결정을

하여야한다

할수있다 제76조(매각) ①물품은매각을목적으로

행위함에있어서물품을대부한경우대부료의산정방법 제77조(불용품처분의요청) 지방자치단체의장은불용품

법령요납부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78조(불용품처분의요청) 지방자치단체의장은불용품

75조(불용품결정) ①지방자치단체의장은그소관에속하는물품중사용할

필요가없거나사용할수없는물품이있는때에는그물품에대하여불용결정을

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물품에대하여는물품관리관이 결정을

할수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물품관리관은제75조의규정에의하여불용결정을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 중매각하는것이지방자치단체에불리

하거나부적당

하다고인정되는때또는매각할수없는물품이있는때에는이를매각할수있다 제79조(매각) ①물품은매각을목적으로

물품이거나불용품

이 아니면 이를매각할수없다 제80조(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75조의물품

로서매각되지아니하는것에대하여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매각의특

례를

수있다 제81조(불용품처분의요청) 지방자치단체의장은불용품

관련한 사항또는매각등에의하여처분이되지아니하는불용품이있는때에는조달

장에게그처분을요

청수있다 다만 재 활용이가능한

물품에대하여는조달청장



할 있다 ■ 제 78 조 ( 불 용 품의양 여) ①지

방 치단체의 장은 용 도가지정된 국고보 조금이 나기 부 금에의하  
여 득한 물품으로 서제 75 조의규 정에의 하여불 용의

결 꺾반 은 불품은그용 도에따라이를양에 할수있다 ■ ②지방 자치단체 의장은 불용품  
의활 용을위하 여필요 한때 에는당해물품을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라국가  
다 른지 방자치 단체 「지방 자 치법

에 의해 방 자치단체조합 정부 투자기관 「 지방공 기업법」 에 의한지 방공사 또는  
지 방공 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회복지 사업 법」 에 의한사회복 지법인  
국 가보훈처 장이지정하는보훈 련단체 지방자치단 체의장이위 탁하는업 무또  
는공익사 업을 수행하 는 비영 단체, 지역 주민그 밖 의공익기 관에양여할 수있다

■ 제79 조( 교환 ) ①지방자치단체 는물 품의효 율 적인 를위 하여특별

요한경우에는그물 품을 국가 다른지 방자치단 체또는 정부 투자기 관이나 타 인소  
유 의동 종물품과교환할 수있다 ■ ②제 1 항 의규정에의하 여교환 하는 경우쌍방  
의가격이 동일하 지아 니하는때에 는그 액을금 전으로대납하여 한다 다만 그차액

은 액에 전 액을납부하 여야 한 다 - 25 ■ 제8 장보 칙제8 0조( 연체료의  
정수 ) ①지방 자치단 체의장 은공 유재산의 사용 료 대 부료 매각대금과 교  
환 이납 부기한내 에

납부되지아니한경 우에는 납부되 여야할금액( 분 할납 부의경우에는 분납금 에대  
한 이자 를제외한 다) 에대하여 대통 령령이정 하는바 에따라연 료를징 수할수있다  
■ 다만 연

체료부과대 상이되는연체기간 은납 기 일부 터60월 을초 과할수 없다 ■ ②제1 항  
의규정에 의한 연 체료 를기 한내에 납부

지 여하 는 때에는지방 세체납처 분 의예에 의하여정수한다 ■ 제81 조( 변 상금의정  
수 ) ①이법 또는다른법 른 에의하여 공유재산에 부 또는사용 수익 허가등을

지 아 니 하고공유재산을점

유 해나 이 른사용 · 수익한자( 대 부또는 사·수익허 가기간이만료된 후다 시대 부 또  
는사 용 ·수 익허가등 을받지 아니하 고공 유재산 을계속 점유하 거나 이를사용  
· 수익한 자를 포함한다 ) 에대하여는대통 령이정 하 는바에의 하여당해재산 에  
대한 대부 료또는사용료의100분의120에상당하 는변 상금을징 수한다 ■ 다만 다음 호의  
어 느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변상금을징 수하지아 니한다 ■ 1 ■ 등기부그밖  
의공부 상의명 의인을 정당 소유자 로민 고상당한 를지급하고

권리를취 득한자( 취득

의 상속인 과 포괄승 계인을 포함한다) 의재산이취 득후에 공 유재산으로 판명

치단체에귀속 된경우 2 국 가 또는지방자 치단체가재 해대책 등불 가피 한사유 로

정기간 공유재산을점유 하게하거나 사 용·수익하게한 경우 2 제1 항의규 정 에의 한번 상금을 기한내 에납부하 지아니하는 때에 는대 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하 연체 료 를징수할수있 다 3 제 1 항의 규정에의한번 상금및 제2항 의규정 에의 한 연 체료를 기한내에납 부하지아니하는

에는지방세체 납처분 의예에의 하여징수 한다 4 제1 항의규 정에 의한변상 금 은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납부하 게할 수 있다. 5 제1 항의규정 에 의하여변상 금을징 수하는경 우에는 제23조 및제33조

규 정의 한 사용료및 대부료 의조정 은이를실 시하 지아니 한다 82조( 과오 료 환가산 금)

자 치단 체가과오 납된공유재산

의 용료·대 부료

· 각대금 또는

번 금을반환하 는경 우 에는과 오납된날

의 음날부터반 환하 는 날까지의

가 에대하 여1 년 만기정기에 금금리 수준을 감안 하 여대통령

령 정하 는이자 를가 산 하여반 환하 여야

한 때 제 8 3조( 불 법시설물의철 거) 정당한 사유없이 공유재 산을점유하거나, 시설

26 제1 편 법령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 8 제 3조내지제6조의 규 정을준용하 여철거 밖의 요한조 치를할수 있다 84조( 은닉된공유 재산의

신 고에대 한보상 ) 은닉된공유재산 을발견하여신 고한자 는대 통령령이정

하는바에의하여보상 금을지 급할수 있다 85조 ( 은닉된공 유재 산의자 진 반환 자에 대 한특. )은닉 된공유재산

을 선회 취 득한후당 해재산을 자 진하여 또는재판 상의화 해그밖에대 통령령 이정하는 원 인 에의하여 지 방자치체 에 반환한 자에게는

를수의배 각할수 있다 37조의 규정 에불구하고대통 령령이 정하는

에 의 하 여반환의원인별 로 차등 을두어

그 배제 금을 이 채이12년이하의 기 간에 걸쳐분할 납부하게하거나매 각 가격 에서8 할이 하의금 액을공제 한잔액 을그때 각대금으 하여진 액을일 시에납부 하게할 수있 다 86조 ( 물 품의 자연감 모) ①물 품의장 기 보관

나 송그밖의불

가 한사유로인하 여생

모 하여 이를 정리할 수 있다 ㉠ ㉡ 자

연 모로 하여 정리할 수 있는 물품

의종류· 품 명 및 자연감 모을에관 하여 는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87 조( 물 품 의공 ) 물품 은

이법 ㉠는 다 른 법률 의 규 정에 의 한계 약의 하 지 아니 하고 는 공사 · 제조 그 밖의 계 약자 에게 공급 할 수 없다 ㉠ 제 88조( 물품의 손 · 망실 처 리 ) 지방 자치 단 체. ㉠은 제 60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물 조 사의 결 ㉠ 물품 의 망실 또는 훼손 이 발 견 된 때 에 는 대 통령 령 이 정 하 는 바 에 의 하 여 「 회 계 관 계 직 원 등 의 책 임 에 관 한 법 률 」 제 6 조 제 1 항 의 규 정. ㉠한 번 ㉠ 상

명령 할 수 있다 ㉠ 제 8 9 조( 물품 이 아닌 동 산의 관 리) ① 지방 자 치 단 체 가 보 관 하 는 동 산 중 이 법 에 의 한 물 품 이 아닌 동 산 ( . ㉠ 조 각 ㉠ 호 ㉠해 당 하는 동 산 ㉠제 의

### 한 다 ) 에 대 하 여 도 대 통 령

령 이 정 하 는 바 에 의 하 여 이 법 에 의 한 물 품 에 준 하 여 관 리 할 수 있다 ㉠ ㉡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한 물 품 이 아닌 동 산 의 범 위 는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한 다 ㉠ 제 90 조 ( 물 품 관 리 에 관 한 검 사 )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은 대 통 령 령 이 정 하 는 바 에 의 하 여 정 기 적 으 로 물 품 관

에 관 한 검 사 를 하 여 야 하 고 ㉠ 물 품 관 리 관 · 물 품 운 용 관 또 는 물 품 출 납 공 무 원 이 교 체 된 경 우 와 그 밖 에 물 품 관 리 에 필 요 한 경 우 에 는 수 시 로 그 소 관

속 ㉠ 물 품 의 관 리 에 관 하 여 검 사 하 여 야 한 다 ㉠ 제 91 조( 일 부 물 품 의 적 용 배 제) 「 지 방 재 정 법 」 제 74 조 의 규 정 에 의 한 도 급 경 비 로 서 취 득 한 물 품 과 그 밖 에 대 통 령 이 정 하 는 물 품 의 관 리 에 관 하 는 대 통 령 령 이 정 하 는 바 에 의 하 여 이 법 의 일 부 를 적 용 하 지 아니 할

있다 ㉠ 제 9 2 조( 공 유 재 산 및 물 품 운 영 상 황 의 공 개 등)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은 조 례 가 정 하 는 바 에 의 하 여 회 계 연

마 대 회 이 상 공 ㉠ 재 산 의 증 감 및 현 황 ㉠ 중 요 물 품 의 증 ㉠ 27 ㉠ 및 ㉠ 감 및 현 재 액 그 밖 에 재 정 운 영 에 관 한 중 요 사 항 을 주 민 에 게 공 개 하 여 야 한 다 ㉠ 제 93 조( 회 계 관 계 공 무 원 의 임 명 또 는 위 임) 재 산 관 리 관 ㉠ 물 품 관 리 관 ㉠ 물 품

운 용 ㉠ 물 품 출 납 공 무 원 파 그 대 리 자 및 분 임 자 등 ( 이 하 “ 회 계 관 계 공 무 원 ” 이 라 한 다 ) 의 임 명 또 는

㉠ 관 계 공 무 원 에 대 한 사

은지방자 치단체의장

이 속하기 관 련치된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갈 음할수있다■ 제9 4조( 회계 관 계 공 무원의대 리와분 임) 지 방자치단체 의장또 는그위임 을받은 공무원은 필요하 다고인 정하는때 에는회계 관계공무원의 무의전 부 를대리하 거나그일 부를 분장 하는 공무원 을임명 할수있다 ■ 제9 5조( 공 유재산과 물품의상 호전환 ) 지 방 자치 단체의장은 제4조 제 1 항. 규 정에 의한공유재 산과 제48조의 규정예 의한물품 의효율 적인관리 를위 하여필

한경우에는대통령 령이 정 하는바 에의하 여상 호전환하여 관리 하거나치 분할수 있다 ■ 제 96조 ( 공유 재산및 물품 을관리 하 는공 무원 에대한예산 성과금및 관재활동 비의지급) ①지방자 치단 체의장 은 공유.

산 물품 관리 에 관한사무를위임받 거나 그사 무의일부를분장 하고있는공무원이 은닉 된 공유 재산의 발굴, 변 상금의 징수, 공유재산또는 물품 의효율적인대부· 사용 · 신탁·매각등 으로예산 상의수 입을증대 시키거 나지출을 절약하는 데기여한 때에, 「지방 재 정법」 제 48조의규 정에의하여예 산성과 금을지 급할수있 다 ■ ②지 방자치 단체의 장 은공.

재산을담당하 는공 무원에게예산 의범 위안에서관재활 동비 ( 공유재 산을총괄 하 고 유지·관 리하기 위한업 무에 필요한활동비를 말한다) 를지 급할수있다■ ③ 제1 항의규 정에의 한성과 금 의 지급 위 예관 하여필요한사 항은대통령령으로정 한다■제 97조( 지방재 정

법」 등의준용) 공 유재 산및물품 의계약, 시 효소멸 등에 대하여 이법에서정한 것 을제 의하고 는 「지방재 정법」 및 「지 방자치 단 체를 사 자로 하는계약에관한 법률 」 의규정을 준용한 다■ 제9 8조 ( 교육· 과학및 체육등 에 관한. 협의적용) 이법에서 교

육 · 과학 및 체육에관한사항또 는교육비특 별회 계에관 하여는 “지방자 치단 체의장” 또 는 “시·도지사” 는 “교육감 ” 으로, “행 정자치 부상관” 은 “교 육인적 자 원부 장 관” 로 각각 본다■ 제9 장별칙제9 9조( 별칙) 제. 3제1 항의규정에 위반하여지

방 재단 체 약상의허가 없이행 정재산 등을사 용또는수익한 자는2 년이하 의징역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 한다■ - 28 ■ 제1 편법 령부칙부 칙[ 2005. 8. 4 제 7665호] ① ( 시행일 ) 이법은2006년 1 월1 일부터시 행 한 다■. ( 변상 금에관 한적 용례) 제81조제 5항 의규정에의 하여사용 료및대 부료 의조정 을실시하지 아니하 는변 상금은 이법시행일 이후, 최초로 부해는상.분부 적용한다.③사용.

수익 허가등 에관한 경과조 치) 이 법시 행당시지 방자치단 체의공 유재산및 물품에 대하여중 전의 「지 방재 정법 」 의규 정에 의 한사용 · 수 익허가

법의규정에 의하여 행하 여진것으 로본다 ④( 사용·수 익허가 등의신 청에관한 경 과조치) 이법시 행당시지 방자치 단체 의공유 재산및물 품에 대하여 종 전의 지 방재 정법」의규 정에의하 여사용 · 수익허 가대 부등을신 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 재 정법」규정 에

의한다 ⑤( 다른 법률과의관계 ) 이법시 행당시 다른법 른에서공유 재산및물품 의관 리및처분에대하 여종 전의 「지방재 정법」의 규정을 인용 한경우로서이법 에그에 해당하 는규정이있 는때 에는 이 법또는이법의해 당규정 을 인용 짓으로 한다 ⑥( 회,법정, 예산회계, 회계)호

일부개정 1999 12 31 법률 제 999 호 ( 국고 금관리 법 ) 일부 개정 2002 12 30 법률 제 734 호 ( 국고금관 리법 ) 일부 개정 2005 01 27 제 2 장 총

칙제 1 조 ( 목 적 ) ①이법은국가 의예산과 회계및 이에관 련되는 기본 적인사 항을 정함을 목 적으 한다 ②(공공과 유 산의 리및회계 관리는 로법률이 하바에의

하되다른법 른에특 별한규 정이없는사 항은이 법이정 하는바에의 한다 제 2 조 ( 회계 연도 ) 국가의회계연도 는매년 1 월 1 일 에시 작하여 12 월 31 일 에종 료한다

제 3 조 ( 회계연 도 독립의원칙 ) 각회계 연도의경비 는그연도의 세입으로 써충 당하 여야한다 제 4 조 삭 제 [ 20 05 1 27 ] [ [ 시행일 2005 12 31 ] 제 5 조 ( 국가의세 출세 원의근거) 국 가의세 출 은국채 또는 차입금 ( 외국 정부 및 국제 협력 기 구및외국 법인 으로 부 터도입되는차관 자금을 포 함한 이하 같

다) 이외의 세입으 로써 그재원으로 하여 야한 다 다만 부득 이한경 우에는국 회 의의 결 을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국채또는차입 금으로써 충당할 수있다 제 6 조 ( 재정증권 파일 시차입 금) 삭제 [ 20 02 12 30 법률 제 686 호 ]

제 7 조 기 금

의 별 ) ①국가는특정 한목적을 위하여특정한자금 을운용할 필요가 있

을 때한 하 여법률로써 특별한 기금을설치 할 수있다 ② 제 1 항의규정 에의한기 금은 세입 세출예 산에의 하지 아니하 고운 용할수있다 ③ 내지 ⑦ 삭제 [ 91 · 12 · 31 ] 제 8 조 ( 보조 금의예산및 관리, 국가의 보조금의예 산및관 리에 관한사

항 른로 법 른로정하 다 제 9 조 ( 회계구분 ) ①국가의 회 계는일 반회계와 특별회계 로 구분한다 ②특별 회계는 국가에 서특 정한사 업을운 영 할 때 특

정한자금을보유하여 운용할때 기 타특정한세 입으 로특정 한세출에 충당함으로

계와구분 하여계리 할필요 가있을 때에 법률로 설치한 다 ■ 제1. 쟁기  
업 회계의 원

칙 )특별 회계 에 의하여정부 가운 영하는사업 은따로법률이 정하는바 에의하 여기 업회  
계의 원칙에의 하여, 리할수있 다 ■ 33 ■ 제1 1 조 ( 정부투 자 기관의 예산  
과회 계) 정부투 자기관 의에 산과회 계에관 한 사 항은.

법률로정 헌제2(국가

의 채권채 무) ①국가의 채 권의진 부또는 일부를 면제하 거나효력을변 경함에.

### 법 른

에 의

하여야 한다■ ②국 가 는법 른또 는계 예의하 지아니하.

는그채 무의 이행을지체

할수없 다■ 제1 3조<

국가채 선의처분) ①국가의채 산은 법률에의하지 아니 하고 는교환·양 여·대 부·출  
자 또는 지급의수단 으로서 용할수 없다■ ②제1 항 의재산은 현금을제외한. 든채 산  
으 로한다■ 제1 4조 ( 중앙관서의 장의정 의) ①이 법에서 “

중앙서 의장” 이라함은국 회의 장, 대 법원 장, 헌법재 판소장,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위  
원장, 헌법또 는정부조 직법 기타법 른에 의하여 설치된중 앙행정기. 의 장을 말한다  
■ ②국회 의장 · 대법원 장 · 헌법 재판소장.

중앙선거 관리위 원회위 원장은 국회의사무총장 · 대 법원의법원행 정치 장 · 헌법재  
판 소의사무 처장및중앙 선거 관리위원. 의사무총장 에 게이법에 의한직무 를위 임할  
수있다■ 이경우국 회의사무총장 · 대법 원의법 원행정처장 · 헌 법재판소 의사 무  
처장및. 양선. 관리위원회의 사무총 장은그 위임받은범 위안에 서제1. 의중앙관 서의  
장으 로본다 ■ [ 개정 91 · 11 · 3 0, 9 3 · 12 · 31] ③제 2항 의규정에.

하여회의 장 · 대법원장 · 헌법재 판. 장및중앙선 거 관리위원 회위원장 이그직무를  
위임하 였을 때에는 재정 경제 부장관 · 기획예산처장관과감 사원에.

지하여 한다 ■ [ 개 정 91 · 11 · 30, 93 · 12 · 31, 99 · 2 · 5, 99 · 5  
· 24] ④삭제.

2002. 1 2. 30 법률제 6836호] [ 본조제목개정 2 002. 1 2. 3 0 법률.  
률.

6836호그 제1 5조( 예산 및회계에관한 업무. 관장 ) ①예산 관계 법령에 관한사무  
는기획예 산처장 관이관 장하 고 회.

관계법 령에관 한사무는 재정경제 부장 관 이관장 한다.[ 개정 99 · 2 · 5, 99 · 5  
· 24] ② 삭제[ 93 · 12 · 31 ] 제1 6조 중 · 장 기계획 의수 립등) ①기획예산처

효율화와건전화를위하 여수년.

의제 정수 요와가 용재원할에 측 하 는것이필 요하다고 판단하는경우에는 중·장 기 재정 운용계획 을수립할수있다 [ 개정99· 2· 5 1999 5· ② 각중앙 관서의장은 예산을 수반하는중·장기계획 을수 할때, 는미리기획에 산처장관과협의하여 야한 다 [ 개 정99· 2· 5 1999· 5· 24] ③지방자치 단체가국가의재정지 원에 의하여 수행 되는사 업의계 획을

립할 때 에는회계연 도개 시전에 미리관계중앙관서(장)의승인 을 얻어야한다 ④중앙 관서의장이제3항의규 정 에의한승 인을하과할 때에 미리, 획 예산 34 제 1 편법 령처장 관과협의하여 야한다 [ 개정 99· 2· 5 1999

5· 24] 제17조 삭제 [93·12·31]제2장에산제1절총칙제18조 세입세출의 정의 및예산총계 주의, 직) ①한회계연도의모든수입을세입으로 하고, 모든지출을세출로 한다 ②세 입세, 은모, 예 산에게 상하여 야한다 다 만, 국가 가현물로 출자하는 우및의 국차관 을도입하여 전대하 는 경우 에는이를 세입세 출 예산 외로처 할수있 다 ③차관 물자에 의 경 우전년도인 출예정분의부득 이한 이 월또는 환 율의 변동으 로인하 여세입 이에.

을초과 하게되는경우 에 는 당해세출 예산을 초과, 여지 출할 수있다 제19조( 예 산의내용 ) 예산 은예산 총칙· 세입세 출예.

· 계속 비· 명시이 월비와 국 고채 무부담 행위를총칭한 다 제20 조( 예 산의구분 ) ①세 입세출 예산은 필요한 때에.

계정의 로구분할수있 다 ②세입세 출예산은 중앙관서 의조 직별 로 구분 한다 ③ 세입예 산은제 2항의 구분 에의 하여그내용을성질별, 관 · 항, 로 구 분하고, 세출 예산 은제2 항 의구분 에의하여그 내용.

기 능 별· 성질 별

또는기 관별, 로장 · 관 · 항 으로 구분 한다 제 21 조(

비) 예 측할수 없는 예산외의지

출되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 당 하기위하여

정부는 예비비로서 상 당하 다고인 정되는 금액을세.

세출예 산에계상할수 있다 제22조 ( 계속비 ) ①완 성에수 년 도를요하는공사나 제조및연구 개발사 업은 예비 의총액과연 부액을정.

여미리 국회와의 결

을은 법위안에 서수년도에걸 쳐 서지출할수있다 ② 제1 항의규 정에 의하 여국 가 가지 출할수 있 는연한은당해회계 연도로부터 5년이 내 로한다 다 만, 필요하 다 고인정.

회의 의결 을거 쳐다시 그연한을연 장 할수있다 ■ 제23조( 명시이월 비) 세 출에 산중경 비의성질.

연 도 내에지출

을 끝내 지못할 것이에 측될때에.

특 히 그취지를세

입 세출 예산에 명시하 여미국.

의 승 인을얻어 다

음연도 에이월하여 사 용할 수있다 ■ 제2 4조( 국 채무 담행위) ①법률에의 한 것 과세출 예산금 액또는계 속비의총액 의범 위안의 것이외에 국 가가채무를부담 하는행 위를할때. 미 리예산으로서 - 35 ■ 제24조 국 회 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 1 항에규정된 것 외에 재해복구를위하, 필 요한경우에는 매회계연도 마다 국가 국회의 의결을얻.

범위안 에서채무 를부담하는행위 를할 수있다■ [ 신설 93 · 12 · 31] 제 2 항의 규정 에의하 여채무를부담하 는행 위를한 경 우에는 그보고서를 다음다음회 계연.

개시20 일전까지 국회에제출하여 야한다 ■ [ 신 설93 · 12 · 31] 제 2 절에 산안 의편성 제25조( 예산 안편 성지침 및 예산요구서제출기 한) ① 각종 관 서의장은 매년2 월, 일 까지다 음연 도신 규사업 및기획예.

처장관 의정 하 는주요 계속사 업에대한 사업계획서 를기 획예산 처장관에 게제출하여 야한 다■ [ 개정 99 · 2 · 5 99 · 5 · 24] ② 기획예산 처장관은매 년3 월31일 까지국무 회의의심의를거 쳐대통 령의승인 을얻은 다음연도 의예 산안 편성지 침을 각종.

관서의 장에게시달하여야한다■ [ 개정 99 · 2 · 5 99 · 5 · 24] ③각종관서 의장은 제2항의 예 산 안편성 지침에 따라그 소관에속하는다음연도 의세입세출예산 · 계속 비 · 명시이월비및국고 채 무부담 행위요구서( 이 하 “예.

요구서” 라 한다) 를작 성하여매년5월31일까지기획 예산 처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 다■ [ 개정99 · 2 · 5 99 · 5 · 24] ④제. 항 의예 산요구 서에는 대통 령령이정 하 는바 에 의하여예산 의 편성및예산 관리기법의 적용.

필요한 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 제2 6조 ( 예산총칙 ) 예 산총칙에는 세입세출 예 산 · 계속비 · 명시 이 월비와국고채 무부담 행위에관 한 총괄적규정등을이외에다음 사 항을규 정하여 야한다■ [ 개정99 · 2 · 5 99 · 5 · 24] 제 1 제5 조단서의규정에 의한국 채 또는차 입 금의한도액 2■ 국고 금관 리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재 정증권.

발 행 과일시차입

금회칙 과액3■ 기 타 예산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사. 제2, 조( 국고채무부담행위의이유, 금액 ) 국고채 무부담 행. 는사항마그. 요한이. 를명백히하고그행위를할 연도및상 환 연 도와채무 부담 의금액을최 하하여야한다■ 제28조( 예산안 의편 성) 기획예 산처장관은 제25 조의



저에의 하여예산.

을성 하여 국 무회의의 심의를거 쳐대통 령 의승인 을얻어야한 다■ [ 개정 99·2 · 5 99· 5·24] 제 29조 ( 독립기 관의예산) 국회, 대법원, 헌법재 판 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 위원.

(이하 “독 립 기관” 이라한 다) 의세 출예산요구 액을 감액할 때에는국 무회의에서 당 36 제1 편 법령해 독립 기관의 장 의 의견을 구하여 야한다■ 제30조( 예산 안의국 회제출) 정부는제28 조의규 정에의한 예산안 을회계연도개시 90일전 까지국 회 에제출하여 야한.

■ 제3 1조( 예산안 의첨부 서류) 국회에제출하는예산안에는 다음서 류를 첨부하여. 한다■. ■ 제25조제2항의규정 에 의한예산 안편 성지침2 세입세 출예산 사항별설 명서3 ■ 국과무 부당 행위 설명서 4■ 세입세출예산총계표 및순계 표와채와차입금양환에관한전년도 말에.

어 서 의실적진

년 도말 과당해 연도말 의현재액.

정 및 그상연차

표에관한명세서 6■ 국고채 무부담 행위로서.

음연도이 후에걸 치는것 에있어서는전년도말까지의지출액또는지출추 정액과당 해연도 이후 의지출예.

액에관한명세서 7■ 계속비에 관한전년도말까 지의 지출액또는 지출 추정액 당 해연 도이후 의지 출예정 액과 사업 전체의계획및그 진행 상황 에관한명세서8■ 예산정원 표 와예 산안편성 기준단가9 ■ 국.

재 산 의전전년도

말에있 어서의현재 액 과전 년도 말과 해연도 말에있어.

의현재 액추 정에관 한명

세 서 1 0) 독립

기관의 예산요구액 을 감액 하였 을때 에는그사 감이유와 해독립 기관의

장의 전 1 ■ 기 타재

정 의 상황과예산

안내 용을명백히 할 수있 는서류 제32 조( 국 회제출 중인예산

의수정 ) 정 부는예 산안

을 국 회에제출한

후부득이한사 유 로인 하여그 내용의 일부를수. 하고, 할때에는국무회 의의심의를거 쳐대 통 령 의승인을얻어수정예산안을 국회에제 출할수있 다■ 제33조(회 경정예산 안) ①정부 는예산 성립후 에생긴 사유로 인하여이. 성립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 을 때에는

예 산 안을 편성하여 추회 예 할수있 다 ②제.

조 1항의규정에 의하 여수 정예 산안 또는추가 정정예 산 안을제출하는경우에 는제31 조에 규 정 된예산안 첨부서류 의전부또는일부 를생 략할수있 다 제34조

예산불성립시의 예산 집행) ① 국 회에서부득 이 한사유로 회계연도개 시 전 까지예산 안 이의결되 지못한때 예는정 부는헌 법제54조.

3항의규 정에의 하여 산을집행하여 야한다 ② 제1 항의. 정 에 의하여집행된예산은당 해 연도의예산이성립 되면 그성.

된 예 산에 하 여

집 행된 것으로 된다 - 37 제3 절예산의.

행 제 3

5 조( 예산 배 정) ①예 산이성립.

면 각 3

양 관서 의장은 사업운 영계획및

에 의 한입세출 산계속 비와 국 고채 무부담행위를포

함한예산배정 요 구서 를기획 예산처 장관에 게제출 하여야한.

■ [개정 99·2·5, 99·5·24] ②기획 예산 처장관은

1 항의예산배 정요구서와 국고금관법 제30조2항의 월별자금 회 회에.

라분기별예산배정계획을작성하고재정 경제부장관 이제 출한월별 자금회 회과함 계국무회 의의심의를거 쳐대통 령의승 인을얻어야 한다.

다 만 3

기 회예 산처장 관은세 출예산배.

계 회 을작성하여재정 경제 부 장관이

제 출한월별차 금 계획 을수정 할필요 가있을때. 는재. 경제부장관 과협 의 하여야한다 ■ [

개정 99·2·5, 99·5·24

2002.12.30 법률 제 636호] ③ 기획 예산처장관은 각종양 관서 의장에게예 산 을배 정한때 예는재 정경제부 장관과감사원에 통지 하여야한.

■ [개정 99·2·5, 99·5·24] ④ 기획예 산처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는대통 령 이정하는 바에의 하여회 계연 도개시전.

예 산 을정한다. [개 정 99·2

· 5, 99·5·24] ⑤각종 양관서 의장은예.

에 총 액로계상 사으 로서대통

령 령으 로정 하는 사업에대 하여는예.

배 정 전사입시, 계획수립 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협

의 하여 야한다 ■ [ 신 설 93 - 12·31, 99·2·5

6조( 예산 의목적 외사

용금지 예산 이체) ①각중앙 관서 의장세 출예

산이정한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 하거나예.

이정 한각기관간 7장 · 관 · 항간에 상호 이용 할수 없 다 1 다만 7 예산 집행 상필요에의하 여 미리에 산으로써국회 의결 을얻.

올때에는 기획 예산처장 관의

승 인 을얻을수대 [ 개정 99

· 2· 5 7 99 · 5 · 24 ② 정부조 직등에관 법령 제정 · 개정 또는 폐지로인하여 그 직무와권 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기획 예산처장 관 은해 중앙 관서의 의 요구에 의하여 그에 산을 상호 이 용 및 이체 할수 있다 1 [ 개정

· 2· 5 7 99 · 5 · 24 ③ 기획 예산 처장 관은제 1 항 단서와제 2 항 의규정에 의 하여 예산을 이 용 또는 이 체한때 에는당 해중앙 관서의장 · 재 정경 제부장관 및감사원 통속하여야한다 1 [ 개정 99 · 2 · 5 7 99 · 5 · 24 제 3 6 조 의 2 ( 예 산성과금지 급등 ) ① 각중앙관 서의 장은 예산의집행 방법또 는제 도의개 선등의 로수입이 증 대되 거나지출이절 약된경우

는때또는절약된예 산의 일부를이 에 기 여 한자 에게 성과금 으로지급 하거나 다른사 업에서 용할수있다 1 ②각중 앙관 서의장 이제 1 항의규정에 의한성 과금을 지급하 거나

른 사 업사용자경우 에 는예

산성과금심사위원 회의 심 사를거쳐야한 다 1 - 38 제 1 편법

령 제 1항및제 2 항 의규 정에 의한 성과금지 급및다른 법에의 사용 1

예산성 과금 심사위 원회

의구성 · 운영 등에관 하여필 요한사 항은대

통령령으로정 한다 1 [ 본조 신설 99 · 2 ·

] 제 37 조 ( 예 산의전용 ) ①각중앙관서의장은 대통령령이정 하는바 에의하여각세항또는목 의금 액을

획 예산 처장관

의승인 을얻

어 전 을얻는다 [ 개정 99 · 2 · 5

7 99 · 5 · 24 ② 각 중 앙 관 서 의 장 은 1 항 의 규 정 에 불 구 하 고 회 계 연 도 마 다 기 획 예 산 처 장 관 이 정 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 항 또는 목 의 금 액 을 전 용 할 수 있 다 [ 개정 99 · 2 · 5,

· 5 ③ 기획 예산 처 장 관 은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전 용 의 승 인 을





세 서 를 당 해



양 관서의장 ·

재정 경 제 부 장관 및 감 사 원 에 송 부 하 여 하 이 하 며,  
 각 중 양 관 서 의 장 은 제 2 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진 용 한 때 는 그  
 용 을 한 과 목 별 금 액 및 이 유 를 명 시 한 명 세 서 를 재 정 경 제 장 관 기 회,  
 산 처 장 관 및 감 사 원 에 송 부 하 여 한 다 [ 개

99 · 2 · 5

99 · 5 · 24 제 1 항 또 는 제 2 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전 용 한 경 비 의 금 액 은 세 입  
 세 출 결 산 보 고 서 에 이 를 명 백 히 하 고 그 이 유 를 기 재 하 여 야 한 다 제 38

( 세 출 예 산 의 이 월 ) ① 매 회 계 연 도 의 세 출 예 산 은 다음 연 도 에  
 월 여 사 용 할 수 없 다 다만 세 출 예 산 중 다 음 각 호 의 1 에 해 당 하 는 경 비 의 금 액 은 다  
 음 회 계 연 도 에 이 월 하 여 사 용 할 수 있 다 [ 개 정

· 31 99 · 2 · 5 1 명 시 이 월 비 2 연 도 내

지 원 인 행 위 를 하 고 불 가 피 한 사 유 로 인 하 여 연 도 내 에 지

하 못 한 경 비 지 지 출 원 인 행 위 를 하 지 아니 한 그 부 대 경 비 3 지 출 원 인 행 위 를 위 하

입 공 고 를 현 비 중 입 찰 공 고 후 지 출 원 인 행 위 까 지 장 기 간 이 소 요 되 는 경 우 로 서

통 령 령 이 정 하 는 경 비 4 공 익 · 공 공 사 업 의 시 행 에 필 요 한 소 실 보 상 비 로 서 대 통 령  
 령 이 정 하 는 경 비 5 경 상 적 성 격 의 경 비 로 서 통 령 령 이 정 하 는 경 비 ② 계 속 비 의  
 연 도 별 연 부 액 중 당 해 연 도 에 지 출 하 지 못 한 금 액 은 제 1 항 의 규 정 에 불

하 고 당 회 계 속 비 사 업 의 완 성 연 도 까 지 체 차 로 이 월 하 여 사 용 할 수 있 다 ③ 각 중 양 관  
 서 의 장 은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예 산 을 이 월 하 는 때

는 통 령 령 이 정 하 는 바 에 의 하 여 이 월 명 세 서 를 작 성 하 고 이 를

다 연 도 1 월 31 일 까 지 재 정 경 제 부 장 관 · 기 획 예 산 처 장 관 및 감 사 원 에 송 부 하

여 한 다 [ 개 정 99 · 2 · 5 99 9 · 5 · 24 ④ 각 중

양 서 의 장 이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예 산 을

이 하 는 때 에 는 그 이 월 하 는 과 목 별 금 액 은 다 음 연 도 의 이 월 예 산 으 로 배 정 된 것 으 로 본 다

1 39 기 획 예 산 처 장 관 은 세 입 징 수

상 등 을 감 안 하 여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할 때 에 는 재

정 경 제 부 장 관 과 협 의 하 여 미 리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규 정 에 의 한 세 출 예 산 의 이 월 사 용 을  
 제 한 하 기 위 한 조 치 를 할 수 있 다 [ 개 정 99 · 2 ·

99 9 · 5 · 24 제 39 조 ( 예 비 비 의 관 리 와 사 용 ) ① 예 비 비 는 기 획 예 산 처 장 관

다 [ 개정99 · 2 · 5 9 9 · 5

24 ② 각 중앙관서의장 은예비비의사용을 필요로할경 우에 는그 이유 를 금액과추 산의 기 초를 명백히한.

세서를작성 성하여 기획예산 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 다 다.

대 규 자연재해 의신속 한복구 를위 하여필요한 때에는 자연 재해대 책법제52 조 의규정에 의한.

해상황 보고를기초로 긴급재해 구호및 복구요소 요되는 금액을 개산 하여예 비비 를신청 할수있 다 [ 개 정99 · 2 · 5 9 9 · 5 24 ③기 획예산처 장관은제 2항 의요구 를심 사한후 필요하다고인정 하는때에는 이를.

정하고예비비사용 명세 서를작성 하여국 무회의 의심 의를거 쳐대통 령의승인 을 얻어야한다 [ 개 정99 · 2 · 5 9 9 · 5 · 24 ④일반 회계. 부터 전입받 은 특별 회계는필 요한경우에일 반회계 예비비 를 전입받아 이를세입 으로하여그특 별회계 의 세출로사용할수있다 제40조 ( 예비사. 명세서의작성및 국 회출)

①각중앙관처 의장은예 비비로사 용한금액의명세서를 작성 하여재정경 제부.

관 에 게 제출하여야한다 [ 개정99 · 2 · 5] ②재 정경제부 장관 은 제1 항 의명세서.

의 하여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총괄표를작성 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거 쳐 대통령.

인을얻어야한다 [ 개정99 · 2 · 5] ③ 재정경제부장 관 은제 2항의총괄 표를감 사 원에 제출하여야한 다 [ 개정99 · 2 · 5] ④정부는예비비 로사용한 총괄표 를 다 음회계 연도 개시 120일전 까지 국회 에제출 하여그 승 인을.

어 연 다 제41 조( 수입대 체경 비) ①용역 및시설 을 제공하 여발생하는 수 입 과관 련되 는경 비로 서대통령령이정하 는경비( 이하 “수입대체경 비” 라한 다) 에있어서 중앙관서의장 은수입예산을초과하거나초과할것이에상되는경우에는그과수 입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양.초과수입에 직 관연되는경비및예수 반되 는경.

에 초과 지 할수있다 ②수 입대체경비의예산 초과 집 행에관하여필요 한사항 은대통 령령으 로정한 다 [ 전 문개 정20 02 12 30 법률제 6836 호] .

3장결산제42조 ( 결 산보고서 등의작성및제 출) 각중 앙관서의장 은대 통령령 이 정하는바 - 40 제1 판법 령에의하 여매회계연 도마다 그소관 에속 하는세 입 세출 의결산 보고서 를 계 속비결 산보고 서및 가의 무에관 한계 산서를작성 성하 여다음연 도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 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한 다 [ 개정99 · 2 · 5] 제43 조( 세 입세.

결산의작성) ①재 정경 제부장관 은세입 세출의결 산보 고서에의하여세 입세출 의 결산을 작성하 여국 무회 의 의심의를거 쳐대통 령의승 인을얻어 야한다 [ 개 정99 · 2 · 5] ②세입 세출 의결 산은세 입세출예산 과동일 한구 분에의하 여이를 작성 하며다음사 항을명백 히하여 야한다 [ 개정93 · 12 · 31



(법률제 6836호) 1 세입 가세 입예 산액나 이체등증액다 세입예산현 액라 정 수결 정 액마 수납액 바 불 납결손 액사 미수납액 2 세출가 세 출 예산 액나 전년도이 월액다 예비 비사 용액라 전용등 증감액 마 제 조 단 서 의규정에의한초과 지출액 바 세출 예산현 액사 지출액아 다음연도이월 액 자 불용액 제44 조( 세 입세.

결산세출 과송부 ) ①재 정경제 부장관은 세입세출 결산에 각 중앙관서 의세입 세출결산 보 고서 계속비 결산보 고서및 국가의채무 에관

계 쉰 를 첨부하여이름다 음연도 6월10일까 지기획 예산 처장관및 감사 에제출 하여 한다 [ 개 99·2·5 99·5·24] ②감사원은 제1 항의세입 세출결

서를따 하 고보고 서를다 음연 도8월 20 일까지재정 경제부 장관 에게송부하여 야한다 [ 개 99·2·5 제 45조 ( 세입세출결산의국회 제출) 정 부는감사원 의 검사를거 친세입 세출결산 회 계연도마다다음 다음회계연도개120일전까지국회제

한다 - 41 제46조( 세입세 출결산의첨서류) 정부에 서국 에제출 하는세입세출결 산에는세입세출결산보서, 계속비결산보서 국가의채무에 관한 산서를첨 하여야한다 제47조 ( 세 계잉

금 액 리 ) ①매 회계연도세입세 출결산상생긴잉여 금( 이하 “세 계잉여 금” 이 라한다 ) 은제 38조 의규정에의한세 출예산 이월액 의재 원의 로서다음연 도의세 입에 이입 하여야 한다 ② 세계잉 여금중 다른 법률에 의하는것과제1 항의규정 에의한 이월 액을공제 한잔액은국무회 의의심 의를 거쳐대통령의승 인을얻 어그

계잉여금이 생긴다 음연 도까지당해회계 의세 출예산에구애됨 이없 이다음각호의 용 도 에사용할 수있다 1 국채또 는차입금 의원리 금상환2 국가배 상법 에의하여확 정된국 가배 상금 ③ 세계잉여 금중제 1 항및제2항의 규정에의한 금 액 을공제한잔 액은다음 연도의세입 에이

하여야한 다 제47 조 의2( 일반 회계 세계잉여 금처리 에관한특례 ) ① 일 반회 계세계잉여금은 제47 조제3 항의규 정에 구 하고 국무회의의심의를 를거 쳐 대통령의승 인을얻 어 그세 계 잉여 금이생 긴다음 연도까 지당 해회 계의세 출예 산에구애됨 이없이 다음각 호의

도에사용할수있다 [ 개 93·12·31 99 6·12·1 2 99·1·2 1 99·12·31] 양 곡중

정 때 금 배에의한부채의 상환2 재정용자 특별 회계법 에의한 재정 용자 특별회 계 의차 입금( 예수금 을포함 한다) 의 원리금상 환3 국채법 에제3조 제1 항본 문의규 정에의 하여발 행한

채의원리금상환 ②재 정경제부장 관은제1 항의규정에 의하

세 잉여 금으로원 리금 을상환할필 요가있는경우에 는, 리 금상환의 규 모등에관하여

처 장 관과협 의하여 야한다 [ 개정 99· 2· 5 999· 5· 24] [ 본조신설91· 12· 2 7 ] 제 4장 수입 [ 삭제 [ 20 02 1 2 30 ] 법률 제 6836호 ] 제48 조삭 제 [

0 02 1 2 30 ] 법률 제 6836호 ] 제 49조 삭 제 [ 2 002 1 2 3 0 ] 법률 제 6836호 ] 제50 조삭제 [ 2 002 1 2 30 ] 법률 제 6836호 ] 제 51 조삭 제 [ 20 02 1 2 3 0 ] 법률 제 6836호 ] 제 52조 삭 제 [ 20 02 1 2 3 0 ] 법률 제 6836호 ] - 42 제1 편법 령제5 3 조삭 [ 2 002 1 2 3 0 ] 법률 제 6836호 ] 제 54조삭 제 [ 20 0 2 1 2 3 0 ] 법률 제 6836호 ] 제 55조 삭제 [ 2002 1 2 3 0 ] 법률 제 6836호 ] 제5 장수입 및지출제 1 절 총칙.

삭제 [ 법률 제 6836호 ] 제 56조( 국고금 의관 리) 회계및기금 의수입 · 지 출등국 고금의관리에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 하는.

에 의하 되 다른 법률 에특별 한규정 이없는사항은이법 이정 하 는바 에따 른다 [ 전문개 정20 02 1 2 3 0 ] 법률 제 6836호 ] 제5 7조삭제 [ 법률 제 6836호 ] 제2 절지출 원 인 행위

삭 [ 20 02 1 2 3

0 ] 법률 제 6836호 ] 제 58 조삭제 [ 200 2 1 2

3 ] 법률 제 6836호 ] 제59 조삭 제 [

2 02 1 2 3 0 ] 법률 제 6836호 ] 제60 조( 명시 이월비의 다음연도에결친 지출원인 행위) ①각중 양관서의장 은명시이 월비

에대 하여여 산집행 상부 득이한사유 가있을 때에는는사항마 다그사.

와 액 을 명백히하 여기회 예산처장관의승인 을얻은 금액의 범위내 에서다 음 연도에 걸쳐서지 출하.야할지출원인행위를 할수 있다 [ 개정99· 2· 5 999· 5· 24]

②기획예 산처 장관은제 1 항 의규정 에의하여 다음연 도 에 걸쳐 지출 여야할지 출원인행위를승인한때에는계정경 제부장 관에 계통지 하여야한다 [ 개 정99· 2· 5· 99· 5· 24] 제 3절지출 [ 삭제 [ 법률 제 6836

] 제61 조삭제 [ 2002 1 2 3 0 ] 법률 제 6836호 ] 제 62조 삭제 [ 2 002 1 2 3 0 ] 법률 제

호 ] 제 6 3조삭제 [ 200 2 1 2 3 0 ] 법률 제 6836호 ] 제64조삭제 [ 20 0 2 1 2 3 0 ] 법률 제 6836호 ] 제65 조삭 제 [ 2 002 1 2 3 0

법률 제 6836호 ] 제6 6조 삭제 [ 20 02 1 2 3 0 ] 법률 제 6836호 ] 제 6 7조삭제 [ 99· 2·

0 0 2 ■ 1 2 ■ 3

0 ■ 법 률 제 6836 호] 제 6 9 조 삭제 [ 2 0 0 2 ■ 1 2 ■ 3 0 ■ 법 률 제 6836 호] - 43 ■ 헌법  
 제 7 0 조 삭제 [ 2 0 0 2 ■ 1 2 ■ 3 0 ■ 법 률 제 6836 호]  
 ] 제 7 1 조 삭제 [ 2 0 0 2 ■ 1 2 ■ 3 0 ■ 법 률 제 6836 호] 제 4 절 지 급 [ 삭 제 [ 2  
 0 0 2 ■ 1 2 ■ 3 0 ■ 법 률 제 6836 호] ] 제 7 2 조 삭제 [ 2 0 0 2 ■ 1 2 3 0  
 ■ 법 률 제 6836 호] 제 6 장 ( 제 7 3 조 내지 제 9 5 조) 삭제 [ 9 5 · 1 · 5 ] 제 7 장 시효 제  
 9 6 조 ( 금전채 권과채무 소멸시효 ) ① 금 전의금부 를 목적으 로하는 국가의 권리 로 서시효 에관하여 다  
 른법률 에규정. 없 는것은 5 년간행 사하지 아 니할때 에는 시효로인하여소 멸한  
 다 ■ ② 국가.  
 대 한권 리 로서금전의금 부를 목적 으로하는것또한 제 1 항 과같다 ■ 제 9 7 조 ( 소멸  
 시효 의중단 과정 지 ) 금전의금부를 목적으 로하는 국가 의 권리에있어 서는소  
 멸 시효의중단 · 정지기.  
 의사함에관하여적 용할 다법률 의규정 이없 을때에 는민법의 규정 을준용 한다  
 ■ 국 가에 대한권리로 서금전 의금부를목 적으.  
 하 는것 도 또한같다 ■ 제 9 8 조 ( 시효 중단의 효력 ) 법령 의규정에 의 하여 국가가행  
 하는납 입의고지는 시효 중단의효력 이있다 ■ 제 8 장 유가증 권제 9 9 조 ( 유가  
 증권보관 의제한 ) 중앙관 서 의장.  
 법령의규정 예의하 지아니하고 는공유또 는 사유 의유가 증 권을보관 할수없다 ■  
 [ 전 문개정 2 0 0 2 ■ 1 2 ■ 3 0 ■ 법 률 제 6836 호] 제 1 0 0 조 삭제 [ 2 0 0 2 ■  
 법 률 제 6836 호] 제 1 0 1 .  
 ( 한국은 행 또는금융 기관의 유가증 권취급 ) 국가는 그소유또 는보관에 속하는유  
 가증 권의 취급을 한국은 행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금 용기 관( 이 하 “금융기관  
 ” 이 라 한다.  
 에 명할 수 있다 ■ 제 1 0 2 조 ( 한국은행에 대한 검사 ) 한국은행 은제 1 0 1 조의규 정에  
 의하여취 급한유 가증권의수불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받아 야한다 ■ [ 전 문  
 개정 2 0 0 2 ■ 법 률 제 6836 호] 제 1 0 3 조 ( 한국은행 의배상책임 ) 한국은 행이국가를 위  
 하 취 급하 는유가증권 의 - 44 ■ 제 1 편 법령 출납보관에관 하여국가에 손해.  
 기 청정 우 예한국은행의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상법을적용한다 ■ [ 전문개 정 2 0  
 0 2 ■ 1 2 ■ 3 0 ■ 법 률 제 6836 호] 제 9 장 삭제 [ 2 0 0 5 ■ 1 1 2 7 ] [ [ 시행일  
 2 0 0 5 ■ 1 1 2 7 ] ] 제 1 0 4 조 삭제 [ 2 0 0 5 ■ 1 1 2 7 ] [ [ 시행일 2 0 0 5 ■ 1 1 2 7 ] ] 제 1 0 5 조 삭제 [ 2 0 0 5 ■ 1 1 2 7 ] [ [ 시행일 2 0 0 5 ■ 1 1 2 7 ] ] 제 1 0 장기 록과.  
 고 제 1 0 6 조 ( 장부의비치 ) 재정 경제부장 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 관 서의장

행및금 용기관은대 통 령령이정하는바에 의 하여장부 를비치하고필요 한사항 을기 록하 여야한 다■ [ 전문개정2002■ 1 2■ 30■ 법률제 6836 호 ] 제 1 0 7 조 ( 회계보고와사 업보고 ) ① 각종양관 서의장은대통령령이 정하는바 에의 하여회계 에관한보 고서를 재정경 제부.

관 에게 제 출하여야한다■ [ 개정93 · 12 · 3 1 1999 · 2 · 5■ 200 2■ 1 2■ 3 0■ 법 률제6836 호 ] 1 ■ 지출원인행위보 고서2 ■ 수입 및지출에 관한보 고서 3■ 기타회계에 관한보고서 ②재정경제부 장관은 제1 항의보고서를분기 마다총 합하여기획에 산처장관에 제제 하여 한다■ [ 개 정99 · 2 · 5 1999 · 5 · 24] ③각 중앙 관서의장은대통령 령이정 하는 바에의하 여분기 마다사업 집 행보고서 와 기타예산 에관 한보 고서를기획예산처 장관에게제 출하.

야 한다 ■ [개정99 · 2 · 5 1999 · 5 · 24] ④기획에 산처장 관은 제3항의규정 에의 한 보 고서의 내용 을분석하여필요한경우 에는적절한 조치를 취 할수있 다■ [ 개 정99 · 2 · 5 1999 · 5 · 24] [ 본 조제목개 정]법 률제6836 호] 제1 .

8 조 ( 보 퍼서와계산 서의제출 ) 한 국은행과금 용기관은대통령령이정하 는바에따라국 가를위하여 취급한유 가증권의수불등에관한보고서와 계산서를작성 하여재정 체 부 장관과차원 에제 출하여 야한 다■ [ 전 문개 정2 002■ 1 2 ■ 3 0■ 법률 제6836 호] 제 1 09조( 재정상 황에관한 보고 ) 정부는예산이 성립되면 지체 이예 산 7 년도 결 45 ■ 예산 7 국 채 7 차 입금 7 국유 재산의 현재액 기타 재정 에관 한일반사항을 인쇄물기 획 당한방법 으로 국민에게 알려야한다 ■ 제.

1 장 보 칙 제 1 0조 ( 보증채 무부 담 행위 ) ①국가가 보증 채무를 부 담하고자 하 는경 우에는미리 국회의동 의를 얻 어야 한다■ ②제1 항 의 보증 채무 의관리 에 관하여필 요한사 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 1 1조( 예산 및회 계에관 한법 령의협 의 ) 각종 양 관서의장 은예산 및 회계에관한 법령을입 안할때 에는 예 산에관한 법 령은.

획예산처장 관 7 회 계에관 한법령 은 재정경제 부장관과협 의하 여야한 다■ [ 개 정 99 · 2 · 5 1999 · 5 · 24 ] 제 1 1 2조 ( 다.

법령에관 한 협의) 각 중앙관 서의 장 이에 산및회계에 관한법령 외의 다른법령 으로 서예 산및회계에 관한내용 을규정하 고자할때 에도제 111 조의규정 을 준용 한다■ 제113조 삭제[ 2 002■ 1 2■ 30 ■ 법률제 6836 호 ] 제1 1 4

조삭 제[ 2 0 0 2■ 1 2■ 30■ 법률 제6836

] 제1 1 5조( 자 금의보유) 국가 는법률로 정하는경우에만 하여 특 별한 자금을보 유할수 있다■ 제11 6조( 특별회계 의 특례) 각특별회 계에있 어서필요 한경 우에는이 법의규 정과다 른규정 을법 률로정 할수있다■ 제1 1 7조( 예산 집행 의 감독 ) 기 획에 산처장 관과재 정경 제부장 관은 예산과회계 의적정 을기 하

원으로 하여금 실 지조.

하게하며 필 요에따 라서는 국무회 의의심의 를거 쳐대통령의승인 을얻어각 중앙. 서 의장 에 대하여예산과 회계 에관한 지 시를할 수있다 ■ [ 개정99·2·5 799·5·24] 제118 조( 내부통 제) 각 중앙관 서의장 은유 효한재 정관리 ·재 원사 용의 적정여부와집 행과 정 에서보 고된자료의 신빙 성을분석평가하 기위하여 소 속. 무원. 로하 여금필 요한사 항에관 하여내부통제를하게하여야 한다 ■ 제 11 9 조삭 제 [ 2002 ■ 1 2 ■ 30 ■ 법 률제 6836 호 ] 제 1 2.

### 조 삭 제 [ 2002.2.30 ] 법 률 제 6836 호

를 제 6836 호 ] 제 1 21 조삭제 [ 2002.2.30 ] 법 률 제 6836 호 ] 제 1 22 조( 회 계관 계공무 원의책임) 회계관계 직원의 책임 에관하여는따로법을 로정한다 ■ 제 1 23 조삭제 [ 2002.2.30 ] 법 률 제 6836 호 ] 제 1 24 조( 회계관계공 무원. 교육) 정부는회계 관계 공무원의자질향상을 위하여대 - 46 ■ 제 1 2 법령통령령 이정하 는바에의하여 교육 을실시 할수 있다 ■ 부칙부칙 ①( 시행 일) 이 법은 공 포한날 로 부터시행한 다 ■ 다만 ■ 제 7 조 제 7. ■ 제 40 조 제 4 항 ■ 제 42 조 ■ 제 44 조 ■ 제 45 조 ■ 제 76 조 및 제 81 조 제 3 항의규정은 1990 년 1 월 1 일 부터시행한다 ■ ②( 다 른법령 과의 관계 ) 이법시 행당시다른법령 에서 종전의규. 을인 용하고있는 것은이법의 해당. 정을인용 한것 으로부터다 ■ 부칙 [ 91·11·30 ] 제 1 조( 시행일) 이법은 공포 한날부터. 행한다 ■ 제 2 조 및 제 3 조 생략 부칙 [ 91·12·27 ] ①( 시행 일) 이 법은공 포한날 부 터시행한다 ■ ② 삭제 [ 93·12·31 ] 부칙 [ 91·12·31 ]. 1 조( 시행 일) 이 법은 1992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 [ 단 서 생 략] 제 2 조 및 제 3 조 생략 부칙 [ 93·12·31 ] 이법 은 1994년 1 월 1. 부 터 시 행 한다 ■ 부칙 [ 95·1·5 ] 제 1 조 ( 시행일) 이법 은공포 후 6월이 경과 한날 부터시 행한다 ■ [ 서생략] 제 2 조 내지 제 4 조 생략 부칙 [ 96·12 12 ] 제 1 조( 시행일 ) 이법 은 1997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 제 2 조 내지 제 6 조 생략 부 칙 [ 99·1·21 ] 제 1 조( 시행 일) 이 법은 2000 년 1 월 1 일부 터시행한 다 ■ 제 2 조 내지 제 5 조 생략 부 칙 [ 99·2·5 ] 이법은 공포 한날 부터 시행한다 ■ 부칙 [ 99·5·24 ] 제 1 조 ( 시행 일) 이법 은공 포한날부터시행 한다 ■ [ 단 서 생략. 제 2 조 내 지 제 6 조 생략 부칙 [ 99·12·31 ] - 47 ■ 제 1 조 ( 시 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 일부. 시행. 다 ■ 제 2 조 내지 제 4 조 생략 부칙 [ 2003.1.1 ] 제 1 조( 시행 일) 이 법 은 2003. 1 월 1 일 부터시행 한다 ■ 제 2 조 내지 제 5 조 및 제 7 조 생략 제 6 조 ( 다 른법률 의개

항에 산회계 범중다 음 과같이 개정한다 ■ 제6 조를삭제한다 ■ .

14조의제목 “( 중 앙관 서의장 의정의 및수입의 직 접사용 금지) ” 를 “( 중 앙 관 서의장 의정 의 ) ” 로 하고 동 조제 4항을 삭제한다 ■ 제26.

제2호중 “제6조 ” 를 “국고 금관리법 제32조 ” 로한다 ■ 제35 조제 2항을다 음과같 이한다 ■ ②기획 예산 처장관은제1 항의예 산배 정요구서와 국고금 관리 법 제30.

2 항의 월 별자금계획에따라분기 별예 산배정 계획을작성하고 재정 경제부장관이제출한 월별 자금계 획과함께국 무회 의의심의 를거쳐대통 령의승 인을 얻어야 한 다 ■ 다 만 기 획 예산처장관 은세출 예산 배정 계획을 작성함 에있.

서 재정 경 제부장관이제출한월별자금계획을 수정 할필요가있을때에는 재정 경 제부장관 과 협의 하여 한다 ■ 제41조를 다음 과 같이한다 ■ 제41 조( 수입대 체경비 ) ①용 역및시 설을제공하 여발생하는수입과관련되는경비로 서대통령 령이정하는경비 ( 이하 “ 수입.

체경비” 라한 다) 에 있어서 는중앙관서의장 은수입이에 산을초 과하거나 초과할 것이에 상되는경우 에는그초과수입을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의하여 당해초.

수 입에 직 관관련되는경비및이에 수반되는경 비에초과지출할 수있 다 ■ ②수입 대체경 비의 예산 초과집행에관하여필 요한사 항은대 통 령령 으로정 한다 ■ 제 43조제 2 항제.

호 마루 중 “제41조 제1 항 단서” 를 “제41조 로한다 ■ 제4장 제48조. 지제55조) 을 삭 제한다 ■ 제5 장의제목.

지출” 을 “수입 및지출” 로한다. 제56조 의 “제1 절총 칙 ” 을삭제한다 ■ 제 56 조를 다음과 같이한 다 ■ 제56조( 국 고금의 관 리) 회계및기금 의수입 · 지출 등국고 금의관리 에관.

여 는마 로 별이정 하는바에의 하되 다른법률에 특별한규 정 이없는사항 은 이법이 정하는 바에따 른다 ■ 제 57조를삭제한다 ■ 제57 조. 음의 “제2 절지 출원 인 행위 ” 를삭제한 다 ■ 제.

조및 제59조 각각삭 제한 다 ■ ~ 48 ■ 제1 편법 령 제5장제3절( 제61조내지 제 66조 제68 조내지 제71조 ) 및제5장제 4절(

72 조) 을 각각삭제한다 ■ 제8장의제목 “국 고금과 유가 증 권” 을 “유가증 권 ” 으 로 한다 ■ 제99조 를다 음과같이한 다 ■ 제 99조( 유가증 권보관 의제한) 중 앙 관서 의장 은법령의규 정에의하 지아 니하고 는 공유.

는사 의유 가증권 을보관 할수없다 ■ 제100 조 를삭 제한다 ■ 제 102조 · 제103조 및제 106조를 각각. 음과. 이한다 ■ 제 102조( 한 국은행 에대한검사 ) 한국 은행 은제 101 조의규 정에의 하 여취.

에 관하여 감사원의검사를받아야한다 ■ 제103 조 ( 한 국은 행의 배상 책임 ) 한국은행이국가를위하여여취급하는유가증권의출납보관에관하여여국가에손해를끼친경우에한하여은행은배상책임에관하여는민법과상법을적용한다 ■ 제106조 ( 장부의 비치 ) 재정경제부 장관.

기 회 산 처장관 중양관서 의장 한국은행및 금융 기관 은 대통령 령에 의하여 정하는바에 의하여 장부를비치하고필요한사항을기록하여야한다 ■ 제107 조의 제 목중 “ 재정 보고 ” 를 “ 회계 보고 ” 로하고 동조제1 항을다음과같이한다 ■ ① 각 중양관서의장은 대통령 령이 정하는바에의하여회계에관한보고서를재정경제부 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108 를다음과같이한다 ■ 제

108 ( 보고서와계산서의제출 ) 한국은행과금융기관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국가를위하여여취급한유가증권의수불등에관한보고서와계산서를작성하여재정경제부

관과차원에제출하여야한다 ■ 제113 조 · 제114조 · 제119 조내지제21 조및 제123조를각각삭제한다 ■ 제 2 항내지제31 항생략부칙

0 05 ■ 1 ■ 27법률제7347 호( 국고금관리법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 2005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및제3조 생략제 4 조( . 른법. 의개정 ) ① 예산회계법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 제 4 조 및제 9 장( 제104조 및 제105 조 ) 을각각 삭제한다 ■ ② 내지 ⑦ 생략 - 49 ■ ~~법률제 4944 호~~ 정 당법 ~~법률제 6269 호~~ 일부개정 2 00 0 ■ 0 2 ■ 1 6 ■ 법 른 제 6661. 일부 개정 2002 ■ 0 3 ■ 0 7 ■ 법률제 7190 호일부개정 20

4 10 3 11 2 ■ 법률제 7683 호전면개정 2005 ■ 08 ■ 04 ■ 제1 장 총칙제1 조 ( 목적 ) 이법 은정당이 국민의정 치적 의사형 성에참여하는데 필요한조직을확보하고정당의 민주적 인조직 과활동을보장함으로써

주정치의전환발전에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 “ 정당 ” 이라 함은국민의이익을위하여

입 있는정 치적주장 이나 정 책을추진하 고공직선거 의후보자를추천또 는지 지함으로써 국민 의정 치적 의사형 성에참여함을목적으로 하는 국민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 제 3 조( . 성 ) . 당은수도에도소재하는 중앙당 과특 별시 · 광역 시 · 도에각각소재 하는 시 · 도 당( 이하 “시

도당 ” 이라한다 ) 으로서구성한다 ■ 제2장 정당 의설립제 4조( 성립 ) ① 정당은 중앙당 이중앙선 거관리 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 한다 ■ ② 제1 항 의 등록에는제17 조( 법 정시

도 당 ) 및제18조( 시 · 도 당의법정 당원 수 ) 의요건을구비하여야 한다 ■ 제 5 조

비위 원회 ) 정당 의창 당활동 은발기 인으로구성 하는창 당준비 위원회가 이를 한 다■ 제6 조( 발 기인) 창당준 비위 원회는 중앙당 의경우에는 20인이상의 시 ·도당 의경우 에 는10.

이상의발기인으로 구성 한■ 제 7조( 신고 ) ①중앙 당창당준비 위원 회를결 성한때에는 그대 표자는중 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

여야한다■ 1 ■발 기의 취지2■ 정당 의 명칭 ( 가칭) 3■ 무의소 재지4 ■발 기인과그대표자의성명 · 주소 53■ 5 ■회인 ( 회인 ) 및그 대표자직인의 인영6. 중 앙선 거 관리위원 회규칙 으로정하는사항② 중앙 당창당준비 위원회 는제 1 항의 신고 를함 으로서 그활 동을개 시 할수 있다 ■③ 제1 항 의신고 사 항중.

1 호에서제 5호( 제 4호 중발기 인의성 명 · 주 소를제외한다) 에규 정된 사항에 변 이 생긴때 에는중앙당 창당.

비 위 회 의대표자는4 일이내에중앙선거관 리위원 회에변 경신고를하여 야한 다 ■ 제8 조( 창 당준 비위 원회의활 동범위) ①창당 준비 위 원회는 창당의목적범위 안 에서만활 동을 할수있다■ ②중앙 당창 당준비 위원 회는 제7조( 신고) 제 1 항의규 정 에의.

결성신고일 부 터6 월 이내 에한 하여창 당활동을 할수있 다■ ③ 중앙당창당준 비 위원 회가제2항 의기간이 내에제 11 조(

특 청) 의규 정에 의한중앙당의창 당등 록신청을 하지아 니한때 에는그기 간만 료 일의다 음날 에그창 당준비위 원회는 소 별된것으

로 다■ ④중앙당창 당준비 위원회가소 별 된때 에 는중앙선 거 관리위원회는지체 없이그뜻 을공고하 여야한다 ■제9조( 시 ·도 당의

창 승인) 시 ·도당의 창당에 는중앙 당또는그창당준 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

야 다■ 제 10조 ( 창당집 회의공개) ①정당 의창

당집회는공 개하여야한 다■ ②중앙 당창 당 준비 위원회는 창당 집회의공 개를 위하여 집회 개최일전 5일까지 「신문등 의자유와기 능보장에 관한법 률」 제

조( 8어 의정 의) 의규 정에의 한일간 신문에 집회개최 공고를 하 여야한다 ■제1

1 조( 등록신청) 창 당준비 위원회 가창.

### 준 비 를 완 료

한 때에 는 그대표자는관 할선거 관리위원회에 정당의 등록을신청하여야 한다■ 제12 조( 중 앙당의등 신청 사항) ①중앙 당의등 록신

사 은다

음 호와같다■



약. 을정한때에  
는. 칭을포  
함. 다) 2 사  
무. 의소재지

3 강령

( . 는기본정책

) . 당헌4 대표

자. 간부의성명 .

주. 5 당 원의수

6. 당인( 당헌 ) 및그대 표자직 인의 인영7 시

. . 당의소재

지. 명칭8

■ . 도 당의대표 자의성

명 주소②

제 1 항 의 등록신청 에는대표 자및간 부의취임동의서 와 제()조( 창 당집회 의공개) 제 2 항 의 규정 에의 한신 문공고 예관 한 증빙 자료 및창당 대회회의 록사본 을첨부 - 54 제 1 편법령하 여야 한다 제1 3 조 ( 시 · 도당의 등록신청사 항) ①시 . 도 당의등록 신청사항 은다음 각호 와같다 ■ 1 ■ .

당 명칭 2 사 무소 의소

제 3 대표 자 · 간 부의 성명 .

주 소4 ■ 당원의수5 ■ 당인( 당인 ) 및그대표자 직인 의인 영②제1 항의등록신청에 는 대표자및간 부의취 임동 의서, 중앙당또는 그창당준 비위원회의 창당승 인서 , 법정당원수에해 당하는 수의당원의 입당 원서사 본및창 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한다 ■ 제1 4 조( 변경등록) 제12 .

( 중앙당의등록신 청사항) 및제13 조( 시 · 도당 등록 신청사 항) 의등록신청사 항중다음각 호의어 느하나 에변경이 생긴때 에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 회에변경등록을신청 하여 야한다■1 ■ 정당의명칭 ( 약칭을포 함한 .

) 2 사 무 소(중앙 당의경 우당 해사무소에한 한다 ) 의소 재지 3 강 령( 또 는기본 정책) 과당헌 4 대 .

자및간부

제 20 조 ( 정당의 기 구)

제 1 항 의 규정 에의한기 관의 장에 한한다] 의성명 · 주 소5 ■ 당인( 당 인) 및 그대

의인영 제15조( 등 록신청의심사) 등록 신청을받은 관할 거 관리 위원회 는 형 식적요건 을구비 하는한이틀거 부하지못한 다

만 형 식 적요건 을구 비 하지못한 때 에 는상당한기간을정하 여그보완을 명하고 2 회이상 보완을명 하여도 응하 지아니할때에 는그신 청을각하할 수있

제16조( 등록· 등 록증 의 교부및 공고 ) ①제12조( 중앙당 의등록신 청사항 ) 내 지제14 조( 변경 등록) 의규정에 의한등록 신청을받은 관할선 거관 리위원 회는등록신 청을접 수 한날

터7일이내에등록을 수배하고 등록증 을교 부하여야한다 ②제1 항의 등록을수 리한때 에는당 해선거관리위원회 는지 체 없이그 뜻을공고하 여야한다 제17 조( 법정 시·도 당수) 정 당은

이상의시·도당을가 져야한 다 제18조( 시·도당의 법 정당원수) ①시·도 당 은 1 천인, 상의당원 을 가져야한다 ② 제1 항 의규정 에의한법 정당원수에 해당하는수 의당

은 당해 시·도당의관할구역안에주소를 두어 야 한다 - 55 제3 장정당 의합당제 19조( 합 당) ①정 당 이새로운 당명 으로 합당( 이하 “신 설합당 ” 이라한 다 ) 하 거나다 른정당 에합당( 이하 “흡수합당” 이라한다) 될때에는합당 을 하는

당들 2대의 기관이 나그 수입기관의합동회의의결의로 써합 당 할수 있다 ②정 당의합 당은제 20조( 합당된 경우의

등록 신청 ) 제1 항·제2항 및제 4항의규정 에의 하여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또는 신고함 으로써 성립 한다 다만 정당이 「 공직선 거법 」 제2 조( 적용범위) 의규정에의한선 거( 이 하 “ 공직 선 거” 라한다 ) 의후보자 등록신 청개시일부터 선 거일까지 의사이에합당된때 에는선거 일후20 일에 그효력이발생 한다 ③제1 항 및제

항 의규 정 에의하여정당 의합 당이성립 한경우에는그소속시·도당도합 당한것 으로서 본다 다만 신 설합당인 경우에 는합당 등록신청일 부터3 월이내에 시·도당개 편 대회 를거쳐 변경 등록신청 을하여야한다 ④신설 합당된정당 이제 3항단서 의규정 에의한 기간 이내변경등록 신청을하 지아니 한 경우

는 그 간 만료일의다음날에 당해시·도당은소멸된것 으로서 본다 ⑤합당 으로서신설또는 존속하 는 정당 은합 당전정 당의 권리·의무를승 계한다 제20 조( 합당된 경 우의 등록신청) ①신설합당의경우정 당의대표 자는제19조( 합당) 제1 항의규 정에 한합동회의의결의가 있 날부 터14일 이내 에그회의록사본 을첨부 하여중 앙선 거 관 리위 원회에제12조( 중앙당의등록신청사항 ) 의규정 에의한등록신청 을하여 야 한다

제 12조 제 1항제 7호 및 제 8 호의 사항은 등록신청일부터 12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경우에 있어 그 기간 이내에 보완한다

는 예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2 이상 상당한 기간을 두어 보완 을 명하고

보 이 없 는 때 에 는 제 44 조 ( 등록의 취소)

제 항의 규정 에 의

하 그 등록을 취소

할 있다 ④ 흡 수 합 당 으 로 존

속 는 정 당 의 대 표 자 는 제 19 조 제 1 항 의

규 에 의 한 합 동 회 의 의 결 의 가 있 은 날 부 터 14 일 이 내 에

회 의 사 본 을 첨 부 하 여 합 당 된 사 유 를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에 신 고 하 여 야 한 다

제 21 조 ( 합 당 된 경 우 )

### 당 원 ) 제 19

조 ( 합 당 ) 의 규 정 에 의 한 합 당 의 경 우 합 당 전 정 당 의 당 원 은 합 당 된 정 당 의 당 원 이 된다 이 경 우 합 당 전 의 입 당 원 서 는 합 당 된

당 의 입 당 원 서 로 본 다 56 제 1 편 법령 제 4 장 정 당 의 입 당 · 탈 당 제 22 조 ( 발 기 인 및 당 원 의 자 격 ) ① 국 회 의 원 선 거 권 이 있 는 자 는 공 무 원 그 밖 에

신 분 을 이 유 로 정 당 가 입 이 나 정 치 활 동 을 금 지 하 는 다 른 법 령 의 규 정 을 구 하 고 구

든 지 정 당 의 발 기 인 및 당 원 이 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 당

하 는 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1 「 국가 공 무 원

」 제 2 조 ( 공 무 원 의 구 분 ) 또 는 「 지 방 공 무 원 법 」 제 2 조 ( 공 무 원 의 구 분 ) 에 규 정

된 공 무 원 대 한 대 통 령 국 무 총 리 국 무 위 원 국 회 원 지 방 의 회 의 원 선 거

에 의 해 취 입 하 는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회 의 원 의 보좌 관 · 비 서 관 · 비 서 국 회 교

섭 단 체 의 정 책 연 구 위 원 과 「 고 등 교

법 」 제 14 조 ( 교 직 원 의 구 분 ) 제 1 항 · 제 2 항 의 규 정 에 의 한 총 장 · 학 장 ·

교 수 · 부 교 수 · 조 교 수 · 전 임 강 사 인 교 원 을 제 외 한

2 총 장 · 학 장 · 교 수 · 부 교 수 · 조 교 수 · 전 임 강 사 를 제 외 한 사립 학 교 의 교 원

법 의 규 정 에 의 하 여 공 무 원 의 신 분 을 가진 자 ② 대 한 민 국 국 민 이

닌 자 는 당 원 이 될 수 없 다 제 23 조 ( 입 당 ) ① 당 원 이 되 고자 하 는 자 는 서 명 또 는 날

인 을 한 입 당 원 서 를 시 · 도 당 또 는 그 창 당 준 비 위 원 회 에 제출 하 여 입 당 청 을

여 야 한 다 이 경 우 「 전 자 서 명 법 」 제 2 조 ( 정 의 ) 제 3 호 의 규 정 에 의 한 공 인

전 자 서 명 이 있 는 전 자 문 서 로 도 입 당 신 청 을 할 수 있 다

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 1 항의 규정 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 원자격 심사기관 심의 거처입당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 부에 등재 하고 시·도 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는 당원증.

### 발급 하 여 야

한 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 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 한다 ③ 입당신청인은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하지 아니 하거나

당원허가하지 아니 하는 경우 에는 중앙 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 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원 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 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 다 ④ 당원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 하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 제24조 ( 당원명

) ① 시·도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 하 여야 한다 ② 제1 항의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 하는 경우 외 관계선거관리 위원 회가 당원에 관하여 사실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 당하지 아니 한다 ③ 범

수서 위 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57 조 제2항 경우 조 사에 관여 한 관계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 하지 못한다

2 5조 ( 탈당) ① 당원 이 탈당 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주소지 시·도당 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소지 시·도 당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 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 ( 정의)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로도 탈당 신고서를 제출할 수

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 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주소지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③ 탈당신고서를 접수 한 당 시·도 당은 접수한 날부터 2 일 이내 당원명 부의 기재를 말소 하고 탈당 증명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④ 제 1 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이 탈당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탈당증 명서를 교부하고 해당 시·도당에 통보 하여

원명부의 기재를 말소 하 게 하여야 한다 제2 6조 ( 탈당원명부 ) 시·도당에는 탈당원명 부를 비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 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 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 음 할 수 있

명부등의인계) 정 당은 대표자 등의변경 이나합당에 따른조직 개편 시당원 명부 등 중앙선 거관리위원 회규칙 으 로정하는관련서 류( 이 하 “관련 서 류 ” 라 다) 와정당운 영에 관 련되는인 장등 의인계의무자 를당헌.

정 해 야 하며 당해 인계의무 자는사유 발생일부터14일이내 에 관련 서류와인장 등을 인 계하여야 한 다■ 제 5 장정 당의 운영제28조 ( 강령등 의공개및 당헌 의기 재사항 ) ①정 당은그 강령( 또는 기본정책 ) 과당 헌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 .

의 명헌 에 는다음각호의 사항을규 정하여야한다 ■1 ■ 정 당의 명칭2 ■정당 의일반 적인 조직 · 구성및권 한에 관한사항3 ■ 대표자 · 간 부의선임 방법 · 임기 · 권 리 및의 무에관 한사항4 ■ 당 원의 입당 · 탈당 · 제 배권리및무 에관한 사 항5 대 위 관 의설치및소집 절차6■ 간 부회의 의구성 · 권한및 소 집절차7■ 당의재 정에 관한 사 항8. 공직 거후보자선 출에 관한사 항9■ 당 헌 · 당규 의제정및

정 해 한 사항 58■제1 편법령 10 ■ 정당의해 산및합 당에관한사항11 ■ 등록취 소또는 자진해 산시의간여재 산처분에관한 사항제 29조 ( 당 의기구 ) ①정 당 은 민주적인내 부 질 서를 유 지하기위 하 여당원 의총의를 반영할 있는 의기관 및집행 기관 과소속국회 의원이 있는경 우에는 의원총 회를 가져야한 다■ ②중.

## 당 은 정 당의에 산과결산

및 그내 역 에관한회 계검사 등정당의재정에관 한사항을확인 · 검 사하 기위하여예산 결산 위 원회 를두어 야한 다■ ③제 1 항및 제2항 의기관의조 직 · 권 한그 밖 의사 항에관하여 는당헌으 로이 를정하 여야한 다■ 제30 조 (

당의급사 무직원 수제한 ) ①정 당에둘수있 는유급 사무직 원은중 앙당에 는100 인[ 제38. ( 정책연 구소의설 치 · 운영 ) 의규 에따른 정 책연구소 의연구원 은그 수에서제외 한다 ] 을초과할 수없

며 시 · 도당에는 총100 인이내 에서각 시 · 도 당별로중앙당 이정한.

■ ②중 앙 선거관리위원 회는정 당이제1 항에규 정된유 급사무 직원수를 초과한경우에는 다음연 도에 「정치 자금 법」 제25조 ( 보조 금의 계상) 제3 항의규 정에의 하 여지급 는정상 보조금 에 서당해정당 의유급사 무직원의연 간평 인 건비 에초과 한유 급사무직 원수를 곱한금 액을감 액 한다.

③ 제 항 에서 “유 급사 무직원 ” 이라함은상근 · 비 상근을 불문하고 월15일이상정 당에고 용되 어 근로를제공 하고임금 · 봉 급 · 수 당 · 활 동 비 그밖.

어 뻐한 명 칭으로든 지그대가를 제공받 는자를말한다■ 이경우 근로일수 에불 구하 고 유급으로 근로를제공한 인원이 2인이상인때에 는그들 의근 로일수 를모두 합하

이상인 경우이를유급사무직원수에 포함 한다 ④.

3 항의 경 월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유급사 무직 원수의 계산에있어서는유급의근 로일 수를모 두합 하여매 월30일 까지는1 인으로 하며 30일 을초과하 는 때 에 는매30 일까지마 다 1 인을.

### 가 한다 ■ 제

3 1조 ( 規 ) ①정당 은당원 의정예화와 정당외재 정자립 을도모하 기위 하여당비납 부제 도를설정 · 운영 하여야 한다 ②정 당의당 원은같 은정 당의 ㅁ인의 당비 를부담할 수없으며 ㅁ타인의당 비를부담

자와타인 으로서여금자신 의당 비를부담하게한 자는 당비를 낸 ㅁ인된.

부 ㅁ년 ㅁ당해정당의 당원자 격이정 지된다 ③ㅁ 비납부의무 를이 행 하지아 니하 는 당원 에대 한권리 행사에 제한 ㅁ 제명 및제 2 항의규정에 의한당 원자격 의정지 등 에관 하여필요한사항 은당헌 으로 정한다 ㅁ.

32조( 서면결 의의금지 ) ① 대의기관의결 의 와소 속국회 의 ㅁ의제 명에.

한 결 의 는 서면이나대리 인에의 하여 의결 할수없 다 ㅁ - 59 ㅁ ②대의기관의결 의 는 「전자서 명법」 제2조( 정 의) 제 3호.

### 규 정 의 한공인 전자

서 명을 통 하여의결할수 있으며 ㅁ 그구체 적인방 법은당헌으로정한 다 ㅁ 제33조( 정당소 속국 회의원 의 제명) 정당이 그소 속 국회의 원을제명 기위해서는당헌 이정하는 절차를거 치 는 외에.

소속 ㅁ회의 원전원 의 2분 의 1 이상 의찬성이 있어야한다 ㅁ 제34조( 정당외재정) 정당 외재.

및수입 · 지출등 재정에관한 사항은 따로 법 률로정 한다 ㅁ 제35 조( 정기보 고

) ① 중앙 당 과시 도당. 매년12월31 일현재 로그당원 수및 활동개 황을다음 연 도2월15 일( 시 · 도 당은1 월 31일) 까 지관할선.

관 리위 원 회에보고 하여야 한다 ㅁ 이경우중 앙당 은당 해연도 의정책 추진내용과 그추 진 결과 및다 음연도 의주요정책 추진 계획을중앙선거 관리위원 회에보 고하여 야 한다.

② 중앙 당 ㅁ시 · 도 당은 제 17 조( 법정 시 · 도 당수 ) 및제 18조( 시 · 도당 의법 정 당원 수) 의요건에흡결이 생길때 에는 흡결이생긴 날부터14일 이내.

관할선거관리위원 회에 이 를보고 하여야 한다 ㅁ ③제 38조( 정책연구 소의설치

의한정책 연구소는매년 12월 31일현재 로연 간활동 실적을다 음연도 2월15일 지 중앙선 거관리 위원회에 보고 고 해 정 당인터 넷홈페 이지 에 게시하 는등의 방법 으로공개 여야한다 ④ 중앙 선거 관 리위원 회는 3항의 규정 에 의하 여보고받은 연간활동실적 을당해 인터넷홈페이 지등을

### 용 해 공 개 하

여 야한 다 제36조( 보고또는 자료등의 제출의 요구)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읍·면·동 선거관 리위 원회를제외한 다) 는감독상필 요 한때에는정당에대하여 보고또는 장부·서류 그밖의자 료제출을요구 할수있다 ④ 다만 당원명부 는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6장 정당활동의보장제 37조( 활동의자유) ① 정당은 헌법 과법률에의하 여활동의자 율을

### 진 대 ② 정당이특정정당

이 나공 직 선거의후보 자( 후보자 가되고자하는자 를 포함 한 다) 를 지지·추천하 거나 반대함 이없이 자당의정. 이나정치적 현안에대한 입 장을인 쇄물·시설 물·광 고등 을이 용하여 홍보하는행위와당 원을 집하기위한 활동( 호별방문을제 한다) 은통상 인정당활동으로 장되어야한다 ③ 정당은 국회의원지 역구및 자치구·군·읍·면·동 별로당원협의회를둘수있다 ④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운 영을위 하여당원협의회등의 사무소를둘 수없다 제 38. ( 정책연구소의설 치·운영) ① 「정치자금 법」 제 27조( 보조금의배 분) 의 규정 - 60 제1 판법령에 의 한 보조 배 분대 상 정당( 이하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 이라한다) 은정책의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위하여중앙당에별도법인으로정 책연 구소( 이하 “정책연구소” 라한다 ) 를설치·운영하여야한다 ② 국가 는정 책연 구소의 활동을지원할수 있다 제39조( 정책 토론회 ) ① 「공직선 거법」 제8 조 의7( 거 뺄 토 론위원회) 의규정에 의한중 앙선거 방송토론회위원회 는 보조 금 배분대 상정당이방송 을통하여정 강·정책 을알릴 수있도록하기위하 여임기 만료에 의한공직선 거 ( 대통령의원위 로인한선 거및 재선 거를포 함 한다) 의 선거 일 전90일( 대통령의원 위로인한선 거및재선거에있어 서는 그선거의실 시사유

날) 부 터 선거일 까지 를제 외한기간중연2 회이상중 앙당 의대표자 · 정책 연구 소 의소 장또는중앙당의대표 자가지 정 하는.

를초 초하여 정책토 론회 ( 이하 “정책토론 회” 라한 다 ) 를 개최하여, 한다■ ② 공 영방 송 사( 한국방 송공사 와 「 방송문 화진흥회.

」 에의 한 방송문화진흥회가최 다출자 자인방송사업자를말 한 다■ 이 하이조 에서같 다) 는정 책토론 회를당 해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 방송하 여야하 며,그 비용. 공영방송사 가 부담한다■ ③ 「 공직 선거법」 제82 조 의2(선 거방송 토론위 원 회주관대 담 · 토 론회) 제7항 내지제9 항 · 제 12항및 제13 항의규 정은정 책 토 론회 에이를 준용한 다■ 이 경우.

대 담 · 토 론회” 는 “정책토론 회” 로, “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는 “중앙 선거 방송 토 론위 원회” 로한다■ ④정책토론 회의개 최 · 진행 및고 지그밖에 필요 한사항은중 앙선거 관 리위원 회규칙 으 로정.

다■ 제40 조( 대 체정 당의금지)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

## 해 션 때 에 는

해 션 정 령의강령 ( 또는 기본 정책 ) 과동일하거나유 사한것으로정당 을창당 하지못 한다 ■ 제4 1 조 ( 유사 명칭등 의사용금 지) ① 이법에 의하여등 된정당이아니 면 그명칭 에정당임을 표시하 는문자를 사용하지못 한다.

## ② 현

### 법 재

판소의결정에 의 하여 해 산 된정 령의명칭 과같은명.

은정당의명칭으로다 시사용 하지 못한다■ ③ 창 당 준비위원 회및정 당의명칭( 약칭 을포함 한 다) 은이미 신고된 창당준 비위.

회및등록된 정당이사용중인명칭 과뚜 렷이구별되 어 야 한다■ ④ 제44조 ( 등록 의취 소 ) 제1 항의규정 에의 하여 등록취 소된 정당의명칭과같 은명 칭은등 록취소 된 날부 터최 초로실 시하.

입기만료에의한 국 회 의원선거 의선 거일까지정 당 의 명칭으 로사용할수 없 다 ■ 제 42 조( 강제 입당등의금지) ① 누구든 지본인의자유의사에 의하는승낙없이정 당 가입. 는탈. 을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당 원의 제명처분 은그러 하지아 니하다■ - (1

■ 제2)누구든 지2이상의정당의당 원이 되지못 한다 ■ 제4 3조( 비밀, 수의의무 ) 각급선거 관리 위원회위원과 직원 은재 직중은 물론 퇴직후 라도직 무상의비 밀을 엄 수하여야한다■ 제7 장정 당의소멸제4 4조( 등 록의취 소) ① 정당.



나해당 하는때에 는당해 선 거 관리위원 회는 그등록을 취 소한 다 1 제17 조( 법 정 시· 도당 수) 및제 18조( 시· 도당의 법 정당 원수 ) 의요 건을구 비하지 못하.

된 때 2 다만 요

건흡 췌이공직선 거 의선 거일전 3월이 내에생긴. 예는선 거일후

3까지 지 그외의 경우

에 는 요건흡결시

부 터3 월까지 그취소 틀유예한

2 2 2 최근4년

간 임기 만료 예의 한국회의 원선거또

임 기 만료예의한

지한자 체단체의장 선 거나 시· 도 회의의 원선거 예참여 하지아니. 3 임기만

료예의 한국 회의원 선거

에 참 여하여의석

을 얻지 못하 고유 호투표총 수의100분. 2이상 을득표

하 지 못한때2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당.

선 거 관리위원회

는지체 없이그뜻을 공 고하 여야한 다 제 45조( 해산 ) 1정

당은그 대의 기관의 결의

로 써 해산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 에 의하 여정당 이해산 한때에는 대표. 는지체 없이그뜻 을관할 선거 관리위

원 회에 신고 하여야한 다 제4.

조( 시·도

당창당승 인의취 소) 중양당

또 는 그창당준비 위 회

는 시· 도당창 당승인 에대한취.

사 유 의절차를당

헌 또는 창당준 비위원 회규약에. 하여야하며 당헌또는규약 에서정한의 의 사 유로

창당 승인을 취소하는때에 는중양당.

는 그 창준위 회대의 관에서투표로

결정하여야한다 제 47 조( 해 산공고 등) 제45. ( 자. 해산 ) 의신고가있거 나헌 법

재 판소의해 산결정의.

지나중 양 당또는 그창

원 회 위·당·당의 취소 통>1가있는때에는당해선거 관 리 위원 회는그정당 의 등록 을 말 소하 피체없 이그뜻을 고하여 야한다

■ 제4 8조 ( 해산 된경

우등의 잔여재 산처분 ) ①정 당이제44조( 등 록의취 소) 제1 항의

정 에의하여등 록이취 소되 거나

45 조( 자진 해산) 의규정에의하여 자진해산 한때에 는그잔여재산은 당헌이정하 는바에 따 라처분 한다 ■ ②제1 항의 규정에의 하여처분되지아니 한정당의잔여재 산및헌 법 재 관 소의해산 결정에의하여 해산된정당의잔 여재산은국 고에귀 속한 다■ ③제2항 에관 하여필 요한 사항은중앙선 거관리위원 회규

으로정 한다■

62 ■ 제4장 별 제4

9㉔ 당대표 경 선등 의자 방 회) ① 정당의대 자 · 표로선출 하는당 자 (당 자의선 출을위한

거 인단을포함한다 ■이 하같다) 의선출을 위한선 거( 이 하 “당대표경선등 ” 이 라 한다) .

관 련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 에해 당하는자는 5 년 이하 의정 역또는 1 천만 원이하 의벌금 에처한다■1 ■ 후보자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또는당 선인을폭행 · 협박또 는 유인

거 체포 · 감금한자 2■ 선 거운 동또는교통 을 방 해하 거나 위계 · 사술그밖에부정 한방법 으로당대 표경선 등의자 율방 해한자 3■ .

무 · 고용 그밖에관 계로인 하 여 자기의보 호 · 지휘 · 감 독을받는자에게특정후보자 를 지지 · 추천하 거나 반 대 하 도록 강요한자 ②당대 표경 선등과 관련하 여다수 인이선거 운 동 을위 한 시설 · 장소등에 서위협 한물건 을던

따<sub>라</sub> 처 별 한

한 때 ..... 에

나 다 ..... 음

각 호 ..... 의

구 분 ..... 에



\_\_\_\_\_

\_\_\_\_\_

\_\_\_\_\_



자 는3년이상 의유기

징역2■ 다 른사 람을지휘 하거나 사반. 앞.  
서행동한 자 는7 년이하의 징역3■ 판. 위.  
에동조하 여 행 동 한자는2년 이 하의징역 제50조 명. 권.  
배수및이해유도죄) ①당대표경선등과관련 하여다

음 각 호 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자는3년이하 의징역 또는600 만 원이하 의벌금 에처한 다■1 ■정당의 대표자또 는당. 차로선 출되거나 개가되

지 못 하 게하거나선거인( 당대표경선등의선거인명 부에 등 재된 자를 말한다■ 이하이 쪼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하게하거나 하지아 니하게 할목적으로후보자( 후보자 가되고자하는 자를 포함 한다 ) ·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또는참관인에게 금품·향음· 밖에서산 상의이 이나 공사의 적을제 공하거나그제공 의의사를. 시하거나그제공 을약속 한자■ 다 만 1중. 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정하 는바에따 라 예. 으로제공할 수있는음식 물 은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 1 호 에규정 된이익이. 직의제공 을 받 거나그 제공의의.

표시를승 낙한자 ②제1 항 제1 호 ·제2 호에규정 된 행위에관하여지 시·권 유· 요구하거나알선한자는5년이하의징역또는1 천만원이하의 벌금 에처 한다■ 제51조 ( 당대표 경선.

의배수및이 해유도죄 로인한이 익의몰수 ) 제50 조( 당대. 경선등의 배수및이 해 유도 죄) 의 죄를범 한 자가 받은이 익은 이를몰수 한다■ 다만 1 그 전부또 는 일부를.

수할수없을 때에는그가 액을 추정한다 ■ 제52조 ( 당대표 경선 등의허위 사실 공표죄) . 당대표경 선등과관 련하여당 선되거나

63 ■ 제법되게 할목적으로연설 ·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 선전문 서그 밖의방법으로후 보자에 게유리 하 도록.

보자■그의 배우자 또는직 계존 · 비속이 나형제자 매의소속 · 신분 · 직 업 · 재 산 · 경 력 · 학 력 · 학위 또는상 벌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공표 한자. 허 위의 사 실 을게 재한 선전문 서를 배 포 한자 ( 배포할 목 적으로 소지한자 를포함 한다 ) 는3 년이.

의징역또는6 백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② 당대표경선 등 과관 련하여 당 선되 지못하 게 할목.

으로연설 · 방송 · 신문 · 통 신 · 잡 지 · 벽 보 · 선 전문서 그밖. 방법으 로후 보자

도 록 후보자 그의배 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에 관

여 허 위 의 사실 을 공표 한 자 와 허 위 의 사실 을 게재 한 선전문 서를 배 포함 자( 배 포함 목적으

소 지 한 자 를 포함 하는 배 하

의 정 역 또는 1 천 만 원 이하 의 벌 금 에 처 한다 ■ 제 53 조 ( 위 법 으 로 발 기 인 이 나 당 원 이 된 죄 ) 제 22 조 ( 발 기 인 및 당 원 의 자 격 ) 제 1 항 단 서 의 규 정 을 위 반 하 정 의 발 기 인 이 나 당 원

한 자 는 1 년 이하 의 징역 이 나 100 만 원

이 하 의 벌 금 에 처 한다 ■ 제 54 조 ( 입 당 강 요 죄 등 ) 제 4 조 ( 강제 입 당 의 금지 ) 제 1 항 의 규 정 을 위 반 하여 정 당 가 없 는 탈 당 을 강 요 한 자 는 2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00 만 원 이하 의 벌 금 에 처 한다 ■ 55 조 ( 위 법 으 로 정 당 가 없 는 탈 당 을 강 요 한 자 ) 제 2 항 의 규 정 을 위 반 하여 2 이상 의 정 당 의 당 원 이 된 자 는 1 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 만 원 이하 의 벌 금 에 처 한다 ■ 제 56 조 ( 당 원 명 부 강 제 열 략 죄 ) 당 원 명 부 의 열 략 을 강 요 한 자 는 5 년 이하 의 징역 에 처 한다 ■ 제 57 조 ( 보고 불 이행 등 의 죄 ) 제 36 조 ( 보 고 또 는 자 료 등 의 제 출 의 요 구 ) 의 규 정 에 의 한 선 거 관 리 위

원 의 보 고 또 는 자 료 제 출 의 요 구 에 정 당 한 사 유 없 이 응 하 지 아니 거 나 이에 위 의 보 고, 기 재 를 한 또 는 제 35 조 ( 정 보 고 ) 제 1 항 내 지 제 3 항 의

규 에 의 한 보 고 를 하 지 아니 하 거 나 그 보 고 서 에 허 위 의 기 재 를 한 자 는 2 년 이하 의 징역 이 나 200 만 원 이하 의 벌 금 에 처 한다 ■ 제 58 조 ( 공 무 지 득 한 사 실 누 설 죄 등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 는 자 는 3 년 이하 의 징역 이 나 금고 에 처 한다 ■ 1 ■

제 조 ( 당 원 명 부 ) 제 3 항 후 단 의 규 정 을 위 반 하여 당 원 명 부 에 관 하여 지 득 한 사 실 을 설 한 자 2 ■ 제 43 조 ( 비밀 엄 수 의 의 무 ) 의 규 정

을 반 하 여 직 무 상 의 비 밀 을 엄 수 하 지 아니 한 제 59 조 ( 허 위 등 록 신청 죄 등 )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는 자 는 2 년 이하 의 징역 이 나 200 만 원 이하 의 벌 금 에 처 한다 ■ 1 ■ 허 위 로 제 2 조 ( 중 앙 당 의 등 록 신청 사 항 ) 또 는 제 13 조 ( 시 · 도 당 의 등 록 신

청 사 항 ) 의 등 록 신청 을 자 제 1 편 법 령 2 ■ 허 위 로 제

14 조 ( 변 동 의 등 록 신 청 을 한 자 ) 제 37 조 ( 활 동 의 자 유 ) 제 3 항 단 서

규 정 을 위 반 하여 시 · 도 당 하 부 조 직 의 영 을 위 하여 당 원 협 의 회 등 의 사 무 소 를 둔 자 ② 제 41 조

1 편 법 령 2 ■ 허 위 로 제

14 조 ( 변 동 의 등 록 신 청 을

한 자 ) 제 37 조 ( 활 동 의 자 유 ) 제 3 항 단 서

규 정 을 위 반 하여 시 · 도 당 하 부 조 직 의 영 을 위 하여 당 원 협 의 회 등 의 사 무 소 를 둔 자 ② 제 41 조



지) 제1 항또는제2항

규 정 을위반자1.이하 의 징역이  
나 100만 원이하 의벌금 에처한다.

제 6 0 (각종무.태죄) ㉠제24

조 ( 당 원명부 ) 제1 항또는제

조 ( 당원명부의 정을 위 반)하여당원명부나탈명  
명 부 를 비치하지아니 한자 는1 년이 하의징역 또는50 만원이상 300만원  
이 하의 벌금 에처한 다

㉡제25 (탈 당) 제 3항의 규정 을위반

한자는1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제27조 ( 당 원명부등

인제) 의규정을위반하여관 련서 류와인 등을인계하지아니 한자 는2년이하의징 역또  
는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 한다 ㉣ 제61 조( 창당 방해등죄) ①위계또는 위력 으로써창  
당준비활동을방해하여 창당준 비위 원회의기능 을상실 또는일시정지하게한 자는7년  
하의 징역.

는3천 만원이

하의벌 금에

처 한 다 ㉤ 위계는력으로써정당

활 동을 방해하 여정당 의기능을

실 또 는사형지계.자 제 1 항에

규정하 는형( 형) 에 처한 다 ㉥ 제 62조 ( 과태료

부과 · 징수등 ) ①다 음각호 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 행위를 한자 는100만원

하의과태료에처한다 1 ㉦ 제14조( 변경등록) 의규정에위반한변경등록신청에 대한

2 ㉧ 제20조( 합당된경 우의등 록신청 ) 제 1 항의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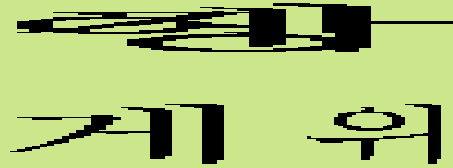
에의한등록신청또는같은조제 4항의규정에의한신고를해대한자3 ㉨ 45 조 ( 정

보고) 제1 항 내지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해

한자 ㉩ 제1 항의규 정에 의 한과태료는중앙선거관 리 위원회규칙이정하바 에의 하여관할선거  
관리위원회 ( 읍

면 · 동선거관리위 원회를제외한다) 가 위 반자에게부과하며,납 부한까지납부하아니 한  
때.







하 고관할세무 서장이

국세채납 처 분의 예에 따라 이종수 대 제2  
 의규정에 의 한 과태료처분에불복이 있는자는 처분의 지를 완  
 터20일이 내 에 관 할선거관 리위원회, 이의 제기  
 수있다 ④ 제2 항의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 분을받은, 개, 항의  
 정에의하 여 이 의 제기한때에는관할선거 관리위원 회는지체 이관, 법원  
 그사실을 통 보 하여야하며 그통 보를받은 관할법원 은「비송, 전절, 법」

의 한과 태 료

의 재 판 을 한

다 ⑤ 제3항또 는 제4 항의규정에 의한이의제기 또는 재판의진행 은과태 료처분 의 효 력이 나그집 행또는 절차의 속행에영 향을주지 아니.

다 65 제1항제1호 본 문 1년 1 월1일부터시행한 다 ②항 의규정에 의 한지역선구, 거관  
 위 원 회 의직무는각령 이정 하 는날까지당 해 서울특별시 · 부 산시또는도선거관 리위  
 원 회가이 를행한다 ③ 부칙[69 · 1 · 23]①( 시 행 일) 이법은공포한날 로 부터시  
 행한 다 ② ( 경 과조치) 이법시행 당시등록된 정당 이법에의하여등록된 것으  
 로본다 다 만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법정 구당수 와제27조 위, 이의한지구당의, 정당원  
 수는이법 공포 일

로 부 터 2년 이내 에보완하여

야 한 다 ③( 동전)

전 항 의 경우 이에서그 재 보완 없을때에 는당 해선  
 거 관 리 위 원 회는3월의 간 이고 완을명하 고 그기간  
 내 에 보 완이 없을때는 동, 취소 다 ④( 폐 지 법률

) 정 당 의 합

당 결 차 등 에

관 한 법 률은이를폐지한 다 ③ 부칙[72 · 12 · 30] ①( 시행일 ) 이 법 은공포한날로부 터시  
 행 한다 ②( 법 정지구당 등의개편 보완) 이법시 행당시 등록된 정당은이법에  
 의하여등록된것으로 본 다 다 만 제25조의 규정 의한법 정지구당수, 26조의 규정에

의분산요건에 따른 등록청기 타

필요한 절차는 이행

일로부터 6월이 내에 이를 개편·보완하여야 한다 ③ ( 등록 의취 ) 제2항 의 경우  
에 그 기간 내에 개편·보완하지 아니한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는 그 정당의 등록  
을 취소한다 ④ ( 선 거 구 에서 의 궐 할 지 구 당 지 정 ) 제 2 항 의 개편 궐 하 기간 중 궐 하 의 원  
칙

거 법 에 의 한 동일 한 선 거 구 내 에 중 전 의 법 에 의 한 지구당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당해 선  
거 구 내 에 서 그 정 당을 대표 할 지구 당을 지정 할 수 있 다 ⑤ 당 지 부 에 관 한 경과 조  
치 > 이 법 시행 당 시 등록 된 당 지 부 는 이 법 에 의 하 여 등록 된 당 연 락 소 로 당 지 부 의  
대표자 및 연 락 소 책 임 자 로 보 다 ⑥ ( 창 당 활 동 , 간 등 에 관 한 경 과 조 치 ) 이 시  
행 당 시 신 된 창 당 궐 하 위 원 회 의 활 동 기 간 은 제 9 조 제 2 항 의 규 정 에 불 구 하 고 당 해  
창 당 준 비 위 원 회 결 성 신고 일 로 부 터 1 년 으 로 하 고 다만 그 기 간 이 이 법 시행  
일 로 부 터 6월 을 초과 하 는 경 우 에 는 그 기 간 은 이 법 시행 일 로 부 터 6월 로 한 다  
⑧ 제 8 조 3 항 규 정 에 의 한 변 경 신 고 는 이 법 시행 일 로 부 터 2 주 일 안 에 하 여 야  
한 다 ⑨ 부 칙 [ 73 · 6 · 14 ] 이 법 은 공 포 한 날 로 부 터 시행 한 다 ⑩ 제 1 편 법 령 부  
칙 [ 80 · 11 · 25 ] ⑪ 이 법 은 공 포 한 날 로 부 터 시행 한 다

⑫ 제 43 조 제 2 항 의 규 정 은 헌 법 부 칙 제 7 조 의 규 정 에 의 하 여 해 산 된 정 당 에 준 용  
한 다 ⑬ 부 칙 [ 88 · 8 · 5 ] 제 1 조 ( 시행 일 ) 이 법 은 1988 년 9 월 1 일 부 터 시행 한 다  
⑭ [ 단 서 생 략 ] 제 2 조 내 지 제 8 조 생 략 부 칙 [ 89 · 3 · 25 ] 이 법 은 공 포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 ⑮ 부 칙 [ 93 · 12 · 27 ] ⑯ ( 시행 일 ) 이 법 은 궐 하 날 부 터 시행 한 다 ⑰ ( <  
적용 례 ) 이 법 시행 당 시

등록된 정당에 대하여

여 제 22 조 의 2, 제 24 조 의 2, 제 29 조 의 2 및 제 39 조 의 2 의 개정 규 정 은 당 해 정 당 의 당  
헌 이 개정 된 날 부 터 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 되는 임 기 만료 로 인

국회 의원 선거 의 선 거 기 간 개 시 일 부 터 적 용 한 다 ① 부 칙 [ 97 · 1 · 13 ] 법 [ 97 · 1 · 13 ] ① ( 시행 일 ) 이 법 은 공 포 한 날 부 터 시행 한 다

② 생 략 부 칙 [ 97 · 1 · 13 ] 법 [ 97 · 1 · 13 ] ① ( 시행 일 ) 이 법 은 공 포 한 날 부 터 시행 한 다  
[ 단 서 생 략 ] ② 생 략 부 칙 [ 97 · 12 · 13 ] 이 법 은 1998 년 1 월 1 일 부 터 시행 한 다 [ 단 서

생 략 ] 부 칙 [ 2000 · 2 · 16 ] ① ( 시행 일 ) 이 법 은 공 포 한 날 부 터 시행 한 다 ② ( 정 당 의 유  
급 사 무 직 원 수 제 한 에 관 한

과 조 치 ) 이 법 시행 당 시 등 록 된 정 당 에 대 한 제 30 조 의 2 의 개 정 규 정 은 이 법 공 포 후 6월 이  
경 과 한 날 부 터 시행 한 다 ③ 부 칙 [ 2000 ] ① ( 시행 일 ) 이 법 은 공 포 한 날 부 터 시행 한 다 ④

정당, 지) 이 법시행, 등록된정당은, 제23조의 규정된

시 을이법시행일부 터6월 이내에당 현에 이를정

하 야한다(3)( 읍·면·당연 락소의

등 말소) 이 법시행 전에등

록 정당의 읍·면·당 연락소 에대하 여는 이법

시 일에그등록을말

소 다(부칙)제 1 조(시행일) 이 법은공

포 날부터시행 한다(다만, 제 31조제3항 의개정

규 은 이법시행 후최초 로당내 경선의 실시를공고·결정 한당내 경선부터적용한 다

67 제 2조(정 당에관한경과조치)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 정에 의하여등

록된정당은 제25조 의개 정규정 에의 법정, ·도당수에결이 있는때 에는 이법시

행일부터 180일 이내에보완 하여야한 다(제3조( 당 지부에 관한경 과조

치 이법시행 당시종전의 규정에 의하여등록된 당지부 는이 법의규정에

의, 등록 된시·도당 으로부터 다(다 만, 제13조 의개

정규정에의한등록 신청사 항및 제27조의개정규 정에의 한법정당원 수는이 법시행일

부터180일 이 내 에개편·보 하여야 한다(제 4조( 등록 의취소 ) 부칙제2조

및제3조 의 규정에의 한기간 이내에 법정시·도 당수,

등록신청사 항및법 정당원 수를 개편·보완하지 아니 한정당에대 하여당해 선거관리

위원회가 등록을취소한 다(제 5조( 지 구당에관 한 경과조 치 ) ①이법 시행전

의지 구당,

당원 은그지구당 이소 재하는시 ·도를 관할하 는시·도당의당원 으로부터 다(②

이법시행전의지구당의재산 의 처분에대하 여는제 41조의규정을준용 한다(③ 이

법시행 전의제24조의2 의규정 에의한지 당 의관 련서류는중앙당또는 시·도당에인

계 한다(제 6 조( 정당의 유급사무직 원수, 한에관한적용 례) 이법시행당 시등

록된정 당에대 하여 제30조의 2 의개정 규정은 이법공 포후6월이 경과 날부터

적용한다(제 7 조(지구당등, 말소) 이 법, 전지구당등 ·시·군현은

이 법 시행 전에그등록이말소 된다(제8조( 별칙에관 한 경과조치 ) 이법 시행전 의행

위에 대한별칙의 적용에있 어서는 종전의규정에의한다(제9조( 다른 법 률의개

정) ①방송법중 다음과같이개 정 한다(제8 조제9 항중 “정당( 정당, 에의한

지구당 을포함한다 ) ” 를 “정 당” 으 로한다 (②선 거관리 위원, 중다음과

같이개정, 제4조제8, 중“중앙당” 지부 및

지구당 과구·시·

군 현 소 를 을 “중앙당과 시·도당” 으 로 한다(부 칙(2005. 8. 4 제7683 호

일) 이법은공 또한날부터시행한 다 ②( 창당집회 의공개 에관 한경과 조치) 제10 조( 창당집회의공개) 의개. 규정 에 의한중앙량, 권위인회의량, 집회의공고는「 신문등차취기 능 보에 관한법률」 의시행 전에는 종전의규정에의한 다 ③( 정책토론 회에관 한적용 례 ) 정책토론 회는제39조 ( 정책토론회) 제1 항의개정규정 에불구하 고이법 이 최초로시행되는 연도에 는연 1 회개최할수있 다 ④( 벌칙에관 한경과조치) 이 법시행전의 행위. 대한벌 칙의 적용에있, 서는중 68 제, 법령전의규 에 의

한 때 ⑤( 다른법령과의관 계) 이 법시 행당시다른 법령 에 서종전의규정을 인용하 고 있는 경우에이 법중그 예해 당하는규정이있 는경우에 는종전 의규정 에같음하여 이 법의해 당규 정을인 용 하고있 는것으 로 본다 69 제, 지방자치법 44 제  
◆지방 자치법법률제669호일 부개정20 02. 03 25 법률제, 호일부개정20, 310 7 18 법 률

제7124호( 주민투표법 ) 일부개 정20 04 01 29 법 률제7128호일부개정2 004 01 29 법 률제7362호일부개정 2005 01 27 법 률제7410호 일부개정200 5 03 24 법 률 제7670호법제명변경및 일부개정 200 5 08 04 법 률제 7796호( 국가공 무원. )일부 개정2005 12 29 법 률제7846호일 부개 2006, 01 11. 제 7 제 ( 제 주 특별 자치도설치및국제자 유도시조 성을위 한특별 법) 일부개정2 006 02 2 1 법 률제 7935호 일부개 정2 00 6 04 28 법 률 제7957호 일부개정 2 006 05 24 제 1 장총칙제 1절. 제1 조( 목적) 이, 은지방자치단체, 55와그조 쥔 운영 에

관 한하 향 을정하고, 국가와지 방자치단체와 의기본적관계를 정함으 로써지 방자치행 정의민주 성과능 른성을 도 모하 며지방 의균형 적발. 대한 민국의민주 적 전을기함 을그목적 으로

한 1 [ 전 문개정89 · 12 · 30] 제 2조

( 지방자치단 체의종 류) ① 지방자치 단체는다 음의

2 으 로한다 1 [ 개정 1 994 1 2

2 2005 1 27 200 6 1 11 ] [ [ 시행일] 1 특

별 광

9. 와도및특별 자치도2 시와군 및구 ②지방자치

단 체인 구( 이하 “자치구 ” 라한다) 는특별시 와광역시와관할구역안의구에한하 며, 자 치구와자치 권의 범위 는법령 이정 하는바에 의하여시 · 군과다르게할수있 다 [ 개정 2005 ③제1 . 9. 지방 자치 단체에, 55한목적을55, 55하서필요 55경우에는별도의 특별 55]

방 치단체를설치 할수있다 55

73 제148 ④특별지방



영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 3 ( 지방자치단

체 법인격 및 관할) ①

자 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와 특별 자치 도( 이하 “시·도”

라 다) 는 정부 의 직 할 하 에 두고

시는 도의 관 할 구역 안에

### 군은 광역시 또는

도 의 관 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 구 는 특별 시와 광역시의 관 할 구 역 안에 둔다. [ 개정 94·12·20, 2006.1.11 ] [ [ 시행일 ] ③ 특별 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 구 50만 이상의 시 에는 자치 구 가 아 닌 구 를 둘 수 있고 군 에 는 읍·면 을 두 며 시와 구 ( 자치 구 를 포함 한 다) 에 는 동 을 읍·면 에 는 이를 둔다. [ 개정 94·12·20 ] ④ 제 7 조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설, 원 시 에 는 도시 의, 태 를 갖 춘 지 역 에 는 동 을 그 밖 의 지 역 에 는 읍·면 을 두 되 자치 구 가 아 닌 구 를 둘 경 우 에 는 당 해 구 에 읍·면·동 을 둘 수 있다. [ 신 설 94·3·16, 94·12·20 ] 제 2 절 지방 자치 단 체 의 관 할 구 역 제 4 조 ( 지방 자 치 단 체 의 명 칭 과 역 ) ① 지방 자치 단 체, 명 칭 과 구 역 은 종, 예 외 하 고 이 를 변 경 하 거

나 지방 자 치 단 체 를 폐 치·분 합

할 때 에 는 법률 로써 정 하 되 시·군 및 자치 구 의 관 할 구 역 경 계 변 경 은 대통령 령 으로 정 한 다. ②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지방 자치 단 체 를 폐 치·분, 하 거 나 그 명 칭 또는 구 역 을 변 경 할 때 에 는 관 제 지방 자치

단 의 의 회 ( 이하 “지방 의 회” 라 한 다) 의 의 건 을 들 어 야 한 다. 다만 「 주민 투 표 법 」 제 8 조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주민 투 표 를 실 시 한 경 우 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 개정

99·8·31, 2004.1.29 법률 제 7124 호 ( 「 주민 투 표 법 」 ), 2006.1.11 ] [ [ 시 행 일 ] ③ 자치 구 가 아 닌

구 읍·면·동 의 명 칭 과 구 역 은 종 전 에 의 하 고 이 를 폐 치·분 합 할 때 에 는 행 정 자치 부 장 관 의 승 인 을 얻 어 당

해 방 자치 단 체 의 조 례 로 정 한 다.

다 만 명 칭 과 구 역 의 변 경 은 당 해 지방 자치 단 체 의 조 례 로 정 하 고 그 결 과 를 특 별 시 장·광역·장·도 지 사·특별

자 도 지 사 ( 이하 “시·도 지 사 ” 라 한 다) 에 게 보고 하 여 야 한 다. [ 개정 99·

2005 3 24 2006 1

1] [시행일] ④ 이의구역 은자연 의촌 락을기 준 으로하되 그명 칭과구 역은종 전에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 분합할 때에는당해 지방자치 단체

의 레로정한다 ⑤ 동 · 이에있 어서는행 정능 려와 주민편의 꾀하에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날 예의 하 여하 나의 동 · 이 를2개이상의 동 · 이로 운영하거 나2개이상의동 · 이를하 나의동 · 이로 영 하는 등행정운영 상동 · 이( “행 정동 · 이” 라 한다 ) 를 로둘수 있다 ⑥ 제 5항의행 정 · 이 <기

당해 지방자치체의 조례가 정하 날에의하여하 부조 - 74 제1 편 법령 적을들 수있

5조( 구역변 경 폐치 · 분합시 의사 무 재선승 계) ① 지방자 치단체 의구 역변경이나 폐 · 분합이 있을때 에는새 로그지역을 관할하 게된 지 방자 치단체 가그사무 와재 산을승 계한다

② 1 항의경 우에있 어서지 역에의 한 지방자치

단 체 의 사무및 재 산을구분하기

관 련 때 에는시 · 도 에있 어 서는행정자치부장 관 이 시 · 군및자 치구에 있어서 는시 · 도 지사가 그사 무와재산 의한계 및승 계할지 방자 치단체를지정한 다 [ 개정 94 . 20 99 . 8 . 11] 제6조( 사 소의승 계) ① 지방 자

치 단체 의 사무소의소재지와자치 구가아닌구 및 읍 · 면 · 동 의사 무 소의소재지는종 전 예의 하고 이를변경하거나새 로설 정하 는경 우에는당 해지방자치단체의조 례로 정한다 이 행에있 어서 의동은제 5항의규

정 예의 한 행정동을말한다 [ 개 정94 . 12 . 20 99 9 . 8 . 31 '2005 3 24] [ 시행일] ② 제1 항의조례 는당해지방의회 의 재적의 원과반 수의 성을연 어야한다 [ 개정94 . 12 . 11] 제 7조( 시 · 읍의 처기준) ① 시 는그대부분도, 영대를 원75 이상 이 되어 야 다 ② 다음각 호의 1 에 해당하 는지역은 이 를도농 복합 형태의회시 로할수 있 다 [ 개정95 . 8 . 4

003 07 1 8] 1 제1 항 의규정 에 의하 여설치 된시 와군 을통 합한지역 2 인 구 5만이상 의도시 형태를 갖춘지 역이있는 군 3 인 구 2 만 이상의회시 형태 를갖춘 2개이상의지 역의인구가5만 이상인 군 이 경우군의 인구가15만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요건을 갖추야 대 국 의정 책 으 로인 하여 도시가형성 되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출 장소가설 치된지역으로

만 이상이 고령인 구 15만 이 상의도 농복합 형태외시 의일부인지역[ 신설200  
 3.07.18. ] ③읍은그 대부. 이도시 의형태를갖. 고인구2만이상 이되 어  
 연다. 만. 읍각. 의1 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인구2 만미 만인경우에도읍으 로할수있다. [ 개 정94. 12. 20  
 1. 군 사무소소재지의 면2 읍 이 없는. 농복합 형태외시에. 여서그면중1개 면④읍  
 제99. 8. 31. 읍. 설치 에 의한

### 세 부 기 준 은

대 통령 령 으로정한다. - 75. 제3 절지방 자치 단체의기 능과사 무제 8조( 사무처  
 리의기본원 칙) ①지방자치단 체는그 사무 를처리 함에있 어서주 민의편 의및  
 령증진 을위하여노력 해야한다. ②  
 지 자치단체는조직 및운영 의합 리화  
 에 력하고그규모의 적정화를도모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 체는법령이  
 나 금지 방자치단체의조 례에위 반하여 그사 무를처 리할  
 수없다.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 방자치 단체 는그관할 구역의자치.  
 무와법 령에 의하여지방 자치단체에속하는사 무 를처리 한다. ②제1 항의 규정  
 의한 지방자치단 체의 사 무를예시 하면다 음각 호와같다. 다만, 법 률 에이와다  
 른규정이있는 경우에 는그러 하지아 니하다. [ 개정95. 12. 29, 99. 2. 8] 1. ■  
 지방 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한사무가 관  
 할구역안행정 구역의 명칭 · 위치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 · 규칙의제 정 · 개폐  
 및그운 영 · 관 리다.  
 산 행정  
 기 의조직  
 관 라. 산하행정기관  
 및단체의지도 · 감독마. 소속공 무원의 인사 · 후생복지 및 교육바. 지 방 세 와  
 지방세 외수입 의부과및 징수 사. 예산의편 성 · 집행및회계감 사와재. 관리아  
 행정장비관, 행정 전산화, 정관계선제, 예산관. 차. 적및 민등 특. 관리  
 카. 지 방 자치 단체가필요 하는종조 및통계의 작 성21

주 민 의 복지 증진에관한 위. 권. 지에관한 사 업 나

사 회 복지 시 설. 영. 생활공공 자 의 보호



당등 공공교육 · 체육 · ~~화~~시 설의설 치및관 리다 ~~■~~ 지방 문화재의 지정 · 보존 및관리라 ~~■~~ 지방문화 · 예술의 진흥마 ~~■~~ 지 방문 · 예술 단체 의육86 ~~■~~ 책민위 및 소방 에관한사무 가 ~~■~~ 지역및직장 민방위조직 ( 의용 소방대 를 포함 한 다) 의 편성과 운영및 지도 · 감독나 ~~■~~ 화재예방 및소방 제 10

( 지 방자치단체 의종 류별사무배 분기준 ) ①제 9조의규정 에의한지방 자치단체의사무를 지방자치단 체의종류별 로 배분하는기 준은다음각 호와 같다 ~~■~~ 다만 ~~■~~ 제 9조

2 항제 1 호의 사무2차, 제1제에 통된사무 로 한다 ~~■~~

1 ~~■~~ 시 · 도가 ~~■~~ 행정처리 결과 가2개 이상의 시 · 군및자치구 에미치 는 광역적사무 나 ~~■~~ 시 · 도단위 로동일 한기준 에따 라처리 되어 야할성질의 사 무다 ~~■~~ 지역특성을 살리면서시 · 도단 위로통 일성을 유 지할필 요가있 는사무 라 ~~■~~ 국 가 와서 · 군및자치구간의연락 · 조정등의 사무 ~~■~~ 시 · 군및 자치구가, 책으로처리라, 에부적당한사무바 ~~■~~

2 이상 의시 · 군및 자치구가공 동 으로설치하는것 이적당 하다 고인정 되는규모의 시 설의

설 및관리에 관한사 무2 ~~■~~ 시 · 군및자 치구

제 1 호 에서 사 되쳐 하는 요, 어있는사 무 를제외

한 사무 ~~■~~ 다만 ~~■~~ 안무5만, 상의에대, 여는도가 처 리 하는 사무의 일 부를 직접처리하, 할수다 ~~■~~ 제1 항의 배 분기준 에 따른 지 방자 치단체의종, 별하는데, 령령으로 정 한다 ~~■~~

③ 시 · 도 와 시 · 군및

자 치구 는 그사 무를처리할, 있어서로, 합하지아 니 하도록

하 여야 하며 ~~■~~ 그사 무서로경, 되는우에 시 · 군및 자 치구 에 서 우선 적으로 처리 한다 ~~■~~ 조 가사, 의처리제 한 > 지방 자 치단 체는 다 음각 호에해당하, 국가무를, 리할수없 다 ~~■~~ 다만 ~~■~~ 법률 에이 와 다른 규정이있는, 위에그리, 지아니하 다 ~~■~~ [ 개정 99 · 2 · 81 ~~■~~ 외교 ~~■~~ 국방, 사법, 국제, 국가의존 립 에필요 한 사무 2 ~~■~~ 물 가정 책 ~~■~~ 금융경, ~~■~~ 수입경, 등전국적 으로통일 적 처리 를요 하 는사 무 ~~■~~ 농업 축 · 산물, 양곡의수 급 조절과 수 출입 등전 국 적규 모 의사무 4 ~~■~~ 국 가 종합 경제 개 발계 획 ~~■~~ 국가 하천 ~~■~~

토 종합 개발 계획, 지 정항만, 고속  
국 78 제 1 편법, 행 도·일 반국도

국 립 공원 등 전국적 규모 또  
는 이와 비 슷한 규모 의사 무 51  
근 로 준 측 량 단위 등 전국적  
으 로 준 의 통 일 및 조 정을  
요 하는 사 무 6 우 편, 철 도 등

전 국 적 규모 또 는 이와 비 슷한  
규 모 의 사 무 7 고 도 의 기 술 을  
요 하는 검 사 · 시 험 · 연 구 항  
공 편 기 상 행 정 원 자 력 개  
발 등 지 방 자 치 단 체 의 기 술 및 계  
정 능 력 으 로 감 당 하 기 어 려 운 사  
무 제 2 장 주 민 제 12 조 < 주 민  
의 자 격 > 지 방 자 치 단 체 의 구 역  
안 예 주 소 를 가 진 자 는 그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주 민 이 된 다 제 13

조 ( 주 민 의 권 리 ) ① 주 민 은  
법 령 이 정 하 는 바 에 의 하 여 소 속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재 산 과 공 공 시  
설 율 이 용 할 권 리 와 그 지 방 자 치

단 체 로 부터 균 등 하 게 행 정 의 배 택 을

받 을 권 리 를 가 진 다 ② 국 민 인 주 민 은 법 령 이 정

하 는 바 에 의 하 여

그 지 방 자 치 단 체 에서 실 시 하  
는 쟁 의 회 의 원 및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쟁 선 거 ( 이 하 “지 방 선 거”

리 ~~불~~ 다 제13조의2(주민투표)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 없이 치는지 방자치 단체의 주요결정 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  
1 개. 2004. 1. 29. ~~법제124호~~(주민투

표) ] [ [ 시

행 ~~일~~ 주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94. 3. 16 제13조의3(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 ① 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이 조 및 제13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19세" 이상(이하 "19세 이상"이라 한다)

은 시·도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이 상대 도시에 있어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인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20

분 이하인 하위 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에 상응하는

당 지방자치단체의 청구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사항은 청구 대상에

제외한다. 1 개 정

2. 05. 1. 27. 2006. 1. 1

1] 1 법령을 위 반하는 사항 2 지방

세·사용료·수수료·부담

금·위부과·징수 ~~부~~ 는 감면 에 관한

사항 2. 행정기관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치를 반대하는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

폐를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인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구인 명부에 기

재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표지는 조례의 제정 및 폐안을 작성하

여 제출 하여야 한다

1 개 정

③ 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 예그네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 간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공개된 ~~장~~ 소에 비치 하여

도 하여야 한다 ■ [ 개정 2006.1.11] ④

구인 명 부의서 명에관

하 예의가 있는 자는제3항의기  
간 내에 당 해지 방 자치단 체의장  
에 개의 를 신청 할 수있다 ■ ⑤  
4 항규 정 예의 한 이의신 청이있  
는 때는 지 방자 치 단체의 장은제

### 3 항 의 기간 이 종료된날부

터 1월이 내 예이 를 심사 · 결 정하

되 그신 청 이유있 다고결 정 한때에는청 구인 명부를 수정하 고 이틀이 의신 청한자  
와제2항의규 예의한정 안의 표자 게통지 하여야

하 그 이 의신청 이이유

없 고결 정 한때에 는그뜻

을즉시 의신청 을한자 에게통 지하

여 한다 ■ ⑥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규정에 의 한이의 신 청이

없 경우 또 는동 항 의규정 에 의하

여 행하여 진 모든 이 의신청 에 대하

여 제5항 의규 정 예의 한 결정이 완료된

경 제1 항 의규정예의한 요건을 갖춘때 에는청구를 수리하 고 그 러하지아 니한때 에  
는청 구를각하 하여이 를청 구인 의대표자에 게통지 하여야한다 ■ ⑦. 방자치

단 체의 장은제6

항 규정 에 의하여청 구를

각 하는 경 우에는청 구인

의 표자에 게의견 제출의 기회 를주어 야한다 ■ [

신 ⑧ 지 방자치 단체의

장 제6 항의규정에

의 여청구를수 리한날 부터60 일이

내 예제 의 제정또는개 폐 안을지 방의회 에부의 하여야하며 그

결과를청구인 의대표자에 게통지 하여야한다 ■ [ 개정 ⑨제1 항의규정에 의

행9 세이상의주 민총





사 청구한 사항이다

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 거나감 사중 인사항인 경우에는

그기관에 서실 시한감사 결과또는 감사 증인사실 과감사 종료후그결 과 를통지 하겠다는사실을청 구인의 대표자 에게 지 하여 야하고 당해기관 에 도그사 실을 통지하 여야한 다 [ 신설 20 05 1 27 ] [ [ 시 행일 ] ] ⑤주무부장 관또 시· 도 지사는주민관, 청구를처리 함

에있어서청구인의대 표채 게반 드시증거 제출및 의견진 술의기회를 부여하여 야 한다 [ 신설 [ [ 시 행일 ] ] ⑥주무 부장관 또 는시· 도 지사 는당해지방자 치단 체의장 에게, 3항의규정 에 의한감사 결과 에따라기 간을정하여필요한 조치를 기할수 잇

다 이경 우 해지방자치 단체의장은 이를성실히이행하 여야 하고그조치 결과를 지방 의 회와 주무부장관또는 시· 도지사 에게보고하 여야 대 [ 개정 2005 11 27 ] [

[ 생일 ] ] ⑥주무부장관또는 시· 도 지사는제6 항의 규 정에 의한 조치요 구내 용과당 해지 방자치 단체의 장의조 치결과를청구인 의 대표자에게 서면 으로통 지하고 이 를공 표하 여야한다 [ 신설 2005 1 27 ] [ [ 시행. 11 8 19 세이상의주 민의 사청 구에관하여기타필 요한사항은대 통령령 으로정 한 8 ] 다 [ 개정 11 8 19 세이상의주 민, 감사청구에관하 이를준용한다 이 경 우

“ 췌의 제 정이 나 개폐 ” 를 “ 감 사 ” 로, “ 지방자치 단체의장 ” 은 “ 주무부 장 관또 는시· 도지사 ” 로본 다 [ 개 정 2 005 1 27 2006 1 1 1 ] [ 본 조신설 ] 99, 18 31 ] 제 13 조의 5 (

### 주 민

#### 소 송

) ① 제 13 조의 4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금의지, 예관, 사항, 재 산 의취득 · 관 리 · 처 분 에 관한 사항 당 해지방자.

단 체 를 당사자로하는때 매 · 임차 · 도급 그 밖 의계약의 체결 · 이행 에 관한사항 또 는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과태료 등공 금 의부과 · 징 수 의 해태에관 한사항 을감사청 구한주 민은다음 각 호 의어느하 나에해당 하는경 우에그감 사청구 한 사항 과관련

는 위 법 한행위나해태사 실에 대하여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장( 당해 사항의사무 처리에 관한권 한을소속기 관의장 에게 위임 한경우에는 그소속기관의장을 말한다) 이 하이조 및제13 조 의 6 에서 같다) 을상 대방으로소송 을제 기할수있다 1 주

지사가감 사청 구를수리 한날 부터60일( 제13조의 4제3항단서 의규정에의 하여 감 사 기간 이연장 된경 우에는 연장기간 이종료 된날을말한다 ) 을경과 하여. 감 사 를 종료하 지아니 한경우 2 제13조의4제3항및제 4항의 규정 에의한감. 결과 또는조 6항의규정에의한 조치요구에불복이있는경우3 제13조4 제 6 의규정에의 한주무부장관또는 시·도자의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 체의.

이이행하지아니한경우4 제13조의4제6 항의규 정에 의한지방. 치단체의장의이행 조치에불복이있는 경우②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주인이제기할수있는소송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 정 1 당해행위를계속할 경우. 복이곤란한손해를발생 시킬우려가있는경우 에는당해행 위. 부또는일 의중지를구하 는소송2 이행처분인당해 행위의취소또는변경 을구.

거나효력의유무또는존 재여부 의확 인을구하. 소3 당해 해태사실의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4 당해지방 자치단체의장 및직원 지방.

회의원 당해행위와관련 이있는 상대 방에게손. 배 상청구또는부당이득 반환청구할것을요구하 는소송다 만. 해지방자치단체 의직원이 「지 방계정법」 제9조또는 「회 계관 계직원등의 책임.

관한법률」 제4조의규정에의하여변상책임을 저 야하는 경우 에는당해. 상명령을 할것을요구하 는소송을말한다. 82 제1 편 법령③제2항 제 1 호의중지청 구소.

은당해행위를중지함으로써 생명또 는신 체에대한. 대한위해발생의우려가있거나그밖 에 공공복리를현저하게저해할우려 가있는때 는이.

제기할수없다 ④제2 항의규 정에 의한소송.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날부터90 일 이내에이청제기하여야 한 다 1 제1 항제1호의 경우. 당해60 일이종료된날( 제 13조의4제3항단서 의 규정에의하여감사 기 간이연장된 경우 에는연장기간이종료된 날을 말한다) 2 제1 항제2호 의경.

: 당해감사결과또는조치요구내 용에대 한통 지를받은. 3 제1 항제3호의경우. 당해조치요구 시지정 한처리기간이 만료된날4 제1 항제4호의경우. 당해 이행조치 결과에대 한 통지를받은날5 제2항각호의소송이계속중인때 에는다 른주민은 동일한사항에대 하별도의소송을제기할 수없다 6 소송의 계속. 에소송을제기한주민이사 망 하거나제외 의규정에 의한주민 의자격을잃 은때. 는소송절 차는 중단된다 소송 대리인이있 는경. 에도 또한한다 7 감사청 구에연서한다른주민은제 6항의규정에 의 한사유가발생. 사실 을안 날부터6월 이내에송 절차.

수계( 수계) 할수있다 이기 간이 내에수계. 수계) 절 차이루어지지아니 할경우당해 소송절 차는종료된다 8 법원은제 6항의 규정. 의하여소송이중단된경우에는감사 청구에연한다른주민에게소송 절 차중단의 사유.

소송절차수계의방법을 지체없 이통 지하여야. 다 이경우법원은감사청구에기재된 주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우편 물이 통상 달할 수 있는 때에 감사 청구에 연 서 한다. **다른 주민 제 6** 항의 사유 가 발생 한 자 실을.

것으로 본다. **⑨ 제 2** 항의 규정 에 의한 소송 은 당 해 지방 자치 단체 의 사. 소재지 관 할 하는 행정 법원 ( 행정 법원 이 설치 되 지 아니 한 지역 의 경우에는 행정 법원 의 권한 에 속 하는 사 건. 관할 하는 지방 법원 본원 을 말한다 ) 의 관 할 로 한다. **⑩** 당해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은 제 2 항 제 1 호 내 제 3 호

규정 에 의한 소송 이 제기 되 어 그 소송 의 결과 에. 라면 또는 이익 의 침해 를 받을 제 3 자 가 있는 경우 는 그 제 3 자 에 대 하여 **제 2** 항 제 4 호 의 규 정 에 의한 소송 이.

기 된 경우 에는 당해 직원 · 지방 의회 의원 또는 상대방 에 대 하여 소송 지 피 하여 줄 것을 법원 에 신청 하 여야 한다. **⑪** 제 2 항 제 4 호 의 규 정 에 의한 소송 이 제기 된 경우 에는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이 소송 을 지 신청.

당해 소송 에 관한 손해 배 상 또는 부당 이득 반환 구 권 의 시 효 중단 에 관 하여 「민 법」 제 168 조 제 1 호 의 규 정 에 의한 청구 로 본 다. [ 개 정 2011. 8. 31. 제 12 회 제 1 회 의

정 에 의 한 시 효 중단 의 효력 은 그 소송 이 종료 된 날 부터 6 월 이내 에 재판 상 청.

**제 12** 회 제 1 회 의 정 과 산 절 차 참 가 **제 13** 회 제 1 회 의 정 과 압 류 또는 가 압 류 **제 14** 회 제 1 회 의 정 을 하지 아니 하 면 그 효 력 이 생 기 지 아 니 한다. **⑬** 국가 **제 15** 회 제 1 회 의 정 방 자 치 단 체 및 감사 청구 에 연 서.

다 른 주민 제 10

항 의 규 정 에 의 하여 소 송 고 지 를 받 은 자 는 법원 에 게. 원 소 송 에 참 가 할 수 있다. **⑭** 제 2 항

의 규 정 에 의한 소

송 에 있 어서 당 사 자 는 법원 의 허

를 얻 지 아니 하고

는 소 의 취 하 **제 15** 회 제 1 회 의 정 의 화해 또는 청 구 의 포 기 를 할 수.

다 **제 16** 회 제 1 회 의 정 이 경 우 법원 은 허

가 하 기 이전 에 감

사 청구 에 연 서 한 다른 주민 에 게 이를 통 지 하여.

하 며 **제 17** 회 제 1 회 의 정 통 지 한 때 부 터 1 월 이내 에 허 가 여 부 를 결정 하여야 한다. **제 18** 회 제 1 회 의 정 위 통 지 에 관 하 여 는 제 8 항 후 단 의 규 정 준 용 한다. **⑮** 제 2 항 의 규 정 에 의 한 소송 은 「민사 소송 등 인 지 법」 제 2 조 제 4 항 의 규 정 에 의 한 소 정 의 비 재 산 권 을 목 적 으 로 하는 소송 으 로.

다 **제 19** 회 제 1 회 의 정

소 송 을 제기 한 주 민 은 승 소 ( 일부 승 소 를 포함 다 ). 경우 당해 지방 자치 단체 에 대 하여 변 호 사 보 수 의 소송 비 용 **제 20** 회 제 1 회 의 정 감사 청구 절차 의 진행 등 을 위 하여 소요 된 여 비 그 밖 에 실 비 의 보 상 을 청구 할 수 있다. **제 21** 회 제 1 회 의 정

체는 청구된금액의 범위 안에서당해 소 송 을진행하 는데객관적 으 로소요된 것 으 로 인정되 는금액을 지급, 여야한다 ■ ⑰ 제 1 항의규정 에 의 한소송에 관하여 이법에 규정된것 을제외하 고 는 「행정소 송법」에 의한다 ■ [ 개정 2000.12.20 ]

■ 1 ■ 2기 [

[ 시행일 2000.12.20 ] 제 1 3 조 의 6 ( 손해배 상금등의

불구등) ① 지방 자치 단체의장은 제 13 조의 5 제 2 항 제 4 호 본 문 의 규 정에의한 소송에대 하여, 해배상또 는부 당 이득반환의 청 구 를명하는 판결이 확정된때 에는 당 해 판 결 이확정된 날부터60 일이내 를기한으 로하여 해당당 사자에

그 판 결에하여

결정된손해배 상 금또 는부당 이득반 환금의지

을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 배상금또는 부당이득반환금 을지불하여 야할 당사 자 가지방 자치단 체의장

경에는당해지방 의회 의장이그지 불 을 청구하여 야한다■ ② 지 방 자 치 단체는제 1 항의규 정에의하여지불 청구 를 받은자가동 향 의 기한이내 에손해 배상금또 는부 당 이 득 반 환금을지 불하지아 니한때 에는손해 배상 · 부당이 득반환

청 구 를목적으로

하 는소 송을제기하여 야한 다■ 이 경우그 소송의상

방 이 지 방자 치단체 의장

인 경 우에는당해

지 방 의 회의장이당 해 지방 자치 단체 를대표한 다■ [ 본

신 설 2000.5.1 ■ 2

7 ] [ [ 시행일

2000.6.1 ■ 1 ] ] 제 1 3 조 의 7 ( 변상 명령등) . 지방자 치단체

의 장 은 제13 조 의 5 제2

항 제 4 호 단서 의

규 84 제 1 편법 령 정에 의한소 송에대 하여변상

명령 하는판 결이확 정된때 에는당해판결이확정 된날부 터60 일이내를 한으로하여

당당사 자에게그 판 결 에의하여결정된 금액의변상명령을하 여야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 에 의하 여변상 명령을받은자 동향 의기한 이내에만

금을지불하지아니한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예, 따라이를징수 할수있다■ ③ 제 1

항 의규정에의하여 변상명령을받은자는 이에불복하는 경우행정 소송을 제기 할수있 다■ 다만, 「정심 판법」 에의한행

심 판 청구제기

[ 개정 ] [ 본조신설 20 05 1 2 7 ] [ ]

행 일 제 1 3 조 의 8

( 주 민 소 환 ) ①

주 민 은 당 해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지 방 의 회 의 원 <

비 례 대 표 지 방 의 회 의 원 을 제 외 한 다 ) 을 소 환 할 권

를 가 진 다 ② 주 민 소 환

의 투 표 청 구 권 자

· 청 구 요 건 · 절 차 및 효 력 등 에 관 하 여 는 따 로

률 로 정

한 다 ■ [ 본 조 신

설 제 1 4 조 ( 주 민 의 의 무 ) 주 민 은 법 령 이

하 는 바 에 의 하 여 그 소 속 지 방 자 치 단 체 의 비 용 을 분 담 하 는 의 무 를 진 다 ■ 제 3 장 조 례 와

규 칙 제 1 5 조 ( 조 례 ) 지 방 자 치 단 체 는 법 령 의 범 위 안 에 서 그 사 무 에 관 하 여 조 례 를 제 정

할 수 있 는 다 ■ 다 만 주 민 의 권 리

한 또 는 의 무 부 꾀 관 한 사

항 이 나 별 칙 을 정 할 때 에 는 법 률 의 위 임 이 있 어 야 한

■ 제 1 6 조 ( 규 칙 ) 지

방 자 치 단 체 의 법 령 또

는 조 례 가 위 임 한 범 위 안 에 서 그 권 한 에 속 하 는 사 무 관 하 규 칙 을 제 정 할 수 있 다 ■ 제 1

7 조 ( 조 례 와 규 칙 의 입 법 한 계 ) 시 · 권 및 자 치 구 의 조 례

규 칙 은 시 · 도 의 조 례 나

규 칙 에 위 반 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 제 1 8 조

(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신 설 및 변 경 시 의 조 례

· 규 칙 의 시 행 ) 지 방 자 치 단 체 가 분 합 하 여 새 로 운

방 자 치 단 체

가 설 >

되 거 나 지 방 자 치 단 체 의 격 이 변

된 때 에 는 당 해 지 방 자 치 의 은 필 요 한 사 항 에 관

하 새 로 운 조 례 또 는 규 칙 의 제 정 · 시 행 될 때 까 지

래 그 지

역 에 시 행 되 던 조 례 또 는 규 칙 을 계 속 시 행 할 수 있 다 ■ 제 1 9 조 ( 조

외 규 칙 의 제 정 절차 등 ) ① 조 례 안 이 지 방 의 회 에 서 의 결 된 때 에 는 의 결 은 의 결 된 날 로 부 터

치단체의장에게이송하여야한 다 ②지 방자치 단체 의장이제1 항의조례안을이송받  
은때 에는20일이내에이를 공포

85 ■지방자치법 하여야한다 [ 개정 4

3 · 16] ③지방자치 단 체의 장은 이송 받은조례 안에대하 이의가 있는때  
에 는 제 2항 의 기 간 내 에  
이 유 를 붙여지 방의회 로환부 하고그재의를요구할수 있다 ④ 이경 우지방자  
단체 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 에대하여

는조례안을수정하여재의를요구할 수없다 ④ 제3항의규정에의한 재 의 의요구 가있  
을 때 에 는지방의회는재의에 붙여재적 의원과반수의출석과 출석 의원3분의 2  
이상 의찬성으로진과같은의결을하면 그조례안은조례 로서확 정된 다 ⑤지방자치단  
체의장 이제 2항의 기간내 에 공 포나재의의요구를하 지아니한 때에도그조 례안  
은 조례로써 확정

다 ⑥지방 자 치단체의 장은제4항 과제5항의규정 에의하 여확정된조례 를지체없 이  
공포 하여야한다 ⑦ 제 ⑥항에의하여 조 례가확정 된후 또는제 4 항에의한확 정조, 가지  
방 자치단체 의장에 게이 송된후5. 이내에서방자치단체 의장이공 포 하여아니할때에 는지  
방의회 의 의 장이이를공포 한다 ⑦ 조례와규 칙은특별한 규정

없는 한공포한날 로부 터 20일을경 과함으 로써효 력을발 생한다 ⑧조례와규칙  
의 공포에관하 여필 요한사 항은대통령령 으로서정한다 제 20조 ( 조 례위반에대  
한과태료) ①지방자치 단체는조례 로써

레위반행에대하여 1 천 만원 이하의과태료 를정 할수있 다

제1 항의 규정에의

과태료는당해지 방자 치단체의조 례가정하

바에따라 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 또 는그관할 구역

의지방자치단체의장이 부과 · 징수한다 ③제2

의규정에의한과태 료처분에불복이있 는자는그

처분의고 지를받은

부터30일이내에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이의 를제기할수 있다

④제3항 의규정에

하여이의를제기할때에 는당 해지방자 단체의장은지체없이관할 법원 에그사실 통보 여야하  
며 통보를받은 관할 법원은 「 송사건절차법」에의한 과태 료의재판 을 한다 [ 개정 ⑤제  
3 항의 규정에의한 기 간 내에이의

제기하지 아니하고과태료 를납부하지아니할때에는지방세 체납

분의예에 의하 여이를징수한다 [ 전문개정 94 · 3

1 6] 제 21 조 ( 보고 ) 조례나

는개 폐하 는경우조.

에있어서 는지방 의회 에서.

송된날 부터5일이내 에 7주 칩에있어서는 공포예 정5일 전에서 ·도 지사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7시 장 ·군수및자치 구의구 청장 은시· 도지사 에게그전문 을첨부 하여.

각보고하 여야하며.

보고를받은행 차치부 장관 은 이를관계 중앙행정.

관의장에 계통보하.

야한다■ [ 개정99·8·31 72 005■ ■ 27] - 86■제편 법령. 4장선제 22조내지 제24조삭제.

· 3·16]제25 조 ( 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제.

) 지방선거에관하여이 법 예정한것 을제 외하고필

한사항은 따로법률로정한다■ 제5장지방의회제 절 조직. 26조(의회 의설치) .

방자치 단체 에 의회를 둔다 ■ 제26

의2( 지방의회.

의선거) 지방의회 의 원은 주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 거에의 하여선출한 다 ■.

본 조신 94·3 ·16]

제 27 조내

지 제 30조삭제. 제 제 2 절 지방의회의원제 31 조(

의 원 의임기) ① 지방 의회 의원 임 기는4년 으로한다.

② 내 지. 삭 제 [94 ·12

· 20]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① 지방의 회의원 에게 다음각호 비용을지 급한다■.



**THE** *Journal of* **THE**

**ROYAL SOCIETY OF MEDICINE**

**Volume 97, No. 10, October 2004**

**ISSN 0959-6288**

**Printed in Great Britain**

**Subscription price: £100.00 (US \$160.00)**

**Single issue price: £10.00 (US \$16.00)**

**Copyright © 2004 Taylor & Francis Ltd.**

**Taylor & Francis Ltd., London, UK**

**Taylor & Francis Inc., Philadelphia, PA, USA**

**Taylor & Francis Inc., London, UK**

**Taylor & Francis Inc., London, UK**

**Taylor & Francis Inc., London, UK**

**Taylor & Francis Inc., London, UK**

**Taylor & Francis Inc., London, UK**

**Taylor & Francis Inc., London, UK**

**Taylor & Francis Inc., London, UK**

**Taylor & Francis Inc., London, UK**

**Taylor & Francis Inc., London, UK**





임·직원 6 농업 협동 조합 · 수산업협 동조

· 축산업협 동조합 · 임업협동조합 · 연연초 생산협 동조합 · 인삼 협동조합( 이들 조합의 중앙회 와연합 회를

합 한다 )의상근임 · 직원들이 들조합의 중앙회 장이 나연합회장7 「정당법」 제6 조 의규정에의 하여정당 의당원이, 수없는교 원②지 방 의회의원은당해지방차 차단체 및공공 단체와 영리 를목적으 로하는 거래를할, 없으며 이 와관련된시설 또는재 산의 양수 인또는 관리인이, 없었다 ■ 제34조 ㉞의의무)

① 지 방 의회의원은 공공의이익 을우 선하여양에따 라그직 무를성 실히 수 행 하여 야 한다 ■ ② 지방의 회의원 은청립의 의무, 차며, 의원으로서 품위를유지 해, 한다 ■ ③지방 의 의원 은그지 위를남용 하여지방 자치단체 · 공공단 체또는 기업체 와의 계약이 나그처분 에의하 여

재 상의 권리 · 이익또는직 위를 취득하 거나타 인을위하 여그취 득을알 선하 여 서는 아니된다 ■ 제3 4

조 ㉞ 의 원체포및확정, 결의통지 ) ①체포또는구금 된지방의회의원 이있을 때에 는관계 수

사기 관의장은체없이의 장 에게영장 의사본 을첨부 하여이를통지하 여야 한 다 ■ [ 개정94 · 3 · 16]② 지방의 회의원이 형사, 권으로 공소가제 계, 판결이확정

된 에는 각급법 원장은지체 없이 당해의 장에게 이를통지 하여야 한다 ■ [ 신설 99 · 8 · 31][ 본조신설 91

· 31] 제 34 조의3 ( 지방 의회 의의 무등) ①지방 의회는지 방의회의원이 준 수해야할지 방

- 88 ■ 제1 판법령 의회의원의의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

을조 례로정하여야 한다 ■ ②지방 의회는 소속의 원 들 이의 정활동 에필 요한전 문 성을 확보하도 록노, 하여야 한다 ■ [ 본, 생 2006

1 ■ 2 8] [ [ 시행일 ] 제3절 권한제3 5조( 지 방의회 의의결 사항 ) ①지 방의회는 다음사 항

을 결한 다 ■ [ 개정94 · 3 · 1 6, 9 9 · 8 · 31] 1 ■ 조례의 제정및 개폐 2 ■ 예 산의심의 · 확정 3

■ 결 산 의승인 4 ■ 법령에 규정된 것을채이 한사용료·수수 료 · 분 담금 · 지방세또는 가 입금의 부과 와 징수 5 ■ 기 금의 설치 운용, ■ 대 통령령 으로 정하 는중요 재 산 의취득 · 처분[시 행일 2000 ·

· 11] 7 ■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공 공시설의설치 · 처분[시 행일 2000 · 3 · 11] 8 ■ 법령 과조례 에규정된 것을채이 한예산의의무부담이 나권리의 포기 9 ■ 청원 의수 리와 처리, 0 ■ 국지 방자치 단체 와의 교류협 력에 관한사항 [시행일 2000 · 3 · 11

그 권한에속하는

사 회 시 행일 2000 · 3 · 11 ②지 방자치 단체는 제1 항 의사항에조제가 정하는바에의하 여지방의회 에서 결되 어 이항사항을따로 정할수 있다 35조 의2 ( 서 류제 출 요구 ) ①본.

의또는위원 회는그 의결 로안 건의심의와 직접 관련 된서류 의 제출 을당 해지방 자치단 체의 장에 대하. 요구. 수있 다 94 · 3 · 16 ②위 원회에게 1 항의 요 구를할때.

는 쌍 을정 유 하여야 한다 91 · 12 · 제 36조 ( 행정 사무 감사및 조사 권) ①지방의회 는매년 1 회당해지 방 자치 단체의 사무에대 하여 시 · 도에.

어서는10일 7시 · 군및 자치 구에 있어서는 7일 의각범 위내에서감 사를실 시하고 7 지방자치단 체의사 무중특정사 안 에관 하여본 회의의결 로본회의또 는위. 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3 ② 제 1항의조사 를발의하고 자할 때에 는이유를명시 하면 으로서 하여야 하 며 3 재 적의원 3 분의 1 이상의연서 가있 어야한다 ③지 방자치 단체및그장기 위임한 처리하 는국가 사무 와시 · 도의 사무에 대하 89 89 여국회회시 · 도의회가직접 감사하기 로한사 무를 제외하고는그감 사를각 각당해 시 · 도의회와시 · 군및 자치 구의회 가행.

수있 ④ 이 경우국 회와 시 · 도 의회 는그감 사결 과에대하여당해 지방 의회에필 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있다 ④제1 항의감 사또는 조사와제 3항의감 사 를위하 여필요한때 에는.

재확인을하 거나서류제출을

요 꺾 수있 으 며 지방자치단체 의장또는관 계공 무원이 나그사무 에관계되는자를 출 석하 게하여 증 인으 서 선서 한후증언 하게하 거나 참 고인으 로서의견의진 술 을 요 구할수 있다 ⑤ 제4.

의규정에의 한증 언에서 허위증언 을하자에 대하여 는고 발할수있으며 4 제4 항 의출석. 구를 받은증 인이정 당한이유 없이 출 석하지아니하 거나 증언을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 의과 료 를부 과할수있다 94 · 12 · 20 ⑥제5 항의규 정에 의한.

태료부과절 차는제 20조 의규정에 의한 다 ⑦ 제1 항의 감사또는조사와 제3항 의 감사를 위하. 필 요한 사항은 「 국정감 사및 조 사에. 한법률」 에준 하여 대 통령 령 으로서정하고 4 제4항및 제5.

의선서 · 증 언 · 감정 등에관 한절 차는 「 국회에서증언 · 감 정등에 관한 법률」 에 준 하여대 통령령으 로정한다 94 · 3 · 16 ③ 제3 7조 ( 행정 사무 처리상황의 보고 질문. 답) ①지방자치 단체의장 또는관계공무원은지방의회



장은의회를대 표하고 의 사를 정리 하며 회 의 장내의질서 를유

하고의회지사무를 감독 한 다 제44조(의장 의위원 회출석 과발언) 지 방의 회 의의장은위 원회 에출석 하여 발언할수있다 제45조( 부의장 의의

직무대리) 지방의 회의 부의장 은 의원이사 고가있 을때 에는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 46조 < 임 시의장 > 지방 의회 의의장과부의원이모 두사고 가있 을때에는 임시 의장 을선출하 여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 47 조( 보. 선거) ①지방의회 의의장또 는부 의장이 궐위 된때에는 보 궐 선거 를 실시한다 - 91 제48조

보 궐 선거 에 의 하여당선된의장또 는부의장의임기 는전 임 자의잔임기간으로한 다 제 48조 ( 의장 등선 거시 의의장직 무대행 ) 제 42조제1 항 · 제46조 또는제 47조제 1 항 규정이하 여선 거를 실시하

는 쟁 에 의 장 직무를수 행할 자 가없는데에는 출석의 원중연장자가그직 무를 대 행 한다 제49조( 의장불 신임의 의결) ① 지방의회 의의장 또는부의 장이법령을 위 반 하거나정 당한이유없 이직

를수행하지아니한 때에 는지방의 회는불 신임 을의결할 수있다 [ 개 정94 · 3 · 16] ②제1 항 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4 분의1 이 상의 의외재적의원과반수의 찬 성 로행 한 다 [ 개정94 · 3 · 16] ③제2항의불 신임 의결이 있는때 에 는의장또는 부의장은 그직에 서해임 된다 [ 개정94 · 3 · 16] 제6 절 위원회 제50 조 ( 위원회 의설치) ①지 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바에의하여위 원회 를둘수 있 다 . 위원회는소 관의안 과청 원등을 심사 · 처리 하는상임위원회와 특정한안건 을일시 적으 로심사 · 처리하 기위한특 별 위원회 의2종 으로한다 [ 개정 91 · 12 · 31, 2006 제 4 제 28] [ [ 시행일 ] ] ③위. 회의위원은 본회의에서

선 선한 다 [ 개정91 · 12 · 31] 제50조 의2( 윤리특별 위. ) 의원의의사 및징 계에 관한사항을, 사하기위하, 윤리특별위원회를, 수있다 [ 본조신 설 제51 조 ( 위원회위원 한) 위 원회 는그소 관에속 하는의안과 청원등 또는 지방의회, 위 임한특정한안 건 을심사 한다 제51 조의2 전문위원) ①위원 회에는위원장과위원 의자 치입법활동을 지,하기위하여의원아닌전문지식을가진위원( 이하 “전

위원”이라 한다) 을둔다 ②전문 위원은위원회에서의 안과청 원등 의심사 및행 정 사무 감사및그밖 에소 관사항과관련 하여검토 보고 및관련 자료의 수집 · 조 사 · 연 구를행 한다 ③위원회 에두는전문 위원.

직급정수 등에관 하여필 요한사항 은대통령령으로정 한 다 [ 본조신 설 20 06 제 4 제 28] [ [ 시행 일 ] ] - 92 제 1 편법 령제52조( 위 원회에서 의방청등 ) . 위원회에서는당해 지방의회 의원 이아닌 자는 위원장의허 가를 어방, 할수있다 ②위 원장은질 서를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 는방청 인의 퇴장을명할 수있 다 제53조( 위. 회의개 회)위원은기준, 원장필 하.편 정 하거나재적위원3 분의1 이

있는데에 회한다■ 다만 폐회 중에 는본회 의의의 결이 있 거나의장이필 요하다  
고인 정할때 재적 위 원3분의1 이상 의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요 구가  
있 는때에한 하여개회 할수 있다■ [ 개정91·12· 제54조( 위원회 에관한조 제 )  
위원회 에관하여이법에 정한것을제외 하고필요한 사항.

조례로정한다■ 제7 절회의 제55 조 ( 의사정족수) ①지. 의회는재적의 원3  
분의1 이 상의출석으로개 의 한다■ ②회의중 제1 항의정 족수 에 달하지 못한때  
에는의 장은회의 의중지또 는산회 를선.

한다■ 제56 조( 의결정족수) ①의사는 이법에 특별히 규정된경 우를제외하고는재  
적 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과 반수의 찬성으로의결 한다■ ②의 장은의 결  
에있 어서 표 결권을가지며 가부동 수인 때에는부 결된것으 로본다■ 제57 조 ( 회  
회의 의공개) 지방의회 의회 의는공. 한다■ 다만,의원 3인이상 의발 의로출 석의  
원 3분의 2 이 상의.

있거나 의

장 이사 회의 안 결서유지 를위 하여필요하 다고 인정하는경우 에 는공개하지아니할 수  
있다■ 제 58조 ( 의 안의발 의) ①지방 의회 에서의결할 의안은지 방자치단 체의  
장이나재적의원 5분의 1 이 상또는의원10. 이상의 연설했다■ [ 개정99·12 -

②위원회 논소관,취사행

관 하여 의안 을 제출할수있다 ■ [ 신 설99· 8· 31]③ 제1 항및제2 항 의의안은그안을갖  
추 어의장 에게 제출하 여야한 다■ [ 개정99· 8· 31]제59 조 ( 회기계 속의  
원칙) 지방의회에 제출 된의안은회 기중에의결 되지. 한이유 로폐기되.아한다 ■[다만,지

방  
회의원의 임

기 개 료되 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아니하다■ 제6 0조( 일사부 재의원칙) 지 방의  
회에 서부결 된의안 은같은회 기중 에다시 발 의또 는제출할수없다 ■ - 93■ 제61

제61 조( 위원 회에서폐 기된 의 안) ①위원 회 에 서본  
의에부의할필 요가 없다고결정된 의안 은본회의 에부 의할수 없다■ 다 만,위원  
회의결 정이본 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 회또는휴회중의기간 을제외 한7일이내  
에의장 또는재적 의원 3분의1 이 상의 요구 가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회의에 부  
의하 여야 한 다■ ②제1 항단서 의요구 가없 을 때에는 그의안 은폐기 된 다■.

62조 ( 의장또는의제 책)지방의 회

의의 장이 나 의원은본 인·배 우자·직계존비 속또 는형제자매 와 접이해관계가있  
는 안 건에관하여 는그의 사에참 여할 수 없다 ■[다만,의회. 의가 있  
는때에는 의

회에출석하 여



정 99 8· 31 제63조( 회규 칙) 지방의회는회의 의 운 영 에관하여이법에 정한것을제외하  
고필요한사항은회의규칙 으 로 정한다■ 제 64조 ( 회 의 료 ) ①지 방의회 는회 료 를  
작성하고회 의 의 행내 용및결과와 출석 의원의성명을 기재 하여 야한다■ ②회 료  
는 의장·의·예선출 현원2인 이

생이서명하

야 현 ■ ③ 의 장은회 의 료 의사본을첨 부하 여회의의결과 를그지방자치 단체의 장에  
게통고 하 여야 한 다■ ④ 회의료은의원 에게배 부한다 ■ 다만 7비 밀을 요한다고의  
장이인정 하 거나지방의 회에서의 결한사 항은공개하지아니한 다 ■ 제8 절 청 원  
제 65조( 청 원서, 제출) ①지방의·에 원을 하고자하는

는지방의회 2인·소,불인·청원서

를 제출 하여 야 한다■ ②청원서에는 청원자의성명( 법 인인 경우에 는그명 칭과대표자  
의성명 ) 및주소 를기재 하고서 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6조( 청원 의불수리  
) 재 판에 간섭 하거나법령에위 되는 내 용의청원은이를수리 하지 아니 한다.

제67 조( 청원의심 사·처리 ) ①지방 의회의 의장 은청 원서 를접수 한때에는  
이를소관 1원·또는본회 의 예회 부하여 심사를 하게한다 ■ ②청 원을소 개 한의원  
소 관위.

회또는본회 의의요구 가있을때에 는청 원의취 지를설명, 여야한 다■ ③ 위원 회  
가 청원.

심 하여본회의 예부 의할필요가없 다고결정한 때에는 그 94 ■ 제

1. 법령 처 리결 과를 의장에 게보고하 고 7의장 은청원인에 게이 를통지하여야  
한다■ 제 6

8. ( 청원의이 송과 처리보고 ) ①지 방의 회

가. 택한청원으로서그지방자치단 체의 장이처리 함이타 당하 다

고. 정되는청 원은의견서를첨부 하여지방 자치단체 의장에 게이 송한다■ ②지방자 치  
단체의장은 제1 항 의

청. 을처리하 고그처리결과를지체없이 지방 의회에보고 하여야한 다■ 제 9절의  
원의 사직 .

퇴. 과 자격 심사제69 조( 의 원의사 직) 지 방의회 는

그의결로소속 의원 의사직을허가 할수있다 ■ 다만 7폐회 중에는의 장이 를허가  
할 수있.

■ 제70조( 의원의퇴직) 지방의 회의 의 원이 다음.

호 1 에해당 된때에는의 원의

직 서퇴직된 다■ 1 ■ 의원 이점할 수없는지 木浦

市 會 7에 31 0 정당법51



해산과 사용 목적으

로 건설 중 인 재산 2 ■ 공공 용 재산 지방 자치 단체 가 직접 공공 용에서 용 하 거 나 사용 하 기 . 결정 해 산 과 사용 을 목 적 으 로 건설 중 인 재산 3 ■ 기업 용 재산 지방 자치 단체 가 경 영 하 는 기 업 용 또는 그 기 업 예 종 사 하 는 직 원 의 거 주 용 으 로 사용 하 거 나 사 하 기 로 결 정 한 재산 과 사용 을 목 적 으 로 건 설 중 인 재산 ③ “ 보존 재산 ” 이 라 .

은 법 령 또는 조례 나 규칙 의 규 정 에 의 하 거 나 그 밖 에 필 요 에 의 하 여 지방 자치 단 체 가 보 존 하 거 나 보 존 하 기 로 결 정 한 재 산 을 말 한 다 ■ ④ “ 재 종 재산 ” 이 라 함 은 행정 재 산 및 보 존 재 산 의 의 모 든 유 재 산 을 말 한 다 ■ 제 6 조 ( 공 유 재 산 의 보 호 ) ① 누구 든 지 .

유 재 산 을 지방 자치 단 체 의 장 의 허 가 없 이 사용 또는 수 익 하 지 못 한 다 ■ ② 공 유 재 산 은 「 민 법 」 제 245 조 의 규 정 에 불 구 하 고 시 효 취 득 의 대 이 되 , 아 니 한 다 ■ 다만 , 잡 종 재 산 의 경 우 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 제 7 조 ( 기 부 채 납 ) ① 공 유 재 산 에 편 입 할 재 산 을 기 부 하 고 자 하 . 처 가 있 는 때 에 는 대 통 령 령 이 정 하 는 바 에 의 하 여 이 를 채 납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지방 자 치 체 에 기 부 하 고 자 하 는 재 산 이 지 방 자 치 단 체 가 관 리 하 기 곤 령 하 거 나 필 요 로 하 지 아 니 하 는 것 인 경 우 또는 기 부 조 건 이 수 반 된 것 인

경 우 에 는 이 를 채 납 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 다 만 , 행 정 재 산 또는 보 존 재 산 으 로 기 부 하 는 재 산 에 대 하 여 그 기 부 자 와 그 상 속 인 또는 그 밖 의 포 괄 승 계 인 이 무 상 으 로 사 용 · 익 할 수 있 도록 허 가 하 여 줄 것 을 조 건 으 로 당 해 재 산 을 기 부 하 는 경 우 에 는 기 부 에 조 건 이 수 반 된 것 으 로 보 지 아 니 하 며 이 를 채 납 할 수 있 .

■ 제 8 조 ( 사 권 )

설 재 산 (취 득 제 한 ) 사 권 이 설 정 된 재 산 은 그 사 권 이 소멸 된 후 가 이 니 면 이 를 공 유 재 산 으 로 취 득 하 지 못 한 다 ■ 제 9 조 ( 공 부 등 록 등 ) ①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은 공 유 재 산 을 취 득 하 거 나 기 부 채 납 을 받 은 때 에 는 법 령 이 정 하 는 바 에 의 하 여 지 체 없 이 등 기 · 등 록 그 밖 에 권 리 보 전 에 필 요 한 질 차 를 취 하 여 야 한 다 ■ ② 부 동 산 그 밖 의 리 해 당 하 는 공 유 재 산 으 로 서 등 기 또 는 부 에 등 록 을 요 하 는 공 유 재 산 의 권 리

자 의 는 당 해 지 방 자 치 단 체 로 한 다 ■ . 만 ,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소 의 공 유 재 산 은 “ 교 육 감 ” 으 로 그 소 관 청 의 명 칭 을 첨 기 ( 첨 기 ) 하 여 야 한 다 ■ 제 10 조 ( 공 유 재 산 의 관 리 계 획 ) ①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은 예산 을 편 성 하 기 전 에 매 년 공 유 재 산 의

특 처 분 에 관

하 관리계획"이라한다)을수립하 여당 해지방의 회의의결을얻어 야한다 ㉑ 관리계획을변경하는때에도 또 한같다 ㉒ 관리계획 에포함하 여야할공유재산 의 범위 ㉓ 관리계획 의작 성기준및변 경기준 - 10 ㉔ 제1 편 법령은 대통령령 으로정한 ㉕ ㉖ 관리계획에관하여 지방 의회의의결 을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5조제1 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 요재산 의취 득· 처 분에관한 방의회의의결을 얻은 것으로본.

㉑ 제11조 ( 용 도의 변경 또는폐지 ) 지방자치단체의장은대 령 령이정하는기준에 의하 여행정재산또는 보존재산 으로 계속존치할 필요 가없 거나 잡종재산을 행정 산또보존재산으로활용하고자 하는경 우당해 재산에대 하여 제16 조의 규정에의한공유 재산 심의회( 이하 “공유재산심의 회 ” 라한다) 의심의를거쳐진 부또는일 부에대 하 여 그용.

를변경하거 나폐 지( 행 정재산또. 보존재 산의폐 지에한한 다) 할 수있다 ㉒ 제12 조( 회계연의재 산이관 ) 지방 자치단체의각 회계중어 느하나 의회계 에속 하는 재산을다른 회계 의재산으로 이관하는 경우에 는이를유 상으. 하여 야한다 ㉓ 다만 ㉔ 공 공 용도

공용에사용 하기위 하여이 관하는경 우에 는당해지방자치 단체공 유재 산심의 회 의 심 의를거 처이를 무 상으

할수있다 ㉕ 제13조( 영 구시설물 의축조 금지 ) 당 해지방자치 단체의장의자는공유 재산 에건물 ㉖ 구거( . 거 ) · 교 량등 구조물과그밖의 영구 시설물을축 조하지못 한다 ㉗ 다만 ㉘ 당. 공 유재 산의사 용및이용 예지장 이없는경 우로서대 통령령이 정하는경.

에는그러하 지아니하다 ㉙ 제14조 ( 공유재산 의관리와 그사무의 위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은그소관 에속하 는공유 재 산을.

리하되 ㉚ 소속공무원 에 게위임하 여공유 재산을 관리하게 할수있 고 ㉛ 특별 시장 · 광역시장또는 도지사( 이하 “ 시 · 도지사” 라 한다

는시 장 · 군수또는 구청 장 ( 자치 구의구 청장을 말한다 ㉜ 이 하같다) 에게위 임하여 당해재.

을관리하게 함이다. ㉝ 1 항

의 궤 에의 하 여위임받은공무원 을 “재 산관리관 ” 이 라한다 ㉞ 제15조 ( 재산관리관 등의행위제한)①재 산관리 관그 밖의공유 재산에관한 사무 에종사하 는공무원은그처리 하는 공유재산을취득 하거나자기 의소유재 산과교 환하지. 한 다 ㉟ 다만 ㊱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허가를받 은때에는 그러하 지아니 하다 ㊲ ㊳ 제1 항 의규정 에 위반한 행위는 이를 무효로한 다 ㊴ 제16 조( 공유 재산심의. ) ①공유 재산의 관리및처분에 관한지방자치 단체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위하 여각 ㊵ 자

의 회를둔다. 제 11 조( 공유재, 심의회, 성, 운영

에 하여는 당해 지방, 치단체 의조례로정한다 ■ 제 17 조 ( 공 유 재산에관한법령 안의협의) 중 양행정 기관의

장 공유재 산의관 리와 - 11 ■ 관리 및 관련법 처분에관련되 는법령을제정 또는개 폐하고 자 는때 에는미 리행 정자치 부장 관 과협의 하여. 한다. 제18 조 ( 국가 가사 용하 는지방 자치단 체 의공.

재산 에관한경비부담) 국 가는지 방자치 단체의 공유 재산을사용하는 때에는그 공 유 재산의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한다 ■ 다만, 당해지방의회동의가 있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 하다■ 제 3 장.

정재산과보 존재산제19 조( 처분 등의제한 ) ①행정재 산과보존, 산( 이하 “행정 재 산등” 이 라한다 ) 은 이를대, · 매각 · 교환 · 양 여 · 신탁 또는대물변제하 거나 출자의목적 으로 지못하 며, 이에서 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각 호 의어 느하 나에 해당하는.

유 는그 러하지아니하 며

1. 행정 재산등의용도 외성질을유 지할

것 조건으로국가 또는

다 지방자치단 체에 양여하 는경우 2■ 국 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다른 법인 또는개인 소유의재 산과 교환하 여그 교환 받은재 산을행 정재산등으로 관리하 고자 하는경우②제1 항제 1 호의규 정에의하.

행정재산등을양 여하는 경우에 는양여를 받은재 산이10년이 내에그 양여목 적 외 의 도로 용된 때에는양여계 약을해제한다 는내용 의특약등 기를하여 야한다■.

20 조( 사용 · 수익허 가) ①행 정재산등은 그목적또 는용도 에장애 가되지 아니 하는범위안에서 그사용 또는수.

허가할수 있

다 ②지방 자치단체장 제 1 항의규정에 의 하여, 용 · 수 익의허가를하 고자하는경우 에는일

반 경쟁 입찰 에 의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 느 하나에 해당 하는경우 에는수의 계약( 수의계약) 의방법에의하 여허가 할수있다■ 1 ■ 허가의목적 · 성질 등을고려하 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로서대 통령 령이정하는 경우2■ 제7 조제2. 단서의 규정에의기부하고, 수익또는 발표관습

계인에게무 상으로 사용 · 수익을허가하는 경우③제1 항의규정에 의 하여사 용 · 수익 의허가를 받은자는당 해행정재산등 을다른사 람으로하. 금사용 · 수익하 여는아, 한다■ 1.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사용 · 수익의허가를받은자가제7조제2 항단서 의규정에의 한기부자와상속 인 또는 그밖의포 괄승계 인인경 우에 는지 방자 치단체 의장의 승인을 얻어다른

여금이를사 용·수익. 게할수있다 ④ 지 방자치단체의장 은제3 항단서 의규 정에의한 사용·수 익이 그목적또는용- 12 제1 판법령 도에장.

가되 거나행정 재산등의원 상 회부에어 려움이 있다 고인정되 는경우 에는이를 승인 하여서 는아니 된다 ⑤제1 항의 규정 에 의하 여사용· 수익의허가를받은자 는 허가기간 이종료 되거 나제25조의 규정에 의하 여사용·수

허가 가취소된 경우에는당 해 행정재산 등을원 상대 로반환하여 야한다 다 만 지방자 치단체의장 이미 리원상의변 경을승인한경 우에는 변경 된상태 로반환 할수있다 제21 조( 사 용·수 익허가 기간) ①행정 재 산등의사 용· 수익허 가 기간은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

제2항 단 기

규정에의 허가허가우 에는공유재산으 로채, 한후무 상사용을허가 받은날부터기 부채남 된 재산 의가 액 을연간사용료 로나기 간이내로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장은사용·수 익 의 허가를받은자가천 재·지변그밖 의재 난으로피해 를입거나당 해지 방자치

체의귀책사 유

원하여당 해재산의유 제 한을받은경우또 는제. 조제2 항제1 호의규 정에의하여수의 계약의 방 뿐 로사 용·수익허가를할 수있는경 우에 는종전의허가 기간을 갱신 할수 있다 이 경 우갱신 기 간은갱신할 때마다제1 항의규정 에의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없 다 ③제2항의 규정 에의하여 사용·수 익허가 기간을 갱신받 고자하는자 는사 용·수익 허가

간이만료되 기

1월전이지 방자치단체에 게 사용·수익허 가기간

의 갱신 을 신청하여야한다 제 22조 ( 사 용 료) ①지방자 치단체 의장 은행정재산 등의 사용·수 익 을허가 한때 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 방법에 의하 여매년 사용 료를징 수한다 ②제1 항 의규정에. 한사용 료는대통령, 영하는기한 내이월시에

전액 을납부하 여야한 다 다 만 사용료를일시에 전액을 납부하는것 이곤 란하 다 고인정 되어 대통 령령이정하 는 경우에는1 년만기 정기에 금금 수준을감안 하여 대통 령령이정 하는 이자를 붙여분 할납 부하게 할수있다 ③제 2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 여분할 납부.

게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이하의보 증금을 예치 하게 하거 나지방자치단 체를피 보 험자로.

는이행보증 보험을 체결 하게 할수있 다 ④행 정재산등의 사용· 수익허 가를 받은 자가제1 항 의규정 에의 한 사용

할기한내에 납부하지아

체 납치 분 의에의하여징 수한 다 제23조( 사용료 의조정) ① 지방 자치단체의장은 동일인 ( 상속인과 그밖의포괄 승 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 인으로본 다) 이동 일한행정재 산등 을1 년을초과 하여계속 점유 하거나 사 용 · 수 하는경 우당해연도 1년간사용 료가전년 도

의 연 사용 료 보다(10)분의1 ( ) 이상 증가한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그사용 료의 증가 분을감액할수있다 제13 조 제1항 의규정은 잡종 재산이 용도 변 경등 의사 유로인하여이 법에의한 사용료납 부대상으 로 된경우 그사 용료 의 산 출에관 하여이를

용 다 제2 4조( 사용료 의면

제 는감 면) ①지방자

치 체의 장은 행정재산

등 사용 · 수익을허 가 함에 있 어서

다 각호 의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때에는 그사용료 를면 제할 수있다 제1 1 국가또 는다 른지방자 치단 체가직 접공 용 · 공공

또는비영 리공 익사 업용으로사용 하고자하는 때 제2 행정재 산등으로 할목 적으 로기부를채 납한 재산에 대하여기부 자와

상속인그밖 의포괄 승계인 에게사용 · 수익 을허 가하 는때 제3 건 물등을신 축하 여기부채 납하 고자하는 자가신 축기간 동안 그부 지를사용하는 때 제4 천 재 · 지번 그밖의재 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일 정기간 사용 · 수익 을허 하는경 우등대통령령 이정 하는경 우로서지방

의 회의 동의 가 있을때 제2 지방자 치단 체의장 은행정재 산 등의사 용 · 수익허 가를받은자 가천 재 · 지 번그 외재난 으인화당 계, 을일정기 동안 용하, 못한때에복 원하기

간 안의 사용료와그이

자 일 할계산 하여 감 면할수 있다 제2 5조 ( 사용 · 수익허 가의취소) ①지 방 자치단 체 의장은제 20조제 1 항 의규정에의하

여 정 재 산등의 사용 · 수익허 가를받 은자가다음 각 호의어 느하 나에 당하. 때 에는 그허 가를취 소할수있다 제1 1 사용 · 수익허가 를받은 행정재산, 을제20조 제 3항의규 정에위 반하 여다 른사람으로 하여금 사용 · 수 익하게 한 때 제2

해 정재 산등의관리를대 만하였 거 나그사용 목적에 위배 한때 제3 지

방 치 단체의장의승 인없 이사용 · 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 재산등 의원 색을변경한 때 제4 허위 진술 이나허 위증빙 서류의제출 그 밖의부정 한방 법에 의하 당해 가 를받은 사실 이발견된때 제5 제22 조제2 항의규

에 한납부기한내에사용료를납부하 지아니 한때 제2 지방자 치 단체의장 은사 용 · 수익

정재 산등을국가 또는지방자치단 체가직 궤공용 또는 공공 용으로 사용 기위 여필 요로 하게 된때에는그 허가를취 소할수 있다 ③제2항 의경 우에 그취소 로인하 여당해허가를받은자 에게손 실이발생

때에는대통령 령이정하 는바에 의하 여이 를보 상한다 ④지방자 치단체 의장은제 1 항또는제2항 의규정 에의하여 사용 ·수 익허 가를 취소 한경우그 행정재 산등 이기부채납한행 정재산등의 로서제20조제3 항단

규 14 제

1 행정 에 의하여이를사용 ·수 익하고 있는자가 있는 때에는그사용 ·수익자 에게 취소의사실 을통 지 하여야 한다 제 26조( 청문) 지. 자치단체의 장은 제 25 조제 1 항의규 정에 의하여행정 재 산등의사용 ·수익 허가 를 취 소하고자하는경 우에는청문을실시하여 야한다 제 27조 ( 행정 재산 등의관리 위탁. ①지방

자

치단체의장 은행정 재산 등의효 율적 인관리를위 하여필요 하다고인 정되는 경우 에 는대통 령령이정하 는바 에따라지 방자 치단 체의 의자에 게당해재산 의관

리를위탁( 이 하“관 리위 탁” 이라한다) 할 있다 ②제 1 항 의 규정 에 의하여관 리위 탁을 받은 자 는미 리당해 지방자 치단 체의장의 승 인을얻어 이용료를징수 하 여이를관리에소 되는경비 에충당하 거나 당해 행정 산등의

효 율적 관리등으로인하 여이용 료수 입이증대 된경 우그증대된수입 의전부또는 일부 를관리위탁 을받 은자의수 으로할수 있다 ③지 방자 치단체는관리위 탁을받 은 자에 관하여

요되는 경비 를지원할 수있다 ④관리 위탁을 받을수 있는자의 자격 및 관리 탁 기간 및 제2 항의 규정 에따른이 용료의 경비충 당 및 이 용료의증 대분의 전 부또 는 일부의 위탁 수입으

로 의대체 및 그밖 에관리 위탁에관하여필요한사항 은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4장잡

제 28조(리,처분)

①잡종재산 ②부·각 교환 양여 ·신 탁 허가나사 권을 설 정할수있 으며 법령이나조 례로정하는경우 에는현 물 출자또 는대물변제를할 수있다 ②잡종재 산의사 권설정과현 물출자 ·대물 변 제및제29조내 지제43 조의규 정에서 정하 지아니한 대부 · 매 각 · 교환 · 양여 · 신탁에 관한범 위및 내용 등은대 통령령으 로정한 다 제

9조( 계약의방 법) 잡종재산 을대부또는매 각 하 는계약 을체결 함에있 어서는 그뜻을 공고 하여 경쟁입 찰 에불

야한 다 다만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는지명경 쟁에불이거나 수의 계약에 의 할수있 으며 유가 증권 의 경우에 는 「증권거래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방법에 의하며 이 법제 4 조제 1 항제 2 호 제 3 호의 잡 종채산을 매 각 하는 경우에 는 제 76 조제 2 항 의 규 정을 준 용한다 ■ 제 30 조( 처 분재산 의가결 정) 잡종채 산의 처분 에있 어서 그가격은 대통령 령이정 하는바 에의하여 시가를 참작하 여결정한.

제 2 절 대 부 15

및 제 3 1 조( 대부 기간) ①잡종재산 의대부 는다 음각호의구 분에따. 기간을 초 과 할 수없 다 ■ 다 만 지 역경 제의활성 화 를위하 여대통 령령 이정 하는경 우 에는 그 러하.

아니하다 ■ 1 ■ 토지 와그정착물: 52 ■ 제 1 호 의의재 산: 1 년 ②지방 자 치단체 의장 은다음 각 호의어 느하 나에 해당하 는경우에는 종전 의대부기 간을 갱 신할 수있 다 ■ 이정 우갱신 기간.

갱신할때마 다제 1 항의규 정에 의한대부 기간을 초과할 수없 다 ■ 1 ■ 대부받 은 자가친 재 · 지번고

의재산으로 인하여 피해 를입은경 우 2 ■ 대 부받은 자가당 해지방. 치단 체의 귀 책사유로인 하여당 해재 산의 이용 에제한 을받은 경 우 3. 제 1 항 의규정에의한 대부기 간이 종료된잡종

재 산에 대하 여 제 29 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에의하 여 대부를할수 있는경 우 ③ 제 2 항의 규정에의하 여대부 기간을갱 신받고자하 는자는대부 기간.

만료되기 1 월전 에 지방자치단체 의장 에게 대부기 간의갱 신을 신 청하여 야한 다 ■ 제 32 조( 대부료) ①잡종채.

대부계약 을체 결할때

에 는대 통령 령 이정하는요율 과산 출방 법에의 하여매년. 부료 징수한다 ■ ② 제 1 항의 대부료는 대통령 령이정하 는기한 내 에일. 예전액 을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대부료를 일 시에 전액 납 부하는 것 이곤란하 다고인 정되 어대통 령령이정하는 경 우에는 1 년반 기정 기예금 금리수 준을감안하 여대통령 령이정 하는이 자를붙여분할 납부 하 게 할수있다 ■ ③ 제 2 항 단서의 규정에의 하여분 할납 부하게하는 경 우일정 한금 액 이하의보증 금을에 치하 게하거나

방자 치단체를피보 험자로 하는이 행보증 보험 을체 결하게할수있 다 ■ 제 33 조 ( 대부료의 조정) ①지방 자치단 체의장 은동일 인( 상속인과 그밖. 궤승계인 은피계인

과 궤인 으로부터) 이동 일한 잡종재산을 1 년을 초과하 여계 속대부하는경 우당 해 연 도의연 간대부 료가전 년 도의연간 대부료보 대 00분의 10이 상승 가한때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바. 따라그대 부료의증가 분을.

액할수있 다 ■ ②제 1 항의규 정은 다른 법률에 의한 사용료또는 점용 료 의 납부.

상등이용도 폐지등의 사유

로 인하여 이법에 의한 대부료 납부 대상으로 된 경우 우등대 부료의 산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 34조**( 대 부료의 면

또는 감면) ① 잡종재 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어서다 음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제32조의 규 정 에 불구하고 하고그대. 료를 - 16 **■ 제 1** 편 법령 면제할 수 있다 **■ 1** **■** 국 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가 당해 잡종재산을 직 접공 용 · 공공용 또는 비영

공익사업용으로 사용 하고자 하는 때 **■** 지 역경제 의 활성화 화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 되는 경우 우등대 부료 면제령이 정 하 는 경우 로서 지방의 회의 동 의가 있는. ② 지방자치 단체 의 장 은

제 32 조 의 규 정 에 불구 하고 지방 자 치 단체 의 조례 가 정 하 는 의 국민 투자기 업에 대 부 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

부 를 감 면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 의 장 은 잡종재산을 대 부 받은 자가 천재 · 지 변 그 밖 의 재난 으 로 인 하여 당해 재산을 일정기 간 동안 사용 하지 못 한 때에는 는 복구완 료기간 동안의 대 부료와 그 이 자 를 일 할 게 산 하여 감 면 할 수 있다 **■ 제 3 5 조**( 대 부 계약의 해 지 등) ① 지 방자치단체 의 장.

잡종재산을 대부 받은 자

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 는 때에는 그 대부계 약을 해 지 또 는 해 제 할 수 있다 **■ 1** **■** 대 부한 잡종재산을 국가, 는 지방 자치단체 가 직 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 기 위하여 필요하 게 된 때 **■ 2** **■** 대 부 받은 잡 종 재산의 편 리를 태만 하였 거나 그 대 부 목. 에 위 배 하여 사용한

때 **■ 3** **■** 대 부 받은 잡 종 재 산을 전대하 거나 **■** 대 부 받은 잡 종 재 산 의 원상 을 지. 처치 단 **■** 의 의 동

의 이 변경 한 때 **■ 4** **■** 허 위 진술이 나 허위 증빙 서류의 제출 그 밖 의 부정 한 방법 에 의하여

당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발견된 때 **■ 5** **■** 제 32 조 제 2 항 의 규 정 에 의 한 납부 기 한 내 에 대 부 료

를 납 부 하 지 아니한 때 **■ 2** **■** 지방 자치단체 의 장이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계약 을 해 지 또 는 해 제 한 때 에는 지체 없 이 그 권리 의 회복 에 필요. 한 차를 취하 여야 한다 **■**

③ 제 1 항 제 1 호 에 해당 하 는 사유로 인 한 계약의 해 지 또 는 해 제 가 그 상대 방에게 손 실 을 발생하 게 한 때 에는 그 재산 을 사용 할 지 방자 치 단체는 대통령 령이 정 하 는 바 에 의하여 발 생 한 손 실을 보상. 여 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 의 장 은 잡종재산을 대 부 받은 자가 제 32 조 제 1 항. 규 정 에 의 한 대 부 료 를 기 한 내 에 납부 하지 아니 하 는

분의 예에의하 여징수한다 1 제. 매각 제36조. 재산의매각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재 산을 집단 화 하기위하여재산 의매각 이불가피하다고 지방자 치단체의장이인정 하는때 제3 7조( 매각대 금의 납부) ①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매 각대 금 에대하여는제 1 항단 서의 규 정을적 용하지아니한 다 제38 조( 매각 계 약의해 지등) ① 지방자치 단체.

장은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매수 대 금 을납 부하지 아니한 때 2) 지방 자치단 체의장 이제 1 항의규정에의 하 여계.

을 해 지 또 는해제한때에는 지체 없이 그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절차를취하 여야한다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규 정에 의 한매수대금 을기한내에 납부하 지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 납 처분의 예에 의 하여 징수한 다 제 4절교 환제 39조( 교 환) ① 지 방자.

단 체는 그 교환의목적이다 음 각 호의 어느하 나에해 당하는 때에는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또 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공유재산 인토지 · 건물이나 토지 의정착 물과교 환할수있 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해 지방 자 치단체가 공용 · 공공 용으 로사용하 고자하 거나 토지의집 단화를 위하여필 요 한경우 로서 「공익 사 업을위한 토지등 의취득및보상 에관한법 른」 이 적용 되 지아니하 는때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있 다

제1 항의규정 에의하여고 환하 는경우쌍 방의가 격이동 일하지아 니하는때 에 는 그차.

을 금 권 으 로 대

하 여야 한 때 - 18 제 1 편 병 제 5 절 양 여 제 4 조 ( 양 여 ) ① 잡 종 재 산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 는때에 는 이를 양 여 할 수 있 다 1 당 해 특별 시 · 광역 시 또는 도 의 구역 안 에 있 는시 권 또는 구 ( 처 구

### 를 발 한 다) 에서

공 용 토 는 공 공 용 으 로 사 용 하 기 위 하여 필요 한 때 2 용 도 가 지 정 된 국 고 보 조 금 · 지 방 교 부 세 또는 기부.

으로 조 성 된 잡 종 재 산 으 로 서 그 용 도 에 따 라 이 를 양 여 하 는 때 3 행정 재 산 의 용 도 를 폐 지 한 경 우 에 있 어 그 용 도 에 같 음 할 다 시 설 을 하 여 제 공 한 자 와 그 상 속 인 그 밖 의 포 괄 승 계 인 에 양

여 하는 때 4 도시 계획

사 업 행 위 부 담 을 한 지 방 자 치 단 체 에 그 도시 계획 사 업 시 행 지 구 안 에 소재 하 는 토 지 를 양 여 하 는 때 5 그 밖 에 자 산 가 치 가 하 락 하 거 나 보 유 할 필 요 가 없 는 경 로 서 통 령 이 정 하 는 때 ② 제 1 항 제 1 호 및

2 호 에 대 응 하 는 사 유 로 잡 종 재 산 을 양 여 하 는 경 우 에 는 양 여 받 은 잡 종 재 산 이 10 년 이 내 에 그 양 여 목 적 의 의 용 도 사 용 된 때 에 는 양 여 계 약 을 해 제 한 다 는 내 용 의 특 약 등 기 를 하 여야 한 다 4 조 < 양 여 계 약

해 제 ) ① 지방 자치 단

체 의 장 은 잡 종 재 산 을 양 수 받 은 자 가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나 에 해 당 하는 때 에 는 그 양 여 계 약 을 해 제 할 수 있 다 1 용 도 를 지 정 하 여 양 여 한 경 우 에 수 자 가 지 정 된 기 일 을 경 과 하 여 도 그 용 도 에 사 용 하 지 아 니 하 거 나 지 정 된 용 도 에 제 공 한 후 지 정 된 기 간 내 에 그 용 도 를 폐 지 한 때 2 허 위 진 술 이 나 허 위 증빙 서 류 제출 그 밖 의 부 정 한 방 법 에 의 하 여 계 약 을 체결 한 사 실 이 발 견 된 때 ②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이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계 약 을 해 제 한 때 에 는 지 체 없 이 그 권 리 의 회 복 에 필 요 한 절 차 를 취 하 여야 한 다 6 절 신 택 제 4 조 ( 잡 종 재 산 의 신 택 ① 잡 종 재 산 ( 토 지 과 정 착 물 에 한 한 다 ) 이

하 이 절 에 서 같다 ) 은 이 를 부 동 산 신 택 을 취 급 하 는 신 택 회 사 에 신 택 할 수 있 다 ②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한 신 택 을 함 에 있 어 서 는 이 법 의 규 정 에 위 반 되 는 무 상 대 부 · 교 환 또 는 양

한 적으로 신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외의자를신탁의수익자로 하여  
시 아니된다 ③ 제1항의규정에의한신탁  
신탁기간은 20년이내로하여야

한 ④ 제3항의

규정에의한신탁기간은이틀갱신할수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갱 - 19 20년 이내 갱신  
할. 마다제3항의규정에의한기간을초과할수없다 제43조(신탁보수등  
제42조의규정에의한신탁으로발생한수익의지방자치단체귀속방법과신탁회  
의신. 보수, 신탁회사 의선정범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장공유재산대장 과보고 제44조(대장과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  
의장과 각관서의장은제5조의규정에의한구분과종류에따라그소관속하는  
공유재산의등기·등록그밖에권리보전에필요한조치를취하고, 공유재산의  
대장에도면적이에관련되는증빙서류, 첨부하여 비치하여, 한다 이 경우, 유재산의대장은전  
산 자료로 대신할수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매년그소관에속하는공유재산의실태를  
조사하여재산관리및변동사항을기록·유지하여야하고, 지방자치, 체  
의장에게그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③지.

자치단체의장 은

공유재산의효 율

적인관리취하여야필요한경우에는조사대상재산의범위·조사기간·조사내용및  
조사비용등을정하여전문기관에게의뢰하여공유재산의관.

실태를조사하게할수있다 제45조(재산관계공부 의열람 등) 공유재산의사무  
를취급하는공무원이공유재산관리(채납처분을포함한다). 위하여필요한  
때에는등기소그밖의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무료로필요한서류를열람·복사  
하거나그등본또는초본의부를청구할수있다 제46조(가격개정) 지방자치단.

의장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5년마다1월1일현재를기준으로그소  
관속하는공유재산의

가격을개정(개정)

하여야한다 다만, 가격이등재후2년을경과하지아니한것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  
하다 제47조(공유재산의현황작성등) ①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통령이정하는바에따라당해공유재산에대하여전년

도당해회계연도간증감보고

서매년12월31일현재를기준으로

로정된가격에의한현재액보고서를작성하여당해지방의회에보고하여야한다

치단체 의장은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 재산 의증감및현 황 을작 성한때에는 증감의 원인 별·내 역별 로진 년도와비 교하여심사·분석하 야한다 ■ 제6 장물 품통칙제 48조( 물품의 범위 ) 이법에서 “물.”이라 함은지방자, 면가소유 하

는 동산 - 제1 편법령과 지방 자치단 체가사 용하 기 위하여보관하 는동산 중다음 각호의것 을제외한 동산, 말한다■ 1 ■ 현금 2■ 유가증권 3■ 제4조 의규 정에의 한공유 재 산제 49조 물 품의 류) ① <지방자치 단

체의 장은그소관에속 하는물 품의사 용과처분에있어 서의적 정성을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그사용과처분의목적에따라가 능 별·성질 별·기관 별·품목 별로분류하여야한 다■ 제1 항의 분류 는지방자 치단체의 예산에정한물품 관계경

의목적 에위배되지 아니하 여야한 다■ 다 만 특별한사유 로인하 여예산이 정한목 록에따라서분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따로이를 분류할수 있다■ ③ 제1 항및 제2항의규 정에의한물. 분류의기 준과 그밖에물 품분류 에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 으로정

다■ 제50조( 출자등의금지 ) 물품은 법률또 는조례에 의하지아니하 고는출자, 목적으로하거나이에사권을 설정 할수없다■ 제 51 조( 표준화 ) 지방 자치단 체 의장은 그기 관에서 사용되 는물품을, 대통령 이정 하는배, 하여표준화하여, 한다■ 제52조(

물품관리관) ①지방자치단체 의장 은그 소관에속 하는물품 의관 리에 관한사무를 소속 공무원에, 위임 하여물품을관리 하게할수있 다■ 제 1 항의규정 에의 하여위 임받은 공무 원을 “ 물품관 리 관”이라한

다■ 제5 3 조( 물품 출납공무원) ① 물 품관리관( 제55조 제1 항의규 정에의 하여물. 관리사 무의일부를 분 하는공 무원을포함 한다■ 이하같다) 은대통 령령이정하는

배 의하여 그가소속하 는관서의 공무원에 게그관 리하는물 품의출납및 보관에 관 한사무( 출납명 령에관한사무를 제 한다) 를위임할수 있다■ ② 제1 항 의규정에의하

여물품의출 납및보 관에관한 사무를 위 임받은공 무원 을 “물 품출 납공무원 ” 이 라한다 ■ 제 54 조( 물품 운용관) ①물. 관 리관은 필요한경 우에 는대통 령령 이정하는 배에따라그가소 속하 는관서의공 무원에 게지방자 치단체 의사무 또는사

업의목적 과용도에따 라서물품 을사용 하게 하거 나사 용중인 물 품의관 리에 관한 사무( 이하 “ 품의사 용에 관한사무 ” 라한 다) 를위 임할수 있다■ ②제 1 항 의규 정에의하여물품 의사 용에관한사 무를위 임 받은공 무원 을 “물품 운용관 ” 이라한 다■ 제5 5조( . 기관 의분임및대 )①지방자치단 체의장 은물품관리 의사무의일

부 를분 장하 는공무원을, 물 품관리관은 물품 출납공무원의사무 의 일부를분장하 는” 2] ■ 기관및 물품관리공무원을대 통령 령이정 하는배에 의하여각각둘수있다■ ②지 방자치

관부득 이 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 없는때 는그사 무를 대리하는공무원 을 물 품관리 관은물 품출 납공무 원또 는물품운용관이 부득 이한사 유료직 무를수 행 할수없

때에는그사무를대 리하 는 공 무원을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지 정할수 있 다■ 제56 조( 물 품관리 에관한 정보공 유등 ) 행정자 치부장관 은지

자치 단 체물품의효율적이 고적정 한관리 를위하여물품관 리기 준등에 관한정보 등 을조달청 장에게공유 하는등 상호협 조할수있다■ 제 7장 물품 의관리제 1절통칙제 57조 ( 물품 의수급관 계획 ①지방 자치단 체의장 은대통령 령이정하는 바에 의 하여회계 연도마다그소관 의에 산과사 무또는 사업의 예정에 따 라물

의취 득 · 사용처 에 관 한수급관리계 획을세 워야한 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 는물 품의경우에 는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지 방자치단 체 의장은 제1 항의 규 정에의한 수급관리 계획변경 을요하는 사유가발생한때에는 를변경할수있다■ ③ 지방자 치단체의장은제 1 항 의규정에의 한수

관리 계 획( 제2항의규정 에 의하여변 경된경 우에는 그변경된수급관 리계획 을말 한다 ) 에 따라물품 을취 득 · 사용또는처 분하여야 다■ 제58조( 물품 관리기 준 설정)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대통령 령이정하는바 에의하 여주요물품 의정수 와 소요기 을정하 여야 한다■ 제59 조( 재고관리 ) 지방자 치단체의장은사용빈도 가 거나재고의유지가필요한물 품에대 하여는그물품 의적정 한재고를유 지할수 있 도록재 편기 준을하여

편하여야 한다■ 제60조

( 재물 조사 등 )①지방자치 단체의 장은대통령령이 정 하는바에 의하여 2년마 다정 기 적으로그관 리에속 하 는물 품에대 한재물조사 를실시 하여야 하며 필요하 다고인정 하는 때에는정 기재물조사 외에

신소재물조 사

를 할수 있다 ■ ②제1 항 의규정에 의한 재물조사결과물품의손 · 망실이있는 때에는 그 에대 한처리결과 를지 체 없이감사 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1 조( 재물조 정) 지 방자 치단체의 장은

① 의규 정 에의한재 물조사결과물품의 증감이 발견된경우그원 인이사무상착오 입이 명

백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이를 조정 할수있다■ 22 제1 편법 령 제 2조( 물품의현황 작성등 ) 지방 자

치 체의 장 은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따라주요물품에 대 하여전년도 및당해 회 계 도간 증 감보고서 와매 년12월 31일을 기준으로한 현재액보 고서를 작성 하 야당해지방 의

여야한다 **제63조 ( 관리 전환 )** ①물품 관리관 은물품 의효율적 인사용 과 처분 을위하 여필 요한때 에는대 통령 령이 정하 바에, 하여지방자치 단체의장 의승인 을얻어그 소관 의물품을 동일지방자치단체내.

다 물품관리관의소 관으로전환( 이하 “관리 전환” 이 라한다 ) 할수있 다 ② 지방

자치단체의장은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장, 중앙 행정 기관의장

「정부 투

자기관 관

리기본 법」에의한

정 부투 자기 관 (이하 “정 부투자 기관 ” 이라한 다) 의 장또는 「지방공 기업법 」 에의 한지방 공사 · 지방 공단의 장에 게그 소관

물 품관리전 환하거 나관리 전환을 받을수있다 ③제 1 항및 제2 항

의 정에의 하여관리 전환을하 고자 하

는 에는다른법 른또는 대통령 령

이정 하는경 우를제 외하고는 유상 으로정 배( 정리) 하 여야한다 **제64 조( 물 품 의정**

) . 방자치단 체의 장은 대통령 령이정 하는바에의하여 주요정 비대 상물품을선정하 여정 비기준에따라 정비

하 야 한다 **제65조 ( 표준 서식 )** 물품관리관·물 품운

용관및 물

출납공무원 원

( 제55 조 제 1 항의규정에의하 여그사 무의일부를분장 하 는공무원을포함 한다 이 하같다) 은대통 령령이 정 하는 표준서 식( 전산처 리에 필요한 입·출력 자료 서 식을

함 다 이 하같다) 에필 요한사 항을기록 ·유

치 여야한다 **제66 조( 물 품관리 사무**

의 산화) 지방 자치 단 체의장은대 통령령 이정하 는바

에따라물품 의

관 리에 관 한사무를전산 화하여 물품을효율적으 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7 조( 물품 관리 종사공무원의행위제한 )** ①물 품관리 에관한사 무에 종사하는공무원은그 취 급하는물 품을지방자치 단 체로, 다양수 함없다.다 통령령이 하는품의 우에는그 하아니한

다 ② 제 1 항 의규정에위반

한 행위 는 이를무효 로한다 **제 2 절취득제68 조( 취 득 )** ①물품관리관은제57 조의 규 정에



예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 의범위 안에서 그 밖 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 마다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 한 필요한  
치를 취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 담당공무원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 의범 안에서 대통령령이

### 정 하는 바 에

의 하여 당 해 물 ~~품~~

을 취득 하 기 위한 필요 한 조 치 를 취 하 여야 한 다 23. ~~관~~ 및 ~~물품~~ ③ 물품 은 재방 자치단체 의 장 또는 그 위 임 을 받은 공 무원

채명 하는 관 계 공 무원 이

나 기술 자 의 검 수 ( 검 수 ) 를 받 지 아 니 하 고 는 이 를 취 득 할 수 없 다 제3절 보 관 제69조 ( 보 관 의 원 칙 ) 물품 은 언 제 든 사용 또 는 처 분 할 수 있 도록 선 방 한 관 리 자 의 주 의 로 써 당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시 설 에 보 관 하 여 야 한 다 다만 그 물품 관 리 관 이 당 해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시 설 에 보 관 는 것 이 물품 의 사용

또 는 처 분 에 부 적 당 하 다 고 인 정 하 거 나 그 밖 에 특 별 한 사 유 가 있 다 고 인 정 하 는 때 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제70조 ( 출 납 명 령 ) ① 물 품 관 리 관 물 품 을 출 납 하 게 하 고 자 하 는 때 에 는 물 품 출 납 공 무 원 에 게 출 납 하 여 할 물 품 의 분 류 를 백 하 여 그 출 납 을 명 하 여 야 한 다 ② 물 품 출 납 공 무 원 은 제 1 항 의

정 에 의 한 명 령 없 이 는 물 품 을 출 납 할 수 없 다 제71조 ( 사 용 할 수 없 는 물 품

의 리 ) ① 물 품 출 납 공

무 은 그 보 관 중 인 물 품 ( 제 73 조 제 2 항 의 규 정

에 한 명 령 에 의 하 여 반

납 물 품 을 제 외 한 다 )

중 용 할 수 없 거

나 수 선 또 는 개 조 를 요 하 는 물 품 이 있 다 고 인 정 하 는 때 에 는 그 사 실 을 물 품 관 리 관 에 게 보고 여 야 한 다 ② 물 품 관 리 관 은 제 1 항 또 는 제 73 조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한 보 고 에 의 하 여 수

또 는 개 조 를 요 하 는 물 품 이 있 다 고 인 정 하 는 때 에 는 계약 담 당 공 무 원 그 밖 의 관 계 공 무 원 에 대 하 여 그 수 선 는 개 조 를 위 한 필요 한 조 치 를 할 것 을 청 구 하 여 야 한 다 제4절 사 용 제72조 ( 사 용 ) 물 품 관

### 사 용 하 게하기위하여 출납명령 을한

때 에는 그사 용 의목적을명백히 하 여그사실을물품 운용 관 이나 물품 운용관 을두지 아 니 한경우 에는물품을 사용 하는공무 원( 이하 “물품 사용공무 원” 이라한다) 에게 알려야한다■ 다 만 물품은 용관 요 청에 의하여 출납명령을 한때 에는그러 하지아니하다 ■ 제 73조( 사용중인물품의 반납 ) ①물품운용 관또 는물 품사 용공무 원은사용중 인물.

중사용할필요가없 거나 사용할수없는 물품또는 수선이 나개 조를요 하는물품이 있 다 고인정 하는 때에는그 사실을물품관리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 ②물품관리관 은제1 항의규정에의한보 고 를받은경우에는그사실여부 를 확인하여 그에해당되 는물.

임이 인 정되는때 는물품 운용관 또는물 품사용공무원에 게그 물품의반납을 명하 여 야한다■ 제7 4조 ( 대 부) ①물 품은대부를 목적으 로한것 이거나대부하 여 도지 방자치단체 의사업또는 사무에지장 이없다고인 정하. 것 에대하여 는이를 대 부할수 있다■ ②제 1 항의규정에의 하여 물품을대 부한경우 대부로 올 물 대부료의 산정방법 大 부- 24 ■ 제1 .

법령 出납 부 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5절처 분 제7 5조( 불용 의결정 등) ①지 방 자치단체의 장은그소관에속 하는 물품중사 용할필 요가없거나 사용.

없는물품 이있는데에

는 그물 품에 대 하여불용의결 정을하여 야한다■ 다만 물 대통령 령이정 하는물품에대하 여는 물품관리관이그결 정을할수있 다■ ②지 방자치단체의장 또는 물품관 리관 은제1 항의 규정에 의 하여불 용의 결정을 한물품( 이하 “불용품” 이라 한다) 중매각하 는것 이지방자치 단체.

폐기하거나 부적당하다

고 인정 되는 때 또는매각할수없는물품이 있는때에 는이 를 폐기 할수 있다■ 제7 6조( 매각) ①물품은매각을목적으로한물품이거나불 용품 이아니면 이를매각 할수없다 ■ ② 지방. 치단체의 장은제 1 항의물.

으로서매각되지아니하는 것에대하 여는대통 령령이 정하는바 의 하여매 각의

례를둘수있다■ 제77 조 ( 불용품 처분의요 청) 지 방자치 단체의 장 은불 용품 중 관리전환 ·양 여또는 매각등 에 의하여 처분이되. 아니하는불 용품이있는

때 에는 조달 청 청에게그처분을요청할수 있다■ 다만 재 활용이가능한불용품 에대하 여 는 조달청장에게무상으로 양여할 수있다 ■ 제78조( 불용품의양여) ①지방 자치 단체의장은용도가지정된 국 고보조금이나기부 금에.

하여취득한 물품으로서



급하 고권 리를취 득한자 ( 취득자의상속인과그 포괄 승 계인을 포함한 다) 의 재산이 취득후에 공유재 산으로

행되어지방 자치단체 에

귀 속년 경 92 국가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재 해대책 등불가 피한 사유로일정기간공 유재산을점유 하게하거 나사용 · 수 익 하게. 경우2제1 항의 규정. 의한변상금 을기 한내. 납부하지아 니하.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바 에의하 여연체료 를징수할수 있다 3제 1 항의규.

에의한변상 금및제 2항 의규정에의한 연체료를기한내에납 부하지아니하는때에는 지방세체 납처분의 예에의 하여징수 한다 4 제1 항의규정 에의한번.

금 은대 통 령이정하는바에 의하여 분할납부 하게할수 있다 5 제1 항 의규정 에의하 여변 상 금을징수하는 경우에는제23조및제33조의규정 에의한사 용료.

대 부료 의 조정이 를실시하지 아니한다 82조 ( 파 오 납금반환가산금 ) 지방 자 치단 체가과오 납된공 유재산 의사용료 · 대부 료 · 매 각대금 또는변상금 을반.

하 경우에는 과오

납 날의다 음날부터반환하

는 까지의기

간 대하여1

년 기정기에 금금 리수

준 을감 안 하여대 령 령 이정하는이자 를가산 하여 반환하여 야한다 83 조 ( 범시 설 물의철거 ) 정당 한사유 없이공 유 재 산 을점유 하거나이 예시설 - 26 제1 판법 령 물을설 치한때 에는 「행정대 행법」 제3조내지

제 6조 의 규정을준 용하여철거 그밖 의필 요한조 치를할 수있다 84조( 은 닉된공유재산 의신고 에 대한 보상) 은 닉된공유 재산을 발견하 여신

고한자 에게는대통령령이정 하는 바에의 하여 보상 금을지 급할 수있다 85조( 은닉된공 유재 산의자진반환 자에대 한특례 ) 은닉된 공유재 산을선의 료취득한 후당해 재산을자 진하여또 는재판상 의화해그밖에대통 령이정 하는 원 인에의 하여지방 자치단체 에반환한자에 게 는이를 수의매 각 할수. 대 이 경우 제37조

의규정에 불구하 고대 통령 령 이정하는 바에의 하여반환 의원인별로차등을두 어 그매 각대 금을이자없 이2.

이하의기간 에걸쳐 분할납 부하게하 거나매각가 격에.

8할이하 의금액 을공제 한잔액을그 매각대금 으로서 전액을일 시에납부하게 할 수있. 8 6조 ( 물품의 자연감모 ) 1 물품 의장기보관이나 운송그 밖의불가 피 한사유로인 하여. 는감 모는자연감

이하의기간 에걸쳐 분할납 부하게하 거나매각가 격에.

8할이하 의금액 을공제 한잔액을그 매각대금 으로서 전액을일 시에납부하게 할 수있. 8 6조 ( 물품의 자연감모 ) 1 물품 의장기보관이나 운송그 밖의불가 피 한사유로인 하여. 는감 모는자연감

수 있다 ■ ②자연감모로 하여정리할 수 있는물품의 종류 · 품명 및자연 감모 율에관 하여는대통령령으로.

한다■ 제87 조( 물 품의공급) 물품 은 법또는다른법 의규정에의한계 약 에 의하지아니하고는 공사· 제 조그밖 의계 약자에 게공급할 수 있다■ 제88조( 물 품의 손 · 망실처리)지 방 자 치단 체의장 은제60 조제1 항 의규정 에의한 재물조사 의결 과물품의망실또는 훼손이 된때 에는대통령

령 이정 하는 바 에의하여 「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 임에관한법 른」 제 6조제 1 항의규정에 의 한 변상 명령을할수 있다■ 제89 조( 물품 이아닌 동산의 관리 ) ①지 방자치 단체가보관하는동산 중이법에의 한물 이아닌 동산( 제48조 각호에 해당 하는 산 제외한다

)에 대하여도 대통

령 이정하는 바에의 하여 이법 에의 한물

품 준하여관리 할수있

다 ②제1 항의규 정 에의한 물품

이아닌동산 의범위 는대 통령령 으로정한다■ 제 90조 ( 물품 관리에

한검사) 지 방자치단체

### 의 장 은 대통령 령이정하는

바 에의 하여 정 기적으로물품관리 에관한 검사 를하 여 야하고 ■ 물 품관리관 · 물품운 용 관또는물품출납공 무 원 이교 체 된 경우와 그밖에 물품 관리에필요 한경 우에는 수시로 그소관에속 하는물품 의관리 에관하여검사하 여 야한 다■ 제91 조 ( 일 부 물품의 적 용배

) 「지방재정법」 제 74조 의규정에의한 도급 경비 로서취득한물품 과그밖에대통령 령이정하는물품의관리에관하여 는대통령 령이정 하는바에 의하여이 법의일 부 를적용하 지아니할 수있다 ■ 제92조( 공 유재산 및물품 운영상황의 공개등) 지방자치단체 의장은 조례가정 하는 바에

하여회계연 도마다 회

이 생공 유재 산 의중감및현황 ■중요물품 의증 - 27 ■ 및 ■ 감 및 현액 밖 에 재정운 영에관 한중요사항을주 민에 게공개하여야한 다■ 제93 조( 회계 관계공 무원의 임명또는 위임 ) 재 산관리관 ■ 물품 관리관 ■ 물품운용관및물 품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및분임자 등( 이하 “회계관계 공무원” 이라한다) 의임명또는회 계관공 무원 대한사무의위임은지방자 치단체 의장이 소속기관 에설 치된관 직을지정 함으로써 에갈음할수있다■ 제94 조( 회 계관 계공무 원의 대리

자 단체의장또는그위임을받은공무원은필요하다 고인정하는때에는회계 관 계공무원 의 무의전 부를대 리하거나그일부 를분 장하는공무원 을임명할 수있다■ 제

9 조( 공유재산과 물품 의상호 전환)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제4조 제1 항의 규 정에

의한공유재산과제48조의 규정에의 한물품의효율적 인관리 를위 하여필요한경우 에 는대통령 령이정하.

바에의하여 상호전환하 여관리 하거나처 분할. 있다■ 제 96. ( 공. 재산및물품 을관리 하는공무 원에대한예산 성과.

궤관재활동 비의지급) ①

방 제 단체 의 장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 에관 한 사무를위임받거 나그사무의일부를분장 하 고있는공무원이 은 낙된 공유재산의발굴 7 변 상금의 징수7 공유재산또 는물 품 의효율적 인대부 ·사용 ·신탁· 매각등 으로예 산상의수입을증.

시키 까지 출을절 약하 는데기여한때 에는 「 지방재정 법」 제48 조의규 정에의하 여예산성과금을지급할 수있다■② 지방자치단 체의 은 공유 재산을담당하 는공무 원에게예산. 범위안에서관재활동비 ( 공유재산을 총괄하고유지· 관 리하기 위한.

무에필요한 활동비 를말 한다) 를지 급할수 있다■③제1 항의규정 에의한성 과금 의지 급범 위에관하여필 요한사항 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97 조( 「 지 방 재정 법」 등의준용) 공유재 산및물품의 계약.

시효소멸등에대하여이법 에서정한 것3제외 하고는 「지 방재정법」 및 「지 방자 치단체 를 당사자 로하는계약 에 관한법률 」의규정을준 용한다■ 제98조( 교 육· 과학 및체육등에관한 사 항 의적 용) 이법에서교 육· 과 학및체육에 관한. 향 또는 교육 비특 별회계에관하여 는 “ 지방 자치단체의장” 또는 “ 시·도지사” 는 “교육 감” 으로7 “행.

처치부장관 ” 은 “교육

인 짜 원부 장 관” 으로 각각본다■ 제9 장벌칙 제99조 ( 벌칙) 제6조제 1 항의규. 에위반하 여지방 자 치단체 의장의허 가없이행. 재산등을사 용또는수익

한 자는 2년 이 하의징역또는7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28 ■제1 편법령부칙부 칩[ 2 0 05■ 8 ■ 4제 7665호 ] ①( 시행 일) 이 법은 2006 년1 월1 일 부터시행한다 ■②( 변 상금에 관한적용 례) 제 81 조제5 항의규정에의하여사용료및대부의조 정을실시하지야니 하는변상 금은.

법시행일이후에 최초로 부과 하는변상금 7부 터적용 한다■③( 사 용·수익. 가등에관한경과 조치) 이 법시행당시지방 자치. 체의공유재 산및물품에대하. 종전 의 「지방재. 법」 의규정에의. 사용·수익. 가 7대 부그밖 의행위는이법의 규정 에 의하여행하여진 것으로본다■④( 사용 ·수.

경과조치) 이법 시행당 시지방 자치단 체의공 유재산및 물품에 대하 여중전의 「 지방

법」의규 정에 의하여

사 용· 수익 허가, 대부 등을신청 한경우에는중전 의 「지방재정 법」의 규정예의 한다

⑤( 다른법률과의관계 ) 이법시행당 시다 른법 에서 공유재 산및물품 의관

및처분에대하여중전의 「 지방재 정법」의규 정을인용한경우로 서이. 에그에해당하 는규정 이있는데에는이 법또 는이 법의해당규정을인 용한것으로본 다 - 29. 및법 관리법

예산

계 법법 ◆예 산 회계법법률제6075 호일부개정 1 999 1 2 3 1 법률제6836 호 ( 국고 금 관리법) 일 부개정 200 2 1 2 30 법 률제7347 호( 국고 금관리법 ) 일 부개정 200 5 01 27 제 1 장총 칙제 1 조( 목적 ) ① 이법은 국 가의 산화회계및 이에 관련되

는 개 본 적인 사 항을정 함을목적으로 한 다 ②물품 과국 유재산의관리 및회계 에관하여는 따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다. 법 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사항은 법이정하는바 에의한다 제2 조( 회계연도) 국가의회계연도는 매년 1월 1 일

시작하여2 월31 일에 종

료 한다 제3 조( 회계연도 독립의원칙) 각회계 연도의경비 는그 연도의세입으로 써 충 당하 여야한 때 제4 조삭 제[ 2 00 5 1 27 ] [ [ 시행일 제5 조 ( 국가의세출 재원의근거 ) 국 의 세출 은국채또는 차 입금( 외 국정부 및 국제 협력기구 및외 국법인으로 부터. 되는 차관자금을

포 한 다 이하한다) 이외의 세입으 로써그재원 으로 하여야한다. 다만 부득 이 한경 우에는국회의 의결을연은 금액의 범

위 에 서 국채또는차입 금으로 써충당 할수있다 제 6 조( 재정 증권 과일 시차 입금 ) 삭제 [ 2 0

(2 1 2 30 법

률 제 호] 제 7 조( 기금의설치) ①국 가 는특정한 목 적을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 할필요가있 때 에 한하여법 률로써특별한 기금을설치할수 있다 ② 제1 항 규 정에의한 기금은 세입 세출예산 에의하지아니하고은 용할 수있 다 ③내지 ⑦삭제

[91 · 12 · 제 8 조 ( 보조금의 예 산및관리 ) 국가의 보조금의예산 및관 리에관 한사 항은. 법를 로정 한다

제 조 ( 회계구분) ①국가 의회계 는일반 회계와특별 회계 로구분한다 ②특별회 계 는 국

가 서 특정한사업을운영할 때 특 정한자 금을보유하 여은 용할때 기타 특정한세

한세 출에충당함으 로써일 반회계 와 구

분 여 계리 할필요가있을때 예법률 로설치 한다■ 제 10 조( 기업회 계의원칙) 특  
별 회계에 의하 여정 부가 운영하는 사업은따 로법률 이정 하

는 예의하여기업회 계의 원칙에의하 여계리 할 쏘다■ - 33 ■ 제1

1 조 정부 투 자기관(예산과회 계) 정 부투 자기관(예산 과회계)에관한사항은따로법  
률 로정 한다■ 제1 2 조 ( 국가 의 채 권과채 무) ① 국가의 채권의전부또는 일  
부를 면제하 거나효 력을 변경함에 는법률에의하여 야한다 ■ ② 국가는법 른도  
계약에 의하지아니

하고는그채 무의이행 을

지 책할 수 없다■ 제1 3조( 국가 재 산의처분 ) ①국 가의재산은법률 에의 하지 아  
니하 고는 교환 · 양여 · 대 부 · 출자 또는지급의수단으 로사용할수없다 ■ ② 제  
1 항의 재산은현금 을제한 모든 재산으로한 다 ■ 제1 4 조( 중앙 관서의장의정  
의) ①이법에서 “중. 관서의 장”이라.은국 의장, 대법원장.헌재판

소 ■ 중앙선거관리. 원 회위원장.헌 법또 는 정부조직법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의장 을말한 다■ ② 국회 의장 · 대 법원장 · 헌 법재판 소장 및

중 선 거 관리위.회 위 원장은국 회의사 무총장 · 대법원의법 원행정 처 장 · 헌법  
재판소의 사무처 장및중 앙선거 관리위원 회 의사 무총 장에 게이법에의 한직무  
를위 입

할 있 다■ 이정\*국 회 의 사무총장·대법 원의법 원행정 처장·헌법재판 소의 사  
무처장 및중앙 선거관 리위원회 의사 무총장은그 위임받은범위안 에서제 1 항 의  
중 앙관 서의장의 로본 다■ [ 개정 91 · 11

· 0 93 · 12 · 31] ③제2 항의규 정에의하여국 회의장 · 대 법 원장 · 헌법재판  
소장 및중앙 선거관 리위 원회 위원장이그 직무를위임하였 을때에 는 재 정경 제  
부 장관 · 기 획예 산처 장관과 감사 원

에 지 하여야한다■ [ 개정 91 · 11 · 30 93 · 12 · 31 99 · 2 · 5  
99 · 5 · 24] ④ 삭제 [ 2 00 2 1 2 3 0 ■ 법률제 6836호 ]

[본조제목 제20.212

■ 30 ■ 법 른 제6836호] 제1 5 조( 예 산및회계에관 한업 무 의관 장) ①예산 관계법  
령 에관한사 무는기획예산처장관 이관 장 하고, 회계관계법 령에.

한 무 는재정경제부장 관이관 장한다 .[ 개정 99 · 2 · 5 99 · 5 · 24] ② 삭제[93  
· 12 · 3

1. 제 1 6조( 중 · 장 기계획 의수립 등) ①기획예 산처장관은재정 운용의 효율화  
와진 전화 를위 하 여수년간의재정 수요와 가용재 원을 예측 하는것이 필요 하다  
고판단 하는 경우



※ 회 을 수립 할 수 있다 ■ [ 개 정 99 · 2 · 5 7 99 · 5 · 24 ] ② 각 중앙 관 서의 장 은 예산을 수반하 는 중 · 장기 계획 을 수립 할 때에 는 미 리 기획 예산 처장 과 협의하 여

야 한다 ■ [ 개 정 99 · 2 · 5 7 99 · 5 · 24 ] ③ 지방자치 단 체가 국가 의 재정 지원 에 의하 여 수행 되는 사업의 계획 을 수립 할 때 에는 회계연도 개 시 전 에 미리 관계 중앙 관 서 의 장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 ④ 중앙 관 서 의 장  
제 3 항의 규 정

### 에 의 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

에 도미 리 기획예산 34 제 1 편 법 령 처장관 과 협의 하 여 야 한다 ■ [ 개 정 99 · 2 · 5 7 99 · 5 · 24 ] 제 1 7 조 삭제 [ 93 · 10 · 31 ] 제 2 장 예산 제 1 절 총칙 제 1 8 조 ( 세입세출 의정 의 및 예산 총계 주의 원칙 ) ① 한 회계연도의 모 든 수입을 세 입으 고 모든 지출을 세 출

### 로 한

다 ■ ② 세입세출 모 예산 에 계상하 여야 한다 ■ 다 만 7 7 7 7 7 가 가한 물로 출자 하는 경우 의 차 관 을 도 입하여 전대하는 경우, 는 이를, 입세, 예산외, 처리할 있다 ■ ③ 차관물 자 대의 경 우 전년 도인 출예 정분의 부득 이한 이 월 또는 월에 변 동으로 인하여 세입 이 예산을 초, 하, 되는 경 우에는 당 해 세출 예산 을 초과 하 여 지출 할 수 있다.

제 9 조 ( 예 산의 내용 ) 예산은 예산 총칙 · 세 입세출 예 산 · 계 속비 · 명시 이 월비 와 국고 채무부 담행위를 총칭한 다

■ 제 2 0 조 ( 예산의 구 ) ① 세입세출예 산은 필요한 때에 는 계 정으로 구분할 수 있. ■ ② 세입 세출예 산은 중앙 관 서의 조직별 로

분한다 ■ ③ 세 입예산 은 제 2 항 의 구분에 의 하여 그 내 용을 성 질별로 관 · 항 으로 구 분하고 7 7 7 7 7 세출예

은 제 2 항의 구분에 의 하여 그 내 용을 기능 별 · 성질 별 또는 기관별 로 장 · 관 · 항으 로 구분 한다 ■ 제

1 조 ( 예비비 ) 예측 할 수 없 는 예산 외 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 기위하 정 부 는 예비로 상 하 고 인 정 되

는 금액 을 세 입 세 출 예 산 에 계상 할 수 있다.

제 2 2 조 ( 계속 ) 원상 에 수 년도

사나제 조밋연 구개발사 업은경비.

총액과연부 액 을정하 여미 리국회의 의결 을 은 위안에서수년도 에결 처서 지출 할 수있다.

②제 1 항의 규정예의 하여 가 지출할 수있 는연 한 당 회계 연도 부 5년이내 로 한다 ■ 다 만 필요하다 고인정할때에는국회 의의결을 거 쳐다시그연한을 연장 할수있다.

제 2 3(보통) 세 출예산

중경비 의성 결 상 연도 내에그지 출을끝내.

못 할 것예결. 에는히 그취지를

세입세 출예산 예명시하 여미리국.

의승 인을연 어다 음연도에 이월 하여사용할 수있다■제24 조( 국 고채무 부담 행위) ① 법률에 의한 것과세출 예산금 액또는계속 비의총액 의범위안의것 이외에.

가 가 채무부담. 는위 를 할 때는

미래에 산으로서 \* 35 ■ 제24 조( 국 고채무 부담 행위) ① 법률에 의한 것과세출 예산금 액또는계속 비의총액 의범위안의것 이외에.

는배회 계연 도

마다국 가는국 회의의 결을연 은범위안에서채무를부담하는행위를할 수있 다■ [ 신

93 · 12 · 31]③제2항의규정에의하여채무를부 담하는행위를한경 우에는 그보고 서를 다음다음.

계연도 개시120일전까 지 국 회에제출 하여 야한다 ■ [ 신 설93 · 12 · 31]제2 절 예 산 안의편 성제25 조( 예산안편성지 침및예 산요구서제출기한) ①(각중앙관서의장 매 년 월말 까지다음연도 신 규사업및기획예 산처장관 이정하는 주요계속.

업 에 대한예. 서. 계 예 산. 처장

관 에게 제출하 여야한 다■ [ 개.

99 · 2 · 5, 99 · 2 · 24] ② 기획

예 산처 장관은 매년 3 월 31일까.

국 무 회위원의거대 통 령 의승

인 을연 은다음연도의예산 안편성지침 을각중앙.

서 의 장에서달여 한 ■ [ 개 99 · 2 · 5, 99 · 5 · 24] ③ 각중앙관서의

장은제2항의 예 산안 편성지 침에따 라그소관.

속하는

다 음 연도세출산 계 속비.

명 시이 월비및 국고채 무부담행.

요 구 서(이하 "산 권 " 라 한다

월 31일 까지기 회예산 처장관에.

제 출 해한다[정 99 - 2·

5'99·5·24④ 제3항 의예산 요구서에 대통 령이정하 는 바에 의하여예산의 편성및예산관 리기 법의적용 에필요한서 류를 첨부 하여야한 다■ 제2.

조(예산총칙) 예산총칙 에는세입 세출 예산·계속 비 · 명시이월비 외국고채무부담 행위에관한총괄적규 정을두 는이외에다 음사항을 규정하여야한다 ■ [ 개정 2008. 11. 28. 법률제 8836 호] 1 ■ 제5 조단서.

규 정 에의한국채 는차 금 의 한도액

2) 국고금관 리 법제 32조의 규정에 의한재정.

권발행 과일시 차입금 의최고액3■ 기타예산집행에관 하여필 요한 사항제2.

조 국고 채무부담행위 의이 및금액) 국고채 무부 담행위는.

항마다 께필요한이 유를명백히하고 그행위 를할연 도및 해연도 와채무부담의금액을표, 하여 야 한다■ 제28조( 예산 안의편.

) 기획예산처장 관은제25 조의규정에의한예산요구서에 의하여예산안을편성하여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대통령의 승인을, 어야한다■ [ 개정 99· 2· 5'99· 5· 24 제2 9조( 독립기관의예 산) 국 회 대 법원 헌법재판 소 감 사원 중 양선거관리위원회( 이하 “독.

기관” 이라 한다) 의 세출예산 요구액을감액할때에는국무회의에서당 - 36 제 편 법령.

독립기관의장의의견을구 하여야한다■ 제30 조( 예산의 국회.

출 ) 정부제28. 위. 에의 한 예 산안을 회계연도개시90일전까지국회에제 출하여야한다■ 제31

조 ( 예 산안 의첨 부서류) 국회에제.

하 는 예산에는음 류 를 첨부하

여야한다■ 1 ■ 제25 조제2 항의규 정에의한. 산안. 성지침2 ■ 세입세출 예산 사항 별명서. ■ 국고 채 무부담행위실 명서4■ 세 입세출예산총 계표 및순 계표5■. 채와 차 입 금의상환에관 한전 전년 도말에있. 서의실적 및전년도말 과당 해연 띃의현 재 액추정.

그상환연 차표에 관한명 세서6■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다음연도 이후에 걸치 는것에있. 서는전년 도말까지.

지출액또는지출추정액과당 해연도 이후의지출예정액에관한명세 서7■ 계속 비에관 한전년도말까지의지출 액또는지출추정액 및 당해연 도이후 의지출예정액과사업전 체의 계 획및그진행상황에관한명세서 8■ 예 산정원 표와 산편 성

| 도 말                                | 에  | 있         | 어서의   |
|------------------------------------|--|-----------|---|
| <p>항의 규정에<br/>의하여수정<br/>예산안 또는</p> | <p>제31 조 예정 된예<br/>산안 부서 의전<br/>부또</p>   |           | <p>현재액과전 년도말<br/>당해연 말에있<br/>서의현 액추정<br/>관한명 서1 0<br/>독립기</p>   |
| <p>추가 정정에<br/>산안을제출<br/>하는경우에는</p> | <p>는일부 생략<br/>수있 제 4조<br/>예산불 립시 예산<br/>행) 국회 서부<br/>이한 유로 계연<br/>개시 까지 산안<br/>의결 지못 때에<br/>정부 헌법 54조<br/>3항 규정 의하<br/>예산 집행 여야<br/>다 제1 의규<br/>에의 여집 된예</p> | <p>산은</p> | <p>관의예산요 구액을<br/>액하 을때에<br/>그삭감 유와당<br/>독립기관 장의의<br/>11 타재정<br/>상황과예 안의내<br/>을명백 할수있<br/>서류제 2조( 국<br/>제출증 예산안<br/>수정) 정부 는예<br/>안을 회에게<br/>한후부득 한사유<br/>인하 그내 의일부를<br/>정 하고 할때에<br/>국무회 의심의<br/>거쳐대<br/>령의승인을 얻어<br/>정예 안을 회에<br/>출할수 다 제<br/>3조( 추가 정정<br/>산안) 정부는<br/>산성립 에생긴<br/>유로<br/>하여이미성 립된<br/>산에 경을 할필<br/>가있을<br/>에는추가정 정예<br/>안을 성하 국회에<br/>출할수있다 ②<br/>32조 제1</p> |

| 예 산                      | 이   | 성  | 립되면  |
|--------------------------|---|--|--|
| 립되 면각중<br>양관서의장<br>은사업운영 | 계획및 에의 세입<br>출예 · 계 비와<br>고채 부담 위를<br>함한 산배 요구<br>를기 예산 장관<br>게재 하여 한다<br>[ 개 99· 2 · 5,<br>99· 5· ②기<br>예산 장관 제1<br>의예 배정요 | 구서 국고 관리<br>제30 2항 월별<br>금계 에따 분기<br>예산 정계 을작<br>하고 정경 부장<br>이제 한월 자금<br>회과 계국 회의<br>심의 거쳐<br>통령의 승인을<br>어야 다 만<br>회예 처장 은세<br>예산 정계 을작<br>함에 어서 정경<br>부장 이제 한월<br>자금 회을 정할<br>요가 을때 는재<br>경제 장관 협의<br>어야 다 개정<br>· 2 5 9<br>· 2 2 02<br>12 30 법률<br>호 ③기 예산<br>장관 각중 관서<br>장에 예산 배정<br>때에 재정 체부<br>관과 사원 통지<br>어야 다 개정<br>· 2 5 9<br>· 24 ④기회예산처<br>장관 필요 경우<br>는대 령령 정하<br>바에의 여회계 | 그성립된예 산에<br>하여집<br>된것으로본 다<br>37 제3 절에<br>의집<br>제35조( 예산의<br>정) ①예산 이성 |

연도개시전에 예산을 배정할수있 다 [ 개정 99· 2 · 5 99· 5· 24 ⑤각중 양관  
 서의장은 예산에 총액으 로계상된사업으로 서대통령 령으로정하 는사 업에대하여는예  
 산배정전에 사업 시행계획 을수립 하여 기획예산처 장관 과협의하여야한다 [ 신설 93  
 · 12 · 31 .

9 9 · 2 · 59 · 9 · 제 36 조

( 예산 의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예.

이 체 ) ( 과 정, 세, 은 세 출 예 산 이

정 한 목 적 이 외 예 경 비 를 사용 하.

나 예 산 예산 처 장 관 및 각 장 · 관

· 향 간 예 상 호 이 용 할 수 없 다. 만, 산 집 행 상 필 요 예 의 하 여 미 리 예 산 으 로 써 국 회 의 의 결 을 얻 었 을 때.

는 기 획 예산 처 장 의 인 을 얻 어 이

용 할 수 있 다. [ 개 정 99 · 2 · 5, 99 · 5 · 24 ] ② 정.

조 직 등 예산 한 법 령 의 제 정 · 개 정 또 는 폐 지 로 인 하 여 그 직 무 와 권 한 에 변 동 이 있 을 때 예 는 기 획 예 산 처 장 관 은 당 해 중 양 관 서 의 장 의 요 구 예 의 하 여 그 예 산 을 상 호 이 용 및 이 체 할 수 있 다. [ 개 정 99 · 2 · 5, 99 · 5 · 24 ] ③ 기

9 · 5 · 24 ] ③ 기 획 예 산 처 장 관 은 제 1 항 단 서 와 제 2 항 의 규 정 예 의 하 여 예 산 을 이 용 또 는 이 체 한 때 에 는 당 해 중 양 관 서 의 장 · 재 정 경 제 부 장 관 및 감 사 원 에 통 지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99 · 2 · 5, 99 · 5 · 24 ] 제 36 조 의 2 ( 예산 성과 금 지 급 등 ) ① 각 중 양 관 서 의 장 은 예산 의 집행 방 법 또 는 제 도 의 개 선 등 으 로 수 입 이 증 대 되 거 나 지 출 이 절 약 된 경

에 는 중, 대, 소, 전 산 의 일 부 를 이

에 기 여 한 자 에 게 성과 금 으 로 지.

하 거 나 특 사 업 사 할 수 있 다. ② 각 중 양 관 서 의 장 이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한 성과 금 을

급 하 거 나 다 른 사 업 에 사용 하 고 자 할 경 우 에 는 예산 성과

심 사 위 원 회 의 심 사 를 거

쳐 야 한 다. 제 37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규 정 예 의 한 성 과 금 지 급 및 다 른 사 업 에 사용, 예산 성과 금 심 사 위 원 회 의 구 성 · 운 영 등 관 하 여 필 요 사 항 은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한 때, 본 조 신 설 99 · 2 · 5, 제 37 조 ( 예산 전 용 ) ① 각 중 양 관 서 의 장 은 대 통 령 령 이 정 하 는 바 예 의 하.

각 세 향 또 는 목 의 금 액 을 기 획 예 산 처 장 관 의 승 인 을 얻 어 전 용 할 수 있 다. [ 개 정 99 · 2

5, 99 · 5 · 24 ] ② 각 중 양 관 서 의 장 은 제 1 항 의 규 정 에 불 구 하 고 회 계 연 도 다 기 획, 산 처 장

관 이 정 하 는 범 위 안 에 서 각 세 향 또 는 목 의 금 액 을 전 용, 수 있 다. [ 개 정 99 · 2 · 5, 99 · 5 · 24

③ 기 획 예 산 처 장 관 은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전 용 의 승 인 을 한 때 에 는 그 전 용 명 세 서 를 당 해

중 양 관 서 의 장 · 재

정 제 부 장 관 및 감 사.

에 송 부 하 여, 양 관 서 의 장

은 제 2 항 의 규 정 예 의 하 여 전 용 을 한.

별 금 액이유를시 명 세 서 를제

정 경제 부장관 · 기획 예산처장

및 감 사원예송부하 야한 [ 개 정 99 · 2 · 5 99 · 5 ·

24] ④ 제 1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 의 금액 은 세입  
세출결 산보 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그 이유를 기재 하여야 한다 38 조 ( 세출 예산 의이월 )

매 회계연도의 세출 예 산은 다음 연도 에이월 하여 사용 수 없다 다만 9 세출예

중 다 음 각 호의 1 에 해당 하는 경 비의 금액 은 다음 회계연 도에이월 하 여 사용할 수 있다 [ 개  
정 93 · 12 · 31 99 · 2 · 5 ] 1 명시 이월 비 2 연도 내에지출원인 행위 를

고발거피한 사유로 인하여연 도내에지출하지못 한 경 비와 세출원 인 행위 를 하지아 니한 그  
부 대 경 비 3 지출원인 행위 를 위하여 입찰공고

한 경 비의 공공 후출 원 인 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4

41 공익 · 공공 사업 의 시행 에 필요 한 손실보

비로서 대통령령 이 정 하는 경 비 5 경 상 적 성 격 의 경 비로 서 대통령

이 정 하는 경 비 2 계속 비 의 연 도 별 연 부 액 중 당 해 연 도에 지출 하지 못 한 금액 은 제 1 항의 규  
정 에 불 구 하 고 당 해 계속 사업 의 완 성 연 도 까 지 처 분 이월 여 사 용 할 수 있다 ③ 각 중

양 관 서 의 장 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 정에 의 하여 예산을 이 월 하는 때 에 는 대통령령 이 하는  
바에 하여 이 월 명 세 서 를 작 성 하고 이를 다음

도 1 월 말까지 정. 부 관 - 기 획

예 산 처 장 관 및 감 사 원 예 송 부 하 야 한 [ 개 정 99 · 2 · 5 99 · 5 · 24 ] ④ 각  
중 양 관 서 의 장 이 제 1 항 및

2 항 의 예산 의 산을 이 월 하는

때 에 는 그 이월 하는 과 목 별 금액

다 음 연도 이월 산보 배 정 된 것

으 로 본 다 39 ⑤ 기 획 예 처 장 은 세입 징 수 황 등 을 감안 하여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할 때 에 는 재정 정 제 부 장 관

협 의 해 면 제 항 제 2 항 의 규 정에 의 한 세출 예산 의 이월

사 용 을 제한 하기 위 한 조 치 를 할 수 있다 [ 개 정 99

2 · 5 99 · 5 · 24 ] 제 39 조 ( 예비

비 의 관 리 와 사 용 ) ① 예비 비 는 기 획 예 산 처 장 관 이

리 한다 [ 개 정 99 · 2 · 5 99 · 5 · 24 ] ② 각 중 양 관 서 의 장 은 예 배 위 사 용 유효 로 할 경  
우 에 는 그 이 유

액 과 추 산 의 기초 를 명백히 한 명 세 서 를 작 성 하여 기 획 예 산 처 장 관 에 계 출 하여야 한다 다만 9  
대

의 신 <sup>수원구를</sup>하필 요 한 때에

는 자연재해대책 법제 5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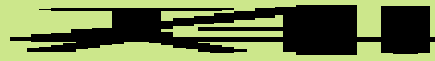
황 보고를 기초로 긴급 재해 구호및 복구 예산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 산하여 예비 비를 신청할수 있다

다 [ 개정 99·2·5 99·5·24 ③ 기획 예산처 장관 은제 2항. 요구를 심사 한후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 정하고 예비 비 사용명세서 를 작성하 여 국 회 의 심 의 를 거쳐 대 통령 의 승인 을 얻 어야 한 다 [ 개.

99·2·5 99·5·24 ④ 일반회계 로부 터 전 입 받은 특별회 계는 필 요한 경우에 일.

회 계에 비비를 전 입 받아 이를 수입으로 하여 그 특별회 계 의.







예 비비사용명 세서의

작성및국 회 제출 ) ①각중 양관서의 은에 비로  
 용한금액 의 명 세 서를작성하여재 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 하여야한 대[ 개 99 . 5].  
 재정경제 부 장관은제 1 항의명세서에의하여예비비로사 용한금액 의  
 총괄표를 작 성하 여국무회 의의심 의 거쳐 통령  
 승인을얻 어 야한 다[ 개 정99 . 2 5]③ 정경.  
 부 장관은 제 2 항의총괄표를감사원에 제출 하여야한 대[ 개. 99 . 5].  
 정부는예 비 비로 사용한총괄표를다음다음회계연도 개시[20]일 전까지국 . 예제 . 하여  
 승인을얻 어 야한 다 제41 조( 수입대체 경비) ①용역및시설을제공하여발생  
 하는수입과관 련되는경 비로서대 령. 정하  
 경비( 이 하 “수입대체 경비” 라한 다) 에있어서는 중앙관서  
 의장은수 입예산 초과. 거나.  
 과할것이 예 상되는경우에는그초 과수입을 대통령령 이정하는 예의 여당.  
 초과수입 에 직 접 관련되는 경비및 수반 는경.

에 초과 지 출

할 수 있 대 ②수 입 대체경비의예산초과집행 에관하 여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전문개 정2].  
 0 2 ■ 12 ■ 3 0 ■ 법률제 8836 호] 제 3 장결 산제42조( 결 산보 고 서등 의작성  
 및제출.  
 각 양관서 의장은대 통령 령이정 하 는바 40 ■ 제 1 편 법령 의하 매 회계연도마  
 다그소관 예속 하는세입세출 의결산보 고서 1 ■ 계속비 결 산보고서및국 가의채 무  
 에 관한계 산서  
 를 성하여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재정경제 부장 관 에게제출하여 야한다 ■ [ 개  
 정99 . 2 5]제. 3조( 세입세출 결산의작성 ) ①재정 경제부 장 관은세입세 출  
 의결 산보  
 고 에의하여세입세 출의결산을작 성하여국 무회의의 심의 를 거쳐대 통령 의승인  
 을얻 야한 . ■ [ 개정99 . 2 . 5]②세입세출의결산은세입세출예산과동일한구 분 에  
 의 하여 이를작 성하며 다 음사항 을명백 히하  
 예 한다■ [ 개정93 . 12 . 31 ■ 2002 ■ 1 2 ■ 30 ■ 법률 제 8836 호 ] 1 ■ 세  
 입 가 ■ 세 입예산액 나 ■ 이체 등증 감액다 ■ 세

라 1 징수결정액 마 1 수납액 바 1 불납 결손액 사 1 미수납액 2 1 세출 가 1 세출에 산액나.

진 도이월액 다 1 예비 비사용액라 1 전용 등증

라 마 1 제41조단서의규정에의한초과 지출액 바 1 세출에 산액 액 사 1 지출액 아 1 다음 연도

이 액자 1 불용액 제44조(세입세출 결산의 제출 과송부) ① 재정경제 부장관은

세출결산에각중앙관서의세입세출 결산보고서 1 계속비결산 보고서 및국가의 재무에 관한 계산서를첨부하

여 다음연도 6월 10일까지 기획예산처 장관및 감사원 에제출 하여야 한다 1 [개정 99·2·5 99·9·

5 2] ② 감사원은제1항의세입세출결산서를 검사 하고그 보고서를 다음연도 8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에 송부하 여야한 다 1 [개정 99···5] 45조(세입세출결산의국회제출) 정부는감사원의검사를거친세입세출결산을

회 연도마다 다음다음회 계연도개시 120일전까 지국회에 제출 한 다 1 - 41 1 제46조 제 46 조(세입세

출결산 1첨부서류) 정부에서국회에 제출하는세입세출결산에 는세입세출결산 보고서 1 계속비결산보고서 1 국가의재무에 관한계산서를첨부 하여 야한 다 제 47 조(세계잉여의처리) ①매회 계연도 세입세출 의결산 상생긴잉여금(이하 “세계 잉 금” 라한다) 은제38 조의규정 에의한세출예산 이월액의재원으로사 다음연도의 세입에이 입하여야한다 1 ② 세계잉여금중 다른.

를 에 의 하는것과제1 항의규 정에의한이 월액을 공제한잔액은 국무회 의의 심의를 거 쳐대통령의 승 인을얻어 그세계잉여 금이.

긴 다음 연도까지당해 회 계의 세출 예산 에구애 됨이없이 다음각 호의용도에 사 용 할수 있다 1 1 1 국 채또는차입금의원 리금상환 2 1 국가배상법에 의하여확 정된국가배상금 ③세계잉여 금 중제1 항 및제2항의 규정에의한액, 공제한잔액은다 음연도의세입에이 입하여야한다 제7 조의2(일반회계세계잉여금처리에관한특례) ① 반 회 계 세계잉여금 은제4조 제3항의 규정 에 불구하 고국 무회의의 심의를 거 쳐 대 통 령 의승

을 어그세계잉 여 금이생긴다음연 도까지당해 회계의 세출에 산에구애 됨이없이 다 음각 의용도에 사용할수 있다 1 [ 개정 93

12 31 96·12·1 2 99·1·21 99·12·31] 1 1 양 증권정리기 금법에의 한부채의상 환 2 1 재정용자특 별회계법에의 한재정용 자특별 회계의차.

금 ( 예 수금을포함한 다) 의 원리금 상환 3 1 국 법에 제3조 제1 항본문의규정 에의하

금상환② 재정경제부 장관은제 1 항의규정에 의하여세 계잉여금 으로원 리 금을 환할필요가있는경 우에는원 리금상환의규 모등에관하 여기획예 산처장관과 협의 하 여야한다■ [ 개정99·2·5 99·5·24] [본 조신설91·12·27] 제4장 수입 삭제 [ 2002 1 2 3 0 1 법률제 6836 호

제 4 8 조삭제 [ 2 0 0 2 1 2 3 0 1 법률제 6836 호 ] 제4 9조삭 제 [ 2 0 0 2 1 2 3 0 1 법률제 6836 호 ] 제5 0조

제 2002 1 2 3 0 1

법 제 6836 호] 제 51 조삭제 [ 2002 1 2 3 0

1 법률제 6836 호] 제5 2조 삭제 [ 200 2 1 2 3 0 1 법률

제 호 ] - 42 ■ 제1 편법

령 53조삭 제 [ 20 0 2

1 2 3 0 1 법률제 6836 호 ] 제 54조 삭제 [ 2002 1 2 3 0

1 법률제 6836 호] 제5 5조삭 제 [ 2 0 0 2 1 2 3 0 1 법률제 6836 호] 제5 장

수입및 지출제1 절총칙 [ 삭제 법률제 6836 호] 제5 6 조 ( 국고

의 리) 회계및기금 의수 입 · 지 출등국 고 금의 관리에관하 여는

따 법률이정 하 는바에의

하 9 다른 법률에 특별한규 정이 없는사 항은 이법이정하 는바에따 른다

■ [ 신문 개 정200 2 1 2 3 0 1 법률제 6836 호] 제57 조삭제 [ 법률제 6836 호

] 제2 절지출 원인행 위 [ 삭제 [ 20 0 2 1 2 3 0 1 법률제 6836 호 ] 제 5

8 조삭제 [ 2 0 0 2 1 2 3 0 1 법률제 6836 호 ] .

5 9 조 삭 제 [ 2002 1 2 3 0 1 법률제 6836 호] 제60조 ( 명시 이월 비의다음

연 도에걸친 지출 원인행위) ①각 중앙관서 의장은명 시이월 비에 대하 여예산 집행 상 부득 이한사 유가있을 때에는사항마다그 사유와 금액을명 백히

여 획 예 산처장관의승 인을얻 은금액 의범위 내에서다 음연도 걸쳐 지출하여야할 지출원인행위 를할수 있다 ■ [ 개정99·2·5 99·5·24] ②기획 예산처 장 관은제1 항의규정

의 여 다음연도 에걸쳐 서지 출하여야할지출원인 행 위를승인 한때 에는재 정경제 부장관에게통지 하여야한다 ■ [ 개 정99·2·

5 9 5·24] 제3 절지출 [ 삭 제 법률제 6836 호

11. 6 1 조 삭 제 [ 2002 1 2 3 0 1 법률제 6836 호] 제 62조삭

제 [ 2002 1 2 3 0 1 법률제 6836 호] 제63조삭 제 [ 20 0 2 1 2 3 0 1

3 0 1 법률제 6836 호] 제 6 4조 제 [ 2 0 0 2 1 2 3 0 1 법률제 6836 호

] 제65 조삭제 [ 2 0 0 2 1 2 3 0 1 법률제 6836 호] 제 66조삭 제 [ 2 0

0 2 1 2 3 0 1 법률제 6836 호] 제6 7 조삭제 [ 99·2·5 ] 제68조삭 제 [ 2

2 3

법률 제 6836호] 제69조 삭제 [ 2002 1 2 3 0 법률 제 6836호 ] - 43 제 70조삭제 [ 2002 1 2 3 0 법률 제 6836호

] 제71조삭제 [ 2 00 2 1 2 3 0 법률 제 6836호 ] 제4 절 지급[ 삭제 [ 2002 1 2 3 0 법률 제 6836호 ] 제72조삭제 [ 2 002 1 2 3 0

법률 제 6836 호] 제6 장 ( 제73조내지제95 조) 삭 제[95· 1 · 5] 제 7장시효 제9 6조( 금전채권과채무의소 멸시효) ①금전의급 부를목적으 로하 국 가의 권리로 서 시효에관 하여다른법 률에규정 이없는것은5년간행사하지아닐때 에는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국가에대한 권리.

서금전의급부를목적 으로는 것도또 한제 1 항과같다 제97 조( 소멸시효의 중단 과정 지) 금전 의급 부를목적 으로 하는국 가의권리에있어서 는소

시효의중단·정지 기 타의 사항에관하여적용할 다른 법률의규 정이 없을때에는 민법의규 정을준용 한다 국가에대한권 리로 서금전 의급부 를 목적으 로 하는것 도 또한같 다 제98조( 시효중 단의효 력) 범 령의

정 예 하 여국가가행하는 납입의 고지는시효중단의 효력 이있다 제8 장유 가증권제 9 9조 유가증권보관 의제한) 중 앙관서의장 은법 령의규정 에의하지아니하고 는공유 또는사 유의 가 증권을보 관할 수없 다 [ 전문 개정20 02 1 2 3 0 법률 제 6836호 ] 제 0 0조 삭제 법률 제 6836호 ] 제1 01 조( 한국 은행또 는금융 기관의유가증권 취급.

국가는그소유또는보 관속하 는유가 증권 의취급을한 국은행또 는대 통령령이정 하는 금 용기 관( 이하 “금융기관” 이 라 한다 ) 에명할 수있 다 제1 02조( 한 국은행에대 한검

) 한국은 행 은제101 조 의규 정에의하여취급한유가증권의수불에관하 여감사 원의 검 사를받아 야한 다 [ 전문개정 2002년 법률 제 6836 호] 제1 03 조( 한국은행의배 상 책임 ) 한국 은행 이국 가를위하 여취 급하 는유가증권 의 44 제1 편법령출납 보관에관하 여국

예 섹 른 개친경우 에한국 은행 의배상책임에 관하여 는민 법과상법 을적용 한다 [ 전문개정20 02 1 2 3 0 법률 제 6836 호] 제9 장삭제 [ 2 0 05 1 1 27 ] [ [ 시행일 2002년 제1 0 4조삭제 [ 20

5 1 27 ] [ [ 시행 일 제1 05조삭 제 [ 20 0 1 1 27 ] [ [ 시행 일 제10 장기록 과보고제

1. 6조( 장부의 비치) 재 정정 제부장관

중 관서의장한 국은

행 금융기관은대 통령령 이정하는바 예의 하 여장

부 비치하고필요 한사항 을기록 하여 야한 다 [ 전문 개정 200 2 1 2 3 0 ]

법 제 6836 호] 제1 07 조 ( 회 계보고와사업 보고) ①각중 앙 관

썸. 은대통령령 이정하 는바에 의하 여회계 예관 한보고 서 를재정 경제

부장 에게제출하여 야한다 [ 개정 93 . 12 . 3 1 99 . 2 . 5 200 2 1 2 3 0 ] 법 률제 6836 호 ]

11. 출원인행 위보고서 2 수입 및 지출에관한 보고 서 3

개. 계에관한보고 서 ②재정

경제부장관은제 1 항의 보고서를 분기 마다 중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 개정 99 . 2 . 5 99 . 5 . 24 ] ③각중앙 관서.

장은대통령령 이정하 는바에의하 여분 기마다사 업집행보 고서와기타예산에관 한 보고서를 기획예산처 장관.

게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99 . 2 . 5 99 . 5 . 24 ] ④기획예산처장 관은 제 3 항의규 정에의 한 보 고서.

내 용을 분 석하여필요한경우 에는적 절한조치를취할 수있다 [ 개 정 99 . 2 . 5 99 . 5 . 24 ] [ 본조제목 개정 법 률제 6836 호] 제1 08 조( 보고 와계산서의 제출) 한국은 행과 금융기 관은대 통령령이정하 는바에 따라국가 를위 하 여취 급 한유가증 권의 수불.

에 관한 보 고서와계산서 를작성하 여 재정경제부 장관과 감사 원에게 출하여야한다 [ 전 문개정 2 002 1 2 3 0 ] 법 률 제 6836 호] 제1 09조( 재 정상황 예관 한보고) 정부 는예산이성립 되면지체 없 이에 산 전년도결 45 산 국채 차 입금 국유재 산의 현재액기타재 정에관한일반 사 항 을인.

물 가타 적 당한방법 으로국민에게알려 야한다 제 1 1 장보 칙제 1 1 0 조 ( 보 증채 무부담행위 ) ①국가가보증 채무를 부 담하고 자하 는경 우에는미 리국회의 동의 를얻어 야한.

②제 1 항의보증채 무의관 리에 관하여 필 요한사 항은대 통령령으로정한 다 제 1 1 1 조 ( 예산 및 회 계에.

한 법령 의 협의) 각 중앙관 서의장은예산및회 계에관한법령 을입 안할때 에는예 산에관 한법령 은기 획예 산처장 관 회계에 관한.

령은재정경제부장 관과 협 의하 여야한 다 [ 개 정 99 . 2 . 5 99 . 5 . 2 4 ] 제 1 1 .

조 다른법령에관 한협

관 의 장이 예산및 회계에 관한 법령 이외의 다른 법령으로서 예산및 회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자할

때 도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

다 제 1 13조 삭제 [ 2 00 2 1 2 3 0 1 법 률 제 6836 호 ] 제 1 14조 삭제 [ 200 2 1 2 3 0 1 법률 제 6836 호 ] 제 1 15 조( 자 금의 보유 ) 국가

법 로 정하는 경우 에 한하 여 특 별한 자 금을 보유 할 수 있다 제 1 6 조( 특 별 회 계의 특 례 ) . 특 별 회 계에 있 어서 필 요

한 우 에 는 이 법 의 규 정 과 다

른 정 을 법 률 로 정 할 수 있다 제 1 7 조( 예 산 집 행 의 감 독 ) 기 획

예 산 장 판 재 정 경 제 부 장 관 은 예 산 과 회 계 의 적 정 을 기 하 기 위 하 여 소 속 공 무 원 으 로 하 여 금 실 지 조 사 하 게 하 며 필 요 에 따 라 서 는 국 무 회 의 의 심 의 를 거 쳐 대 통 령 의 승 인 을 얻 어 각 중 앙 관 서 의 장 에 대 하 여 예 산 과 회 계 에 관 한 지 시 를 할 수 있다 제 1 8 조( 내 부 통 제 ) 각 중 앙

서 약 은 유효 한 재 정 관 리 · 재 원 사 용 의 적 정 여 부 와 집 행 과 정 에 서 보 고 된 자 료 의 신 병 성 을 분 석 평 가 하 기 위 하 여 소 속 공 무 원 으 로 하 여 금 필 요 한 사 항 관 하 여 내 부 통 제 를 하 게 하 여 야 한 다 제 1 9 조 삭제 [ 2 00 2 1 2

3 0 1 법 률 제 6836 호 ] 제 20 조 삭제 [ 200 2 1 2 3 0 1 법 률 제 6836 호 ] 제 21 조 삭제 [ 200 2 1 2 3 0 1 법 률 제 6836 호 ]

제 22 조 ( 회 계 관 계 공 무 원 의 책 )

) 회 계 관 계 직 원 의 책 임 에 관 하 여 는 따 로 법 률 로 정 한 다 제 1 23 조 삭제 [ 200 2 1 2 3 0 1 법 률 제 6836 호 ] .

1. 4 조( 회 계 관 계 공

무 의 교 육 ) 정 부 는 회 계 관 계 공 무 원 의 자 질 향 상 을 위 하 여 대

외 제 1 편 법 령 통 령 령 이 정 하 는 바 에 의 하

여 육 을 실 시 할 수 있다 제 1 부 칙

부 ① ( 시 행 일 ) 이 법 은 공 포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 제 2 부 칙

7 제 7 항 제 40 조 제 4 항 제 42 조 제 44 조 제 45 조

제 76 조 및 제 81 조 제 3 항 의 규 정 은 1990 년 1 월 1 일 부 터 시 행 한 다 제 2 부 칙 ( 다 른 법 령 과 의 관 계 ) 이 법 시 행 당 시 다 른 법 령 에 서 종 전 의 규 정 을 인

하 고 있 는 것 은 이 법 의 해 당 규 정 을 인 용 한 것 으 로 본 다 제 1 부 칙 [ 91 · 11 · 30 ] 제 1 조 ( 시 행 일 ) 이 법 은 공 포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 제 2 조 및 제 3 조 생 령 부 칙 [ 91 · 12 · 27 ]

① ( 시 행 일 ) 이 법 은 공 포 한

부 터 시 행 한 다 제 2 삭제 [ 93 · 12 · 31 ] 부 칙 [ 91 · 12 · 31 ] 제 1 조 ( 시 행 일 ) 이 법 은 1992 년 1 월 1 일 부 터 시 행 한 다 제 2 조 및 제 3 조 생 령 부 칙 [ 93 · 12 · 31 ] 이 법



시행한 다■부칙[95 · 1

5] 제1 조( 시행일 ) 이 법은 공포후 6월 이경과 한달부 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 내 지제4 조생략부칙 [96 ·

· 12] 제 1 조( 시행일 ) 이 법은 1997년1 월1 일부터시 행한다■ 제2 조내지제 6조생략부 칙 [99 · 1 · 21] 제 1 조( 시행일 ) 이 법 은 2000 년1 월 1 일부터 시행한 다 ■ 제 2조내 지제5조생략부 칙[99 · 2

5] 이 법은공 포한날 부터시행 한다■부 칙 [99 · 5 · 24] 제1 조( 시행 일 ) 이 법은 공 포 한날부 터시행한다■ [ 단 서 생략] 제2조내 지제

조 생략 부 칙[99 · 12 · 31] ~ 47 ■ 제1 조( 시행 일 ) 이 법은 2000 년4월1 일부터시행한다 ■ 제2조내지제4조생략부 칙[99] 제1 조( . 행일 ) 이 법은 2003 년 1 월1 일 부터시행한다 ■ 제 조내지제5조및제 7조 생략, 6조( 다른법률의 개정) 제, 항예산 회계법 중 다 음과같이개정한다 ■ 제 6 조를삭 제한다■ 제14 조의 제목 “ ( 중앙 관 서의 장의정 의및수입 의직접사 용금 지 ) ” 를 “ ( 중 앙 관서

장 의 ) ” 로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 한다■ 제26 조제2호중 “ 제 6조 ” 를 “ 국고금관 리법제32조 ” 로한

■ 제5 조 제2항을다음 과같이 한다■ ②기 획예산처 장관은 제1 항 의예산 배정요 구서 와 국고 금관리법제30조 2항의 월별자 금계 획에 따라분 별예산배 정 계획을 작성 하고재 정경제부장관이제 출한 월별자금계획과 함께국 무회의의심 의를 처대 통령의승인을얻 어야한 다■ 다 만 기획예산처 장관은세 출예산 배정계획을 작성 함에 있어서재 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월 별자금계 획을수 정할필요가있을때 에는재 정경제 부장관과협 의하

야 한다 ■ 제41 조를다음과같 이한다■ 제41조( 수입대 체경 비) ①용역및시 설을 제 공하 여발 생하는 수입과관 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 이정하는경비( 이 하 “수 입대체 경비

라 다) 에있어서는 중앙관 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초 과 하거나 초과 할것이에 상 되는경 우에는그 초과

수 을대통 령령 이정하 는바에의 하여당 해초과 수 입에 직접

관 되는경 비및이에 수반되는경비에초과지 출할수 있 다■ ② 수 입대체 경비 의예 산 초과집행 에관

하 예월 요 한사항은대통령령 으로정한다■ 제 43조제2항제2 호마 목 중 “제41 제 1 항 단 서” 를 “제41 조” 로 한다■ 제 4장( 제48조내 지제55조) 을삭 제한다 ■ 제5 장 의제목 “지출 ” 을 “ 수입

지 출 ” 로 한다■ 제56조 앞의 “제 1 절 총칙” 을 삭제한 다■ 제56조를다음 과 같이한 다■ 제56 조( 국 고금의 관리) 회계및 기금의수 입 · 지출 등국고 금의관리 에관

법을 이 정 하는 바 예 의 하 되 ㉞ 다 른 법 률 에 특 별 한 규 정 이 없 는 사 항 은 이 법 이 정 하는 바 에 따 른.

■ 제 57 조 를 삭 제 한 다 ■ 제 57 조 다 음 의 “ 제 2 절 1 출 원 인 행 위 ” 를 삭 제 한 다 ■ 제 58 조 및 제 59 조 각 각 삭 제 한 다 ■ 48 ■ 제 1 편 법 령 제 5 장 제 3 절 (

61 조 내 지 제 66 조 ㉞ 제 68 조 내 지 제 71 조 ) 및 제 5 장 제 4 절 ( 제 72 조 ) 을 각 각 삭 제 한 다 ■ 제 8 장 의 제 목 “ 국 고 금 과 유 가 증 권 ” 을 “ 유 가 증 권 ” 으 로 한 다 ■ 제 99 조 를 다 음 과 같 이 한 다 ■ 제 99 조 ( 유 가 증 권 보 관 의 제 한 ) 중 양 관 서 의 장 은 법 령 의 규 정 에 의 하 지 아 니 하 고 는 공 유 또는

유 의 유 가 증 권 을 보 관 할 수 없 다 ■ 제 100 조 를 삭 제 한 다 ■ 제 102 조 · 제 103 조 및 제 106 조 를 각 각 다 음 과 같 이 한 다 ■ 제 102 조 ( 한 국 은 행 에 대 한 검 사 ) 한 국 은 행 은 제 101 조 의 규 정 예 의 하 여 취 급 한 유 가 증 권 의

불 에 관 하 여 감 사 원 의 검 사 를 받 아 야 한 다 ■ 제 103 조 ( 한 국 은 행 의 배 상 책 임 ) 한 국 은 행 이 국 가 를 위 여 취 급 하 는 유 가 증 권 의 출 납 보 관 에 관 하 여 국 가 에 손 해 를 끼 친 경 우 에 한 국 은 행.

배 생 책 임 에 관 하 여 는 민 법 과 생 법 을 적 용 한 다 ■ 제 106 조 ( 장 부 의 비 치 ) 재 정 경 제 부 장 관 ㉞ 기 획 예 산 책 관 ㉞ 중 양 관 서 의 장 ㉞ 한 국 은 행 및 금 용 기 관 은 대 통 령 령 이 정 하 는 바 에 의 하 여 장 부 를 비 치 하 고 필 요 한 사 항 을 기 록 하 여 야 한 다 ■ 제 107 조 의 제 목 중 “ 재 정 보 고 ” 를 “ 회 계 보 고 ” 로 하 고 ㉞ 동 조 제 1 항 을 다 음 과 같 이 한 다 ■ ① 각 중 양 관 서 의 장 은 대 통 령 령 이 정 하

바 예 의 하 여 회 계 에 관 한 보 고 서 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제 108 조 를 다 음 과 같 이 한 다 ■ 제 108 조 ( 고 서 와 계 산 서 의 제 출 ) 한 국 은 행 과 금 용 기 관 은 대 통 령 령 이 정 하 는 바 에 따 라 국 가 를 위 하 여 취 급 한 유 가 증 권 의 수 불.

에 관 한 보 고 서 와 계 산 서 를 작 성 하 여 재 정 경 제 부 장 관 과 감 사 원 에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제 113 · 제 114 조 · 제 119 조 내 제 121 조 및 제 123 조 를 각 각 삭 제 한 다 ■ 제 2 항 내 지 제 31 항 생 략 부 칙 [ 20 05 1 2 7 법 률 제 7347 호 ( 국 고 금 관 리 법

] 제 1 조 ( 시 행 일 ) 이 법 은 2005 년 7 월 1 일 부 터 시 행 한 다 ■ 제 2 조 및 제 3 조 생 략 제 4 조 ( 다 른 법 률 의 개 정 ) ① 예 산 회 계 법 중 다 음 과 같 이 개 정.

다 ■ 제 4 조 및 제 9 장 ( 제 104 조 및 제 105 조 ) 을 각 각 삭 제 한 다 ■ ② 내 지 ⑦ 생 략 49 ■ 2012. 1. 19. 정 당 법 49 회 ◆ 정 당 법 법 률 제 6269 호 일 부 개 정 2.

00 ■ 02 ■ 16

■ 법 률 제 61 호 일 부 개 정 200 2 ■ 03 ■ 07 ■ 법 률 제 719 호 일 부 개 정 2 00 4 ■ 0 3 ■ 1 2 ■ 법 률 제 768 호 진 면 개 정 200 5 ■ 08 ■ 04.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이 국민 의정 치적의사형성에 참여 하 는데필요한 조직을확 보하고 정당의 민주 적 인 조직

활 동을 보 함으로써민주정 치의진 진한발 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2조 ( 정 의 ) 이법에서 “ 정 당 ” 이라함은국민의이익 을위하여 책임있는정치적주 장이 나정 책을추 진 하고공직선거 의후보자를추천 또는지지 함으 로 써국민의 정치적인사 형 성에참 여함을목적으 로하는 국민의자발 적조직 을말. 다 ■ 제 3조( 구성) 정 당 은 수도 예소재 하는 중앙당과특별시 · 광역시 · 도에각각 소재하는시 · 도당 ( 이하 시 · 당 ” 이라한다 ) 으 로구성한 다 ■ 제2 장정당의 설립제4.

( 성립) ①정당 은중앙 이중앙 선거관 리위원회에등록 함으 로써성립한다 ■ ②제 1 항의등록에는 제17조( 법정시 · 도당수) 및제18조 ( 시 · 도당 의법정당원 수) 의요 건을구 비하여야한 다 ■ 제5 조( 창당준 비 위 원회.

정 당 창 당활동은발 기인으로구성하는창당 준비 위 원회가이 름한다 ■ 제6 조( 발기 인) 창당준비위원회는중 앙당의경우에는20인 이상의 시 · 도당의경우에 는10 인 이상의 발기 인으로구성한 다 ■ 제7 조 ( 신고 ) ①중 앙당창당준비위 원회 를결성 한때에는 그대표 자는중 앙선 거 관리위 원회에다 음각호의사 항을

고 해 야 한다 ■ 1 ■ 발기의 취지 2 ■ 정당의명칭 ( 가칭) 3 ■ 사 무소 의소 재 지 4 ■ 발 기인과 그대표자 의성 명 · 주소 5 ■ 회원 회인) 및 그대 표 자적인 의인 영 6 ■ 중앙선거 관리위 원회규 칙으로정하는사 항 ② 중앙당창당준비위 원회 는 제1 항의신고를 함으로

그활동을개시할수있 다 ■ ③제 1 항의 신고 사항중제1 호내 지제 5호( 제4 호중 발 기인 의성명 · 주소를제외한다 ) 에규 정된사항에 변경

생 게에 는중앙당창당준 비위원 회의대 표자 는14일이 내에중 앙선 거관리위원회 에 변경 신고를하 여야한다 ■ 제8조 ( 창당 준비위원 회의 활동범위) ① 창당준비위 원회는창당의 목적 범위 안에서만 활동을할수있 다 ■ ②중앙당 창당준비 위원 회의 는 제7조( 신고) 제1 항의규정 의 한결성 산일부더6월이내에하여 당활 동을할 수있 다 ■ ③중앙당 창당준비 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이 내 에제11 조( 등 록신청) 의 규정 에의한중 앙당의 창당등록신청을하지아니한때에 는그기간만 료일

다음날에그창당준비 위원회 는소멸된것 으로본 다 ■ ④ 중앙 당창당준 비위원회 가소 된때에는중앙선거 관리위 원회는지체 없이그 뜻을공 고하 여야한다 ■ 제9 조 ( 시 · 도당의창당승인) 시 · 도 당의창당에는중앙 당또 는그창당 준비. 원회의 승 인이있어 야한다 ■ 제10조 ( 창당 집회 의공개) ①정당의 창당. 회는공 개 하여야 한다 ■ ② 중앙당창 당준비위원회는창 당집회 의공 개를위 하여집회 개최 일 전5일 까지 「 신문등의 자유와기 능보

에관한법률」 제2조 ( 용어의 정의) 의 규정에의한일간 신문에집 회개최공 고를하

**제11조**( 등 록신청) 창당준비 위원회 가창당 준비를 완료 한때에는 그대표 자는 관할선거 관리위원 회에 정당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중앙 당의 등록 신청사항) ① 중앙당의 등록 신청 사항은, 각호와 같다. 1. 정당 의명칭( 약칭을정한때에 는약칭을 포함한다.

2. 사무소의소재지 3. 강령( 또는 기 본정책) 과당헌 4. 대표자 · 간부의성명 · 주소 5. 당원의 수 6. 당인( 당인) 및 그대표 자직인.

인 영 7. 시· 도당의소재지와 명칭 8. 시 · 도당 의대표자 의 성명· 주소 ② 제 1 항의 등록신청에는대 표자 및 간부 의취임동의 서와제 10조( 창당집회의 공개) 제 2 항의 규정 에 의한신 문공 고에관 한증빙자료및창당대회회의 록사본을첨부 54 제.

편 병 하 야한다. **제13조** ( 시· 도당의등록신청사항) ①시 · 도당의 등록신청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당 의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 간부 의성명 · 주소 4. 당원의수 5. 당 인( 당 인) 및 그 대표 직 인의 인영 ②제1 항의등록 신청에는대표자및간 부의취 임동의서, 중앙

또는그창당준비위원 회창당 승인서, 법정 당원수 에해당 하는수 의당 원의입당 원서 사 본및 창당대회회의록 사본을첨 부하 여야한다. **제14조** ( 변경 등록) 제2조( 중앙당 의등록신청사항) 및제3 조(

### · 도 당 의 등

록 신청 사항) 의등록신청사항중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변경이생긴때 에 는14일이내에 관 할선거 관리위 원회에변경등록을신청하여야 한다. 1. 정 당의 명칭( 약칭을 포함한다 ) 2. 사무소( 중앙 당의 경우당 해 사무소 에한 한다) 의 소재지 3. 강령( 또 는기본 정책) 과당 헌 4.

대 표자 및 간부 [ 제29조( 정당 의기구 ) 제1 항의규 정에 의한기 관의장에한한다] 의성명· 주소 5. 당 인( 당인) 및 그대 표 자직 인의 인영 제 15조( 등록신청 의심.

1. 등록신청을 받은관할

선거 관리위원회는형식적요건을구비 하 는한이를거부

할 못한다. 다만, 형식

적 건을구비하 지못한 때에는 상당한기간을정 하여그보완 을명하고 2

회이생보 완 을명 하여도 응하지아니할 때에는그 신청을각. 할 수 있다. **제 16**

조 ( 등 록· 등 록증 의교부 및공고) ① 제2 조( 중앙당의 등록신청

항 ) 내 지 제4조( 변경등록) 의 규정 에의한등록신청을받은관 할선거관 리 위 원 회는

부터 7 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 부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등록을 수리할 때에는 당해 선거 관리 위 원회 지체 이 그 뜻을 공 고하여야 한다 제 1 7 조 ( 법정 시 · 도 당수 ) 정당 은 5 이 상의 시 · 도 당을 가져야 한다

1 8 조 ( 시 · 도 당의 법정 당원수 ) ① 시 · 도 당

은 천인 이상 의당원 을 가져야 한다 ② 제 1 항 의규정에 의한법 정당원수 에해 당하는수의당

원 당해시 · 도당의 관할구 역안 에주소를두어야한다 55 제 3 장정당의 당제 9 조( 합당 ) ① 정당이새로운당 명으 로합당( 이하 “ 신 설합당 ” 이라 한다 ) 거나다른 정당에 합당( 이하 “ 흡수 합당 ” 이라한다 ) 될

때 는합당을 하는정 당들의 대의 기관이나그수

임 관의합동 회의의 결의로써합 당할수있다 ②정당 의합당은제 20 조( 합당된 우의등록신청 ) 제 1 항 · 제 2 항및제 4 항의 규정에 의 하여중앙 선거관리 위원 회에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성립 한다 다만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 2 조( 적용범위 ) 의 규정에의 한선거( 이하 “ 공직선거 ” 라한다 ) 의 후보 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선거일까지의 사이 합 당된 때에는선거일후 20 일 에 그효력이발생 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규 정에의 하여 정당의합당 이성립 한경우 에는그소속시 · 도당도합당한 것으로본 다 다만 신 설합당인경 우에는합 당등록신청일 부터 3 월 이내에서 · 도당개편대회 를거쳐변경 등록

청을하여야한다 ④ 신 설합당 된정당 이제 3 항단서 의규정에의 한기간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아 니 한경우 에는그기간만료일 의다음날 에당해시 · 도당 소멸된 것으로본 다 ⑤ 합당의 로신설또 존속하는 정 당은합 당전정 당의 권리 · 의무 를승계한 다 제 20 조( 합 당된경우의 등록

청 ) ① 신설합당의 경 우정당의대표 자는제 19 조( 합 당 ) 제 1 항의규 정에의 한합동 회의 의 결의가 있는날 부터 14 일 이 에그회의록사본 을첨부 하여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에 제 12 조( 중앙당의등록신청사 항 ) 의 규정에 의한등록신청을 하여야한다 ② 제 1 항의경우 에제 12 조제 1 항제 7 호 및제

호의사항은등록신청일 부터 20 일 이내에 보완 할수있다 ③ 제 2 항의경우에있 어 그기 간이내에 보완이 없는데 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 는 2 회이 상상당한 기간을 두어보 완을명 하고 보완이 없는 때 에는 제 44 조( 등록의취소 ) 제 1 항의 규정에의 하여그 등록을 취소 할수있다 ④ 흡

합당으로존속 하는 정 당의 대표자는제 1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합동회의의결 의가있

날 부터 14 일 이내에 그회의 록사본을첨부하 여합당 된사유 를중앙선거 관리 위 원 회

야한다 제 21 조( 합당 된 경우 의 당 원 ) 제19조( 합당 ) 의 규정 에 의한 합 당 의 경우 합 당 전 정 당 의 당 원 은 합

된 정 당 의 당 원 이 된다 이 경우 합 당 전 의 입 당 원 서 는 합 당 된 정 당 의 입 당 원 서 로 본다

56 제 1 편 법 령 제 4 장 정 당 의 입 당 · 탈 당 제 22 조 ( 받 기 인 맞 당 원 의 자 격 ) ① 국 회 의 의 선 거 권 이 있 는 자 는 공 무 원 그 밖 에 그 신 분 을 이 유 로 정 당 가 입 이 나 치 활 동 을 금 지 하 는 다 른 법 령 의 규 정 에 불 구 하 고 누 구 든 지 정 당 의 받 기 인 맞 당 원 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자 는 그 러 하

아 니 하 다 1 「국 가 공 무 원 법」 제 2 조 ( 공 무 원 의 구 분 ) 또 는 「지 방 공 무 원 법」 제 2 조 ( 공 무 원 의 구 분 ) 에 규 정 된 공 무 원 다 만 대 통 령 국 무 총 리 국 무 위 원 국 회 의 위 원 지 방 의 회 의 위 원 선 거 에 의 하 여 취 임 하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국 회 의 위 원 의 보좌관 · 비 서 관 서 국 회 교 섭 단 체 의 정 책 연 구 위 원 과 「고 등 교 육 법」 제 14 조 ( 교 직 원

구 분 ) 제 1 항 · 제 2 항 의 규 정 에 의 한 총 장 · 학 장 · 교 수 · 부 교 수 · 조 교 수 · 전 임 장 사 인 교 원 을 제 외 다 총 장 · 학 장 · 교 수 · 부 교 수 · 조 교 수 · 전 임 장 사 를 제 외 한 사립 학 교 의 교 원 3 법 령 의 규 정 에 의

어 무 원 의 신 분 가 진 자 ② 대 한 민 국 국 민 이 아 니 한 자 는 당 원 이 될

수 다 제 23 조 ( 입 당 ) ① 당 원

에 고 자 하 는 자 는 서 명 또

는 인 을 한 입 당 원 서 를

시 도 당 또 는 그 창 당 준 비 위 원 회 에 제 출 하 여 입 당 신 청 을 하 여 야 한 다 이 경 우 「 전 자 서 명

법 제 2 조 ( 정 의 ) 제 3 호 의 규 정 에 의 한 공 인 전 자 서 명 이 있 는 전 자 문 서 도 입 당 신 청 을 할 수 있 다 ② 시 · 도 당 또 는 그 창 당 준 비 위 원 회 는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한 당 원 서 를 접 수 한 때 에 는 당 원 자 격 심 사 기 관 의 심 의 를 거 쳐 입 당 허 가 여 부 를 결 정 하 여 당 원 명 부 에 등 재 하 고 시

· 도 당 또 는 그 창 당 준 비 위 원 회 의 대 표 자 는 당 원 증 을 발 급 하 여 야 한 다 이 경 우 입 당 의 효 력 은 입 당 신 청 인 이 당 원 명 부 에 등 재 된 때 에 발 생 한 다 ③

입 신 청 인 은 시 · 도 당 또 는 그 창 당 준 비 위 원 회 가 입 당 원 의 접 수 를 거 부 하 거 나 또 는 정 한 사 유 없 이 입 당 심 의 를 지 연 하 거 나 입 당 을

해 지 아 니 하 는 경 우 에 는 중 앙 당 또 는 그 창 당

원 회 에 입 당 원 서

를 할 수 있 으 며 중 앙 당 또 는 그 창 당 준 비위 원 회

는 양 허 가 여 부 를 심 사 하 여 입 당 을 허 가 함 이 상 당 하 다 고 인 정 하 는 때 에 는 해 당 시 · 도 당 또 는 그 창 당 준 비위 원 회 에 입 당 신 청 인 을 당 원 명 부 에 등 재

이 우입당의 효력은 입당원 서가 중앙당  
또 그창당준비 위원 회에 접수 한때에 발생한다

■ 당원명부

에 재 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 으로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 24조 ( 당  
원명부) ①시·도 당에 는 명부 를 비치하여 야한다 ■ ②제1 항 의 명부는 법  
원이 재 판상 요구하 는 경우 와 관계.

거관 리위 원회가 당 원에 관 한 사항 을 확인 하는 경우 를 제 외하고 는 이의 열 람 을 강  
요 하 지 아 니 한다 ■ ③범죄 수사를 위한 당.

명 부의 조 세는 법 관이 발부하 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 이 57 제 2항 경우 조사 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 은 당원 명부에 관 하여 지득 한 사실 을 누설 하지 못 한다 ■ 제 25조 ( 탈당)  
①당 원이 탈 당 하고 자.

때에 는 탈당 신 고서 를 소속시·도 당에 제 출 하여 야 하며 소속시·도 당에 제 출 할  
수 없을 때에 는 그 중앙당 에 제 출 할

있다 ■ 이 정 우 「전자서명 법」 제 2조 ( 정 의) 제 3호 의 규정 에 의 한 공인 전자서  
이 있는 전 문서로 도 탈당 신 고서 를 제 출 할 수 있다 ■ ②제1 항 의 규정 에 의 한 탈 당 의 효력  
은 탈당 신 고서 가 소속시·도 당 또는 중앙당 에 접 수 될 때에 발생 한 다 ■ ③탈

당 신 고서 를 접수 한 당 해 시·도 당은 접 수 한 날 부터 2일이 내 에 당 원명 부의 기재 를 말 소 하  
고 탈 당 증명서 를 교부 하여 야 한다. ④ 제1 항 의 규정 에 의 하여 중앙 당이 당  
신 고 서 를 접수 한 때에 는 즉시 탈당 증명서 를 교

부 하 고 해 려 시·도 당 에 통보 하여 당 원명부 의 기재 를 말 소 하게 하여 야 한다 ■ 제 26조 ( 탈당  
원명부) 시·도 당에 는 탈당 명 부를 비치하여 야 한다 ■ 이 정 우 탈당원 부는 당  
원명부에 탈당 일자를 기재 하는 것 으로 갈음 할 수 있 다 ■ 제 27 조 ( 당원 명부  
등의 인 계) 정 당은 대표자 등 의 변경 이나 합 당에 따 른 조직.

편시 당원명부 등 중앙선 거관 리위 원회 규 칙 으로서 하는 관련 서류( 이하 “관 련 서 류” 라  
한다 ) 와 정 당 운영 에 관련 되는 인장 등의 인계 의무자 를 당헌에 정 하여 야 하며  
당 해 인계 의.

자 는 사 유 발생 일 부터 14일 이내 에 관련 서류 와 인장 등 인계 하여 야 한다 ■ 제 5장 정 당  
의 운영 제 28조 ( 강 령 등의 공개 및 당헌 의 기재 사항 ) ①정 당은 그 강령( 또  
기본정 책) 과 당헌 을 공개 하여 야.

다 ②제1 항 의 당헌에 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규정 하여 야 한다 ■ 1 ■ 정 당 의 명  
칭 ■ 정 당 의 일반 적인 조 직·구성 및 권한 에 관한 사항 ■ 3 ■

당 해 자·간부 의 선 임 방법 ·임기·권리 및 의무 에 관한 사항 ■ 당 의 입 당·탈당 ·  
제명 과 권리.

의무 에 관한 사항 ■ 5 ■ 대의 기관 의 설 치 및 소집 절차 ■ 6 ■ 간부 회 의 의 구성·권 한 및

■ 당의재정에 관한사항 8 ■ 공직 선거후보자 선출에관 한사항 9 ■ 당헌·당규의 제정및개정 에관한사 항 58 ■ 제1편법 령1 0 ■ 정당 의해산 및합당에관한 사항 11 ■ 등 록취소 또는자진 해산시 의 잔여 산 처분 에관한 사항제2 9조 정당의기 구) ① 정 당은 주 인내부질서 를유지하 기위 하여 8원의총의 를반영 할 수있

대의기관및집 행기 관과소속국회 의원이있는 경우에 는의원 총회를가져야 한다■

② 중앙 당은정 당의예산, 결산및 내역에관 한회계 검 사등

당의재정에관한사 항을 확인·검사 하기위 하여예산 결산위 원회를두 어야한다■③

제1 항및제 2항의기관 의조 직·권 한그밖 의사항 에관하여 는당헌으 로이를 정 하여야한다■ 제30 조( 정당의유급사무직원 수제 한) ①정당 에출수있는유급사 무직원중 중앙당에는 100인[ 제38조 ( 정책 연구소 의 설치

운 영) 의 규정에 따른정책 연구 소의연구원은그수 에서 제외한다] 을 초과할수없으 며

■시·도당에 는총100인이 내에서 각시·도당 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② 중앙선

거 관리위원 회는정당이제 1 항 에규정 된유 급사 무 직원수 를초과 한경우 에는 음연도에 「정 치자 금법」 제25조( 보조금의계상) 제3항 의규정에 의하 여지 급하는경 상보조 금에 서 당해정 당의유 급사무 직원의원 간평균 인건 비에 초과 한 유급사 무직원 수 를급

금액을감 액한 다 ■ ③제1 항 에서 “유 급사무직원” 이 라함은 상근·비 상근 을 불문하고월 15일이 상정당 예고용 되어근 로를제 공하고 임금·봉급·수당· 활동 비 그밖

어 때한 명 천으로든지그대 가를제공받는자말 한다■ 이경우 근 로일 수에불구하고 유 급으로근로 를제공 한인원 이2인 이상인때에는그들 의근로

수 를모 두 합하여월15일이상인경우이 를유급 사무 직원수에 포함 한 다■ ④ 제3 항의경우 일시적으 로근 로를 제공하 는 유급사무직원수의 계산에있어서는 유 급의근로 일 수를모두합하여매월30 일까

는1 인으로 하며 30 일을초과하는때에는매30 일까지 매1 인을추가 한다■ 제

31 조 ( 당 비) ① 정당은당 원의정예, 와정당의 재정 자립을도모하기 위하여당 비 납부, 도를설정· 운영하여 야한다■ ② 정당 의당원은 같은, 당의타 인의 당비 를부담할 수없 으며 3타 인의당비 를 부담한 자와타 인으 로하여금자 신의당 비 를부담 하게 한자는당비를낸 것이 확인 된날 부터1 년 간당 해정

의당원자격이정지된다■ ③ 당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 지아니 하는당원에대한권 리 행사

제 한3 제 8및제 2 항의규 정에 의한당원자격의 정지등 에관하 여필 요 한사 항은당 헌 으로 정한다 ■ 제3 2조 ( 서 면결의 의금 지) ① 대의기 관 의결

와 소속회원의제명에관한결 의는서면이 나대리인 에의 하여 의결할수없다■ 59 ■



는 「전자 서명법」 제2 조( 정의)

제 호의규 정 에의한

공 전자서 을통, 여도의 결할수 있으 며 그 구 체적,

방법은당헌 으로 정한다 ■ 제3 3조( 정 당소속, 회의원의제명 ) 정당이 그소속  
국회 의원을제명 하기위 해 서 는당,

이 정하 는 절차를거치는의에그소속국 회의원전 원의2분의1 이 상의 찬성이있어야한다

■ 제34조( 정당의 재정) 정당의 재산및 수입 · 지출등재정 에관한사, 은따 로법  
률 로정한다■ 제35조( 정기보고) ①중앙당과시 · 도당은매년2월 31일현 재  
로 그당 원수및활 동개황을다 음연,

2월15일( 시 · 도당은1 월31 일) 까지관할선거관리위원 회에보고하여야한다■ 이  
정 우중앙 당은당해연 도의,

책추진내용 과그추 진결과 및다음 연도의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중앙,

거 관리 위 회에보고 하여야한 다■ ②중앙 당과시 · 도당은 제17조 ( 법정 시 · 도 당수  
) 및제 18조( 시 · 도당 의법정당 원수) 의요건 에함 결이생 긴 때에,

후 이생긴날 부터14 일이내 에관할선 거관리위 원회

에 를보

고 여야한다 ■ ③제38 조(

정 연구소의설 치 · 운영 ) 의

규 에의한정책연구 소는매년12월 31 일현재로연간활동 실적을 다음연도 2월15일  
까 중앙선거관

리 원회에보고하고 ■ 당해정당 의인터 넷홈 페이지에게

시 하는 등 의방법으로공 개하여야한 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받 은연 간 활동 실적을 당해인,

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개하여야한다■ 제36조 보고 또는자료 등의제 출의 요구  
) 각급선 거관리위원회( 읍 · 면 · 동 선거관 리위원회 를제

한다) 는감독상필요한때에는정 당에대 하여보고또는장부 · 서류 그 밖의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있다 ■ 다 만 당원명 부는그러 하지아니 하다

■ 제6 장정당활동의보장제37 조( 활동의자유) ①정당은 헌법과법 른에의 하여활 동의  
자 유를가 진다■ ②정당이 특정

정 이나공직선거의 후보자( 후보

자가 되고자하는자를포함한다) 를지지 · 추 천하거 나반대함 이없 이자 당 의정 책이  
나 정치적,

안 대한입장을 인쇄 물 · 시설물 · 광 고등 을 이용하여홍 보하는행 위와당원을 모  
집하기위한 활동( 호별 방문을제 외한

적 정당활동 으 로보장되 어야한다 ■ ③정 당은 국회의 원 지역구및자치구 · 시 · 군·읍 · 면 · 동별 로당 원협의회를 둘수있다■ 다 만,누구든 지시 · 도 당하 부 직의운영을위하 여당 원협의 회등의사 무소 를둘 수없다■ 제38조( 정책연구소의설치 · 운영 ) ① 청 치자 금 법」 제27 조( 보 조금의배분 ) 의규정 60 제1 편법령에의한보 조금배 분대상 정당( 이하 “ 보 조금배 분대상정당 ” 이 라한다 ) 은 정책의 개발 · 연구 활동.

### 축 전 하 기 위

하 여중 앙 궐별도법인으로정 책연 구소( 이하 “정책연구소 ” 라 한다) 를설치 · 운 영하여 야한다 ■ ②국 가는정 책연구소의활동을지원 할수있다■ 제39조( 정책토 론 회) ① 「 공직선거법 」 제8조의7( 선거방송 토론 위원회) 규정에의 한중 앙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는보

금배분대상정 당이방송 을통하여정강 · 정책을 알릴수있도록하기위하, 임기만료에 의한공. 선거( 대통령의 궐위로인한선 거및 재선거. 포 함한다) 선거 일전90 일( 대통령의궐위 로인한선거 및재.

거에있어서 는그선 거의 실시사유가확정된날 ) 부터선거 일까지를 제외한 기간중 연2회 이상중 앙당의대표자 · 정책연구 소의 소장또는중 앙당.

대표자가지정하는 자를초 청하여 정책토론 회( 이하 “정책토 론 회” 라 한다) .

개 최하 여 야한다■ ②공영방 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 송 문화진흥회 법」 에 의한방 송 문화 진흥회가 최 다출자 자 인방 송사업 자를말한다 ■ 이 하이조에 서같다) 는정 책토론 회 를당 해텔 레비전 방송을통, 여중계 방송하 여야 하며, 그 비용 은공 영방 송사 가부담 한다 ■ ③ 「공직 선거법 」 제82

의 (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 담 · 토론회) 제7항내 지제 9 항 · 제12항 및제13 항의규 정은정 책토론 회에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 · 토 론회” 는 “정 책 토 론 회” 로, “ 각급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 는 “ 중양 선거방 송토론위 원회 ” 로 본다■ ④ 정책토 론회의개 최 · 진행및 고지그 밖 에필요한사 항은중양 선거 관 리위원 회규칙 으로정한다■ 제40조( 대체 정당 의금 지) 정 당이헌 법재 판 소 의결.

으 로해 산 된때에는해산된 정당의강령 ( 또 는기본정책) 과 동일하 거나 유사한것으로 정당을창당하 지못한다 ■ 제41 조( 유사명칭 등의사 용 금지) ①이 법 에의 하여등 록된정당이 아니.

그 칭에정당임을표시하는 문자

를 용하지 못한다 ■ ②

의 여해산 된정당 의명

칭 같은명칭은정 당의명칭

의 다시사용하 지못

한 ■ ③장 당준비위 원 회및정당의 명칭( 약 칭을포 함한

다) 이미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등록된, 당이사용중인명칭 과뚜렷이구 별 되어야 한다■ ④ 제44조( 등 록의

소 ) 제 1 항의규정에의하 여등록취소 된정 당의명칭과같은 명칭은 등록 취소된날부터 최 초로실시하 는임기 만료에 의한, 회의원선거의 선거일 까지 정당 의명칭으로 사용 수없 다■ 제42조( 강제입 당등 의금지) ①누구 든지본인의자유의 사에의

### 는 승 낙 없이정당 가 입또

는 평 을 강요당하지아 니한 다■ 다만, 당원의제 명칭분 은그러 하지아니하다■ - 61

■ ②누구 든 지2이상의정 당의 당 원이 되지

한다■ 제43조( 비밀엄수의무 ) 각급선거

위원회위원과직원 은재직중은 물론퇴직후라도

직 상 의비밀을 엄수하여야한다■

제 장 정당의소 멸제44조( 등록의취소

) 정 당이다음 각호의어느

하 에 해당하 는 때에는당 해선거관리위원회

는 등 록을취소 한다■ 1 ■ 제7조( 법정

시 도 당수) 및 제18조 ( 시 · 도당의법정당원수) 의 요건 을구비하지못하

게 때 ■ 다만, 요건의흡결이공직선

제 거 일전3월 이내에생긴

때 선 거일후3 월까지 그 의의경 우에는요건흡결

사부터3월까지그 취소를유 예한다■ 2■ 최근 4년간 임기 만료에의한국회의 원선 거또는임기

만 의 한지 방자치단체 의장 선거나 시 · 도 의 회의원 선거에 참여하 지아니한 때 3■ 임기 만료에의한 국회 의원선

거에참여하여의 석을얻지못하고 유 효투 표총수 의100분 의2이 상을득표하지못한 때②제 1 항 의규정

의 해 등 록을취소하 는 때 에는당해 선거 관리위원회는지체없 이 그뜻을공 고하여 야한

다■ 제4 5 조( 자진해산) ①정당은그대의기관결 의로 해 산할 수있다■ ② 제1

의규정에의하여정 당이해 산한때 에는그 대표자 는지체 없이그뜻을관할선 거관리

하여야한다■ 제46 조( 시·도당 창당승 인의취 소) 중앙 당또는그창당준 비위  
원 회는 시·도당 창당 승인에대한 취소사 유 와절

를 헌또는창 당 준비위원회 규약에정하 여야하며, 당헌또 는규약 에서정 한의의사  
유 로창 당승인 을취소 하는

때 는중앙 당또는그창 당준비위원 회의대 의기관에서투 표로결정 하여야 한다■ 제  
47 조( 해산 공고

등 제45조 ( 자진해산) 의 신고가있거 나헌 법재판소의 해산결정 의통지 나중앙  
당 또는

그 당 준비 위원회의시·도당 창당승인의취 소통지가 있는데 에는당해선거관 리위  
원회는그 정당의 등록을말소 하고지체없 이그뜻을 공고

하여야한다■ 제48 조( 해산된경우등 의잔여재 산처분) ①정당이 제44조 ( 등  
록의취소) 제1 항의규정 에의하 여 등록

취소되거나제45조( 자진해산 ) 의규 정에 의하여자 진해 산한때에는 그잔여재 산  
은당헌 이정 하는바에따라처 분한다 ■ ②제1 . 의규정에 하여처 분되 지 아니한  
정당 의잔 여재 산및헌법 재판 소의해산결정에의하여 해산된정당의 잔여 재산은  
국 고에

속한다■ ③제2항에 관하여필요한사항은중 앙선거관리 위원회규 칙 으로정한다  
■ - (2) 제 1 편법령 제8장별 칙제 49조( 당 대표경선등의 자유방 해죄) ①  
정당 의대표 자 ·투

로 선출 하 는당직자( 당직자의선출을위한 선거 인 단을 포함한다 ■ 이하같다) 의 선출을  
위한 선거( 이하 “당대표경선등”이라 한 다) 와관련하여다음 각호의어 느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5년이 하의징역 또는1 천 원이하 의벌금에처한다■ 1 ■ 후보 자·  
후보 자가 되고자하 는자또는 당선인을폭행 ·협 박또 는유 인하거나

포 ·감금한자 2■ 선 개운동또 는교 을방해 하 거나

계 ·사술그 밖에부정한 방법으로 당대표경 선등의자 를방해한자 3■ 업무 ·고용  
그 밖에관계

인하여자기 의보 호 ·지 휘·감 독을받는다

에 특정후보자를지지 ·추 천하거 나반 대하도록 강요한 자② 당대

표 선등과관련하여다수 인이 선거운동 을위 한시설 ·장 소등

에 위험한물건을 던지거나후 보자를 폭행 한때

에 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처벌 한다■ 1 ■ 주도

자 3년이상의유기징역2■ 다 른사람 을지 휘하

거 다른사람에앞장서서 행동한자는 7년이 하의 징역

3 다 른사 램의의견에동조하여 행 동한자는2년이하의징 역제50 조( 당대표경

도죄 ) ①당대 표경

선등 과관 련하여다 음각호의어 느하 나에해 당하는 자는3 년이하의징역또는 600 만원

하 의벌 금 예처한다 1 정 당의대표자또는당직자로 선 출되거나 되게하 거나되 지못 하게하거나 선거 인( 당대표경 선등의선거인명 부에등재된 자를말한 다) 에하 이 조 에서같 다 ) 으

하 음 투 표를하게하거나하 지아니하게 할목적으로후보자 ( 후 보 자가되고 자하는 자 를포 함한다) · 선거 운동관계 자 · 선거인또 는참관인에게금 품 · 향응그밖 에 재산상의이익) 나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그제 공의의 사를표시하거나 그제 공을약 한자 다만 중 앙 선거 관리 위원회규 칙이정하는 바에

라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음 식물 은 그러 하지

니 다 2 제1호에 정 된이 익이나직 의제

를 받거나그제공의의사표 시를

한자 2 제 1 항제1 호 · 제2 호에 규정 된행

위 관 하여 지시 · 권 유 · 요구하거나알선 한자는5 년이하 의징역 또는1 천만원 이 하의벌금에처한다 5 1 조

( 당대표경선 등의매 수 및이해 유도죄로 인한이 익의 몰수) 제50조( 당대표경선 등의매

및이해유도 죄) 의 죄를 범한자 가받 은이익은이를몰 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 는일 부를몰수할수 없을 때에는 그가 액을추 징한다 제

2조 ( 당 대표경 선등 의 허위사실 공 표죄) ①당대 표경선등과관련하 여당선

거 나 63 되게 할목적으 로연설 · 방 송 · 신문 · 통신 · 잡지 · 벽보 · 선전문서 그밖 의 방법 으로후 보자 에게유 리하도 록후

자 그의배우자또 는직 계존 · 비속이 나형제 자매의소속 · 신분 · 직 업 · 재산 · 경 력 · 학 력 · 학위 또는상벌에관 한허 위 의사실 을공표한자 와허위 의사실 을 게재한 선전문 서 를배

한 재 배 할목적으로소지한자를포함 한다 ) 는 3년이하의징역또 는6 백 만원이하 의 벌금 예처한 다 ② 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하 여당 선되지 못하게 할목적 으로연설 · 방 송 · 신문 · 통신 · 잡 지 · 벽보 · 선전문서그밖의방 법으로후 보자에게불 리하

록후보자 그의배우 자또는직 계존 · 비 속이 나형제 자매 에관하여 허 위의 사실 을 공표한자 와허위의

실을게재한선전문서 를배포한자 ( 배 포함 목적으 로소지한자를포 함한다 ) 는5

이 하의 징 역또는1 천만원이 하의벌금에처한다 제 53 조( 위법으로발 기인이 나 당 원 이된죄 ) 제22조( 발기인및 당원의자격 ) 제 항 단서 의규정을위반하여정당

나당원이 된자는1 년이 하의 징역이나100 만원

하 ㉞ 금 에 처한다 ■ 제 54 조( 입당강요죄등) 제42 조( 강제 입당등 의금지 ) 제 1 항의규정을위 반하여정당 가입또는탈당을 강요한 자는2 년이하 의징역또는 2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 5조( 위 법으로 정당 에가입한죄) 제 42 조( 강 제입당등 의 금지) 제2 항의규정 을위 반하여2이상의 정당 의당원이된 자는1 년. 하의징 역 또는 100만원이하 의벌금 에 처한다 ■ 제56 조( 당원 명부 강제 열람죄 ) 당원.

### 부 의 열 람 을

강 ㉞ 자 는5년이 하의징역 에 처한다■ 제57 조( 보 고불이행 등의죄 ) 제36 조( 보고또는자 료등 의제출 의요구) 의규정에 의 한선거 관리위원회 의보 고또는 자료제출의 요구 에정당 한사유 없이 응하지아니 하거나이에허위의보고나 기재를 한 자또 는제 35조( 정기 보고) 제1 항 내지.

3항의규정에의한 보고 를하지아니 하거나그보 고서에 허위의 기재를한 자는2 년 이하 의징역 이나20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 제5.

조( 궤무상 지득한 사실누 설죄등) 다음각 호의어 느하 나에해당 하는자는3년이 하 의징역 이나금고 에 처한다■ 1 ■ 제 24조( 당원명 부) 제3.

후 단의 규 정을위반하여 당원명부에관하 여지 득한사 실을누설 한자2■ 제43조 ( 비 밀엄수의의무) 의규 정을 위반 하여직무 상의비밀을엄수 하지아니 한자제5 9 조( 허위등록 신청죄등) ① 다음각호의 어느 나에. 당하는 자는2 년이하 의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벌금 에 처한다■ 1 ■ 허위로제 12조( 중 앙당의등 록신청 사항) 또 는제

조 ( 시 · 도당의등록신 청사항 ) 의 등록신 청을한자 - 64-제1 판법령 2■ 허위로 제4 조( 변 경등 록 ) 의변 경등록 신청을 한자3 ■ 제37 조( 활동의자 유) 제 3항단서 의규정을 위반 하 여시 · 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당 원협의 회 등의사무 소를.

자 ㉞ 제 41 조( 유사명칭 등사 용금지) 제 1 항또는 제2항 의규 정을위반한 자는 1 년 이 하의 징역이나100 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 제

0조( 각종 의궤태 죄) ① 제24 조( 당원명 부) 제 1 항또는제 26조( 탈당원 명 부) 의규정 을위 반하여 당 원명부나탈 당원명부 를비치 하지아 니한자 는1 년 이하.

징 ㉞ 는 50만원이상 300만원이하 의벌금에 처한다 ■ ②제 25조 ( 탈당) 제 3항규정 을 위반한자 는100만원 이 하의벌금에 처한 다■ ③제27조( 당원명부등의인계) 의규

류 와인장 등을인계하 지아

한자는2년이하의 징역 또는200만 원이하의벌 금에처 한 다■ 제 61조( 창당방해 등의죄) ①위또 는위력으 로써창당준 비활동을 방해.

여 쟁 준 비위원회의기 능을상 실또는일시정 지하게한자는7년이하의징역 또 는3천만 원이하 의벌금에 처한.

■ ②위계또는위력 으로서정 당활 동을방해하 여정당 의기 능을상 또는일시정지하게 한자도제 1 항에 규정 하는형 ( 형 ) 에처.

다■ 제62조( 과 대표의부과 · 징수 등) ①다음 각호의어느 하나 에해당 하는 행위를.

자 는100 만 원이하의과 대표 에처한 다■ 1 ■ 제14조( 변 경등록 ) 의규 정에의한변경등 록신 청을해 대한자 2 ■ 제 20조( 합당 된 경우 의등

신 ) 제

1. 의규정의

한 록신청또 는갈 은조제 4항

의 정에의 한신고를 해대한 자3■ 제 35조

( 기 보고) 제1 항내 지제3항의 규정 에의한 보고를해 대한

자 제1 항의규 정에의 한과 대표는중 앙선

거 리위원회 규칙이정 하는

바 의하여관할 선거관리 위원

회 읍 · 면 · 동 선거 관리위원 회를제외 한다

가. 반자 에게부과하며 ■ 납부기한 까지납 부하지아 니한. 예는. 할세 무서장에 게 위탁하고관 할세무서 장이국 세체납처 분의예에따 라이를징.

한. ③제2항의 규정 에의 한과대표처분에불 복이 있는 자는그처분의고지를받 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궤. 거관 리위원회에이 의 를제기할수

였. ④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과 대표처분 을받 은자가제3항의규정 에의하여 이 의를 제기한

매. 관 할선거관 리위원 회는지 체없이관 할법 원에 그사실을통보하 여야하며 ■ 그통보를받은관할 법원은 「비 송사 건절차법」 에의한과 대표

의재판을 한 다■ ⑤제3 항또 는 제4 항의규 정에 의한이 의제기또 는재판 의 진 행. 과대. 처분의효력이나그집행또는결차의속행에영 향을주지아니한 다 ■ - 65 ■ 정법부칙 부칙①본법 은1983년 1 월 1 일부터.

행 다■ ②본법의규정의한지역선거구선거관리 위원 회 의 직무는 각령 이정 하는날까 지 해서울특별시 · 부산 시또는도

원 회가 이를 행한다 ㉠ 부칙[69·1·23]① ( 시행 일 ) 이법은 공포한 날 로부터 시행 한다 ㉡ ( 경과

치 이법시 행당시등록 된정당은 이 법에의 하여등 록된것 으로부터 다만 제 25 조 규정 의한법 정지구당 수와제 27조의규 정에 의한 지구당의 법정당원 수는이 법공포 일로부터 2 년이내 에보완 하여야 한다 ㉢ ( 동

) . 항의경 우에있 어서그기 간내에보완 이없을때 에는당 해선거 관리 위 원회는3 월의기간을 두어

보 완을 명 하고그기간 내에보완 이없을때 에는 그등록을취소한 다 ㉣ ( 폐지 법률) 정 당의 합당 절차등에관한법률은 이를폐 지한다 ㉤ 부칙 [72·12·30]① ( 시행 일 ) 이 법은 공포한

로 부터 시 행한다 ㉥ ( 법정 지구당등의개편 보완) 이법시행당 시등록된정당은 이법에 의하여 등 록된 것으로 본다 ㉦ 다만 제 25 조의규 정에 의한법정지구당수및제 26 조의규 정에 의한 지 구 당의 산요 과그에따르는등 록신 청기타필요한절 차 는이 법시 행일로부터 6월이내 에이를개 편 · 보완하여야한다 ㉧ ( 등 록의취소) 제 2항 의경 우에 그기간내에개편 · 보 완하지아 니한때에는중 앙선거관리위원 회 는그정 당 의 등록

취 소한 다 ㉨ ( 선거구에서의대표 할지구당지정 ) 정당 은제 2 항의개 편 · 보완 기간 중국회의원선거법 에의한 동 일한

거구내에종전의법에의한 지구당이 2개이 상 있을때에 는당해 선거구내 에서그정 을 대표 할 지구당을지 정할 수있다 ㉩ ( 당 지부에 관한경과조치 ) 이법 시 행당 시등 록 된당 지 부는 이법

의 하여등 록된 당연락 소로 당 지부의 때 자는 당 연락소

의 임자로본다 ㉪ ( 창당활 동기간등 관한 경과조치 ) 이법 시행당시 신고된 창당 준비 위원회의활동기 간은제 9조제 2 항의규 정에불 구하고당 해창 당 비위원회결성신 고 일로부

터 년으로하고 만 그기간 이이법시 행일 로부터 6월 을초 과하 는경우 에 는그기간은 이법 시행일

로 부터6월로한 다 ㉫ 제 8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변경 신고

는 법시 행 일로 부터2주일안 에하

여 한다 ㉬ 부 칙[73·6·14] 이법은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 다 ㉭ 66

제 편법령부 칙[80·11·25]① 이법은공 포한 날로부 터시행한 다

㉮ . 조제 2 항의규 정은 헌법부칙 제 7조 의규 정에의하여 해산된정 당에

준용 다 ㉯ 부칙[88·8·5] 제 1 조( 시행일 ) 이법 은1988년9월 1 일부 터시행 한다



조 내지 제8조 생략

본 · 3 · 25] 이 법 은 공 포 한 날 부터 시 행 한 다 ■ 부 칙 [ 93 · 12 · 27 ] ① ( 시 행 일 ) 에 . 은 공 포 한 날 부터 시 행 한 다 ■ ② ( 적 용 례 ) 이 법 시 행 당 시 등 록 된 정 당 에 대 하여 는 제 22 조 의 2 제 24 조 의 2 제 29 조 의 2 및 제 9 조 의 2 의 개 정 규 정 은 당 해 정 당 의 당 헌 이 개 정 된 날 부터 또는 이 법 시 행 후 최 초 로 실 시 되 는 입 기 만 료 로 인 한 국 회 의 원 선 거 의 선 거 기 간 개 시 일 부

해 . 한 다 ■ 부 칙 [ 97 · 1 · 1 3 법 5201 ] ① ( 시 행 일 ) 이 법 은 공 포 한 날 부터 시 행 한 다 ■ ② 생 략 부 칙 [ 97 · 1 · 1 3 법 5263 ] ① ( 시 행 일 ) 이 법 은 공 포 한 날 부터 시 행 한 다 ■ [ 단 서 생 략 ] ② 생 략 부 칙 [ 97 · 12 · 13 ] 이 법 은 1998 년 1 월 1 . 부터 . 행 한 다 ■ [ 단 서 생 략 ] 부 칙 [ 200 · 2 · 16 ] ① ( 시 행 일 ) 이 법 은 공 포 한 날 부터 시 행 한 다 ■ ② ( 정 당 의 유 급 사 무 직 원 수 제 한 에 관 한 경 과 조 치 ) .

법 시 행 당 시 등 록 된 정 당 에 대 한 제 30 조 의 2 의 개 정 규 정 은 이 법 공 포 후 6 월 이 경 과 한 날 부터 시 행 한 다 ■ 부 칙

① 시 행 일 ) 이 법 은 공 포 한 날 부터 시 행 한 다 ■ ② ( 정 의 당 헌 에

관 경 과 조 치 ) 이 법 시 행 당 시 등

록 정 당 은 제 22 조 의 2 제 3 항

의 정 된 사 항 을 이 법 시 행 일 부 터 6 월 이 내

에 명 현 에 이 름 정 하 여 야 한 다 ■ ③ ( 읍 · 면 · 당 연 락 소 의 등 록 말 소 ) 이 법 시 행 전 에 등 록 된 정 당 의 읍 · 면 · 당 연 락 소

대 여 는 이 법 시 행 일 에 그

등 을 말 소 한 다 ■ 부 칙 [ 제 1

조 시 행 일 ) 이 법 은 공 포 한 날 부터 시 행 한 다 ■ 다 만 제 31 조 제 3 항

의 정 규 정 은 이 법 시 행 후 최 초 로 당 내 경 선

의 시 를 공

고 결 정 한 당 내 경 선 부

터 용 한 다 ■ - 67 ■ 정 법 제 2 조 ( 정

당 관 한 경 과 조 치 ) 이 법 시 행 당 시 종 전

의 정 에 의 하 여 등 록 된 정 당 은 제

2 조 개 정 규 정 에 의

행 한 시 · 도 당 수 에 한 결 이 있 는 때

에 는 이 법 시 행 일 부터 180 일 이 내 에 보 완 하 여 야 한 다 ■ 제 3 조 ( 당 지 부 에 관 한 경 과 조 치 ) 이 법 시 행 당 시 종 전 의 규

에 하 여 등 록 된

별 규정

에 하 여등 록된시 · 도당으로 본다■ 다만

■ 제3조 의 개정규정에의 한등 록신청 사항 및 제27 조의개정 규정에 의한법 정당원 수 는이 법시행일 부터180 일이내 에개편 · 보완 하여야한 다■ 제4조( 등록의취소) 부칙 제2조 및 제 3조.

규 정의 한 기간이내 에법시 · 도당 수 ■등 록신청 사항 및법정 당원수 를개편 · 보 완 하지 아 니한 정당.

대 여당해선 기관

위원회가등록을취소 한다 ■ 제5조(

지 당에관 한경과조치

) 이법시 행전의지구

당 당원은그 지구당

이 재하 는시 · 도를관할하는 시 · 도당

의 원으

로 다■ ② 이법시행

진 지구 당의 재산의처분에 대하여 는제41 조의 규정을준 용한다 ■ ③이

법. 전의제 24조의2의규정

에의 지구 당 의관련서류

중. 당또는시 · 도 당에인

관. ■ 제6 조( 정

명. 급사무직 원 수제한

에관. 적용례) 이

법. 당시등록된정 당에대 하여제 30 조의

의. 정규정

### 은 이 법 공포후 6월이경

과 한부 터 적용한다■ 제 7조( 지구당등의등록말 소) 이 법시행전 지구 당및구 · 시 · 군연락 소는이법 시행일에 그등 록이말소된 다■ 제8조 ( 별 칙에관 한경과 조치, 이법 시행전의행 위에 대한 별칙의적용에 있어서 는중전의규 정에 의한다 ■ 제9조 ( 다른 법률의 개정 ) ①방 송법중다음 과같

개정 한다■ 제8조제 9항중 “정 당( 정 당법에의한 지구당 을포함한다 )” 를 “정당” 으 한다■ ②선거 관 리위원회법 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8항중 “중앙

구 시·군 연락소를”을 “중앙당과 시·도당을”으로한다 ■부칙[ 2 005 ■ 8 ■ 4 제783 호] ① ( 시 행일 ) 이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 한다 ■②( 창. 집회의공.에 관한경과조치)제 10조 ( 창당집회.공개) 의개정규정에 의 한중 양당창당준비.원회의 창당집회의공 는 「 신문등의자유.기능보장에 관한법률」의 시행 전에는 종전 의규 정에의한다 ■③( 정책 토론회에관 한적용례 ) 정책토론회는 제39조( 정 책토론회) 제1 항 의 개정.

정에불구하고이법 이최 초로시행되 는연도에 는연1 회 개최할수있 다■④(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시행전의행 위에 대한벌칙의적용에있 어서는 종 68 ■ 1 편법령.의규정에의한다■⑤ ( 다 른법령과의.계) 이법시행당시다른 법령 에서종전의 규.을인용하고있는경우에 이법 중그에해당하.규정이있는경우에는종전 의규 정에갈음 하 여이 법의해당규 정을인 용하 고있는것으 로본다■ - 69 ■ 35법 4회 4회 지방자치 법 4회◆지 방자치법 법률제 669 호 일부.

정 200 2 103 ■ 2 5 ■ 법 률제 6927 호일부개정2003 ■ 07 ■ 1 8 ■ 법 률제7124 호(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2004 ■ 01 ■ 29 ■ 법률제 7128 호일부개정 2004 ■ 01 ■ 29 ■ 법률제 7362 호일 부개정 200 5 ■ 0 ■ 27 ■ 법률제7410 호일부개정 2005 ■ 0 3 ■ 24 ■ 법률제7670 호 법제 명변 경및일 부개정 2005 ■ 08 ■ 04 ■ 법 률제7796 호( 국 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2005 ■ 1 2 ■ 29 ■ 법 률 제846 호 일부개정20 06 ■ 01 ■ 11 ■ 법. 제7849. ( 제주특 별자치 도설 치및국제자 유도시조 성을위한.

법 률일 부 개정2006 ■ 0 2 ■ 2 1 ■ 법률제 7995 호일부 개정 2006 ■ 04 ■ 2 8 ■ 법 률제7997 호일 부개정2 006 ■ 05 ■ 24 ■ 제1 장총 칙제1 절통칙제 1 조( 목 적) .

법 률방 자 치단체의 종류 와그조 직및운영에관한 사항 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 치 단체 와의 기본적 관계를정함 으로서 지방자치행 정의.

### 주 성 과 능률성 을도

모 해지 방 9균형적발전과대 한민 의 민주적발전을기함을그목적 으로는 다■ [ 전뉘개 정89 ·12·30] 제 2조( 지방자 치단체의종 류) ①지 방 자치단체는다음의2 종으 로 한다■ [개 정1 9 94 ■ 1 2 ■ 2 0 7 2 005 ■ 1 ■ 27 7 2 0 06 ■ .

■ 1 ] □ [ 시 행일 ] 1 ■ 특 별시, 광 역시와 도및

특 자치도 2 ■ 시 와군및 구②지방자 치단체인 구( 이하 “ 자치 구 라한다) 는 특별시 와광 역시

안 구에 한하 며 자 치구의 자치 권의  
법 위법 령 이정하는바에의하 여시·군 과다르게할수있 다 [ 개정 ③제1 항의 지 방  
자치단체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 하 기위 하여.

요 경우에는별

도 특별지

방 치단체를설치

할 있다 - 73 ④

특 별방 자 치단체의설치 ·운 영 에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대 통령령 으로정한 다 제  
3조 ( 지방자 치단체 의법인격 및관할 ) .

지 자치단 체 는법 인으 로한다 ②

특 시 광역 시 와도및 특 별자치도( 이하 “시  
· ” 라한다 ) 는정

분 직할하에두고 시는도 의관 할구역 안에 군

은 역시또는도의관 할 구역안에두며 자치구는 특별시 와광역 시의 관할

구 안에둔다 [ 개정 94·12·20 20 06

11 ] [ 시행일 ③ 특별

시 는광 역시 가아닌인구 50만이상 의시 에는

자 구가아 닌구를둘수 있 고 군에는읍· 면을 두며 시와 구( 자치

구 를함 한 다) 에는 동을 읍· 면에 는이를 둔다 [ 개 정94· 12· 20] ④제 7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설치된 시에는도시의형 태를갖춘지역 에는 동을 그밖  
의지역에 는읍· 면을두되 자치.

가 닌구 를둘 경우에는당해 구에읍· 면· 동을둘수있다 [ 신설 94·3·1 6

9 4·12·20] 제2절 지방자 치단 체의 관 할구 역제4 조 ( 지 방자 치  
단체 의 명. 과구. ) ①지 방자 치단 체의명 칭과구 역은종전에의 하고이 를변 경  
하거 나지방 자치단체를 폐치· 분합할때에는 법률로 써정 하되 시·군및 자치  
구의관.

구 경계 변경 은대통령령으 로정한 다 ② 제1 항의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분 합하 거나그명칭또는 구역 을변경할 때에 는관계 지방자 치단 체 의  
의 ( 이하 “ 지방의회 ” 라 한다 ) 의 의견 을들어야한다 다만 「주 민투표법

」 제8 조의규 정에의 하여 주민 투표 를실시 한경우 에는그 러하지아니하 다

[ 개정99· 8·31 20

0 1 29 법률제7124 호( 「주 민투 표법 」 ), 2 006 1 11 ] [ [ 시

행일 ③자치 구가 아 닌구와 읍· 면· 동 의명칭 과구역 은종전 에의 하고

이폐 치· 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을얻어당해 지방자 치단 체의조 례

청 과구역 의변경은 당해 지방자 치단체 의조례 로정하 고

결과특별 시장· 광역 시장· 도지사 ·특별 자 치도지 사( 이하 “ 시·도지사 ” 라 한 다) 에게보 고하 여야 한다 [ 개정99· 8·31 2005

24 2 006 1 1 1 ] [ [시 행일 ④이 의구역은 자연 의촌락을 기준 으로

되 7평 청 과구역은 종전에의하고이를 변경 하거나 폐치· 분 합할 때에 는당해 지 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동· 이에있어서는 행정능 른과주 민편의를 위하 여 당해지방 자치단체 의조례가정 하는바에의 하여하나 의동· 이를2개 이상의 동·이 로운 하거 2개이상 의동· 이를하 나의동·이 로운영하 는등 행 정 운 영상 동·이 ( “ 행정동 ·이” 라한 다) 를따 로둘수있 다 ⑥제 5항 의행 정 동· 이에당 해지

자치체의 조례가 정하 는바에의 하여하부조 74 제1 편 법령 직을둘 수있다 5조( 구역 변경 폐치· 분 합시의사무와재 산 의승계) ①지방 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이 나폐치· 분합

있 는때 는 새로그지역을 관할하 게된지방자치 단 체가 그사무와 재산을 승계한 다 ② 제 1 항 의경 우에있 어서지역 에의하 여지 방자치 단 체 의사무및재 산을구분하 기곤란한 때에는 시·도에 있어 서 는행 정자치 부장 관이 시· 군및자 치구

있 서는시·도차사가그사 무와재 산의 한계및 승계할지 자치 단체를지 정한다 [ 개정94· 12·20 99·8·3 ] 제 6 조( 사무소의소재 지) ①지방 자치 단체 의사무소 의소재지와 자치

구 아닌구및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종전에의하 고

이 변경하 거 나세로설 정하는경 우에는당 해지방 자치단체 의조례로정 한다 이조 항에

있 어서 동 4조제5 항의규정에의한행정동 을말 한다 [ 개정 94·12·20 99·8·31 2005 3 24 ] [ [시행 일 ② 제1 항의 조례 당해 방 의회의책 의 원과 반수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 개정 94· 12·20 제7 조( 시·읍의

치 기준 ) ①시는그 대부분 이도시의형태를 갖추 고인구 5만이 상이 되 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 의 1 에해 당하 는지 역은이름도농 복합형 태의시 로할수있다 [ 개정95· 8·4 2003 07 18 ] 1 제 1 항의 규정 에의 하 여 설치된 시와군 을통

한 역2인 구5만이상 의도 시

형 른것출지 역이 있 는군 3인구 2만이 상의도시형 태를 갖

출 개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이 상인군 이 경

가 만이상으 로서대 통령령 이정 하  
 는 건물갖추 어야한 다 4 국가의정책 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 되  
 곡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의 장소가설 치된지 역으로 서그지 역의 인구가 3만이상 이고 인구 15 만  
 에 의도농 복합 형태도시 의일부 인지 역[ 신설20 03 0 7 1 8 ] ③읍 은  
 그 때분 이 도시 의형 태를갖추고 인구2 만이상이되 어야 한다 다만 다 읍각호 의1  
 에 해당하 는경우에는인구2 만미 만인경 우에도 읍으 로할 수있다 [ 개정 94  
 ·12 ·201 1 군사무소 소재 의면2 읍 이없 는도 농복합형 태의 시 에있 어서  
 그 면중1 개면 ④ 삭제

·8·31 ⑤시· 읍 의설 치에의 한세부기 준은대 통령령 으로정 한다 - 75 제3 절지방자치 단체

기능과사무제8조 ( 사 무처리 의기본원 칩) ① 지방자 치단체 는그 사무 를처리함  
 에있 어서주 민의편 의및복리증진을 위하여노력 하여야한 다 ② 지방자 치단 체  
 는조 직및운 영의합리 화에노력 하고 그규모 의적정 화를도 모하여 야한다 ③

방자치단체는법령 이나 상급지 방자치 단체의조 례에 위반하여그사무 를처리 할  
 수없 다 제 9 조( 지 방자치단 체의 사무 범위) ①지방 자치단 체는그 관할구  
 역의자치 사무와법령 에의 하여지 방자치 단체에 속 하는 사무를 처리 한다

②제1 항의규 정에의한지 방자

단체의사무를에서 하면 다음각 호와같 다 다 만법 률에이 와다 른규정 이있는  
 경우에는그 러하지 아니하다 [ 개 정95·12·29, 99·2·8]

■ 지방자 치 체의구 역 조직및행정관리등 에관 한사무 가 관 할구역 안행정 구역의  
 명칭 ·위 치 및구역의 조정나 조례 ·규칙의제 정 ·개 폐그운 영 ·관 리 다  
 ■ 산하행 정기관의 조직

리 라산 하 행정기 관 및단체의 지도 ·감독 마 소속공무원 의인 사·후 생복지 및교  
 육바 지방 세와지방세 외수입의부 과 및징수세 예산의 편성 · 집행및 회계감사  
 와재산관리 아 행 정장비 관리 행정 전 산화 및행 정관리 개선자 공 유재산  
 관리차 호적 및주 민 등록 관리카 지방 자치단체 가필요로 하는각종조사및통  
 계의

성 2주 민 복지증진에 관한사무가 주민 복지 에관한 사업나 사 회복지 시설 의설  
 치 ·운영및관리다 생활 곤궁자의보호및지 원라 노인 ·이동 · 심신장애자 ·  
 청소년및부 녀의 보 호와 복지 증진마 보건진 료기 관의설치 · 운영 바 전염병  
 및 기타질병 의예방 과방역사 묘 지· 화장장 및납 골당의 운영 ·관리 아 공중  
 핵 업소의 위생개 선을위 한지도자 청 소 물의수거 및처리 - 76 제 1 편  
 령 ■ 지방 공기업의 설 치및운 영 3 농 림 · 상 공업등 산업진 흥에관 한사무가

용수 시설 의설치 및관리 나 농림·축·수 산물의생산 및유통지원 다 농업  
자재관리 라 복합영농의운영·지도 마 농의소득사업의육성·지도 바 농  
가부업의장려사 나 공유림관리 아 소규모

축 개발및낙농진흥사업자 나 가축전염병예방차 나 지역산업의육성·지원카  
나 소비자보호및저축의장려타 나 중소기업의육성과 나 지

역 화산업의개발과육성·지원하 나 우수토산품개발과관광민예품개발 4 나

지역개발및주민의생활환경개선 의설치·관리에관한사무가 나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토목·건설사업의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시행라 지방자치시·도  
의신설·개수및유지마 주거생활환경개선 의장려및

원바 농촌주택개량및취급구조개선사 나 자연보호활동아 지방1급이하천  
천지방2급이하천및소하천의관리자 나 상수도·하수도의설치및관리차 나 간이  
급수

설치 및 관리가 나 댐·군립및도시공원 나 녹지등관광·휴양시설 의설치및관리  
타 지방제도사업 의경영과 주차장·교통표지등교통편의시설의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수립및집행 거 지역경제의육성및지원 5 나 교육·  
체육·문화·예술의진흥에

한사무가 나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등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및관리다 나 지방문화재의지정·보존및관리라 나 지방

화 예술의진흥마 나 지방문화예술단 의육성 6 나 지역민방위및소방에관한사무가  
나 지역및직장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포함한다)의편성·과업운영및지  
도·감독 나 화재예방및소방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종류별사무배  
분기준) ①제9조의규정에의한

방자치단체의사무를지방자치단체의종류별로배분하는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나 다  
만 제9조제2항제1호의사무는각지방자치단체에공통된사무로한다 나  
1 나 시·도가 행정처리결과가 2개이상 의시·군및자치구에미치는광역  
사무 나 시·도단위로동일한기준에따라처리

되야할성질 의사무 다 지역적특성을살리면서시

·단위로통일성을유지할필요가있는사무라 나 국가와시·군및자치구간의  
연락·조정등의사무 마 나 시·군및자치구가독자적으로처리하기어부적  
당한사무바 나 2개이상의

시·군및자치구가공동으로설치하는것이적당하다고인정되는규모의시설의설  
치및관리에관한사무 2

자 체계 1 호에서 시·도 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만이 50만 이하인 시에 대하여는 도 가 처리 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 접 처리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 항 의 배 분 기 준에 따 른 지방 자치 단 체의 종 류 별 사 무 는 대 통

령 으로 정 한 다 ③ 시·도 와 시·군 및 자치 구는 그 사 무 를 처 리 함에 있 어서 서로 경 합 하 지 아니 하 도 록 하 여야 하 며 그 사 무 가 서로 경 합 되 는 경 우 에 는 시·군 및 자치 구 에 서 우선 적 으 로 처 리 한 다 제 11 조 ( 국가 사 무의 처 리 제 한 ) 지방 자 치 단 체 는 다음 각 호 에 해 당 하는 국가 사 무 를 처 리 할 수 없다 다만 법 률 에 이 다 른 규 정 이 있는 경 우 에 는 그 러 하 지 아니 하 다 [ 개 정 99

2 8] 1 의 교 육 국 방 사 법 국 세 등 국가 의 존 립

에 요 한 사 무 2 물 가 정 책 금 용 정 책 수 출 입 정 책 등 전 국 적 으 로 통 일 적 처 리 를 요 하 는 사 무 3 농 립 · 축 · 수 산 물 및 양 곡 의 수 급 조 절 과 수 출 입

등 국 적 규 모 의 사 무 4 국가 종 합 경 제 개 발 계 획 국가 하 천 국 유 립 국 토 종 합 개 발 계 획 지 정 향 만 고속 국 78 제 1 편

법 도 · 일 반 국 도 국 립 공 원 등 전 국 적 규 모 또는 이와 비 슷 한 규 모 의 사 무 5 근 로 기 준 측 량 단 위 등 전 국 적 으 로 기 준 의 통 일 및 조 정 을 요 하 는 사 무 6 우 편 철 도 등 전 국

적 모 또는 이와 비 슷 한 규 모 의 사 무 7 고 도 의 기 술 을 요 하 는 검 사 · 시 험 · 연 구 향 공 관 리 기상 행 정 원 자 력 개 발 등 지방 자치 단 체 의 기 술 및 재 정 능 력 으 로 감

당 하 기 어 려 운 사 무 제 2 장 주민 제 1 2 조 ( 주 민 의 자 격 ) 지방 자치 단 체 의 구 역 안 에 주 소 를 가 진 는 그 방 자치 단 체 의 주민 이 된 다 제 1 3 조 ( 주민 의 권 리 )

① 주 민 은 법 령 이 정 하 는 바 에 의 하 여 소 속 방 자치 단 체 의 재 산 과 공 공 시 설 을 이 용 할 권

리 를 가 진 다 ② 국 민 인 주 민 은 법 령 이 정 하 는 바 에 의 하 여 그 지방 자치 단 체 에 서 실 시 하 는 지방 의 회 의 원 및 지방 자치 단 체 의 장 의 선 거 ( 이하 “지 방 선 거” 라 한 다 ) 에 참 여 할 권 리 를 가

다 제 1 3 조 2 ( 주 민 투 표 ) ① 주 민 에 게 과 도 한 부 담 을 주 거 나 중 대 한 영 향 을 미 치 는 지방 자치 단 체 의 주 요 결 정 사 항 등 에 대 하 여 주민 투 표 에 붙

수 있 다 [ 개 정 2 0 0 4 1 2 9 법 률 제 7 1 1 호 ( 주 민 투 표 법 ) ] [ 시 행 일 2 0 0 4 2 주 민 투 표 의 대 상 · 발 의 자 · 발 의 요 건 · 기 타 투 표 절 차 등 에 관 여 는 로 법 률 로 정 한 다 [ 본 조 신 설 9 4 · 3 · 1 6 ] 제 1 3 조 의 3

조 제 정 및 개 폐 청 구 ① 지방 자치 단 체 의 1 9 세 이 상 의 주 민 ( 「공 직 선 거 법 」 제 1 8 조 의 규 정 에 의 한 선 거 권 이 없 는 자 는 제 외 한 다 ) 이 하 이 조 및 제 1 3 조 의 4 에서 “ 1 9



라한 다) 은시 ·도및 제61조 의2규 정에 의하 50 만이상대 도시에있 어서 19 세이상 주민총 수 의100분 의1 이상70분 의1 이하 시 군및 치구에있 어 서는19세 이상 주 민총수의50 분의1 이상 20 분 의1

하의 19 세이상 의주민 수이 상의 연서 로당해지방자치체의 회계 조례의제 정이나개 폐를청구 할수있 다 다

다음 각 호 의사항은청구 대상에 서제 외한다 [ 개정 2005 11 27 20 0 6 11 11 ] 1 법령을위 반하는 사항 2 지방 세 ·사 용료 · 수수 · 부 금 의 부과 · 징수 또는 감 면에관한 사항 3 행정기 구의설 치 · 변경에 관한사 항또는 공공시 설 의설

를반대하는 사항 2 지방자 치단체의 19세이 상 의주민 이제 1 항의규정 에의하여조 례의 제정이나개 폐 79 폐를 청구 하는때에는 청구인의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구 인명부 에 기재하여야하 며 청구인의대표자는조 례의 제정및개폐 안을 작성하 여제출 하여야한 다 [ 개정 3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제1 항 의규 정 에의 한청 구가 있 는때에는 청구를 접수한날 부터5일이 내에그내 용을공 표하여 야하며 청구 를공

한 부터 10일간 청구인 명부또 는그 사본

을 개된장소 에비치하여 열람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 4 청구인 명부 의 명 에관 하여이의 가있는자는 제3항 의기간이내 에당해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 게 이의를신 청할

수있다 5 제4항 의규 정에의한 이의신 청이 있는때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제 3항의 기간이종 료된날 부 터4 일 이 내에이 를심사 ·결 정하되 그 신청이이 유 있다

결 정때 에 는청구인명부 를수정 하고 이의를의신청을한자와 제2 항의규정에 의한청 구인 의대표자 에게 통 지하 여야하 며 그 이의

청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뜻을 즉시이 의신 청을한자 에게통 지 하여 야한 다 6 지방자 치단체 의장은제4 항의규정에 의 한이 의신청 이없는경우 또는 동항 의규 정에의 하여행 하 여진 모든

이 신청 에 대하 여제 5항의 규정예의 한결정 이완 료된경 우제 1 항 의규정 에 의한 요 건을갖 춘때에는 청구를 수 리하 고

그 하지야니 한때에는청구를 각하하여이 를 청구인 의대표 자에게통지 하 여야 한다 7 지방자 치 단체의 장은제 6항의규 정

에 하여청구 를각 하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의 대

표 에게 의견제 출의기 회를주어 야한다 [ 신설 8 지 방자치단 체의장 은제 6항의 규정 예의하 여청구 를 수

60. 이내에 조례의 제정 또는개 폐안을지방의회 예부 의

하 야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 의대표자 에게통지하 여야한 다. [ 개정 99.12.31 제 1 항 의

규. 예의한9 세이상의 주민총 수는연 도별로 산 정하되, 「주민 등록법」의 규정에의한 주민등록 표에의하 여

조 22년 12월31 일현재인구통계 예의 한다. [ 개정 99.12.31 조 2의제 정및 개폐청 구 에관하 여기타필 요한사 항은대통령령 으로정한다. [ 본 조신 설 13조 의4( 주민 의감사청 구) ①지방 자치단 체의19 세 이 상의.

민 원·도 500명 제161조의2의규정 예의 한50만이 상대도시는300 명, 그밖의 시·군 및자치 구는200 명을초과하 지아니 하 는범위안에 서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 는19세이상 의주민 수 이상의연 서로서 ·도에있어 서는주 무 부서관에 게, 시·군및 자치구 에있어 서는시·도지사 에게 당해지 방자치 단체 와그장 의 권 한 예속하 는사무 의처리가 법령에위 반되 거나공 익을 현저 히해한 다 고인정 되는경 우 - 80.

제1 편법령에는감 사를 청구할수있 다. 다 만, 다음 각호의 1 에해당하는사항은 감사청 구의 대상에 서제외. 다. [ 개정 2005.11.27 제 2006.11.11 ] 1 수 사또는개 판에 관여하 게되는사 항2 개 인의사 생활을 침해 할우 려가 있는사 항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 거나감사중 인사항 다만, 다른 기

관에서 감사한 사항이 라 도새 로운 사항이 발견되거 나중요 사항이 감 사에.

누락된경우 와 제 13 조 의5제1 항의규 정에의 하여주 민소송 의대상 이되 는경우 에는그러하지아 니하다. 4 동일 한사항에대 하여.

13조5제 2항각 호의어 느하 나에해 당하는 소송 이계속중이거나 그판 결이확 정된 사항제 1 항 의규정에 의한 청구는 당해사무처리가있 었던. 또는, 료 된날 부터2 년을경 과하면 제기할수 없다. [ 신설 2005.11.27 ] [ 시 행일 99.12.31 ] ③주 무부장관또는시·도지 사는감사 청구 를수리한 날 부터 60일내에감 사청 구된사항 예대 하여감 사를종료 하여 야하며, 그 감사결 과를청구인의 대표자 당해 지방자 치단체 의장에게 서면으 로통지 하 고이.

5 11.27 [ [ 시 행일 99.12.31 ] ③주 무부장관또는시·도지 사는감사 청구 를수리한 날 부터 60일내에감 사청 구된사항 예대 하여감 사를종료 하여 야하며, 그 감사결 과를청구인의 대표자 당해 지방자 치단체 의장에게 서면으 로통지 하 고이. 공표하 여 야한 다. 다 만, 그기 간내에 감사를 종료하기 가어려 운정당 한사유 가있는데 예는 그기간을 연장 할수 있다. 이경우 이 를미.

청 인의대표자와당 해지방 자치단체의장 에게통지 하고공 표하 여야한 다. ④

주 무부장관또는시·도지사 는주민이감사 를청구한사 항이다른 기관 에서

에 감사한사 항이 거나 감사중 인사항 인경우 예는그 기관에서실시한

감 사결과 또 는감사중 인사 실과감 사종료 후그 결과 를통지하겠다 는사실 을청구 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 여야 하 고, 당해기 관에도 그사 실을통 지하여 야한 다. [

27] [ [ 시행일] ⑤주무부 장관 또는시·도지 사는주민 감사 청구를 처리 함에 있어서청구인의 대표자 에게반 드시증거제 출밧의 견진 술 의기회를 부여하 여야 한다■ [ 신 설] [ [ 시행일] ⑥주무부.

관 또는시·도지사는당해 지방자 치단체의장에게 제3항의규 정에의 한감 사결과 에따 라 기 간을정 하여필요 한조 치를요 구할수있 다■이 경우당 해 지방 자치 단체 의장은 이를 성 실히 이행 하여야 하고그 조치.

과 지방의회 와주무부장 관또는 시·도지 사에게보 고하여 야한다■[ 개 정20 05. 1. 27] [ [ 시행 일] ⑦주무부장 관또는시·도

지 는제6항 의규정에 의한 조치 요구내용과 당해지방 자치단 체의장의조 치결 과 를청 구인의 대 표자에 게서 면으로 통지 하고 이를공 표하여 야한다■ [ 신설 2 00 5 ■

1. 27] [ [ 시 행일] ⑧19세 이상의 주민의감사 청구에관 하여기타필 요 한사 항 은대통령 령령으 로정한" 8] ■이다■[ 개 정] ⑨ 제13 조의3 제2항내 제6항 의 규정 은9 세이상 의주민 의 감

사 구에 관하여 이를준 용한다 ■이 경우 “ 조례의 제정 이나개폐 ” 를 “ 감 사” 로, “ 지방자치 단체 의장” 은 “주 무부장관또 는 시· 도지사 ” 로본다■ [ 개 정2 005 ■1 ■ 27 2 006 ■ 1

■ 1 ] [ 본 조신설 19 99 ■ 8 ■ 31 ] 제1 3조의 5( 주민 소송) ①제 13 조의 4제 1 항 의규정 에의하 여공금의 지출에 관 한사 항

재산의취 득· 관 리· 처분에관 한사항 당해지 방 자 치단 체를 당 사자 로하는 매 매· 입차· 도급

박 계약의체 결· 이행 에관한사 항또 는지방 세· 사용 료· 수수 료· 과태료 등 공 금의 부과· 징수의 해태 에관한 사

항 감사청구 한주민은다음각 호의 어느하 나에해당 하는경우 에그감사 청구 한사 항과 관련 있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 사실에 대

### 하 배 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당해 사 항의사무 처리에관한 권한 을소속기관의장 에게위 임한 경우에는그소 속기관 의장을말 한다 ■ 이하이. 및제13조의6 에서 같 다) 을상대 방으로소

을 기 할수있다■ 1 ■ 주무부 장관 또는시·도지 사가

관 청구를 수리한 날 부터60일 ( 제13조의 4제3 항단 서의 규정예의 하 여감 사 기간 이연장된 경 우에는 연장 기간

이종료된날을말한 다) 을경과하여도 감 사를종료 하지아 니한 경우2■ 제 13 조

및 제4항 의규정에 의한감사 결과또는 동 조 제6

의규 정에 의한조 치요구에불 복이 있는경 우3 제13조의4제6항 의규정.

의 한부 부 장관또는시 · 도지사의 조치요구를지 방자 치단체 의장이이행하지 아니 한경  
우4 제13조의 4제6항의 정에의한지방자 치단 체의장 의이 행조치 에불 복이  
있는경우② 제1 항 의규정에 의 하 여주.

이 제할 수 있는소송은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1.1.11] 1 당해행위를계 속할경우회복이곤란  
한손 해를발 생시킬우려 가있 는경우에는당해행 위의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구  
하 는소송 2 행정처분인 당해행 위의취소또 는변경을구 하거.

효력의유무또는존 재여 부확인 을구하 는소 송3 당해 해대사 실의위 법확인  
을구하는 소송4 당해지방 자치단체의장 및직원 5 지방의 회의.

6 행해 위 의관련이있 는상대방에게손해배 상 청구또 는부 당이득반 환 청구를 할것을  
요구 하는 소송 7 다만 8 당해 지방자 치단체 의직 원이 「지방 재정 법」 제94조  
또 는 「회계관계직원등 의책임 에관한법률 」 제.

조 의규 정 에 의하여변상책임을져 야하는경우에 는당해변상명령 을할것 을요 구하는소송을  
말한 다 9 10 제 1 편법령 ③제2항 제 1 호의 중지 청구소송 은당해 행위 를증지  
함으로써생명또는신 체에 대한중대 한위해발생의우려 가있거.

그 밖에공 공 복리를현저 하게 저해 할우려 가있는데에는이 를제 기할수없다 ④제 2항  
의규 정에의 한소 송은다 음각호의 어느하 나에 해당하 는날부 터90일이내에이  
를제 기하여 야한다 1 제 1 항.

### 1 회 경 우.

당 해일 이 종료된날 ( 제 13조의4제 3항단서 의규정 에의하 여감사기간이연 장 된경  
우에 는연장기간이종료된날을 말 한다) 2 제 1 항제2 의경우: 당 해감사결과  
또는.

치요구내용 에대한통지 를 받은날3 제 1 항제3 의경 우: 당해 조치요구시 지  
정한처리 기간.

만 편날 4 제1 항 제4호 의경우: 당 해이행조 치결과 에대한 통지를 받은 날 ⑤제  
2항각 호의소송 계속중인때에는 다른주 민은동일 한사항 에대 하여 별도의소송  
을제기 할수없다 ⑥소

의 속중에소송 을 제기한주민이사망 하거나 제12 조의

규 에의한주민 의자격 을잃 은때

에 소송절차 는중단 된다 ⑦ 소송 대리

인 있 는경우에도또한 같다 ⑧ 감사 청구에 연서 한다른 주민은 제6 항의

생 사실을안날 부터6 월이 내에

소송절차 를수계( 수 계) 할수 있 다■ 이기간 이내에수 계( 수 계) 절 차가이루 어 지지.

니 할경우 당 해소송절차 는종료 된다■ ⑧법 원은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이중단된 경우에는 감사청구에연서 한다른 주민에게소 송절

중단의사유와소송절차 수계의방법을지체없이통 지하여야한 다■ 이 경우법 원은감사청구 에기재된 주소로통 지를 우편으로발송할 수있고 ㉞우편물이 통상

달 할수 있는 때에감사 청구에 연 서한다른주민 은제6 항의 사유가발생한사 실 을안 것 으로 본다■ ⑨ 제2항의규정에 의한소 송은당해지 방자.

단 체의사 무 소재지를관 할하는행정 법원( 행정법원이 설 치되 지아니 한지역의 경우 에는행정법 원의권한에속하는사건을 관 할하 는지방법원 본원을 말 한다) 의 관 할로 한다■ ⑩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제2항제1 호 내지 제3호의 규 정에의 한소 송 이제.

### 되 어

그 소 송결판에.판 또는 이 의의침

해할발 3자가 있 는경 우에는 그제3자 에대하여.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의한 소송이제 기된 경우에는 당해 4원 · 지방의회 의원또는상 대방에대 하여 소송고지 를하여줄것을법 원에 신청하여야한다 ■ ⑪제 2항제 4호의 규정에의한 소송이제 기된 경우에 지방 자치단 체의 장이 한소송고 지신청은 당해 소송 에관한손해배 상또는 부당이 득반환 청구권의시효 중단 에관하 여 「민 법」 제68 조 제 1 호 규 정에의한 청구로본다[ 개정 83.12.12] ⑫ 제11항의규 정에 의 한시.

중단의효력은그소 송이 종료된날부 터6월이내 에재판상 청구 ㉞파산 ㉞차 참가 ㉞ 압류또 는가 압류 ㉞ 가치분을 하지아니 하면그효력이생 기지아 니한다■ ⑬국가 ㉞상 급지 방 자치.

제 ㉞감 사청 구에연서한 다른주민과제10 항 의규정 에의하 여소 송고 지를받 은자 는 법원 에계속중인소 송에참가할 수있다■ ⑭제2 항 의규정에 의한 소송에있 어서당사 자 는법원 의허가 를얻지아니하고 는소의취하 ㉞소송의 화해또 는청 구의포 기를 할 수없다 ■ 이 경우법원은허가 하기 이전 에감사청 구에연서 한다른주 민에게이를통 지하여 야하며 ㉞통지 한때부터1 월 이내 에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 다■ 통 지 에관하 여는제8 후단 의규정 을준용한 다■ ⑮제2 항의 규 정에 한소송 은 「민사소 송등인 지 법」 제2조제4항의규 정에 의한소정 의비재 산권을 목적으로하는소 송으 로본다■ [ 개정 16 소송을제기 한주민은승 소( 일 부승 소를 포함한다 ) 한경우 당해지방 자치단체에대 하여변 호사보 수등의 소송비용 ㉞감 사청 구절차 의진행 등을

되어 비그 밖에.

비보 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 해 지방자치 단체는 청구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 해 소송을 진행하는데 객관적으로 소요 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 하여야 한다. ⑩ 제1 항의 규 정에의 한소송에관하여 이법에 규정된것 을 제외하는 「행정소송법」에의한. [개정] [본조신설 2005. 1. 27] [시행일] 제13 조의6( 손해배 상금등 의지불 청 구등) ①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제13조의5 제2 항제.

호 문의규정 에의한소송에 대하 여손 해배상 또는

부. 이득반환 의청구를명하 는판 결이 확정된 때에

는판 결이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그판결에의 하여 결정 된손해 배상금 또는부당 이득반환금 의지불을 청구하 여야 한다. 다만, 손해 배 상금또 는부당이 득반 환금을지불 하여 야 할당 사 자가지 지방자치 단체의장인 경 우에 는당 해지방 의회 의장이그 지불을 청 구하.

야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 의규정에의하 여 지불청구 를받은자가동 항의기한 이내 에 손해배상 금또는부당 이득반 환금을지불하지아니 한때 에는손해 배상 ·부당 이 득반환 의청 구 를목적 으로서는 소송을 제 기하. 야한다. 이 경우그

소송의 상대방이 지방 자 치 단체의장 인경 우에는당해 지 방의 회의장 이당해지방 자 치 단체를대 표한다. [본조신설 2005. 1. 27] [시행일 2006. 1. 1] ] 제. 3조 7( 변, 명령등, ①지방자치단, 의장은제13조, 5제2항제4, 단서의규 84, 제1 편법정 에의한소송에대하, 변상명령을명하는판결, 확정된때에는, 해 판결, 확정된, 부 터60일내, 기한으로 하여해당 당사자에 게그판결 에의하여,

정된금 액의변상명 령을하여야 한 다. ②제1 항의규 정에의 하여변 상명령을받은자 가동 항의 기한이 내 에변 상금 을지불 하지, 니 한 때에는지 방자치체 납치분 의에에 따라이를징 수 할수있다. ③제1 항 의규정 에의하 여변상.

령을받 으자는 이에불 복하는 경우행정소송을제기할수 있다. 다만, 「행정, 판법」에의 한행정심판청구는제기할 수없다. [개정] [본조신설 2005. 1. 27] [시행 일] 제. 13조의8( 주민소환) ①주민은당해지방자 치단체 의장 및지방의, 의원( 비대표 지방의회위원을제외 한다) 을 소환할권 령을가진다. ②주민소환 의투표 청 구권자 ·청구 요건.

질 차 및효력등에

관하여 는따로법률 로 정한 다. [본조신 설] 제14조( 주민의의.) 주민 은법령 이정하 는바 에의하 여그

소 속 지방자치단

체 에비 용을분담하 는 의무 를진다. 제3 장조례와 제1 5조(

는 명령 의범 위안에 서그

사 무 에 관하여 조

례 를 제 정 할 수 있다 다만 주

의 권 리 제 한 도 는

의 부 부 에 관 한 사 항 이 나 벌 칙 을 정 할 때 에 는 법 률 위 임 이 있 어 야

한 다 제 6 조 ( 규 칙

)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은 법 령 또 는 조 례 가 위 임 한 범 위 안 에 서 그

한 에 속 하 는 사 무 에 관 하여 규 칙 을 제 정 할 수 있 다 제 7 조 ( 조 례 와 규 칙 의 입 법 한 계 ) 시 · 군 및 자 치 구 의 조 례 나 규 칙 은 시 · 도 의 조 례 나 칙 에 반 하여 서 는 아 니 된 다

제 8 조 ( 지방 자 치 단 체 의 신 설 격 의 변 경 시 의 조 례 · 규 칙 의 시 행 ) 지방 자 치 단 체 가 분 합 하 여 새 로 운 지 방 자 치 단 체 가 설 치 되

나 지 방 자 치 단 체 의 격 이 변 경 된 때 에 는 당 해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은 필 요 한 사 항 에 관 하 여 새 로 운 조 례 또 는 규 칙 이 제 정 · 시 행 될 때 까 지 종 래 그 지 역 에 서 행 되 던 조 례 또

규 칙 을 계 속 시 행

할 수 있 다 제 19 조 ( 조 례 와 규 칙 의 제 정 절 차 등

① 조 례 안 이 지 방 의 회 에

서 의 결 된 때 에 는

의 장 은 의 결 된 날 로 부 터 5 일 이

에 그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에 게 이 를 이 송 하 여 야 한

제 2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이 제 1 항 의 조 례 안 을 이 송 받 은 때 에 는

일 내 에 이 를 공 포 85 하여야 한다 [ 개정 94 · 3 · 16 ] ③ 지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은 이 송 받 은 조 례 안 에 대 하 여 이 의 가 있 는 때 에 는 제 2 항 의 기 간 내 에 이 유 를 붙 여 지 방 의 회 로 환 부 하

그 제 의 를 요 구 할 수 있 다 이 경 우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은 조 례 안 의 일 부 에 대 하 여 또 는 조 례 안 을 수 정 하 여 재 의 를 요 구 할

없 다 제 3 항

의 정 에 의 한 재 의 의 요 구 가 있 을 때 에 는 지 방 의 회

재 의 에 붙 여 재 의 의 원 과

반 수 의 출 석 과 출

석 의 원 3 분 의 2 이 상 의 찬 성 으 로 전 과 같 은 의 결 을 된 조 례 안 은

조 례 로 서 확 정 된 다 ⑤

체 의 장이 제2항

의 기간내에 공포 나재 의의요 구를하 지아니한.

에 도그조례안 은조례로 선풍정 된다 ⑥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 항과 제5

의 규 정에 의하여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 이공 포하 야 한다 제 5항에의 의조례 가확정

된 후또 는제 4항에 의한

확 정 조례가 지방

자 치단 체의장 에게이송 된후 5일

내 에 지방자치단

체 의장 이공포하지 아 니할 때에 는지 방회의 의장이이

공포한 다

⑦ 조 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없는 한 공포 한날로 부터 20 일을경과

으로써 효력

을 발 생한다 ⑧

조 례와 규칙의공포 에 관하 여필 요한 사항은대 통령령으

정한다 제 20조 ( 조

례 위 반에 대한과

대 료) ①지방 자치단 체는조례

써 조 례위반행위

에 대하 여1 천 만원이 하의과태

를 정 할수 있다

② 제1 항의규 정에의 한과대료 당해지방자 치 단체의조례 가정 하는바에따라 당해지 방자 치 단 체의장또 는그관 할구역안의지 방자치단

의 장 이부과 징

수한다 ③제2항 의 규정 에의 한과 대료처분 에불복이 는자는 그처분

의고지 를받 은날부 터30

일 이 내 에당해지

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있다

제3항의규정에의하여 이의를 제기 한때에는 당해지방자치단 체의장은지 체 없 이관 할 법 원에그 사실을통보 하여야하며 통보를 받은관 할법원은

비사건절차법」에의한과 대료 의재판을 한다 개정 ⑤제3항 의 규 정에의한 기

간내에 이의를제 기하 지아니하고 과태 료를 납부하 지아 니한때에는 지방세체납 처

분 의에 에의하 여이 를징수한다 전문 개정94 .



보 고 >

조이나규칙을제정 또 는개 폐하는 경우조 례에있어.  
는지방 의회 에서이 송된

날 로 부

터5일내에 규칙 예있 어서 는공 폐정15 일전에서  
도지사 는행 정치치 부장

관 에 게

시장 군수및자치 구의 구청장 은시 · 도지사에.  
그전문 을첨부 하 여각각보고 하여야하며, 보고 를받은 행 정치치부장관 은이 를 관계중  
양행정기 관의장에게 통 보 하여야 한다. [ 개정 99·8· 31 2 005 1 2 7 ] - 86-

제1편 제4장 선거제22조내지제 24조삭 제[94·3·16]제25조( 지방선거에  
관 법률의제정) 지방선 거 에 관하여법에한것 을제외하고 필 요 한사항 은따로 법  
률로정한다. 5 장 지방 의회제 1 절 조직제26조( 의  
의정치 )지방자치단 체에 의회 를둔다. 제 26조의2( 지 방의 회의원의 선거) 지방의  
회 의원은주민 의 보 통·평 등·직 접·비밀선 거에 의하 여선출 한다. [ 본조신  
94·3·16]제27조 내지제30조 삭제[89·12·30]제 2절 지방의회의원제31 조( 의원  
의임 기) ①지방 의 회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한다. ②내지 ④삭제[94·12·20  
]제32조( 의

의의정활동비등) ①지방 의회의원에 게 다 음각호 의비용 을지급한 다. [ 개정99·  
·31 2 003 07 1 8 2 0 0 5 8 4 ] [ [ 시행일 1 1 ] 의 정자료  
의수집 .

구와이를위 한보조활동에 소요되는비 용 을 보전하 기위하 여매월지급 하는의정 활동비  
2 본회.

또는위 원회의의 결이 나의장의명 예의 하여공무 로여행할때지 급하 는 여비3 지방의  
회의원의직 무 활 동에대 하여지 급하는월수 당②제 1항각호에규 정된 비 용 의지급기준  
은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해 지방자 치단체 의의정비심 의위 원회에 서결정하

범안에 의서당해지방자 치단체 의조례 로정 한다. [ 개 정 2 005 8 4 ] [ [ 시  
행일 1 1 ] ③ 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과운 영등 에관하여는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신  
설2005 8 4 ] [ [ 시 행일 1 1 ] 전문 개정94·3·16]제32조의2( 상해  
·사망등의보 상 ) ①지방의회의원이회 기중직무( 제53조단 서의규 정에의 하여개

된위원 회의직 무와본회의 또는위원회 의의 결이나의장 의 명 예의한폐회 등의 공무여 행  
을포함한 다) 로인 하여신 체에상해 를입거나사망 87 때에 와그상해 또는직무로  
인한질병 으로서 망한때에는 보상금 을지급 할 수있.

### 의 보 상

금의지 규준은대 통 령령 이정하 는범위 안에서당. 지방. 치단체의책로정한다. [본. 신 설94.3.16] 제3. 조( 결직등금 지 ) ①지방회의원은 음각호의1 에해 령하 는직을겸 할수없다.

[ 개정 88.12.30, 90.12.31, 91.5.23, 94.3.16, 99.2.5, 2006.1.11 ] 1. 국회의원, 다른 지방 의회의 의원 2. 법제관, 소재판관, 각 급선거관리위 원회위 원, 교육 위 원 회의교육 위 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규 정된국가공무 원과 「지 방공 무 원법」 제2조 에규정 된지방공무 원 ( 「정당법」 제 6조의 규정 에의하 여정당의 당원이될수 있는공무 원을제외한 다)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규 정된 정부투자 기관( 한국방송 공사와한국 은행 을포 함 한다) 의임·직 원 5. 「지방 공기업법

제2조 에규정 된지방 공사와 지방공단의임·직원 6. 농업협 동조합·

산업협동조합·축 산 협동조합· 임업협 동조합· 연초생산협동 조합·인

협동 조합( 이 조합·중앙회와연합회를포함 한다) 의상근임· 직원과이들조합의 중앙 회장이나연합회장 7. 「정당법」 제6조 의규 정에의하여 정당의당원이 될수없

교원, 지방 의회의 원은당해 지방자치단체및공 공단체와행리를 목적으 로하는거 래를할 수 없으며이와 관련된시설또 는재산의 양수인도.

### 관 리 인

이 될수없다. 제3 4 조( 의원 의의 무) ①지 방의회의.

은공공 의이 익을우 선하

여양심에따라 그직무 를성실 히 수행

하여야한다. ②지방의 회의원 은청 령의의무.

지며, 의원으로서의품위를유지하여야한다. ③지방의회의원은그지위를남 용하.

지 방 자 치단

제 . 공채또기체와 의계약이 나 그 처 분에의하여재산상의권리· 이익또

는취위 취득하거나 타인 을위 하여 취득을 알선하여.

는아니 된다. 제3 4조

의2( 위원체 포및확 정판결 의통지 ) ①체

포또는구금된지방의회 의원이 있을 때에는관

수 사기관(장은지체)의 장에게 영장 의사

을 부하여이를통지하여야 한다. [ 개정94.3.16] ②지방의회의원이형사사 건으로 공 소가제기되 어그 판결 이확정된때에는각급 법원

장은 지체없

통지하 여야

한 다 [신설 8 [ 본조신설 91 - 12·31] 제34조의3( 지방의회의의 무등) ①지방의회는지방의회의원이준수

해야할지방 88 제 1 편 법령의 회의원 의윤리강

및리 실 천범 을조

례로정 하여야 한다 ②지방 의 회는 소위원 들이

의정활동에필요한전문 성을확 보하 도록노력

하여야한다 [ 본조신 설2006 4 28] [ [ 시행일 2006. 3. 31] 제3절권한제35 조( 지방의 회의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다음사항을 의결 한다 [ 개정94·3·16 99·8·

31] 1 조례의제정및개정 2 예

의심의 확정 3 결산 의승

인 4 1 행정예규.원.을 제외한사 용 료 · 수수료 · 부담금 · 지방 세또는가

입 금의부과

와정수 5 기금의설 치 · 운용 6 1 대통 령령으로

하는중 요 재산의 취득

· 처분 [시행 일 2000 · 3 · 1] 7 1 대 통 령으 로정

하는공공시설의설치 · 처분 [ [ 시행 일 2000 · 3 · 1] ]

1 법령과제예규정된것을제외한예산의의무부담이나권 의포

9 1 1 의수 리와처

리 0 1 의

국 지 방자치단체의권 력 에 관한사항 [시행일 2000 · 3 ·

1] 1 1 기타법령 에 의하 여그 관한 약속하는 사항 [시

일 2000 · 3 · 1] ②지방 자치단체는제 1 형사 항의

에 조례가정 하는바에 의하여 지방의 회에 서의결되

야할사항 을따로정할 수 있다 제5조의2( 서류제출요 구) ①본회의또는위원 회는

의결또는의심의와 직접

관 련 서류에.을.지방 자 치 단체

의정에대하여요구 할 수있 다 [ 개 정 94·3 ·16] ②위. 회가. 1 항의 요 구를할때 에는 의장을 경유 하여 야한다 [ 본조신

91·12·31] 제36조( 행정 사무감사 및조사권) ①지 방의회는 매 년 1 회당해지 방자 치 단체 의사무에 대하여시 · 도에 있어서는

일시 군및자 치구에 있어 서는7월 의각범위 내에서감사 를 실 시하 고 1 지방 자치 단체 의사무중 특정사안

관하여본회의의 결로 본회의또 는위원 회로하여 금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조

고 자할때 에는이유.

명시한서면으로하여 야하며 1 재 적의원3 분의1 이상의연 서가있어야 한 다 3 지 방 자치 단체및그장 이위임 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시·도의사무에대하 89 1 제2항에 의하여 국회와시·도 의 회가 직접 감 사하기로한사무 를제 외 하고는 그감사를 각각당해시·도 의회와시· 군및 자치구의의회 가행할수 있다 2 이 경우 국회.

시·도의회는 그감사결 과에대 하여 당해 지방 의회 에필요한 자료를요구할수있다 3

4 제1 항의 감 사또는 조사와 제3 항 의 감 사를 위하여필 요한때 에는 현지확 인 을하 거나서 류제출을 요 구 할수 있 으며 1 지방자치 단체의 장또는 관계.